

연구보고서 2024-4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주보혜

권영지·김유휘·박은정·김은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주보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진 | 권영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 | 김유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 박은정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 | 김은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2024-4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59-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42>

발|간|사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저출산·고령사회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국외 사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독일은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국가이지만, 보육시설 확대, 부모수당 도입 등 가족정책의 개혁을 거치면서 유럽에서도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2012년부터 5년여간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인구전략’은 인구변화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풍부하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국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구현상에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독일의 다양한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변화 현상을 인구구성과 지역적 분포 등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추진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영역별로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주보혜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김유희 부연구위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권영지 연구원과 함께 원외의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의 이소영 연구위원, 원외의 정재훈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 | |
|----------------------------------|------------|
| 요 약 | 1 |
| 제1장 서론 | 7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9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2 |
| 제3절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 | 17 |
| 제2장 독일 인구전략의 배경과 전개 | 37 |
| 제1절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 39 |
| 제2절 인구전략의 내용 | 50 |
| 제3장 독일 인구정책 | 67 |
| 제1절 가족정책 | 69 |
| 제2절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정책 | 120 |
| 제3절 이민자 국가로의 전환과 인구정책 | 145 |
| 제4장 국민인식조사 | 179 |
| 제1절 조사 설계 | 181 |
| 제2절 조사 결과 | 183 |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259 |
| 제1절 연구 요약 | 261 |
|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270 |

| | |
|---|------------|
| 참고문헌 | 275 |
| 부록 | 307 |
| [부록 1]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독일용) | 307 |
| [부록 2]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한국용) | 320 |
| Abstract | 331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표 1-3-1〉 연방통계청의 인구 추계 | 31 |
| 〈표 1-3-2〉 1,000명당 20~66세 인구수(2022~2070) | 36 |
| 〈표 2-1-1〉 인구전략 전개 과정 | 46 |
| 〈표 2-2-1〉 실무분과 개발과제 | 51 |
| 〈표 2-2-2〉 분과별 정책안 | 59 |
| 〈표 2-2-3〉 인구학적 결과 및 위험에 관한 질문 | 62 |
| 〈표 3-1-1〉 독일 아동수당 제도 연혁 | 83 |
| 〈표 3-1-2〉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 및 세금공제액(2010년~2024년) | 87 |
| 〈표 3-1-3〉 독일 월 표준생계비(Regelbedarf)(2024년) | 90 |
| 〈표 3-1-4〉 아동수당 수급자 수 및 지출액(2000, 2005, 2010, 2015년 이후) | 91 |
| 〈표 3-2-1〉 제20대 입법 기간의 GRW 재편 | 128 |
| 〈표 3-2-2〉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12개 우선순위 분야 | 132 |
| 〈표 3-2-3〉 생활의 동등성 분석을 위한 지표 세트 | 139 |
| 〈표 3-3-1〉 체류 자격 구분별 외국인 수(2023년) | 149 |
| 〈표 3-3-2〉 이주 배경 유무별 가구 유형(2023년) | 153 |
| 〈표 3-3-3〉 이주 배경 유무별 연령대(2023년) | 154 |
| 〈표 3-3-4〉 이주 배경 유무별 학력 수준(2023년) | 155 |
| 〈표 3-3-5〉 이주 배경 유무별 가구유형경제활동인구(2023년) | 156 |
| 〈표 3-3-6〉 숙련인력 관련 이민정책 변화(2020년 이후) | 168 |
| 〈표 3-3-7〉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개요 | 169 |
| 〈표 3-3-8〉 구직 기회 카드 | 172 |
| 〈표 4-1-1〉 국민인식조사 개요 | 181 |
| 〈표 4-1-2〉 국민인식조사 표본 설계 | 182 |
| 〈표 4-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85 |
| 〈표 4-2-2〉 향후 결혼 의향 | 188 |
| 〈표 4-2-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 189 |
| 〈표 4-2-4〉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와 걱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 191 |

| | |
|---|-----|
| 〈표 4-2-5〉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 195 |
| 〈표 4-2-5〉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계속 | 198 |
| 〈표 4-2-6〉 자녀 출산이 시 삶에 미치는 영향력 | 203 |
| 〈표 4-2-7〉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207 |
| 〈표 4-2-8〉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 | 210 |
| 〈표 4-2-9〉 실제 육아 분담 비율과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 | 213 |
| 〈표 4-2-10〉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 215 |
| 〈표 4-2-11〉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 218 |
| 〈표 4-2-12〉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 | 222 |
| 〈표 4-2-13〉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 227 |
| 〈표 4-2-14〉 사회 문제에 대한 동의 여부 | 230 |
| 〈표 4-2-15〉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 | 236 |
| 〈표 4-2-16〉 부모님 세대 대비 현재의 생활 수준 변화 | 240 |
| 〈표 4-2-17〉 본인 대비 자녀들의 생활 수준 변화(예상) | 242 |
| 〈표 4-2-18〉 인구정책 인지도 | 247 |
| 〈표 4-2-19〉 직장생활 관련 정책의 활용 가능성 | 252 |
| 〈표 4-2-20〉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 | 255 |
| 〈표 5-1-1〉 독일-한국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 비교 | 268 |
| 〈표 5-1-2〉 독일-한국 인구정책 인지도 비교 | 269 |
| 〈표 5-1-3〉 독일-한국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직장에서 활용 가능성 비교 | 2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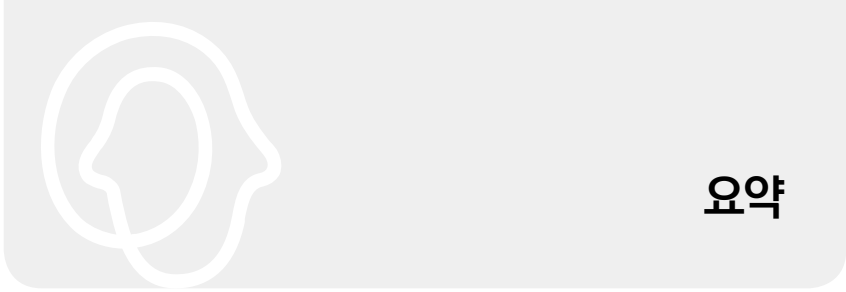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1-2-1] 연구체계도 | 16 |
| [그림 1-3-1] 출생-사망 인구 비교(1950~2020) | 18 |
| [그림 1-3-2] 출산율 변화(1950~2023) | 19 |
| [그림 1-3-3] 2023년 지역별 합계출산율 | 21 |
| [그림 1-3-4] 2022년 여성 거주지역별 자녀 수(45~49세) | 22 |
| [그림 1-3-5] 가구 특성별 인구(1996~2022) | 23 |
| [그림 1-3-6] 여성 연령별 자녀 수 비교 | 24 |
| [그림 1-3-7] 출생 연도별 무자녀 여성 비율(2022년 기준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 비교) | 24 |
| [그림 1-3-8] 고학력 여성과 무자녀 여성 비율 동서독 차이 | 25 |
| [그림 1-3-9] 독일 국적 여성과-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 비교 | 26 |
| [그림 1-3-10] 내국인과 외국인 출산 연령 비교(1991~2021) | 27 |
| [그림 1-3-11] 연령별 인구 변화(1871~2070) | 28 |
| [그림 1-3-12] 20세 미만, 65세, 80세 이상 인구 비율(1971~2070) | 29 |
| [그림 1-3-13] 노년부양비와 인구 추계 | 32 |
| [그림 1-3-14] 15차 추계에 따른 인구피라미드(2022년, 2070년 비교) | 33 |
| [그림 1-3-15] 지역별 인구 변화(1990~2022) | 35 |
| [그림 2-1-1] 인구전략 체계도 | 48 |
| [그림 3-1-1]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자 수(2016~2023년) | 98 |
| [그림 3-1-2]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수급 비율(2016~2022년) | 99 |
| [그림 3-1-3] 독일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자 추이(2008~2021년) | 99 |
| [그림 3-1-4]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 기간(2016~2022년) | 101 |
| [그림 3-1-5] 아동주간돌봄 아동 수 및 보육률(2006년, 2021년, 2022년) | 112 |
| [그림 3-1-6] 아동주간돌봄에서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 추이(2006~2022년) | 113 |
| [그림 3-1-7] 독일 부모의 돌봄 수요(2022년) | 114 |
| [그림 3-1-8] 독일의 돌봄기관 운영시간(2022년) | 115 |
| [그림 3-1-9] 아동주간돌봄에서 초등 연령 아동의 이용 및 희망 돌봄 규모(2022년) | 116 |
| [그림 3-2-1] 2022년 GRW 재정비(GRW-Neuausrichtung 2022: Eckpunkte) | 126 |

| | |
|--|-----|
| [그림 3-2-2]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FS) | 136 |
| [그림 3-2-3] 베를린 지역 정보 예시 | 138 |
| [그림 3-3-1] 독일 내 외국인 인구 비중(1991~2023년) | 146 |
| [그림 3-3-2] 독일의 인구 유입 및 유출(1991~2023년) | 147 |
| [그림 3-3-3] 독일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2010~2023년) | 148 |
| [그림 3-3-4] 체류 자격 구분별 외국인 비중(2023년) | 150 |
| [그림 3-3-5] 유럽 국가별 장기(영구) 이주자들의 체류 목적(2011~2020년) | 151 |
| [그림 3-3-6] 체류 자격별 외국인 수 변화(2010년과 2023년 비교) | 152 |
| [그림 3-3-7] 직업 구분별 이민 이력이 있는 근로자(고용인)의 비중(2022년) | 157 |
| [그림 3-3-8] 환영문화와 인정문화 단계모델 | 173 |
| [그림 4-2-1] 사회 구조 유형 | 22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선험국가로서 독일 사례를 다룬 기존 연구가 개별적 제도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독일의 인구전략 수립 배경과 전개, 경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도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가.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

독일에서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의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졌던 1994년에 합계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고, 2010년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2016년에 1.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다시 감소하였다. 최근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서독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한 가족정책의 성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는 2022년에 발표된 '15차 조정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예상했으나, 최

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근 10년간 순 이민이 추정치보다 증가하면서 2070년까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주로 순 이민 증가로 인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인구 격차는 지난 30년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난 반면, 서독 지역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역이 대부분이며, 지난 3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070년까지 대부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나. 독일의 인구전략(2012~2017)

독일의 인구전략은 2012년부터 5년여간 사회 전반의 인구적 적응 유연성(Demografieresilienz)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인구 전략은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회가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도였다.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 사회, 개인이 당면한 조건들이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변화로 인식하고, 기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정책 영역까지 포함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9개의 주제로 분류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전략은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집단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다. 인구정책 영역

1) 가족정책

독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가족정책이 추진

되었다. 특히 부부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 변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의 정책적 변화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본보장’의 정책화가 대표적이다. 2023년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아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25년에는 모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적절한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일제 학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2) 지역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여 모든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근로 조건의 동등성을 지원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높은 삶의 질과 좋은 고용 및 환경 조건을 보장하고자 했다. 1990년대의 ‘동등한 생활 조건’ 정책수단은 주로 구동·서독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제는 독일 전체의 농촌과 대도시의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둔다. 한편, 낙후된 지역(특히 농촌)에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향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 바이에른에서 처음 도입한 향토정책(Heimatpolitik)은 2018년 대연정 출범 이후 연방정부 정책 영역으로 포함되어 탄광 지역의 구조적 전환, 디지털 인프라 확충, 폐철도 노선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최근의 정책 변화로는, 2020년에 ‘동등성 점검’을 도입하여 제안된 법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지역 격차 완화와 관련된 6개 부처의

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22개 사업을 새로 도입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FS)’ 아래로 위치시켜 정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개발 정책으로 활용되었던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GRW)’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주민 참여, 주민의 삶의 질에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이민정책

독일에서 이민정책은 노동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1950년대의 초청이민자 제도, 2010년대 이후 외국인 숙련 노동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최근 독일의 노동 이민정책은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국외 전문인력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도입된 ‘숙련인력이민법’은 숙련인력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관료주의를 완화한 조치로 특히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노동 이주 권리를 확대하였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의 일상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환영문화(Willkommenskultur)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국민인식조사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 국민인식조사는 독일 국민(20~49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조사의 결과는 동일한 설문

지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20~49세 남녀 2,500명)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및 출산에 관해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한국인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독일은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 여건의 중요도가 높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서는 독일과 한국 모두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양국 모두 남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육아 및 가사 분담 비율이 실제 분담 비율보다 높았다. 한편,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를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서 보면,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조건 또한 한국보다 더 잘 갖춰져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의 인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무용론, 운명론적 접근을 경계하고 변화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진행되었다. 개별 실무분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제의 방향성, 접근 방식 모두 참여자가 직접 결정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하고 수용도 높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연방정부 내 다양한 부처를 아우르는 인구 변화 대응 전략 수립 과정은 인구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인구정책 영역으로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을 검토하였다. 가족정책에서는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가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부모의 성 평등한 돌봄 역할 분담을 목표로 남성이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지역정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 특징이다. '동등한 생활 조건' 개념은 오랫동안 독일 지역정책에서 핵심적 가치로 여겨져 왔고, 현재에도 이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한 울타리 안에 위치시켜 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민정책에서는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지자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단일민족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와 닮은 점이 있다. 최근에는 숙련인력이민법을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환영구조가 환영문화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신규 이민자를 위한 국가 지원구조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개발하는 등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영문화(Willkommenskultur)'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독일에서는 인구 변화에 대해 세 가지 트렌드가 주로 회자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Wir werden weniger, älter, bunter)(Schröder, 2013)는 진단이 그것이다. 첫째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새로운 세대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것, 즉 숙련된 근로자의 부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한편,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많아지고, 노인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것이다. 연장된 수명만큼 자신의 에너지와 경험을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편,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에서 다양한 이민 배경과 국적을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 평균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선주민보다 젊고 자녀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보면 장기적으로 외국 출신 인구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모델, 생활방식, 세계관의 다양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독일 사회를 특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다음 세대가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기고 있고, 사회, 경제, 의료 및 사회 시스템에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보다 더 일찍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독일은 이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

계적으로 67세까지 상향 조정했고, 중장년 재교육 및 보충교육을 강화했으며,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 주목할 점은, 운명론적 접근을 경계하고, 무용론, 회의론 대신 변화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바꿀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고, 이 변화를 기회로 여겨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작업이 2012~2017 기간 동안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된 인구전략의 수립이다. 독일 정부는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인구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기관 및 파트너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독일 인구전략적 접근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인구학적 변화를 사회 전체의 포괄적인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또한 인구학적 변화가 ‘외부요소’인 이민과 난민 인구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인구, 지역 발전 불균형 심화에도 주목해 왔다.

이처럼 인구 전환기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 사회는 적극적으로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솔츠(Olaf Scholz)는 2022년 11월 28일 ‘독일: 이민자 국가. 참여와 존중을 위한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독일을 ‘이민자 국가(Einwanderungsland)’로 선언하며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과 개방과 통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Die Bundesregierung, 2022). 이제 독일 인구정책에서 ‘이민’과 ‘사회통합’ 정책은 핵심적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향후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35년까지 독일 전체 인구의 규모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계에 따르면 2035년까지 약 60%의 지역과 독립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특히 구동독 지역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베를린을 제외한 8개 주요 도시만 제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Maretzke, Hoymann, Schlömer, 2024).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전략과 인구정책 전반의 정책적 도전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저출산·고령화의 선험국가로서 독일 사례를 다룬 국내 기존 연구는 개별적인 제도 소개에 그치고 있어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진숙, 김태원(2014), 김대환, 정남기(2017), 김상호(2021) 등에서 독일의 저출산 또는 고령화 대응 정책이 다루어졌으나,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검토되어 인구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맥락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정연택 외(2018)에서 독일 사회정책의 다양한 제도를 폭넓게 다루었으나, 제도 소개 위주로 구성하여 독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독일 인구전략의 특징적 요소들이 국내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으나(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 2019; 주보혜 외, 2019 등), 인구전략 수립을 전후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독일 인구전략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독일 인구전략의 역사적 맥락과 상향식 의견수렴 과정을 표방한 대화 프로세스, 관련

시행착오 및 실행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독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본질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 융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독일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인구전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영역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인구전략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 전반의 인구적 적응유연성(Demografieresilienz)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모든 부처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인구전략을 개발하였다(BMI, 2020). 인구구조 변화를 국가와 사회는 물론 개인들이 당면한 모든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가족과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정책 외에도 기존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산업이나 행정체계까지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인구전략은 주제별 전략 수립과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여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 집단을 포함하는 대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인구학적 변화’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연금, 건강, 의료 또는 사회정책의 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전략의 수립 배경, 수립 과정을 검토한다.

나. 가족정책

분단 시절에 서독 정부는 사적 영역의 ‘출산’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가족의 사생활 맥락에 있는 출산을 국가의 정책적 수단,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2000년대부터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도하면서도 ‘출산을 제고’라는 목표는 적극적으로 강조된 바 없다. 대신, 2000년대 초에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고, 부모, 특히 남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7년 부모수당 도입 당시 가족부장관은 부모수당이 “출산 프리미엄”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BMFSFJ, 2010. 11. 26), 그리고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BMFSFJ, 2013, p. 17).

연방정부는 2012년에 인구전략안 개발 과정에서 가족정책을 인구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면서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다. 출산율 제고 대신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젝트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의 독일 가족정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진행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독일이 당면한 과제와 접근 방식을 자세하게 다룬다.

다. 지역정책

독일은 전통적으로 분산된 정주 환경과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독일의 지역적 다양성은 독일의 경제적 성공의 원동력이자 동시에 시민들이 각자의 생각과 희망에 따라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BMWK, 2024a).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현시점에서 독일의 지역적 다양성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별 인구적 조건에 맞게 각종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독일에서는 지역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경제 발전, 사회 통합,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Schwickert & Ruhose, 2019). 또한 최근 세계화와 디지털화, 인구학적 변화와 기후 증립으로의 전환이 지역의 생활 조건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BMWK, 2024a).

지역격차가 심화하는 배경에서 최근에는 특히 낙후된 지역의 생활 조건 문제, 생활필수서비스 보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였다(BMI,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가능성 및 한계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이 인구구조변화 시대에 심화하는 지역 격차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라. 이민정책

독일은 이민정책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다. 과거 나치 집권 시절에 우생학과 인종차별적 사상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던 과거를 가진 독일

에서 이민정책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그러나 ‘이민’이라는 주제는 독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독일에서 이민정책을 인구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가족 및 출산정책과 함께 다루려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있었다. 미래의 노동 연령 인구와 숙련 노동력에 대한 장기적인 추계만큼이나 장차 독일 인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리고 독일 사회에 필요한 미래 시민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상당 기간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독일 정부는 이민정책의 변화 요구에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민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며, 지금은 독일 사회의 ‘통합 능력’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수용이 어떻게 ‘인구전략’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지도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이민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최근의 정책 변화를 자세하게 다루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인구 현황과 전망 관련 공식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독일의 인구정책과 인구전략 관련 정책 문건을 검토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조사로 진행된 조사는 독일 국민 2,500명(성인 20~49세)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지는 현지 언어로 번역 및 검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세부 심층분석 주제 선정과 분석 방안, 독일 인구정책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과정과 전략의 체계를 검토한 후 인구전략을 영역별로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제3장은 독일의 인구정책을 가족정책, 지역정책, 이민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분야는 독일 인구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영역으로, 최근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영역별로 역사적 시각으로 정책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당면한 과제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4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국내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의 인구정책적 경험과 접근 방식이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그림 1-2-1] 연구체계도

| 장 구성 | 주요 내용 | 연구 방법 |
|-------------|---|-------|
| 제1장 서론 | ○ 연구 배경, 목적, 연구 내용 소개 ○ 독일 인구 현황과 전망 | |
| 제2장 독일 인구전략 | ○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 독일 인구전략 영역별 검토 | 문헌 연구 |
| 제3장 독일 인구정책 | ○ 가족정책 ○ 지역정책 ○ 이민정책 | 문헌 연구 |
| 제4장 국민인식조사 | ○ 국민인식조사 배경 ○ 조사 결과 | 설문 조사 |
| 제5장 결론 | ○ 영역별 요약 ○ 한국에의 시사점 | 문헌 연구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제3절 독일의 인구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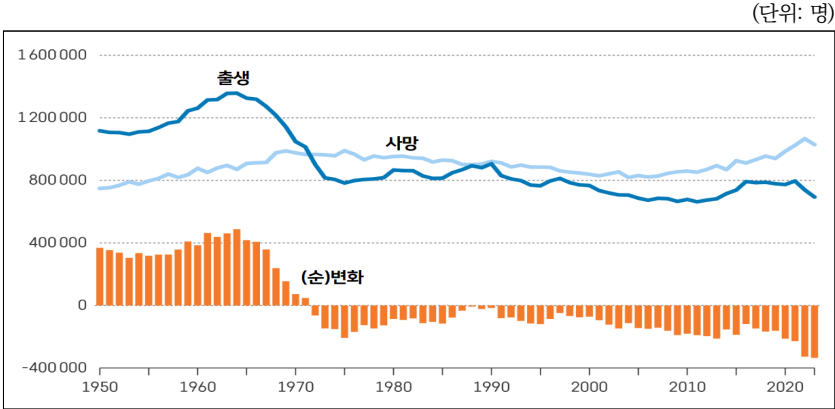
1. 독일의 출산행태 변화

가. 전체적 변화

독일의 인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3-1]을 참조하면서 전반적인 인구 증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4년으로 136만 명이 태어났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8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최근 3년간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독일에서는 약 69만 명이 출생했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 않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망 확률은 낮아졌고 기대수명은 그에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은 2010년 이후 커졌고, 2023년에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순)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최대 49만 명 더 많았다. 1972년 이후 독일은 지속적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 2023년에는 출생아 대비 사망자 수가 34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전체 인구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로부터 이민이 증가하여 인구 부족분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3-1] 출생-사망 인구 비교(195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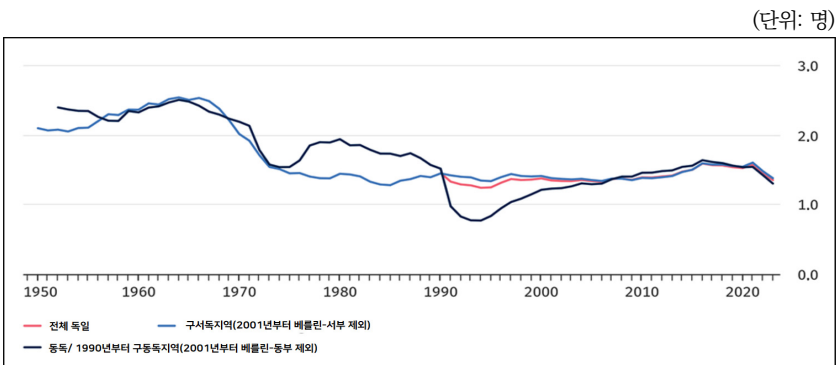
출처: “Natürliche Bevölkerungsentwicklung,” Demografie Portal, n.d.a.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natuerliche-bevoelkerungsentwicklung.html?nn=676848>

다음으로, 독일의 출산율 변화를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은 지속적인 저출산에서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분단되어 있던 당시 동독과 서독은 196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다. 당시 서독의 합계출산율은 2.1명에서 1.5명 이하로 떨어졌고, 서독 지역은 이 수준을 2010년까지 유지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에는 피임약 보급과 혼인 성향 감소, 가족 및 주거 형태 변화,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 등 사회적 가치관 전반이 변화된 배경이 있었다(Demografie Portal, n.d.b). 한편,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동독의 출산율은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피임약의 보급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1972년부터 낙태가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독 지역에는 서독 지역과 다르게 출산 보조금과 혼인 대출 등 가족정책 조치를 통해 출산율이 반등하였다(Demografie Portal, n.d.b). 이후 독일 통일 전까지 동독의 출산율은 서독보다 높은 수준이 유

지되었다. 그러나 통독 이후 1990년대 초, 사회 격변의 일환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동독 주 전역에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자유로 인해 혼인과 출산 모두 연기, 포기된 것이다(Schröder, 2013). 통독 이후 사회적 혼란이 정리된 이후에는 출산율을 꾸준히 회복하여 2005년경부터는 더 이상 동서 간 출산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39명에서 2021년 1.58명까지 다시 상승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9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자녀를 둔 가정과 이민에 대한 여건이 개선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 상승세는 멈췄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2022년과 2023년에 특히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년간의 급격한 감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 등 여러 위기가 겹치면서 출산 계획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해석된다(Sozialpolitik-aktuell.de, n.d.).

[그림 1-3-2] 출산율 변화(1950~2023)



출처: "Geburtenziffer 2023 auf 1,35 Kinder je Frau gesunken," Demografie Portal, 2024. 7.17.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4/240717-bund-geburtenziffer-2023-auf-1-35-kinder-je-frau-gesunke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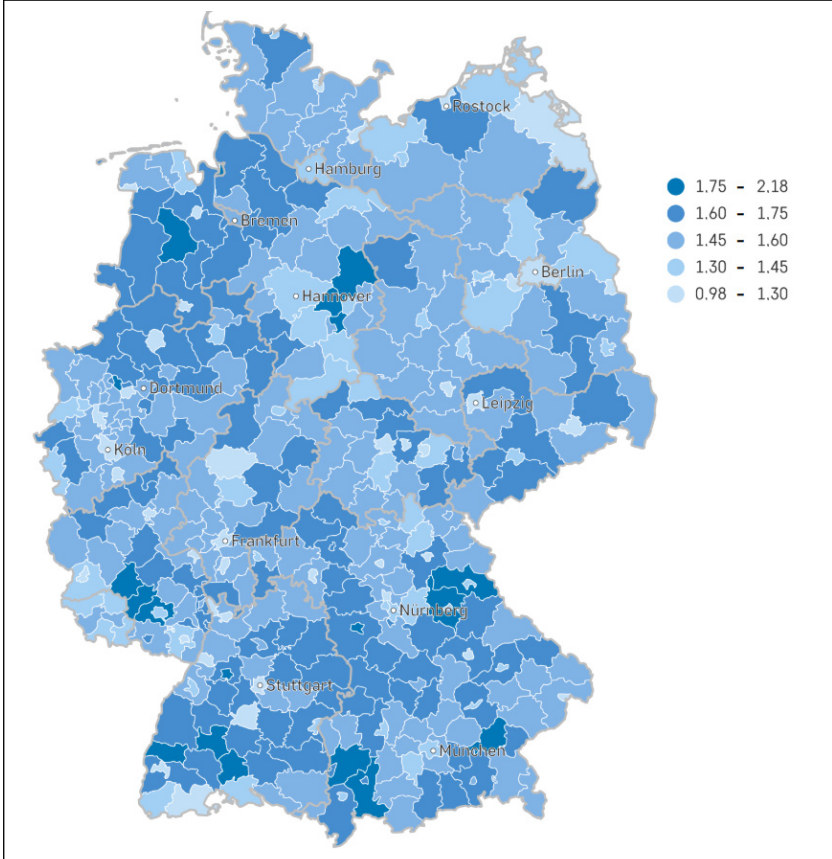
최근 3년간의 출산을 변화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9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2%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년도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2023년 독일의 구동독 지역은 전년 대비 9.2% 포인트 감소하여 구서독 지역(5.9% 포인트)보다 감소폭이 컸다(Demografie Portal, 2024.5.2). 한편, 2023년 독일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7.6% 포인트 감소했다. 2023년에 결혼한 남녀는 총 361,000쌍으로, 이는 195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357,785쌍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2023년 독일 전역에서 361,000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약 351,800건은 남성과 여성 간, 9,200건은 동성 간 결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Demografie Portal, 2024.5.2.).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3년 모든 연방주에서 전년도보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인 곳은 작센주(-10% 포인트)이고 주로 북부와 동부 연방주에서 감소폭이 컸다.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지역은 베를린으로,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했다. 한편, 전년도보다 출산율 감소세가 가장 작은 주는 주로 구서독 지역으로, 자를란트주(-1%)가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Demografie Portal, 2024.7.17).

[그림 1-3-3]에서 지역별 출산율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2023년 기준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보다 서독 지역의 출산율이 높고, 특히 남부 지역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한편, 개별 연방주 안에서 비교할 때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았는데, 이는 젊은 부부들이 가족 형성 과정에서 근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이다. 대도시 주변의 높은 임대료가 젊은 부부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Demografie Portal, n.d.c.).

[그림 1-3-3] 2023년 지역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출처: "Regionale Geburtenhäufigkeit," Demografie Portal. n.d.c.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zusammengefasste-geburtenziffer-regional.html?nn=676848>

[그림 1-3-4]를 살펴봐도 자녀 수는 지역마다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45~49세 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녀가 없는 비율은 도시 거주 여성이 23%로 가장 많았고, 도시근교 18%, 농촌 17%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 또한 농촌 지역이 60%로 가장 많았고,

2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도시근교는 58%, 도시는 53%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1명인 여성은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1-3-4] 2022년 여성 거주지역별 자녀 수(45~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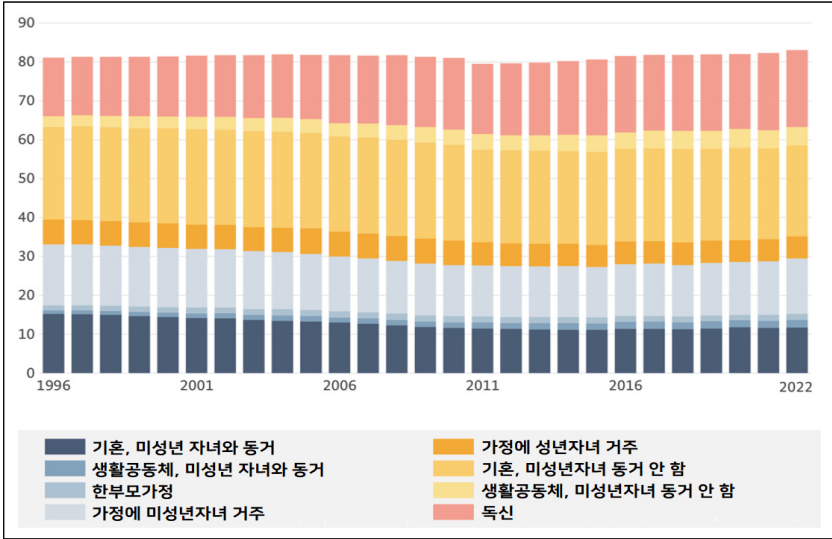
| | 무자녀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이상 |
|------|------|-------|-------|----------|
| 도시 | 23 % | 24 % | 35 % | 18 % |
| 도시근교 | 18 % | 24 % | 40 % | 18 % |
| 농촌 | 17 % | 24 % | 42 % | 18 % |

출처: "Kinderzahl," Demografie Portal, n.d.d.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kinderzahl.html?nn=676848>

가구 특성별로 인구를 분류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는 결혼 상태에서 자녀 없이 거주하는 부부이다. 해당 거주 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재 베이비부머가 자녀의 분가를 경험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해당 거주 형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자 가구는 2015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부부는 2015년경 이후로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독신자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주거 형태가 되었다.

[그림 1-3-5] 가구 특성별 인구(1996~2022)

(단위: 100만 명)



출처: "Bevölkerung nach Lebensformen in Deutschland (1996-2022),"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a.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L01-Bevoelkerung-Lebensformen-ab-1996.html>

나. 여성 연령별, 학력별 비교

여성 연령별로 자녀 수를 비교해보면, 세대별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6]은 25년 차이의 두 세대의 자녀 수를 비교하여 도식화하였다. 2022년 기준 70~75세에 해당하는 1947~1952년생 여성들은 자녀가 없는 비율이 14%에 불과하지만, 45~49세에 해당하는 1973~1977년생 여성들 중 무자녀 비율은 20%에 달한다. 그러나 유자녀 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 수 분포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Demografie Portal, n.d.c). 비교 대상이 두 세대 여성 모두 자녀 1명을 가진 비율은 30%, 2명은 절반 수준, 20%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다.

24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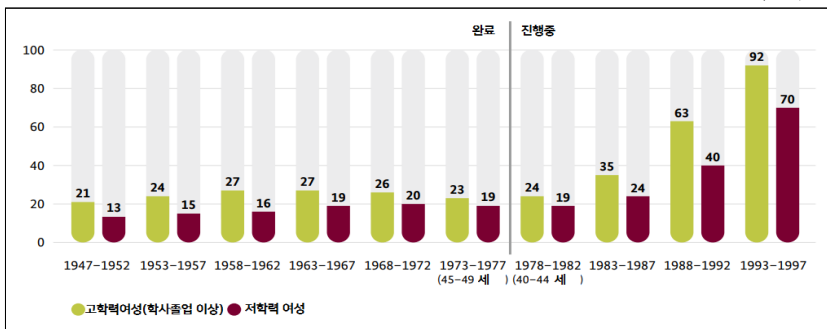
[그림 1-3-6] 여성 연령별 자녀 수 비교

| | 무자녀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자녀 4명 이상 |
|-----------------------|-----|-------|-------|-------|----------|
| 1947-1952 (70-75세) | 14% | 26% | 42% | 13% | 5% |
| 1973-1977 (45-49세) | 20% | 24% | 38% | 13% | 5% |

출처: "Kinderzahl," Demografie Portal, n.d.c.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kinderzahl.html?nn=676848>

무자녀 비율은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58~1972년생 여성(2022년 기준 50~64세) 중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26~27%로 높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45~49세 여성의 최종 무자녀 비율은 23%이며, 2022년 고학력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주로 서독 지역 여성의 변화에 기인한다. 서독 지역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50~54세의 27%에서 45~49세의 23%로 감소하였다.

[그림 1-3-7] 출생 연도별 무자녀 여성 비율(2022년 기준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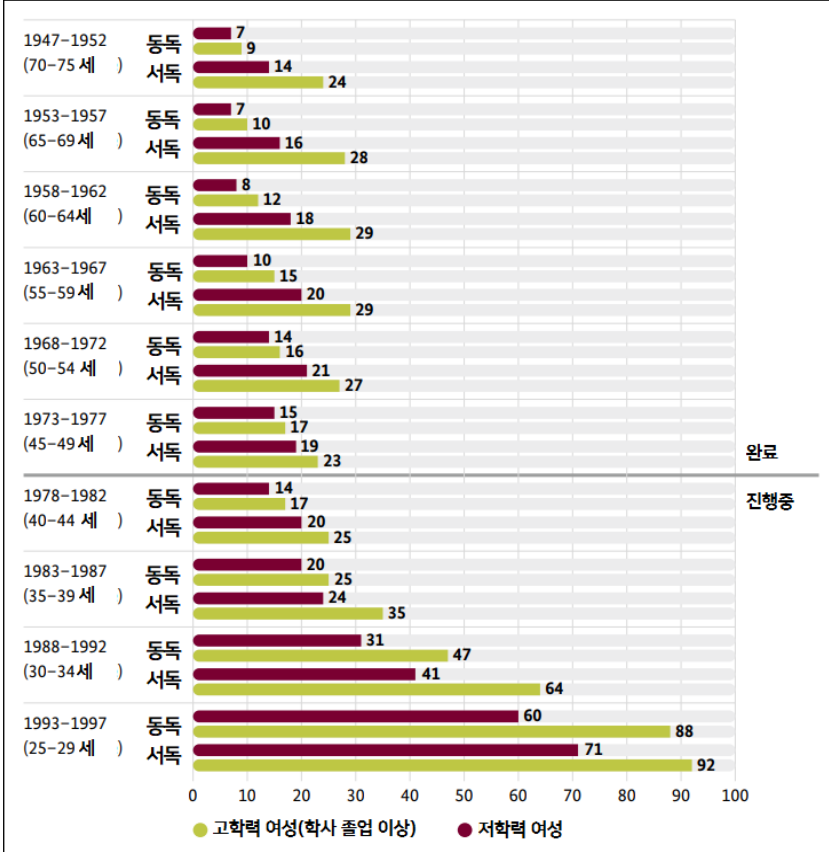


출처: 1) (원자료) "Familienreport," BMFSFJ, 2024a.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39468/de423b579e88c8cceb55eda13f6e0124/familienreport-2024-data.pdf> p. 65.

2) (재인용) "독일의 인구전략과 가족정책," 주보혜, 2024,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저출생 대응방향(자료집) p. 7

[그림 1-3-8] 고학력 여성과 무자녀 여성 비율 동서독 차이

(단위: %)



출처: "Familienreport," BMFSFJ, 2024a.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39468/de423b579e88c8cceb55eda13f6e0124/familienreport-2024-data.pdf>.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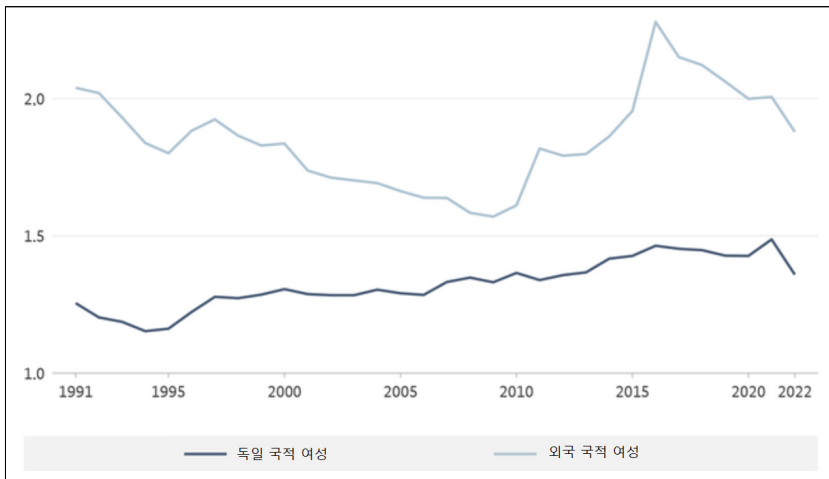
다. 국적별 비교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독일 국적 여성보다 높다. 독일 내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에 독일 국적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0년까지 꾸준히 차이가 좁혀졌다.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진 반면,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격차가 커지면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외국 여성의 출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2021년 코로나 감염병 범유행을 겪으면서 급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3-9] 독일 국적 여성과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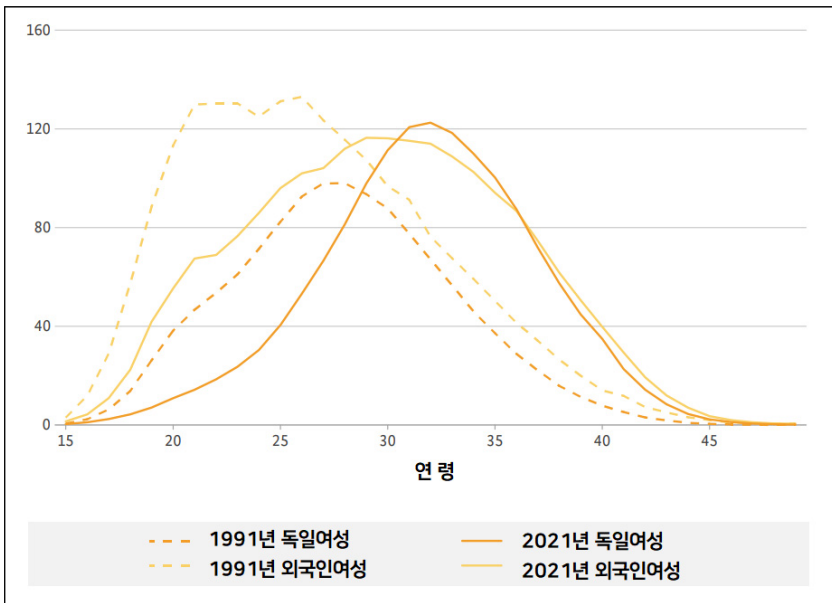
출처: “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deutscher und ausländischer Frauen (1991-2022),”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b. https://www.bib.bund.de/Permalink.html?cms_permaid=1217872

아래 그림은 가임기에 해당하는 15~49세 여성의 출산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1991년을 살펴보면, 독일 여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출산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외국 여성은 독일 여성보다 출산 횟수도 많고, 연령대도 낮았다. 전반적인 출산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과 2021년에는 출산 연령대가 내국인, 외국인 여성 모두 크게 높아진 가운데, 2021

년의 경우 젊은 연령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출산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10] 내국인과 외국인 출산 연령 비교(1991~2021)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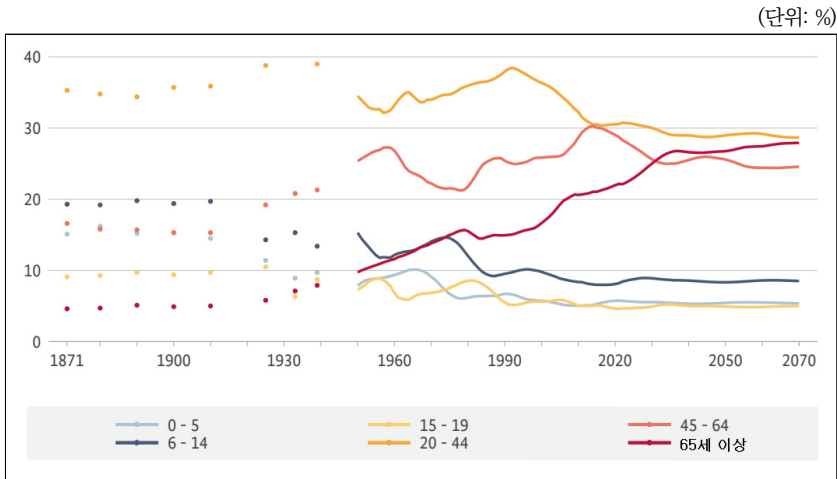
출처: "Altersspezifische Geburtenziffern deutscher und ausländischer Frauen in Deutschland (1991 und 2021),"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c.<https://www.bib.bund.de/DE/Fakten/Fakt/F13-Altersspezifische-Geburtenziffer-deutsche-auslaendische-Frauen-1991u2021.html?nn=1279832>

2.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

가. 연령별 인구 변화

[그림 1-3-11]에서는 독일 인구에서 연령 구성이 변화해온 역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20세 미만 연령대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870년부터 1900년대까지 5% 수준에 머물다가 1930년대부터 점점 증가하여 2070년에는 3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림 1-3-11] 연령별 인구 변화(187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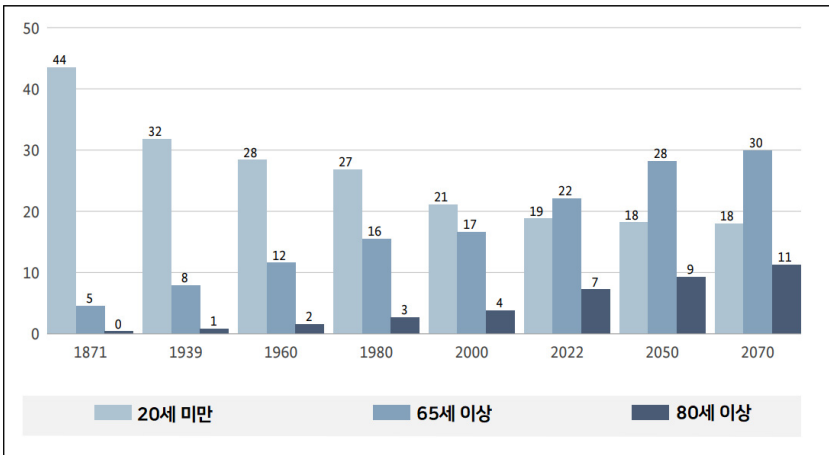


출처: "Bevölkerung nach Altersgruppen (1871-2070),"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d.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B23-Altersgruppen-1871-Vorausberechnung.html>

[그림 1-3-12]는 비교를 위해 주요 연령대만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세 미만 인구 비율은 1871년부터 207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80세 미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3-12] 20세 미만, 65세, 80세 이상 인구 비율(1971~2070)

(단위: %)



출처: "Bevölkerung unter 20 Jahren, ab 65 Jahre und ab 80 Jahre (1871-2070),"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e. https://www.bib.bund.de/Permalink.html?cms_permaid=1217820

나. 인구구조 변화 전망(제15차 조정 인구 추계)

2022년 12월 2일에 독일 연방 통계청은 중장기적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5차 조정된 인구 추계(15. koordiniert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을 발표했다. 15차 인구 추계는 처음으로 2070년까지 추계기간이 연장되어 50년에 달하는 시간 범위를 포괄하며, 수명, 출산율, 이주의 장기적 영향을 밝히고 정량화할 수 있게 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24.4.22).

독일의 미래 인구 추이는 21가지 변형(9가지 주요 변형)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변형 형태는 각각 출산율, 사망률, 이주에 대한 다른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Statistisches Bundesamt, n.d.).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순 이민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2015년에 유럽 전역에서 난민 이주가 급격히 증가했고(110만 명), 이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50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순 이민이 나타나는 등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민의 장기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러한 높은 이주 추세는 변화되지 않았다(Deutscher Bundestag, 2024.4.22.). 따라서 제15차 인구 추계에서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예측이 다소 신중해졌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이민인구 유입으로 인해 207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1-3-1〉은 1998년, 2008년, 2021년 각 9차, 12차, 15차 인구 추계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 추계는 사회적 변화와 이민인구 급증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반영하며 조정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세 번에 걸친 인구 추계의 출산율, 기대수명, 이주, 고령화 전망을 비교한다.¹⁾

출산율 가정은 지난 25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제9차 조정 인구 추계는 1998년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2005년까지 1.4명으로 약간 증가한 후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9차 및 12차 조정 인구 추계의 출산율 가정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인다.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은 분석된 세 차례 추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9차부터 12차까지 조정된 인구 전망에서 기대수명이 큰 폭으로 높아진 반면, 15차 조정 인구 추계에서는 12차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이주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인구 추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9차

1) Schultis, Seuffert, Stramka(2024)의 설명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조정 인구 추계에서는 2040년부터 순 이민이 연간 15만 명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12차 조정 인구 추계 가정에서 이 수치는 2020년에 이미 도달하고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5년 이민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15차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예상치는 상향 조정되었다. 추계 결과, 2033년까지 과도기를 거친 후에는 연간 25만 명의 순 이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1-3-1〉 연방통계청의 인구 추계

| 구분 | 9차 인구 추계 | 12차 인구 추계 | 15차 인구 추계 |
|-------------|-----------------------------------|-----------------------------------|-----------------------------------|
| 기준연도 | 1998 | 2008 | 2021 |
| 출산율 | 기본가정 | 기본가정 | G2 |
| 합계출산율 | 1.4명 (2005년부터) | 1.4명 (2021년부터) | 1.5명 (2032년부터) |
| 출산 연령 | | | |
| (기본 연도) | 약 30세 | 30.4세 | 31.5세 |
| (장기적 변화) | 유지 | 32.0세로 증가 | 32.6세로 증가 |
| 사망률/기대수명 | 기본가정 | 기본가정 | L2 ¹ |
| 출생 당시 기대수명 | 2050년부터 남아: 78.1세 여아: 84.5세 | 2060년부터 남아: 85.0세 여아: 89.2세 | 2070년부터 남아: 84.6세 여아: 88.2세 |
| 이민/이동 | 혼합가정 | 혼합가정 | W2 |
| 장기적 평균 순 이민 | 150,000명 (2040년부터) | 150,000명 (2020년부터) | 250,000명 (2023년부터) |

주: 기대수명 중간 가정을 의미함.

출처: "Der demografische Wandel im Wandel," Schultis, Seuffert, Stramka, 2024. <https://doi.org/10.2478/wd-2024-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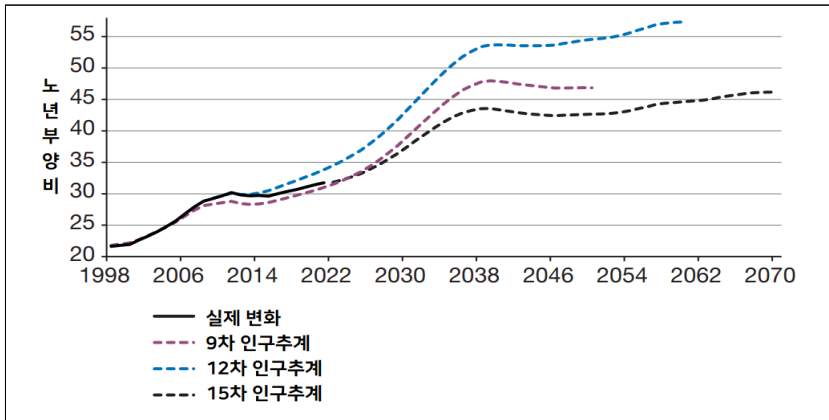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수준은 노년부양비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제9차 추계에 따른 노년부양비를 살펴보았을 때, 1998년부터 2007

2) 노년부양비는 66세 이상 인가와 20~66세 인구를 비교하여 은퇴한 인구를 부양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부담을 측정하는 척도로, 근로연령 인구 규모와 노인인구 규모를 비교하여 나타낸다. 노년부양비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BMF, 2024).

년 사이는 추계값과 실제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12차 추계 역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실제 변화에 가깝지만 2015년부터는 노년부양비가 과대 추계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예상보다 높은 이민인구 유입으로 인해 노년부양비 증가가 예상 추세에 비해 지연된 결과이다. 15차 장래 인구 추계는 결과적으로 9차 장래 인구 추계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3-13] 노년부양비와 인구 추계

(단위: 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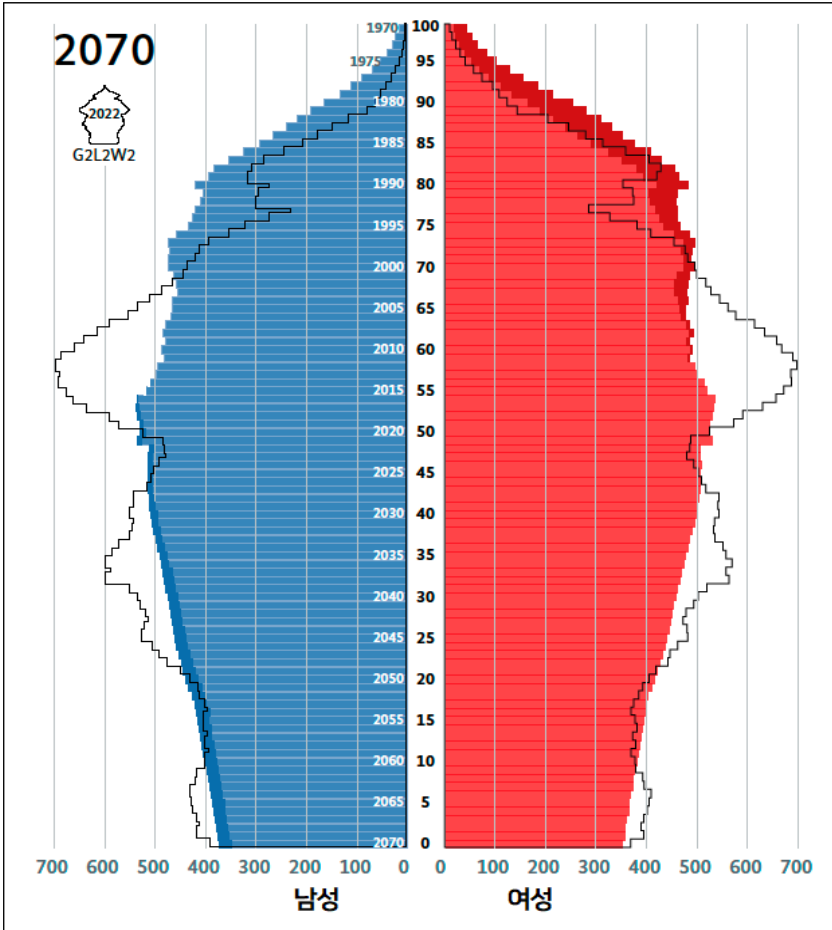
출처: "Der demografische Wandel im Wandel," Schultis, Seuffert, Stramka, 2024. <https://doi.org/10.2478/wd-2024-0072>

[그림 1-3-14]는 15차 장래 인구 추계를 도식화한 인구피라미드이다. 기준연도인 2022년과 2070년 사이에 인구의 연령 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각 연령대 간의 규모 비율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은퇴 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부머가 2070년에는 인구피라미드에 포함되지 않게 되며,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이 인구피라미드 상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한 2070년의 피라미드에서 70~75세, 50~55세 구간의 인구 규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 연령대는 베이비

부머의 자녀, 손자녀 연령대로 볼 수 있다. 75세에서 80세 사이의 감소 구간은 통일의 특수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3-14] 15차 추계에 따른 인구피라미드(2022년, 2070년 비교)

(단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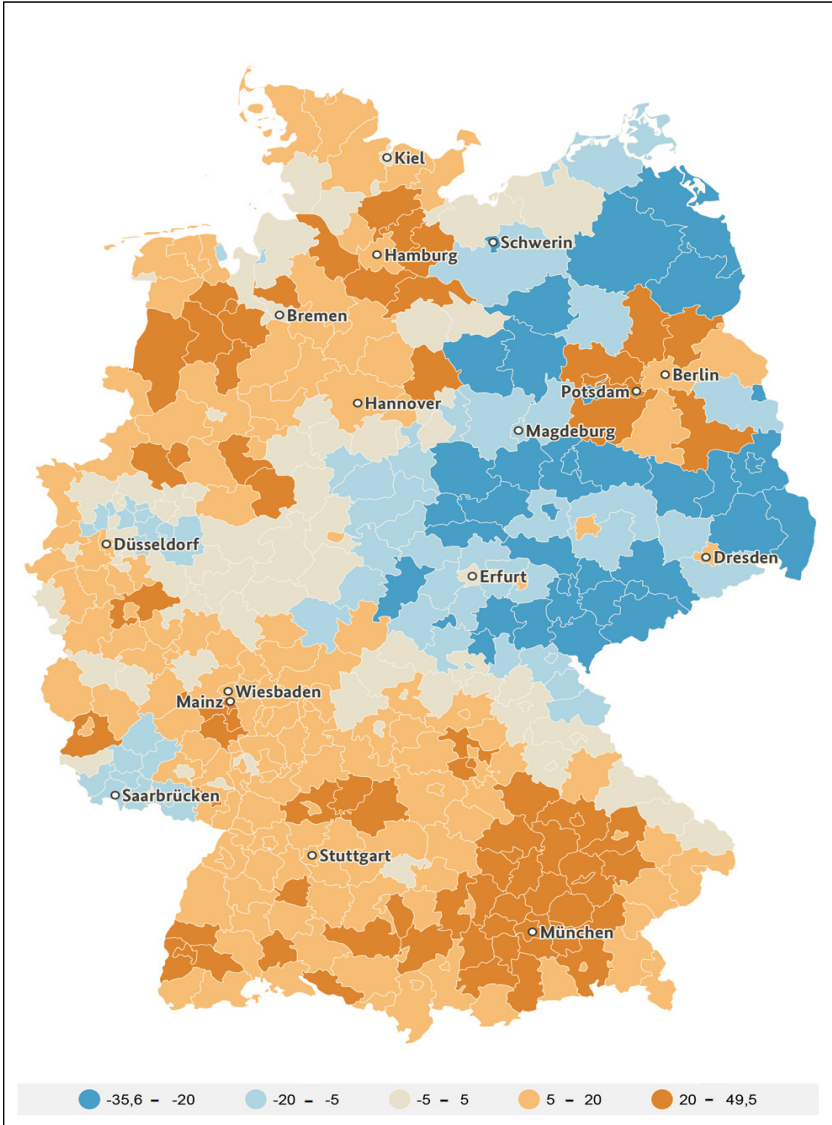
주: 출산율(G2), 기대수명(L2), 순 이민(W2) 모두 중간가정으로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식화함.
출처: "Neu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der Statistischen Ämter," BMWK, 2023.4.27.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3/05/06-neue-bevoelkerungsvorausberechnung-der-statistischen-aemter.html>

3.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격차

독일은 인구구조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인구 변화에서 동독과 서독 지역의 차이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는 물론 비도시 지역에서도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난 반면, 서독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역이 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는 대도시와 서독 지역 대도시 주변, 베를린 주변 지역에서 나타났다.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남부 뉘른 지역이다. 서독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난 지역은 중서부 루르(Ruhr), 자아란트(Saarland) 지역이며, 이 지역 외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동독 지역에서는 약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15] 지역별 인구 변화(1990~2022)

(단위: %)



출처: "Entwicklung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Kreisebene, 2022 gegenüber 1990),"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f.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B90-Bevoelkerung-Kreise-ab-1990.html>

아래는 15차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70년까지 노동가능인구에 해당하는 20~66세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살펴보면,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2070년까지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감소폭은 구동독에 속하는 연방주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구서독 주는 11%, 구동독 주는 21% 등 총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Bundestag, 2024.4.22).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1990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지역별 인구 격차가 2070년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2〉 1,000명당 20~66세 인구수(2022~2070)

(단위: 명)

| 연방주 | 2022 | 2030 | 2050 | 2070 |
|------------------------|--------|--------|--------|-------|
| Baden-Württemberg | 7,018 | 6,814 | 6,598 | 6,310 |
| Bayern | 8,387 | 8,180 | 7,964 | 7,648 |
| Berlin | 2,432 | 2,478 | 2,598 | 2,563 |
| Brandenburg | 1,521 | 1,449 | 1,353 | 1,256 |
| Bremen | 426 | 419 | 418 | 417 |
| Hamburg | 1,219 | 1,220 | 1,209 | 1,168 |
| Hessen | 3,962 | 3,848 | 3,692 | 3,568 |
| Mecklenburg-Vorpommern | 964 | 884 | 789 | 737 |
| Niedersachsen | 4,964 | 4,797 | 4,628 | 4,523 |
| Nordrhein-Westfalen | 11,165 | 10,651 | 10,120 | 9,579 |
| Rheinland-Pfalz | 2,555 | 2,434 | 2,341 | 2,240 |
| Saarland | 604 | 551 | 509 | 475 |
| Sachsen | 2,359 | 2,238 | 2,064 | 1,982 |
| Sachsen-Anhalt | 1,269 | 1,137 | 982 | 923 |
| Schleswig-Holstein | 1,791 | 1,743 | 1,641 | 1,548 |
| Thüringen | 1,244 | 1,125 | 980 | 932 |

주: 출산율(G2), 기대수명(L2), 순 이민(W2) 모두 중간가정으로 추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함.

출처: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Sechster Bericht zur Tragfähigkeit der öffentlichen Finanzen," Deutscher Bundestag, 2024.4.22.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12/2011235.pdf> p. 12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독일 인구전략의 배경과 전개

제1절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제2절 인구전략의 내용

제 2 장 독일 인구전략의 배경과 전개

제1절 독일 인구전략의 전개

1. 독일 인구정책의 역사

독일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국내외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인구 변화 측면에서 독일은 인구구조 전환의 마지막 단계, 즉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은 인구구조에서 1930년대 말에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출산율 저하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내내 사회의 높은 실업률이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노동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특히 젊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전후의 압박, 구조조정 제약, 세계 시장의 변화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에 젊은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혼, 출산을 자연스럽게 연기, 포기하게 되었다.³⁾

3)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WRV) 제119조부터 제121조에 가족생활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19조는 혼인 부부, 가족의 보존, 다자녀 가족 지원, 모성 보호 등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120조에는 자녀의 전인적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 및 권리와 국가의 감독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에 이미 법적으로 혼외 출생아에 대한 동등한 지원 의무가 규정(제121조)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당시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여성 대상으로 가계 운영 및 육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혼란 속에 1933년 권력을 장악한 국가사회당은 인구 문제를 사회 전반의 핵심 정치 이슈로 부각시켰다. 인종 위생 또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독일 ‘국민’의 인구학적 양과 질을 규제하려는 목표를 추구한 다양한 인구정책 조치가 계속 시행되었다(Bryant, 2011, p. 42). 우생학적,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요소와 나치 기구와 그 이데올로기에 관여한 대표적 학자 부르크도르퍼는 1932년 그의 저서 ‘청소년 없는 인구(Volk ohne Jugend)’를 처음 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저서에 나타난 인구정책의 원칙을 요약하면, “사람과 인종을 고려한” 인구정책은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를 결합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우생학적 인구정책”의 최소 목표는 “수와 종의 측면에서 인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Burgdörfer, 1935, p. 453). 1935년 저서에서는 독일 국민들이 “무자녀와 아동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남겨진 공간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생활 공간’은 “독일인의 출생과 독일인의 의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감소하는 출산율”과 “독일 민족의 고령화”를 “독일 국민의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한다(Burgdörfer, 1935, p. 434). 탈출구는 단 한 가지, 즉 “이전과는 달리 국가사회주의 정부가 부름을 받고 결단한” 용기 있고 신념에 찬 행동뿐이다(Burgdörfer, 1935, p. 491).

실제로 국가 사회주의 혁명은 미리 정해진 최적화 기준에 따라 사회 구조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대규모 시도인 “사회 공학의 거대한 프로젝트

(Gerlach, 2008). 참고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WRV) 제119조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 (1) 혼인 부부(Ehe)는 가족생활과 국가 보존 및 번영의 기초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2) 가족의 유지 및 건강성 회복, 사회적 지지는 국가와 공동체의 과제이다. 다자녀 가족은 필요에 따라 균형 있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3) 모성은 국가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Gerlach, 2008).

트”였다(Bauman, 1993, p. 81). 독일 나치 정권은 가족을 정권의 이데올로기 지지에 활용할 선전도구로 여기고 상징화하였으며, 정권의 인종 정책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착취하고 도구화하였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국가에서 ‘인종’의 중요성과 순수성 유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최고의 가치 있는 선으로 ‘아동’을 묘사하고 장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만이 자녀 출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나치 정권의 인종에 기반한 인구통제 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가족은 가치 있는 인구를 재생산하는 매개체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도구화되었다. 나치 정권은 국가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자녀를 많이 가진 어머니와 농민 가족을 이미지화하여 인구정책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하에 감행된 반인종주의적 정책은 이후에도 독일 ‘인구정책’을 새롭게 시작하기까지 중요한 걸림돌이 된 것은 분명하다.

또 한 번의 세계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독일의 인구정책도 전환기를 거쳤다. 분단된 동서독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 감소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동독 지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Sozialpolitik-aktuell.de, n.d.). 반면 서독 지역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본격화 한 바 없다. 서독의 (전) 연방 청소년, 가족 및 보건부와 (현) 연방 가족 및 노인부의 일부인 “가족 문제에 대한 과학 자문위원회”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연구 기관에서도 저출산과 인구 변화라는 주제를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법정 건강보험 및 연금 시스템의 적응 관점에서 다루었다(Schwarz, 1992).

가. 초기 인구 대응 전략 논의: 조사위원회(Enquête Commission)

1989년 공산주의의 몰락은 연금 보장 및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고 정치인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래를 다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켰다. 1992년 연방의회는 인구학적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Enquête-Kommission)를 출범시켰다(Deutscher Bundestag, n.d.). 16명의 국회의원과 10명의 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개인과 정치인이 직면한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분석과 정치적 권고안을 개발할 책임이 있었다. 전문가 자문가위원회는 1년 후인 1993년, 2030년까지의 인구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라는 분석범위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995년 다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민 관련 과제를 포함해서 다룰 것, 신-구 연방주의 인구 변화의 차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특히 장기요양보험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주문받았다(Deutscher Bundestag, n.d.). 국회의 요청을 수용한 추가작업 끝에 1999년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02년 3월 28일 발간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독일의 연구 현황(A), 세대관계(B), 노동과 경제(C), 이민과 통합(D), 노후보장 건강, 수발, 사회서비스(E), 인구학적 변화 관점(F)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대중의 정치적 반응을 거의 얻지 못했다. 이후 다른 8개 연방주의 각 주 의회가 조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각 주와 관련된 인구 변화의 영향과 기회를 조사하고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보고서 역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보고서 발표 이후 연방정부 외에 인구 변화와 관련된 변화를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형성하기 위한 인구전략을 제시한 연방주는 니더작센주 한 곳뿐이고, 부처 이름에 ‘인구’가 포함된 부처가 있는 연방주는 라인란트팔츠주밖에 없다(Kösters, n.d.).

2. 인구전략의 전개

가. 인구보고서 발간

2009년 11월 메스베르크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연방정부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발표했다. 이 결정은 2010년 3월에 시행되었고, 연방 내무부는 내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무장관 위원회를 소집했다(Deutscher Bundestag, 2017). 2010년 3월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 사회 통합, 이주 및 통합, 공공 재정, 경제 성과, 노동시장 및 고용, 사회보장 시스템, 농촌 지역, 사회 및 기술 인프라 등의 주제를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 주제 목록을 조정할 권리를 가진다(Deutscher Bundestag, 2012). 위원회는 2011년까지 인구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를 발표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2012년까지 범부처적 “연방정부의 인구전략” 작성을 위임받았다. 인구 변화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연방 부처 장관급, 연방 총리실 대표 및 연방정부 이민, 난민 및 통합 위원으로 구성된다(Deutscher Bundestag, 2010). 이외에도 2010년 12월 6일 연방정부는 연방경제기술부를 통해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에 인구통계와 성장 잠재력, 특히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의뢰했다(제목: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Sachverständigenrat, 2011, p. 1; Mayer, 2012). 개별 부서들도 각자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디지털 인프라 부(현재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 부)는 2001년부터 ‘인구학적 변화와 그 영향, 인프라 구성과 공간배치에 관한 문제’ 등을 다뤘다.

연방정부는 2011년 10월 26일에 발표된 인구보고서(연방정부의 인구 상황과 미래 발전에 관한 보고서, 연방의회 인쇄물 17/7699)에서 독일의 인구학적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발표했다. 분석은 다양한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통계 결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보고서는 연방통계청의 ‘12차 조정 인구 전망’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60년까지의 인구 발전 추이를 제공했다. 2012년 4월 25일에 채택된 연방정부의 인구전략은 인구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12.6.4).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의 ‘전망’ 섹션에는 “연방정부는 인구 보고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구전략이 독일의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개발과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구전략의 틀 내에서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 형태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나아가 인구학적 변화와 조직화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인구정책이 “장기적인 설계 과제”임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1.11.7, p. 242). 특히 주목할 점은 보고서에서 “인구 변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 과제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모든 부처에 걸쳐 (...) 인구 전략으로 인구정책 활동을 조정할 것이다”(Mayer, 2012)라고 언급하며 인구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인구전략은 막을 수 없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향후 연령대 분포의 변화를 노동시장, 연금, 건강, 의료 또는 사회정책의 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BMFSFJ, 2013).

나. 인구전략 수립

인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방 내무부 장관의 주도하에 범부처 인구전략이 개발되었다. 당시 연방 내무부장관은 인구전략안 논의를 시작하면서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Demografie Portal, n.d.e).

-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장수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노력의 중심 목표이다.
- 독일의 성장 전망과 번영은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이는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전반적으로 인구전략은 국가와 사회의 실행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50페이지가 넘는 인구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연장된 수명에 따른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 목표는 인구전략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인구정책의 다양한 행동 분야를 정의했다. 행동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전략에서 전제하는 바는, 인구 변화가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생활의 각 영역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략의 실천 분야는 노동시장, 가족 및 파트너십, 독일 지역 내 생활 조건의 평등, 사회 보장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Deutscher Bundestag, 2024.5.10, pp. 53-54). 전략의 실천 분야는 아래와 같다(Demografie Portal, n.d.e).

- 공동체로서의 가족 강화
- 동기를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건강하게 일하기
- 노년기의 자기 결정적인 삶
-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인 도시 정책 추진
-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반 확보
- 국가의 실행력 유지

인구전략은 이러한 행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했다. 이 전략은 연방정부의 조치를 넘어 연방 주 및 지방 당국, 협회, 사회적 파트너 및 기타 시민사회 참여자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안을 포함하며,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Demografie Portal, n.d.e).

〈표 2-1-1〉 인구전략 전개 과정

| 연도 | 내용 |
|------|---|
| 1992 | - 전문가 자문위원회 '인구학적 변화-개인과 정치에의 도전으로서의 고령화 사회' 출범 |
| 2009 | - 인구전략수립 위임(2009.11) |
| 2011 | - 인구학적 변화와 중장기적 결과에 대한 인구보고서(Demografiebericht) 발간: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전단계로 작업함 |
| 2012 | - 1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2. 10. 4.):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Jedes Alter zählt)'는 슬로건의 인구전략 발표 - 9개의 실무분과 출범 |
| 2013 | - 2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3. 5. 14.): 인구정상회의에서 분과별 인구전략안 제시 |

| 연도 | 내용 |
|--------|--|
| 2015 | - 연방정부 내각 결의에서 인구전략발전안의 기본 방향과 절차 결정(2015. 1. 14.) - 인구전략의회(Strategiekongress Demografie) 개최(2015. 9. 22.): 인구전략안의 발전된 안 제시. 인구전략의 제목을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로 정함 |
| 2017 | - 3차 인구정상회의의 개최(2017. 3. 16.): 지금까지 작업 결과의 향후 협동을 위한 목표를 소개하고 토론함 |
| 2018 ~ | - 인구전략의 실천 |

- 출처: 1) (원자료) "Schritte zur Demografiestrategie," Demografie Portal, n.d.e.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schritte-zur-demografiestrategie.html/>
- 2) (원자료) "Demografiegipfel und Strategiekongresse," Demografie Portal, (n.d.f),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ialogprozess/Gipfel-Kongresse/Demografiegipfel-Strategiekongresse.html> 내용에서 재구성
- 3) (재인용) "독일의 인구전략과 가족정책," 주보혜, 2024,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저출생 대응방향(자료집),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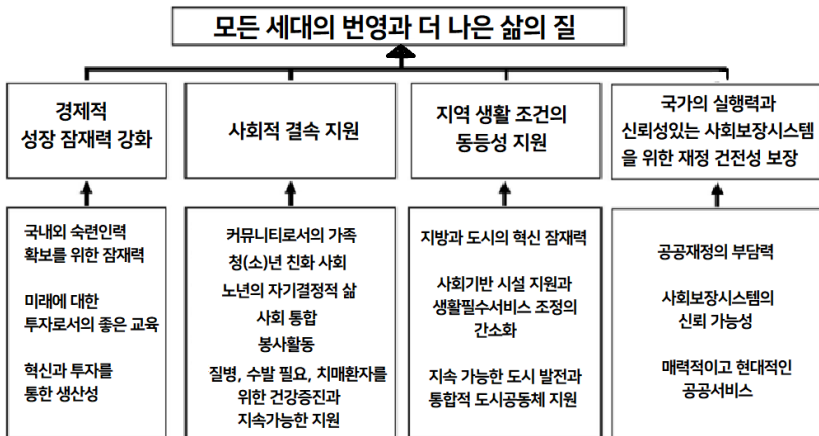
인구전략 수립을 위해 연방정부는 2012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의 '인구정상회의'라는 공식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2년 인구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라는 인구전략의 슬로건과 그간 인구보고서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인구전략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와 함께 논의의 심화를 위한 9개의 실무분과를 출범시켰다. 다음 해인 2013년 개최된 2차 인구정상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에 진행된 분과별 인구전략안이 제시되었다. 2015년에는 연방정부의 내각 결의에서 인구전략발전안의 기본방향과 절차가 결정되었다. 인구전략은 이제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2017년 마지막 인구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실무분과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인구전략 개발을 위한 대장정을 마무리지었다.

다. 인구전략 체계

연방정부의 인구정책은 독일 모든 세대의 번영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인구 전략의 목표를 살펴보면,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며, 사회적 결속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르게 영향을 받는 농촌과 도시 지역에서 동등한 생활 조건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통해 공공재정의 부담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한다(Die Bundesregierung, n.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분야 또한 조정을 거쳐 아래의 15개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그림 2-1-1] 인구전략 체계도



출처: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Demografie Portal, n.d.g.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emografiestrategie.html>

첫째, 연방정부의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성장을 안정시키고 독일의 번영을 더욱 증대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교육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핵심 출발점이다. 사회 전체를 위한 이 과제는 학교교육, 직업 훈련, 평생교육 등 국내외 모든 숙련 노동 잠재력의 활성화와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다. 나아가 혁신과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존과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도전 과제이다. 연방정부는 모든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가족 및 청소년 정책, 노인 정책, 보건 및 의료 정책, 자원봉사 정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셋째, 분산된 정주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은 독일 사회가 가진 특징이나 최근에는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역, 경제, 교통 및 인프라, 환경 및 공간 계획 정책, 농촌 및 도시 개발 정책, 주택 정책에서 노동시장, 교육, 건강 및 가족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정책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미래 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은퇴 연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재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제2절 인구전략의 내용

1. 인구전략 실무분과 활동

가. 실무분과 개요

인구전략의 실무분과 모임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정부는 기존 협력 구조와 중복 없이 협력 구조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주제 영역에서 실무분과를 구성하였다(Demografie Portal, n.d.h). 실무분과의 활동은 2012년 10월 4일에 열린 첫 번째 인구정상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인구전략의 다양한 실행 분야에 대한 9개의 실무분과가 결성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연방정부는 연방 내무부의 조정하에 분과별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2013년부터는 10번째 실무분과인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을 추가하면서 인구전략에서 젊은 세대의 관점을 강화했다. 2014년 4월 4일에 열린 회의에서 국무장관 산하 인구위원회는 실무분과의 추가 발전 계획, 주요 업무 분야 및 참여 파트너를 결정했다(실무분과 구성: 가족, 청(소)년, 근로, 노인생활, 치매, 지역, 숙련인력, 외국인 인력, 교육, 공공 서비스)(Deutscher Bundestag, 2014.4.15).

실무분과는 분과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연방부처 장관이 의장을, 연방 주, 지자체, 기업, 노동조합, 협회 등의 대표자가 부의장을 맡는다. 각 분과별로 개발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BMI, 2012, p. 51).

〈표 2-2-1〉 실무분과 개발과제

| 분과명 | 개발 과제 |
|---|---|
|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일·가정 양립 - 돌봄, 육아 및 교육, 수발 - 가정 생활 운영 - 가족의 삶의 질 |
|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전략에 젊은 층과 미래 세대의 관심사를 포함 - 젊은이들이 인구학적 변화를 주도하도록 장려 - 재정 지원 여력을 파악하고 활용 - 세대 간 결속력 강화 |
| 동기 부여, 자격, 건강이 있는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건강/예방 및 유병 직원에 대한 대처 - 기업 인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회의소, 사회보험 기관 및 사회적 파트너가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상담을 도입 · 연령과 연령에 맞는 업무 조직을 구성하여 공통의 이해와 행동 옵션을 개발 |
| 노년기의 자기결정적 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지역 인프라: 상담, 세대 간 만남, 자원 봉사, 가사 관련 서비스 - 연령에 맞는 리모델링, 기술 지원 및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 환경 제공 - 건강한 노화 - 노년기의 예방 및 건강 증진 - 지역 차원에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 간병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 환경, 이해관계자 간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네트워크, 시민 참여 -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지역 시민 사회 |
| 치매환자를 위한 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협약 체결. 실행은 조직 파트너들이 각자의 책임 영역에서 수행하며 실무분과에서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 - 연방 가족 및 시민사회기능부(BAFzA)의 치매 사무소는 의제 이행을 지원함 |
|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필수서비스 - 지역 경제 발전 - 표준 및 규범 - 지자체 간 협력 - 거주지역에서 통합 -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적응 |
| 숙련노동 인력 기반 확보를 위한 모든 잠재력 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자의 노동시장 통합과 직업 자격이 없는 청년의 자격 취득을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

5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분과명 | 개발 과제 |
|------------------------------|---|
|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모집 - 기업, 행정기관, 사회에서 환영하는 문화 강화 -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영향 분석' 용역 연구 결과 이행 |
| 교육 이력 지원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상담 서비스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의 공식화 및 교육 상담 행위자와 그들의 협력을 제시하는 주제 분야를 통해 개별 교육 및 고용 이력에 맞춘 교육, 직업 및 고용 상담 수립 - 이전 활동 분야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좋은 출발 기회' 및 '직업 및 고등교육의 연계 증진'에서 결정된 활동 유지 |
|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일자리로서의 공공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요구 사항 분석 방법론의 핵심 사항에 대한 공동 권장 사항 개발 - 장기근로시간계좌제(Langzeitkonto)의 질적 제고(다른 부서 개방, 초과근무 적립 가능성 확대, 활용 단계의 유연성 강화) - '파트타임 관리'를 위한 권고안 개발 - 연방정부의 체계적 직업 보건 관리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공공 고용주의 공동 홍보 업무에 대한 조치 권장 사항 - 상호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정 문화의 확산 |

출처: 1) "Umsetzung des Koalitionsvertrages durch die Bundesregierung im Bereich der Demografiepolitik," Deutscher Bundestag, (2014.4.15.), Drucksache 18/1170.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11/1801170.pdf>; "Arbeitsgruppenergebnisse zum Demografie Gipfel am 16. März 2017,"

2) "Jedes Alter zählt,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BMI, (2017),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37854/d54ed3c30bef003b10abb00df394ae4b/demografiestrategie-der-bundesregierung-data.pdf> 에서 재구성

나. 주요 분과 활동 내용

아래에서는 주요 분과로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을 제시한다.

1)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⁴⁾

“공동체로서의 가족 강화”라는 분과명으로 출범했던 가족분과는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새로운 분과명에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분과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분과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일과 삶의 균형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행동 분야에 합의했는데, 이는 업무 문화(시간), 인프라 문화이다. 특히 ‘일하는 문화(시간)’ 활동 분야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아버지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정규 보육서비스 시간 외 서비스 제공이나 또는 추가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동반 대화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시간) 문화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교대 근무,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일반적인 산업 및 부문 대표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옵션, 현대적이고 가족을 배려하는 인사 정책과 함께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무분과의 결과물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육아시간 연장에 대한 일과 기업 및 보육계의 우수 사례를 실용적이고 사용자 지향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일하는 문화(시간)’ 실천 분야에서 실무분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업종, 지역, 회사 규모, 근무 시간 등 실질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활동 분야 ‘인프라 문화’에서는 육아 시간을 연장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성을 향상하는 우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을 특징지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체계화하기 위해 주요 기준에 합의했다.

4) BMI(2017)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⁵⁾

실무분과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은 2014년 10월 30일 인구전략 실무분과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성되었다. 이 실무분과는 2년간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인구정책을 위한 행동 권고안을 개발했다.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농촌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실무분과의 목적은 연방 정부의 인구정책에 다양한 청(소)년 대표를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 연방 청(소)년 위원회의 두 가지 참여 프로젝트 ‘내가 정치를 한다(Ich mache)Politik|Demografie’와 독일 연방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 인구학 대담’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내가 정치를 한다(Ich mache)Politik|Demografie’에서는 독일 전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온라인 참여 도구인 ePartool을 통해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요구 사항을 제출했고, 참가자들은 그룹 세션, 청소년 캠프, 바캠프, 워크숍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BMFSFJ, 2018). 청(소)년 인구학 대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의 농촌 모델 지구에서 진행되었다. 대담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 형식이 개발되었으며, 10명에서 100명 사이의 그룹으로 학교와 청소년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예를 들면, 실무분과는 2015년 11월 19일과 20일에 튀링겐주의 키프하우저크라이스 지역을 방문했다. 지역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조치를 발표하고, 지역의 젊은이와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담에서는 농촌 지역 젊은 세대의 직업 전망, 공공 부문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련된 과제가 확인되었다(dbb

5) BMFSFJ(2018)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beamtenbund und tarifunion, 2015.11.20).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의뢰로 독일청소년연구소가 수행한 프로젝트 “청소년 들여다보기-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발전” 또한 인구전략 행동 권고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구학적 변화의 조건하에서 젊은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며, 8개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 청소년,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정책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젊은 세대의 태도, 요구, 관심사, 미래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실무분과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4개 모델 지역과 베를린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열어 해당 지역 젊은 세대의 참여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들과 토론하며 연방정부의 인구전략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분과는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성이 높은 농촌 지역의 주요 정책 분야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결속력: 가족 및 세대 간 대화 촉진
- 구조: 생활필수서비스 및 청(소)년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 접근성: 이동성, 광대역 인터넷 및 휴대폰 네트워크 확장
- 청(소)년 이미지: 청(소)년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인식하도록 장려
- 참여: 청(소)년의 참여 지원
- 교육: 기술을 전수하고 기회 제공

3)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실무분과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의 주된 업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는 데 있었다(Demografie Portal, n.d.i). 이는 인구학적 변화에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생활필수서비스(Daseinvorsorge)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력(Wirtschaftskraft)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실무분과는 2013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지역을 정의하기 위해 표준화된 과학적 기준을 갖춘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2차 인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경제 및 정주 구조의 주요 구조와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이민인구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구의 수와 구조, 이주 및 독일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Demografie Portal, n.d.i). 이 정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개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2015년 인구전략의회가 개최된 이후 이 실무분과는 법적 규제 및 자금 지원 지침의 인구학적 적합성, 도심 개발, 시민참여, 이민의 지역적 중요성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Demografie Portal, n.d.j). 인구학적 점검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인구 변화의 차별화된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외에도 ‘표준화된 테스트 법률’, 법률의 시험 및 혁신조항의 ‘창의적 탐색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 계획된 법률이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 영향력, 실행 가능성 및 이해도를 조기에 검토하는 ‘시뮬레이션’ 등이 논의되었다.

도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방 당국과 민간 간 도심 개발에 대한 계약 수

단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안, 자금조달 옵션, 공공 공간과 건물에 대한 투자 및 지속 가능하며 다기능적 사용,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한 권고안은 2015년 9월 열린 인구전략의회에서 세 가지 영역(의용소방대 강화, 외국인 자원봉사 참여 지원과 외국인 단체 지원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이민이 인프라, 공공 서비스, 주택 공급, 지역 경제 발전 및 숙련된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 실무분과는 이민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각 경제구조적 조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지방이 향후 이민이 제공하는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는 구조적인 정책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 이민 및 통합 전략 개발, 특히 가족을 위한 거주지 및 일터로서 지역의 매력을 강조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4) 외국의 잠재적 노동인력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

이 실무분과의 목표는 독일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BMI, 2017).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 숙련 근로자를 위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다. 전문 자격인정에 관한 주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실무분과는 중소기업의 국제 숙련 인력 유치 및 통합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한편, 이 실무분과의 초점은 숙련된 노동력의 통제된 이민에 맞춰져 있으며, 동시에 독일에서 숙련된 노동자로 인정받은 난민들을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노동인력으로 보았다. 이 그룹을 교육 및 취

업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별 조치도 설명되어 있다(BMI, 2017).

이 실무분과는 이미 해외에서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는 독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 제작을 포함하여 국외 숙련 노동자 채용, 유치 및 통합이라는 주제 영역에서 확인된 여러 조치에 착수했다. 기업, 행정 및 국제 숙련 근로자를 평가하여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영향 분석’을 의뢰했고,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의 ‘www.Make-it-in-Germany.com’ 환영 포털의 추가 개발과 인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의 시범 프로젝트.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숙련 노동자 채용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 및 연수생의 성공적인 채용과 통합을 위한 고용주를 위한 온라인 실무 팁을 개발했다. 확인된 해결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실무분과는 2차 인구정상회의 이후 구조와 내용을 통합하고 2013년 11월에 추가 개발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Deutscher Bundestag, 2014. 4.15.).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자격을 갖춘 숙련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실행을 위한 권장 사항을 도출하였다.

한편, 실무분과는 국제 숙련 근로자를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잘 맞는 채용(Pass genaue Besetzung)’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연결하여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독일 고등교육진흥원(DAAD)은 독일총장회의(HRK)와 함께 독일 내 젊은 국제 학자들의 통합과 동기 부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표 2-2-2) 분과별 정책안

| 분과 | 주요 논의 내용과 결과 |
|-------------------------------------|---|
| 강한 가족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가족과 직장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행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문화(시간) - 업무 시간과 관련된 문화를 개선하여, 특히 중소기업 및 아버지의 참여 강조 · 인프라의 문화 - 양질의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 실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공 · 확장된 보육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활용 · 소규모 및 중소기업에서의 가족 친화적 정책 개발 및 적용 |
|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농촌 지역에서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유입, 유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 개선 - 논의 중점 사항: 기본적인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의 구조, 교육 및 직업 접근성, 이동성 및 참여 기회, 사회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여가 활동의 기회 등 - 청(소)년과의 대화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Jugend-Demografie-Dialog' (청(소)년 인구 대화), 'Ich mache Politik Demografie' (나는 정치를 한다 인구)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함 - 청(소)년이 농촌 지역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핵심 행동 분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세대 간 대화 증진 · 접근성 향상(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 교육 및 직업 기회 확대 · 청(소)년 참여 및 참여 증진 ·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등 |
| 인구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강화 - 도시와 지방의 삶의 질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독일의 모든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규정 및 지원 지침의 인구학적 적합성: 법적 규정과 지원 지침이 인구학적 변화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점검: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이 인구학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초기 단계부터 평가 · 유연성 확보: 기존 법률과 기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실험 및 혁신 조항: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을 시험하기 위한 법적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 · 시뮬레이션: 새로운 법안이 실제 어떻게 작용할지 테스트함 - 도시 개발 및 문화적 삶: 도심과 마을 중심지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특히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의 빈 건물 문제를 해결 |

| 분과 | 주요 논의 내용과 결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개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통합된 도시 또는 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 · 개발 기금: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해 건물 매입, 평가, 부분 수리 등 지원 · 세대 간 주거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 · 소매업 지원: 도심과 마을 중심지의 소매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간 협력: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와 시설을 유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 자원봉사 참여: 의용소방대, 이민자 참여, 참여 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이민: 이주가 지역 사회의 인프라, 공공 서비스, 주택 공급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
| <p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의 집재적 노동인력 에 대한 개방과 환영문화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독일을 국제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 - 중점 사항: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자격 인정, 행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인력 유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 등 - 정보제공 및 지원: 온라인 플랫폼 Make it in Germany, Anerkennung in Deutschland 등 운영 -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Arbeiten und Leben in Deutschland 핫라인은 구직, 직업, 자격 인정, 입국 및 체류, 독일어 학습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 ProRecognition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자격 인정에 대한 상담 제공 - 기업지원: 중소기업(KMU)이 국제적 인재를 고용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술 및 연구 인력 유치: 독일 고등교육진흥원(DAAD)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의 독일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음 |

출처: "Arbeitsgruppenergebnisse zum Demografiegipfel am 16. März 2017," BMI, (2017), Jedes Alter zählt,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37854/d54ed3c30bef003b10abb00df394ae4b/demografiestrategie-der-bundesregierung-data.pdf> 에서 재구성

2. 인구학적 점검(Demografie-check)

2014년 4월 말, 연방정부의 인구학적 점검(Demografie-Check)이 도입되었다. 인구학적 점검은 제안된 법안과 조례가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Deutscher Bundestag, 2017.2.1, p. 2).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고려는 이미 연방정부 공동절차규칙(Gemeinsamen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 4

3조 1항 5호 및 44조 1항에 따라 모든 제안된 법률 및 조례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입법 영향 평가의 일부이며, 그 결과는 법률 설명 메모의 일반 섹션에 제시되어야 한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인구학적 점검의 목적은 법안이 인구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제안된 모든 연방 법률 및 조례에 적용된다(Demografie Portal, n.d.k).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 조치를 통해 관련 부서에서는 초안을 준비하는 기간과 이후 의회 절차에서 인구학적 시각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연방 부처 공동절차규칙(GGO)에 따르면, 연방 내무부는 법안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방 내무부는 2009년 5월 각 부처 담당자의 법률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자 입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 지원 자료를 발표했었다. 인구학적 점검(Demografie-check)은 이 실무 지원 자료를 보완한 것으로, 인구적 변화의 결과와 위험에 관한 24개의 확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Demografie Portal, n.d.k). 연방 내무부는 인구학적 영향에 평가가 모든 입법 및 규제 제안에 대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월 29일자 국무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지적했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인구학적 점검은 각 부문별 인구정책 목표 및 그 운영과의 비교를 통해 필요한 실질적, 정치적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구학적 점검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BMI, 2017).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구학적 점검 문항은 아래와 같다.

6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표 2-2-3〉 인구학적 결과 및 위험에 관한 질문

| 질문 | 담당 부서 |
|---|--|
| 이 프로젝트가 향후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내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 이 프로젝트가 향후 이민 및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내무부 |
| 이 프로젝트가 향후 인구의 연령 구조(젊은이 대 고령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내무부 |
| 이 프로젝트가 향후 인구의 지역 분포(예: 도심 증가, 농촌 지역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내무부, 연방식품농업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
| 인구의 수와 연령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는가? | 연방내무부 |
| 전체 인구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증가로 인한 예상 변화를 고려하는가? | 연방내무부 |
| 이 프로그램이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예: 세금 또는 기부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가? | 연방재무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보건부 |
|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행동의 변화 또는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연방식품농업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
| 프로젝트가 세대 간 공존과 상호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내무부 |
| 프로젝트가 시민 참여(예: 자원 봉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내무부 |
| 프로그램이 이민자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내무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 프로그램이 독일 내 아동 및 가족 친화성(가족 친화 주택, 가족 친화 인프라, 보육 시설, 여가 활동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환경건설부 |
| 이 프로젝트가 가족과 일의 양립성(예: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보호자를 위한 근무 시간의 유연성, 파트너 간의 유급 업무 또는 돌봄 업무 분담, 육아 및 간병)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노동사회부 |
| 이 프로젝트가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교육 및 훈련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교육연구부 |
| 이 프로젝트가 생애 과정에서 자격 및 추가 훈련을 위한 인구 그룹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노동사회부 |
| 프로젝트가 더 오래 일하는 문화(예: 유연한 근무 생활 조직, 연령 제한 관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연방노동사회부 |

| 질문 | 담당 부서 |
|--|---|
| 프로젝트가 연령에 적합한 근무 환경 및 연령에 적합한 업무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연방노동사회부 |
| 프로젝트가 직장/기업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보건부, 연방노동사회부 |
| 프로젝트가 숙련 노동력 기반 확보(예: 잠재 노동력의 개발, 고급 노동자의 유입 및 유출, 조기 은퇴로의 전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참여, 이주민의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노동사회부,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
| 이 프로젝트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보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 이 프로젝트가 익숙한 환경에서의 자기 결정적 생활과 노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 프로젝트가 수발자의 상황 또는 돌봄 잠재력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보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 이 프로젝트가 거주지와 가깝고 접근이 쉬운(barrierearm) 생활필수서비스 및 시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식품농업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
| 이 프로젝트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연방식품농업부, BM |

출처: "Fragenkatalog," Demografie Portal, n.d.l. https://www.demografie-portal.de/DE/Service/Blog/Downloads/042014_Prueffragen_DemografieCheck.pdf?__blob=publicationFile&v=1

모든 세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위 문항은 예를 들어 제안된 법률 초안이 젊은 층과 노년층의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령에 적합한 근무 환경, 일 가정 양립,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교육 및 훈련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Demografie Portal, n.d.k). 또한 특히 인구학적 영향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인구 이동, 지역 생활필수서비스 확보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공간적 관점을 강화하였다(BMI, 2017, Demografie Portal, n.d.j).

이외에도 인구학적 점검은 관련 전문 부서와 전문 지식에 대한 참조도 포함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이 측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관련 부서 간에 가능한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논의해야 하며, 이 결과는 법안 초안에 대한 설명 메모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의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투표할 때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Demografie Portal, n.d.k).

인구학적 점검은 연방주와 지방 당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주 법률과 조례에 인구 조사를 도입하고 테스트 기준도 개발하여 인구학적 점검이 입법 절차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 지방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포츠담의 주도에서는 2008년부터 인구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결의안, 법령 및 문서에 인구학적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다(Demografie Portal, n.d.k).

인구학적 점검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법안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없는 논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구학적 점검 결과, 인구학적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판단되더라도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은 없다. 대신 법안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Gründinger, 2014). 인구학적 체크 이외에도 독일에는 제시된 법률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여러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는 ‘지속 가능성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각 부처가 법률 초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점검(Jugend-Check)’과 ‘새로운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되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Gründinger, 2014).

3. 소결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인구전략은 인구학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구 변화에 대한 운명론적 접근을 경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인구전략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되었다. 1992년에 착수한 ‘인구보고서’ 작업을 거쳐 2012년에 전략 개발과 의견수렴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중장기적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접근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끝에 합의된 바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 구조를 통해 전략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인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제별로 분류된 실무분과 논의 과정을 운영하고, 실무분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족분과 논의 과정을 예로 들면, 가족분과의 주요 목표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강화하고 가족이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논의 과정을 거쳐 육아는 물론 가족 돌봄과 가족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인구전략 개발 과정은 이후 독일 인구정책 전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가족, 노동, 사회보험 등 여러 사회정책 영역을 인구정책이라는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인구학적 점검 등과 같이 법안이 인구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절차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전략 개발 과정에서 활용한 ‘사회적 대화’ 방식은 이후 법안 논의에서 의견수렴 방식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독일 인구정책

제1절 가족정책

제2절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정책

제3절 이민자 국가로의 전환과 인구정책

제 3 장 독일 인구정책

제1절 가족정책

1. 독일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

가. 독일 보수주의 가족정책

1) 독일 분단 시절 가족정책

나치정권에 의해 도구화되어 악용된 인구정책으로 인해 이후 독일 사회에서 인구학적 접근은 상당히 오랜 기간 터부시되었다(Gerlach, 2008, pp. 37-42). 특히 서독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 규모, 인구의 질 및 구성 등에 대해 언급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 것이다(Gerlach, 2008; Schultz, 2013). 한편, 나치 정권으로 인해 인구의 질이나 구성에 대한 정책적 언급은 터부시되었으나,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족 유지 및 아동빈곤 해소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1949년에 독일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6조에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독일 현대 가족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명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혼인 및 가족의 해체 방지와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역할에 대한 규정에 가깝다(Gerlach, 2010; Bertram

& Bujard, 2012).

특히, 서독은 가톨릭 교리에 근거하여 가족이 스스로 자기 책임과 자립성을 바탕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우선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스스로 보장하지 못할 때 공공이 가족 유지 및 보호를 위해 개입하고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의 기틀을 구축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Bujard, 2012; Salles, 2020). 또한 서독의 가족정책은 보충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남성은 생계 부양자, 여성은 가사 및 돌봄이라는 성역할 분리를 전제로 한 가족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Esping-Andersen, 1990; Pfau-Effinger, 2005).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에 기반한 가족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책화하였다. 동독에서는 1950년에 통과된 모성 및 아동보호와 여성 권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Mutter- und Kinderschutz und die Rechte der Frau, MKSchG)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 보장과 일 가정 양립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다자녀를 둔 여성 지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설립, 산모시설 및 기타 지원 시설 설립을 규정하였다(Gerlach, 2008).

2) 독일 가족정책의 원리와 현금 중심 가족정책

독일의 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부담경감(Familienlastenausgleich, FLA)’ 원리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가족부담경감이란 가족의 필요 충족과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가족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특정한 부담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BMFSFJ, 2006, p. 56). 가족부담경감에는 무자녀와 유자녀 간에 생활 여건의 차이를 완화하는 모든 국가 지원이 포함된다. 독일 사회법 제1권(SGB I) 6

조에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부양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의의 개념에서 가족부담경감은 아동수당, 세액공제, 양육수당 등 직접적 지원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서는 사회보험, 주거지원, 교육 체계, 인프라 정책 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족 지원 제도가 포함된다(Gerlach, 2010, pp. 257-258).

독일 가족정책에서 사용되는 ‘가족기여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은 가족부담경감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가족기여보상은 가족이 사회에 제공하지만 시장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BMFSFJ, 2006, p.56). 가족기여보상은 돌봄, 양육, 훈련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소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아동수당과 소득 공제(자녀세액공제) 형태이다(BMF Amtliches Lohnsteuer-Handbuch, n.d.).

경제적 가족부담 완화 기능과 가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개념은 독일 가족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의 가족정책이 직접적 수당 지원이나 세제 지원 측면에서 발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독일 가족정책은 성역할 분리 및 전통적인 가족상 가치를 바탕으로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족의 가족구성원 돌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을 통해 가족부담경감을 실현하고 가족이 돌봄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하였다. 또한 출산 이후 부모에게 고용이 보장된 육아 시간을 확보해주는 시간정책도 발달되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돌봄 역할을 떠맡게 된 여성은 이중고를 경험하고 경제활동과 돌봄 간에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Gerlach, 2010; Lepperhoff,

2014; 박은정, 2019a에서 재인용).

나. 독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등장 배경

독일은 197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돌봄 인프라와 시간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현금을 통한 지원에 집중된 독일 가족정책의 한계와 개혁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일은 이미 1972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 감소는 사회 필수 인력의 부족 등 사회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및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나치 정권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터부시되었던 인구정책에 대한 반감의 벽을 허물었다(Gerlach, 2010; Lepperhoff, 2014).

독일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자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사회보험은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정책 시스템의 성격이 강했다. 카우프만(Kaufmann)은 독일의 성역할에 기반한 사회체계를 '젠더 계약(Geschlechtervertrag)'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Kaufmann, 1995).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일 가정 양립 지원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도 가족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Lepperhoff, 2014).

독일 연방정부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국가 지속 가능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가 지속 가능 발전전략과 함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추진되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사회적 분배정책(Ausgleichspolitik)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독일이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아동이 더 나은 지원을 받고 어머니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독일이 가족 및 아동 빈곤의 위험이 높고 아버지의 가족 참여가 더 낮았다(BMFSFJ, 2019a, pp. 7-9).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경제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근거 기반 연구 결과들도 연이어 발표되었다. 경제적 조건과 인구학적 조건 간에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들은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켰다(Rürup & Gruescu, 2003; BMFSFJ, 2019a).

2) 일가족 양립을 위한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

기존의 가족정책으로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등 사회 및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진단과 위기의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0년대 초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숙련인력 자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출산을 제고와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Rürup & Gruescu, 2003; BMFSFJ, 2019a).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독일 정부의 가족정책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부모의 성 평등한 역할 분담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이 정책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은 여성과 동일한 양육자로서 자녀돌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BMFSFJ, 2006).

독일 연방 가족부에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발간하는 보고서 중 2006년에 발표된 제 7차 가족보고서(Familienbericht)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발표된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은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 모델(Altersintegriertes Lebenslaufmodell)을 기반으로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연령별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 생애과정에 대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가족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일과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일과 가족의 삶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지원을 통해 유연한 생애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에서는 생애과정의 단계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생애의 과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BMFSFJ, 2006). 이러한 생애과정 관점은 가족정책에서 가족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시간 구조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독일의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에서는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시간정책과 돌봄서비스의 강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먼저, 시간정책에서는 가족 시간(Familienzeit)을 강조한다. 가족의 형성 및 재생산(출산), 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족 시간정책(Familienzeitpolitik)이 추진되었다. 특히, 독일의 시간정책에서 아버지가 자녀돌봄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포함되었다. 기존에 생계부양자 역할만 담당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상이 추구되었으며, 여성들이 일과 가족의 삶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이중부담과 시간 갈등을 남성이 분담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정책 변화에 반영되었다(BMFSFJ, 2012; Possinger, 2013). 특히, 일 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 논의에서 노르딕 국가, 스웨덴의 이중 생계부양자 모델이 차용되었다(BMFSFJ, 2006).

정책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문제점

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에 육아휴직법을 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제도명을 변경하였다. 일을 중단하는 기간을 휴가(Urlaub)로 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아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부모시간(Elternze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2006년에는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이 제정되고, 2007년에 소득대체율을 높인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부모시간(Elternzeit) 및 부모수당(Elterngeld) 개혁에서 아버지들이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파트너달 제도가 실시되었다. 즉, 아버지가 부모수당 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본 12개월에 2개월을 추가하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박은정, 2019a). 부모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아버지의 제도 사용을 촉진하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15년에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와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제도를 도입하였다(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 2022a).

한편,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아동돌봄의 양적, 질적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독일은 지속 가능 전략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아젠다 2010(Agenda 2010)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이에 아동 돌봄 인프라 확장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강조되었다(BMFSEJ, 2019a).

보육 인프라 확장은 2005년 제정된 주간돌봄확장법(Tagesbetreuun

gsausbaugesetz, TAG)의 시행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법은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8년 12월에 발효된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은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법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1~3세의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p.65; 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b, p.102에서 재인용).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 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투자가 이어졌다(BMFSFJ, n.d.a).

독일의 가족정책 개혁에서는 정부의 시간정책과 보육정책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 및 가족친화적 조치가 기업에 주는 이점도 중요한 논의 지점이었다.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2003년 ‘가족 동맹(Allianz für die Familie)’을 발족하였다. 가족동맹은 독일 기업, 노동조합, 주요 협회 대표 등이 함께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가족과 직장 생활의 더 나은 균형을 위한 증장기 공동 계획도 포함되었다(BMFSFJ, 2019a).

이와 함께 지역가족연대(Lokale Bündnisse für Familie)와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도 시작되었다. 지역가족연대는 지자체, 기업, 비영리 단체, 교육 및 돌봄기관, 사회복지 기관,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주체들이 협력하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요인 가족’은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상공회의소(DIHK)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독일의 기업 대표 협회, 노동조합,

사업 및 전문가협회 등 기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이다(Erfolgsfaktor Familie, n.d.).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을 추진하면서 현금 지원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2005년 현금급여 체계에 ‘아동수당 보조금(Kinderzuschlag)’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해 공공부조나 실업수당 II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개선,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표로 도입되었다(BMFSFJ, 2019a). 2013년에는 독일 연방정부에서 연방 양육수당(Betreuungsgeld)을 도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도 시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와 가정양육수당이 일 가정 양립이라는 가족정책 방향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2년만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일부 주정부에서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금 지원의 방향성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일 가정 양립 정책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박은정, 2019a).

다. 최근 이슈 및 변화

202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독일 가족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논의되었으며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본보장’의 정책화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추진과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돌봄 및 보육 서비스의 인프라 확장이 핵심 영역이었다. 최근에는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아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모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

해 적절한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아동수당과 아동수당 보조금(Kinderzuschlag)을 통합한 아동기본보장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오랜 역사를 지닌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독일 현금 지원 제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1) 아동 돌봄의 질 제고

2019년에 독일 어린이집(Kita)의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명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이 시행되었다. 각 주정부는 동법에 제시된 10개의 실천 분야에서 주 상황에 맞게 적용 분야를 선택한다. 이 조치에는 교사 양성,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환경 개선, 어린이집 이용료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총 4년간(2019~2022년) 약 55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였다(BMFSFJ, 2021).

2023년에는 좋은 어린이집법의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이 발효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3~2024년까지 2년 동안 총 40억 유로를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률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다. 어린이집 질 개선법은 이전 법에 비해 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사 대 학생 비율 개선, 교사 훈련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인 질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두 법 모두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주정부와 협력하여 시행된다. 좋은 어린이집 법이 초기에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시한 법이라면, 어린이집 질 개선법은 보다 질 높은 어린이집 교육 및 돌봄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BMFSFJ, n.d,c).

2)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독일에서는 아동 빈곤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독일 정부는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빈곤으로 인해 교육, 건강, 사회적 활동 등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기본보장 제도는 모든 아동이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MFSFJ, n.d.b).

아동기본보장은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 표준생계비,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교육 및 참여 패키지 등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한다(BMFSFJ, n.d.d). 아동기본보장은 기본적으로 아동보장급여(Kindergarantiebetrug)와 아동추가급여(Kinderzusatzbetrag)를 통해 아동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아동보장급여는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제도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추가급여 제도로 대체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BMFSFJ, n.d.b).

독일 정부는 아동기본보장 제도 개혁에서 비관료적, 시민 친화적 제도와 절차 간소화를 추구하여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 지원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가구에 비해 실제 수급을 하는 아동가구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급 자격이 있으나 신청을 하는 아동가구가 더 적은 것은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정보의 부족 등 낮은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MFSFJ, 2024a).

독일은 2025년 아동기본보장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아동수당 제도에서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방식을 폐지하였다. 2023년부터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250유로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이 상향되었다. 1996년 아동수당 개혁 이후에 첫째아, 둘째아 대상 아동수당 지급액 증액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BMFSFJ, 2024a, p.24).

2023년 이후 독일에서는 아동수당 제도 개혁과 함께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보조금과 교육 및 참여 패키지 지원이 인상되었다. 아동추가급여를 받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른 지원 패키지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BMFSFJ, n.d.d).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행정 절차도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데이터 수집도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및 잠재적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비 지원도 강화하였다. 일부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의료보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한부모 가구 대상 세금 공제액도 전년 대비 252유로 인상하였다(BMFSFJ, 2024a). 아동기본보장은 전달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가족 관련 재원을 관리해온 가족기금(Familienkasse)이 이후 가족 지원 전반을 관할하는 가족서비스원(Familienservice)으로 변경될 계획이다(BMFSFJ, n.d.d).

최근 아동기본보장 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된 변화를 종합하여 보면, 독일 정부는 기존 아동가구 대상 현금 지원 제도의 개혁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가족정책에서 벗어

나,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확장하는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금지원을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동기본보장 제도를 통해 독일의 모든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일 가정 양립 정책과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고 볼 수 있다.

2. 수당제도

가. 아동수당(Kindergeld)

1)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 과정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아동 빈곤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구동독에서 1950년에 넷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서독에서는 1954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독이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나, 현재 독일의 아동수당 제도는 서독의 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수당의 시작은 1954년 서독 아동수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서독의 초기 아동수당은 사회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급여 형태였으며,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었다. 1964년에 조세를 기반으로 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도 서독의 아동수당 제도는 여러 번 변모하였다(Böhmer, Matuschke, & Zweers, 2008; Gerlach, 2010).

독일의 아동수당 제도는 자녀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조세지원의 성격에서 같이 논의되어 왔다. 두 제도는 정부 정책 방향성의 변화와 함께 여러 번의 개혁을 거쳤다. 195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아동수당 수급권자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1961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둘째 자녀까지 확대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다. 1975년에는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첫째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과 자민당(Freie Demokraten, FDP) 연합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3년 기민련(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이중 체계가 다시 부활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다시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가아동수당 제도도 도입되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Rainer et. al., 2013).

1996년 개혁을 통해 현재의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시스템의 틀이 완성되었다.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통해 아동수당의 아동 생계 보장 목적이 강화되었으며, 지급액과 자녀세액공제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다(Gerlach, 2010; Becker & Hauser, 2012; Reiner et. al., 2013). 1996년 이전에는 아동수당이 70마르크에 불과했으나, 이후 둘째 자녀까지는 월 200마르크, 셋째 자녀부터는 300마르크로 증가했다. 1999년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지급액이 더 상향되었으며, 이 규정은 2022년까지 유지되었다. 당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18세까지 확대되었고, 만 18세 이상이라도 직업교육을 받거나 학업 중일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연장 지급되도록 개편

되었다(Gelach, 2010; Becker & Hauser, 2012; Reiner et. al., 2013). 현재 아동수당은 만 25세까지 연장 지급이 가능하다(Familienkasse, 2024a).

1996년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큰 틀에서의 제도적 변화는 없었다. 2023년에 오래 유지되어 왔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250 유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최근 아동수당 제도의 가장 큰 개혁이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이제 아동수당 제도는 큰 제도적 틀인 아동기본보장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며, 아동기본보장 제도 중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아동보장 급여(Kindergarantiebetrug) 제도로 변경된다(BMFSFJ, n.d.d).

1954년에 서독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최근의 제도 변화까지를 정리하여 독일 아동수당 제도 연혁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1〉 독일 아동수당 제도 연혁

| 연도 | 연혁 |
|------|--|
| 19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아동수당의 출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동시 도입(이중체계) 지급액: 셋째 자녀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25마르크 |
| 19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자녀부터 소득에 따라 지급 |
| 196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개정 사회보험급여에서 연방정부 조세 재원으로 전환 |
| 19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자녀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지급액: 50마르크 자녀세액공제 폐지 |
| 198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자녀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따라 지급 자녀세액공제 재도입 |
| 19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자녀의 아동수당이 70마르크로 상승 자녀세액공제액도 큰 폭으로 상승 |

| 연도 | 연혁 |
|------|--|
|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최저생계 보장이 아동수당의 주요 목적 • 이중체계에서 선택 모델로 전환: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선택 • 모든 자녀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 지급액의 급격한 상승: 첫째, 둘째 자녀 200마르크, 셋째 자녀 300마르크, 넷째 자녀 이상 350마르크 |
| 19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수에 따른 증액 규정 도입: 둘째 자녀까지 동일한 아동수당 지급,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지급액 증액 |
|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지급액의 급격한 상승: 2009년, 2010년에 30유로 증액하여 첫째, 둘째 자녀 184유로, 셋째 자녀 190유로, 넷째 자녀 이상 215유로 |
|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자녀(만 18세 이상)의 소득과 수입 기준액 초과에 따른 아동수당 청구권 상실 규정 폐지 |
|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세계지원법에 따라 일회성으로 아동 1명당 아동수당 총 300유로 추가 지급(Kinderbonus) |
| 2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명당 150유로 추가 지급(Kinderbonus) |
| 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명당 100유로 추가 지급(Kinderbonus) • 2022년 7월부터 빈곤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긴급보조금(Sofortzuschlag) 월 20유로 지급 |
| 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월 250유로 지급 •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

출처: 아래의 3가지 출처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1) "독일 가족정책의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박은정, 2019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2) "Höheres Kindergeld und weitere Verbesserungen für Kinder," Bundesregierung, n.d.a,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unterstuetzung-fuer-familien-2125014>
- 3) "Familienreport 2024," BMFSFJ, 2024a.

2) 아동수당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근거법

독일 아동수당의 근거법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과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이다. 소득세법 X절(Abschnitt X)에 아동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32조 6항에 근거하여 자녀소득공제 제도가 실시된다. 아동수당 수급권은 소득세법이 연방아동수당법보다 우선한다.

나) 지급기준⁶⁾

소득세법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부모는 소득이나 실제 납부 세금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U 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EWR) 또는 스위스 국적자가 독일에 입국하여 4개월 이상 거주하면 아동수당 수급권이 발생한다. 또한 제3국 출신의 외국인도 독일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 있는 경우나 특정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⁷⁾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난민이나 망명자 역시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지급되지만, 부모나 주 양육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다. 아동에는 친자, 입양 자녀, 배우자의 자녀, 동거인의 자녀, 양육하는 손자녀, 법적 피후견인 등이 포함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18세까지이며,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직업교육생, 사회봉사(Freiwilligendienst) 참여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만 21세 또는 25세까지 연장된다.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는 만 25세 이후에도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학업이나 직업교육 도중에 출산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음 진로(대학 진학이나 직업교육 등)를 준비 중인 과도기에는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주로 부담하는 부모에게 우선 지급

6) Familienkasse(2024a). Merkblatt Kindergeld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7) 알제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튀르키예, 튀니지, 코소보, 모로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수급권자를 결정한다.

다) 지급액

2023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250유로씩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4a). 고소득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보다는 자녀소득공제가 유리하다. 독일 소득세법에 가족기여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Lemmer, 2015). 각 지역 세무서(Finanzamt)에서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더 유리한 제도를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된다(Lemmer, 2015).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기금(Familienkasse)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로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4a).

아동수당은 연방 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가족기금을 통해 관할한다. 지급액 조정 방식을 정하여 매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논의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변경된 지급액은 연방 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 개정을 통해 공표된다.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시민수당 산정 시 아동의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주거 및 난방비 등에 포함된다. 아동의 필요를 충족한 후 초과되는 아동수당액은 부모의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Piekarz, 2024).

또한 아동수당은 공공부조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민수당 도입⁸⁾으로 공공부조 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아동수당은 소득액 산정에 반영된다. 아동수당을 소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

다는 비판이 있지만, 시민수당 체제하에서도 이 방식은 유지될 예정이다. 대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교육 및 참여 패키지(Bildung und Teilhabepaket)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 소품, 학용품, 통학비, 학습 지원, 급식비용,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패키지는 저소득층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한계를 갖고 있다(Piekarz, 2024).

(표 3-1-2) 독일 아동수당 지급액 및 세금공제액(2010~2024년)

(단위: 유로(€))

| 구분 | 아동수당 | 세금 공제(Freibeträge) | | |
|------|----------|--------------------|------------------------------|--|
| | 아동수당 지급액 | 총세금공제액 | 자녀세액공제 (Kinderfreibetrag) | 돌봄·양육·교육공제액 (Freibetrag für BEA) |
| 2010 | 184 | 7,008 | 4,368 | 2,640 |
| 2011 | 184 | 7,008 | 4,368 | 2,640 |
| 2012 | 184 | 7,008 | 4,368 | 2,640 |
| 2013 | 184 | 7,008 | 4,368 | 2,640 |
| 2014 | 184 | 7,008 | 4,368 | 2,640 |
| 2015 | 188 | 7,152 | 4,512 | 2,640 |
| 2016 | 190 | 7,248 | 4,608 | 2,640 |
| 2017 | 192 | 7,356 | 4,716 | 2,640 |
| 2018 | 194 | 7,428 | 4,788 | 2,640 |
| 2019 | 204 | 7,620 | 4,980 | 2,640 |
| 2020 | 204 | 7,812 | 5,172 | 2,640 |
| 2021 | 219 | 8,388 | 5,460 | 2,928 |
| 2022 | 219 | 8,548 | 5,620 | 2,928 |
| 2023 | 250 | 8,952 | 6,024 | 2,928 |
| 2024 | 250 | 9,540 | 6,612 | 2,928 |

출처: "Einkommensteuer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Eckwerte 2005 – 2024," Sozialpolitik-aktuell.de, n.d.,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Finanzierung/Datensammlung/PDF-Dateien/tabIII8.pdf

- 8)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 즉 하르츠 IV(Hartz IV)가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대체되었다. 시민수당은 더 간소화되고 시민 친화적인 제도로, 수급자의 장기적인 일자리 취득과 자격 향상을 지원한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시민수당은 월 563유로이며, 첫 해에는 실제 거주비와 적정 난방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소득이 520~1,000유로인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지며, 소득세 공제는 30%로 상향 조정되어 생계와 주거 보장이 강화되었다(Bundesregierung, n.d.b.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buergergeld-2125010>).

라) 전달체계 및 자원

아동수당은 가족기금(Familienkasse)에 신청하고, 가족기금을 통해 지급받는다. 연방중앙국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BZSt)이 가족기금을 감독하는 기관이다(Familienkasse, 2024a, p.4). 가족기금은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소속기관이다. 독일에는 15개의 지역 가족기금(Familienkassen)이 있으며, 연방 전체 115개의 현지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n.d.).

마)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1) 아동수당보조금의 도입 및 전개

아동수당보조금은 저소득 아동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1982년, 아동빈곤을 해소하고 소득이 낮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보조금이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3; 박은정, 2019a에서 재인용). 부모가 자신들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은 있으나 전체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충족할 소득에 달하지 못한 경우 아동수당보조금을 받는다(Familienkasse, 2024b, p.3). 2005년 하르츠 IV 개혁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비로 인해 표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공부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Becker & Hauser, 2008).

2019년에는 가족지원강화법(Starke-Familien-Gesetz)을 통해 아동수당보조금과 교육 및 참여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두 단계로 저소득 아동가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보조금이 월 185유로로 상향되었다. 아동소득액 반영은 아동소득의 100%가 아니라 45%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득 산정 및 승인 기간은 6개월

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수당보조금의 소득 상한액이 폐지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부모의 소득이 기존에는 50% 반영되었으나, 45%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아동수당보조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소득, 아동수당, 아동수당보조금과 주거수당(Wohngeld)까지 합해도 최대 100유로까지 부족한 가족에게도 공공부조인 사회법 II(SGB II)가 필요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비용이 높거나 다자녀인 중간 소득 가구도 아동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MFSFJ, n.d.f).

2019년 8월 1일부터는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참여 지원(Bildungs- und Teilhabenleistungen)도 강화하였다. 학용품 지원금이 학년마다 100유로에서 15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공동 급식에 자부담을 폐지하고 전액 지원하고, 학생 교통비도 면제되었다. 사회·문화 활동 참여비도 월 10유로에서 15유로로 상향되었다. 또한 아동수당보조금 수급 가구는 어린이집(KiTa) 비용도 면제되었다(BMFSFJ, n.d.f).

(2) 아동수당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2024년 기준 독일의 월 표준생계비는 <표 3-1-3>과 같다. 부모 2명의 표준생계비는 월 1,012유로, 한부모는 563유로이며, 아동은 연령별로 357유로~471유로이다. 아동수당보조금의 소득하한액에는 아동수당, 아동수당보조금, 주거수당 수급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는 월 900유로, 한부모는 월 600유로가 소득하한선이다(Familienkasse, 2024b). 즉,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 중에 소득하한액 이상 소득이 있으나, 가구구성원 모두의 표준생계비를 충족할 정도의 가구소득은 아닌 경우에 아동수당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보조금은 부모 및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감액 지급될 수 있으며, 주거비용이 높거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중간 소득 가구에 제도 아동수당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4년 기준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 1명당 월 292유로이다(Familienkasse, 2024b).

〈표 3-1-3〉 독일 월 표준생계비(Regelbedarf)(2024년)

(단위: 유로(€))

| 구분 | 표준생계비 |
|--------------|------------------|
| 양 부모 | 1,012 (506 x 2명) |
| 한부모 | 563 |
| 6세 미만 아동 | 357 |
| 6~14세 미만 아동 | 390 |
| 14~18세 미만 아동 | 471 |
| 18~25세 미만 아동 | 451 |

주: 사회법 2권(SGB II)에서 규정한 2024년 1월 1일 이후 표준생계비 출처: "Merkblatt Kinderzuschlag," Familienkasse, 2024b, p.7. 참고

3) 현황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는 2000년에 14,827천 명에서 다소 증가 추이를 보여 2005년에는 1,500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4,548천 명이였다. 2015년 이후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는 17,195천 명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약 237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독일의 아동 수가 증가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동수당 지급액 증가로 인하여 아동수당 지출액의 증가 비율은 아동 수 증가보다 크다. 2000년에 25,627백만 유로에서 2022년 47,920백만 유로가 지출되었다(〈표 3-1-4〉 참조).

〈표 3-1-4〉 아동수당 지급자 수 및 지출액(2000, 2005, 2010, 2015년 이후)

(단위: 천 명, 백만 유로)

| 연도 | 아동수당 지급 아동 수 | 지출액 |
|------|--------------|--------|
| 2000 | 14,827 | 25,627 |
| 2005 | 15,212 | 29,325 |
| 2010 | 14,508 | 33,534 |
| 2015 | 14,548 | 34,339 |
| 2016 | 14,718 | 35,208 |
| 2017 | 14,971 | 35,898 |
| 2018 | 15,457 | 36,928 |
| 2019 | 15,835 | 38,777 |
| 2020 | 16,273 | 45,660 |
| 2021 | 16,690 | 47,626 |
| 2022 | 17,195 | 47,920 |

출처: "GENESIS-Online," 독일 연방통계청, n.d.a.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22911/table/22911-0002/search/s/S2luZGVyZ2VsZA==>

나. 부모수당(Elterngeld)

1) 부모수당 제도의 발전 과정

육아수당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Mutterurlaub) 사용 이후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육아수당을 통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육아수당은 2001년까지 월 600 마르크라는 낮은 수준의 정액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유급 휴직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되고, 무급 기간까지 합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육아수당은 부모의 탈상품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동하기보다는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용하였다. 육아수당은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무급노동을 담당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육아수당 사용률이 매우 낮아서 제도 사용이 계층화되어 나타났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박은정 외, 2022b).

기존의 육아수당 제도의 문제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에 육아휴직법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2001년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제도명을 변경하였다. 일을 중단하는 기간을 휴가(Urlaub)로 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보아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부모시간(Elternze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부모수당은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이 제정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부모수당은 독일의 기존 사회급여나 가족급여와는 달리 소득 수준을 반영한 소득대체급여로 도입되었다. 부모수당의 주요 목적은 부모가 자녀돌봄으로 인해 소득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Gerlach, 2010, p.272).

부모시간은 3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유급 기간인 부모수당 지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이며, 양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1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모수당의 소득대체율은 기본 65%에서 소득이 감소할수록 소득대체율이 상승한다. 부모수당은 출산 전 소득활동에 상관없이 기본 300유로가 지급되고 지급액 상한선은 월 1,800유로이다. 2007년 도입되었을 때 부모수당을 받으면서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이었다

(Gerlach, 2010, p.272).

이후에도 아버지의 부모시간 사용을 촉진하고 부모의 유연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부모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2015년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와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제도가 도입되어, 일하는 부모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박은정, 2019a; 박은정 외, 2022a).

2) 부모수당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근거법

부모수당은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법(BEEG)」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이 법은 2006년 12월 5일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15년에 부모가 육아휴직 중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다.

나) 지급 요건⁹⁾

독일 부모수당은 기본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 파트너십보너스로 크게 구분되며, 부모가 3가지 부모수당 형태를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별로 부모가 급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별거 양육자, 국경 통근자 등 부모의 특성별로 추가적인 요건 규정이 존재한다.

먼저, 기본부모수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독일 내에서 자녀를 양

9) BMFSFJ(2023a), Elterngeld und Elternzeit & Da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모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대 주당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임금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실업자, 전업주부 등 고용 형태나 경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수당 지급 대상이다. 단, 초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한 소득상한선이 있다. 2024년 기준 현재 과세소득은 연 20만 유로이다. 국적이 EU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출신일 경우에는 독일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독일에서 노동 허가를 받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부모수당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의 부모수당은 부모시간(Elternzeit)과 적용 요건이 동일하지 않다.¹⁰⁾ 자녀는 친자뿐만 아니라, 법적 배우자의 친자, 생활동반자(동거인)의 친자, 입양 자녀를 둔 경우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양 자녀의 경우는 법적 입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모가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증손자, 조카, 형제·자매 돌봄 시에 부모수당을 지급한다.

대상별로 추가적인 부모수당 지급요건이 있다. 먼저, 한부모(Alleinerziehende) 부모수당에서 한부모는 다른 부 또는 모가 한부모 및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야 하며, 한 가구에 다른 성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세법상 한부모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한부모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외 다른 부 또는 모가 자녀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나 자녀돌봄이 자녀의 안녕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한부

10) 부모시간은 근무지가 독일이거나 독일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독일 내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시간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이며 자녀의 나이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3세 이후에는 최대 24개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적인 부모시간 분할 사용은 3번까지 가능하며 고용주가 허용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거 양육자(Getrennt Erziehende)는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로 따로 거주하면서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부 또는 모는 자녀와 3분의 1 이상 동거하여야 한다.

학업을 하거나 직업교육(Ausbildung)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으면서 지속할 수 있다. 직업교육 시 급여 또는 근로시간은 부모수당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거주지와 근무지 국가가 다른 국경 통근자의 경우는 근무지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된다. 차순위 국가의 지급액이 높을 경우에는 차액을 차순위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2015년 도입된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는 출산 후 시간제 근로(주당 최대 32시간 근무) 시 지급된다.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 sbonus)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주당 24~32시간 근무하며 동시에 부모수당플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2~4개월의 부모수당플러스를 추가 지급한다.

다) 지급 기간 및 지급액¹¹⁾

기본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 사용할 때는 자녀 생후 12개월, 두 명 모두 사용할 때는 자녀 생후 1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가 2개월은 일명 파트너달(Partnermonate)로 아버지의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부모가 각각 최소 2개월씩은 사용하여야 하며, 한 명당 최대 12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14개월 이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 사용 시에는 2달 사용으로 간주한다. 생후 14개월 이내에만 부모수당 지급을 중단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모성급여(Mutterschaftsgeld,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부모수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

11) BMFSFJ(2023a), Elterngeld und Elternzeit & Da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여, 모성급여 지급 기간이 기본부모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된다. 한부모의 경우에는 총 1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부모수당 1개월은 부모수당플러스 2개월에 해당한다. 즉, 부모수당플러스 지급 기간은 기본부모수당의 2배이다. 부모수당플러스는 자녀 생후 14개월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생후 3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모수당플러스도 생후 15개월 이후에는 중단이 불가능하다. 최소 부모 중 한 명이 부모수당플러스 또는 파트너십보너스를 사용해야 한다.

부모수당 지급액은 부모수당의 종류, 지급 전 소득액, 부모수당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다둥이 및 다자녀(유아기 다른 자녀) 유무, 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부모수당의 하한액은 월 300유로이며, 상한액은 월 1,800유로이다. 부모수당플러스의 지급액은 기본부모수당의 50%이다. 하한액 월 300유로는 출산 전에 소득이 없거나 동일한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 출산 소득이 있으나 산출된 지급액이 월 300유로보다 적을 경우에 지급된다. 부모수당의 기본적인 소득대체율은 자녀 출산 전 세후소득의 65%이다. 지급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전제한 소득대체율이며 소득이 발생한 달에는 출산 전 세후 소득과 현재 세후 소득 간 차이에 65%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대상 부모수당 지급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출산 전 세후소득이 월 1,240유로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65~100%까지 상향된다. 다음으로 다둥이 추가금(Mehrlings-Zuschlag)이 있다. 독일은 부모수당을 다둥이 자녀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금 형태로 증액하여 지급한다. 기본부모수당의 다둥이 추가금은 추가 자녀당 월 300유로가 지급되며, 부모수당플러스 및 파트너십보너스는 추가 자녀당 월 150

유로이다. 형제보너스(Geschwisterbonus)는 형제아 자녀로 인정되는 별도 기준이 있다. 1명 이상 만 3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만 6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형제아 자녀로 인정된다. 또한 1명 이상 만 14세 미만 장애를 가진 자녀, 1명 이상 만 14세 미만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형제아 자녀로 인정된다. 형제보너스는 부모수당의 상하한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형제보너스를 적용받는 경우 부모수당의 상하한액을 최소 75유로, 최대 기본부모수당의 10%를 상향한다.

라) 전달체계 및 재원

부모수당은 연방정부의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재원 조성에는 연방 예산법(Haushaltsrecht des Bundes) 규정이 적용된다(BEEG 12조).

부모수당의 재원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나, 전달체계는 주정부에서 관할한다.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위임한 기관에서 법 실행을 위한 관할 기관을 결정한다. 이 관할 기관에서 부모수당사무소(Elterngeldstelle)를 감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BEEG 12조). 부모수당 사무소는 부모수당 신청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부모수당 지급액 결정 및 부모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BMFSFJ, 2023a).

3)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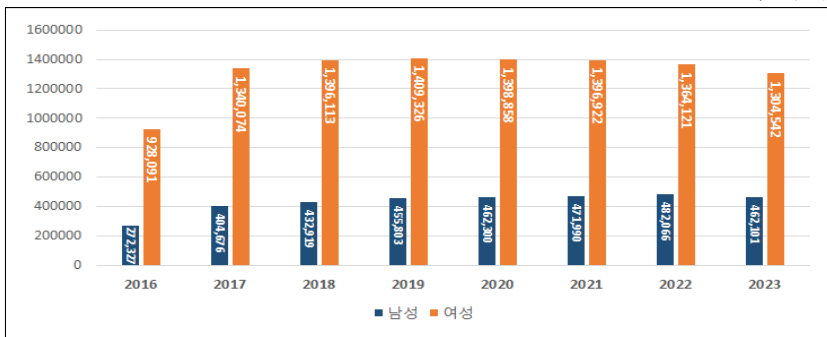
독일의 부모수당은 도입 직후인 2007년에 사용자 수가 폭등하였으며, 2015년 부모수당플러스 도입 이후부터 사용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18년부터는 부모수당 전체 사용자 수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부모수당 사용자 수가 18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독일은 2016년에 합계출산율이 1.59명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1.58명이었으나, 2022년 1.46명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3년에는 1.35명으로 감소하였다(Statistisches Bundesamt, n.d.a).

출생아 수 감소와 부모수당 전체 사용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모수당의 남성 사용자 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전체 부모수당 사용자 수의 감소폭이 커지고, 남성 사용자 수도 1만 8,000명 이상 감소하였다([그림 3-1-1] 참조).

[그림 3-1-1]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자 수(2016~202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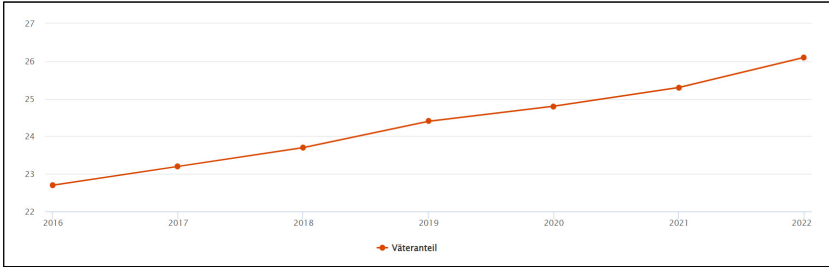


출처: “GENESIS-Online,” 독일 연방통계청, n.d.b.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table&code=22922-01111&bypass=true&levelindex=0&levelid=1724581037007#abreadcrumb>에서 2024. 8. 18 데이터 추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비율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여성 사용자는 감소하고 남성 사용자 수는 증가하여, 전체 사용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수급 비율의 증가폭은 컸다.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수급 비율은 2016년에 22.7%에서 2022년에 26.1%로 3.4%p 증가하였다([그림 3-1-2] 참조).

[그림 3-1-2] 부모수당 수급자 중 아버지 수급 비율(201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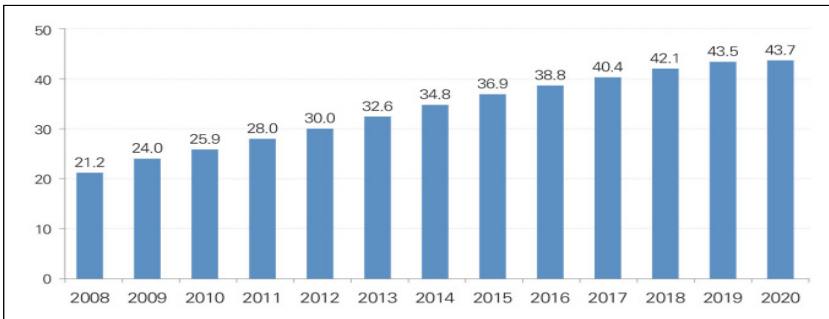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statistikportal," 독일 통계 포털, n.d. <https://www.statistikportal.de/en/node/179906>

독일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출생아 아버지 100명당 21.2명이 부모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출생아의 아버지 부모수당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출생아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률은 40%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출생아의 아버지는 43.7%가 부모수당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독일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률 추이(2008~2021년)

(단위: %)



주: 2008~2020년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 부모수당 사용률

출처: 1) (원자료) "Väterreport 2023,"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k zum Elterngeld; B MFSFJ, 2023b.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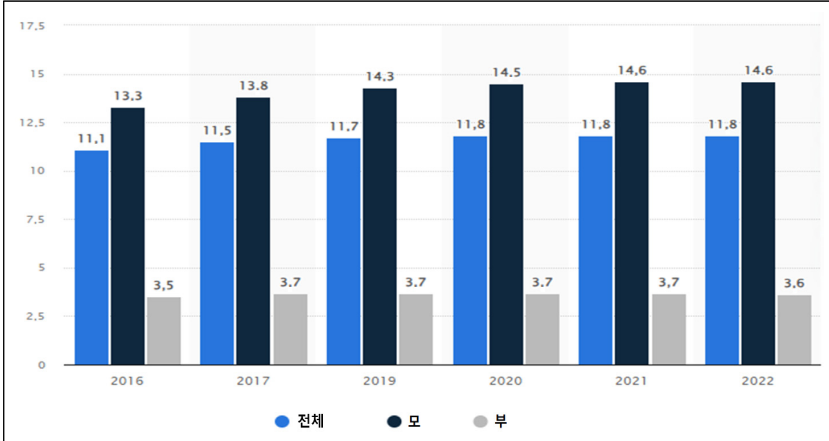
2) (재인용)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박은정 외, 2023, p.103.

2023년 기준, 독일 부모수당 대상인 어머니 중 40.9%, 아버지 중 17.7%가 부모수당플러스를 신청하였다. 부모수당플러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비율은 부모수당 수급자 중 총 34.8%에 달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부모수당플러스 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모수당플러스 도입 이듬해인 2016년에는 어머니의 20.1%, 아버지의 8.2%가 부모수당플러스를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2023년에는 2배 이상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한부모 부모수당 지급 통계가 발표되었다. 부모수당 수급을 받는 약 180만 명 중 한부모 가구는 약 5만 400명이며, 한부모 가구 중 97.8%가 여성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n.d.b).

부모수당 사용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사용자의 평균 사용 기간은 11~12개월로 약 1년 정도이다. 전체 부모수당 사용 기간은 2016년 11.1개월에서 2020년 11.8개월로 다소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정체되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사용 기간이 아버지의 4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부모수당 사용 기간은 2016년 13.3개월에서 2021년, 2022년 14.6개월로 증가한 반면, 아버지의 사용 기간은 2016년 이후 3.5개월~3.7개월 사이에서 답보 상태를 보였다([그림 3-1-4] 참조). 2023년 기준으로 평균 부모수당 지급 기간은 여성은 14.8개월, 남성은 3.7개월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3-1-4]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 기간(2016~2022년)

(단위: 개월)



출처: “Durchschnittliche voraussichtliche Bezugsdauer von Elterngeld in Deutschland nach Geschlecht von 2016 bis 2023,” Statista, n.d.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301222/umfrage/elterngeld-durchschnittliche-bezugsdauer-nach-geschlecht-der-eltern/>

성별 독일 부모수당 사용률과 사용 기간을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부모수당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기간은 4개월 미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수당 및 부모수당플러스 제도의 도입이 표면적으로 남성의 제도 사용률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돌봄 시간 지원 제도의 절대적인 사용량, 사용 시간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나 사용 기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비단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나, 독일에서 성별 사용 기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은 남성의 돌봄의 질 및 돌봄 시간 관련 과제가 여전히 독일 가족정책의 과제를 말해준다.

3. 돌봄 정책

가. 영유아 돌봄

1) 영유아 돌봄 제도의 발전 과정¹²⁾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177년의 역사의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Kindergarten)은 독일의 교육학자 프리드리히 프뢰벨(Friedrich Fröbel)에 의해 1837년 시작된 체계이다. 이후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은 산업화 과정,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나치 시기, 동서독 분단 시기, 통일 이후를 거쳐 현재까지 계속 변화해오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다. 부모들이 산업 노동에 종사하면서 아동 돌봄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주로 노동자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탁아소 같은 보육 시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도 프뢰벨이 구상한 이상적인 유치원이 자리 잡지는 못했으나, 국가 차원에서 점차 아동 보육이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제국 아동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이 제정되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 시기에 독일 전역에서 아동 보육과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현대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몬테소리와 발도르프 교육법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이 등장하였다.

나치 정권 시기에는 가족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것처럼 유아교육도

12) Weimann-Sandig, N. (2019). Entwicklung und aktueller Stand der Kindertagesbetreuung in Deutschland. Das große Handbuch Organisation und Verwaltung in der Kita. Kita Management. Köln, pp. 15-36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가 통제하에 아동들에게 조기에 국가사회주의를 세뇌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 유치원, 보육시설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의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상황에 의해 유아교육 및 보육도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동독은 전쟁 여파를 단시간에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에 남녀의 평등과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였다(이윤진, 정재훈, 2018, p.18). 이에 국가 주도의 전일제 보육시설이 동독 전역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동독은 1989년에 98%의 보육률을 달성했다. 동독의 보육 체계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 통제하에 관리되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 서비스 차원을 넘어 사회주의적 이념을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반면, 서독에서는 영유아 돌봄 및 보육이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동독에 비해 보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이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야 보육시설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통독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였다. 다수의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직장 유치원을 폐쇄하였으며, 서독 모형에 따라 유치원 비용도 대폭 인상하였다. 실업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의 출생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동독의 노동인구 감소도 동반되었다. 또한 보육 시설의 일자리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Aden-Grossmann 2002).

통일 이후에 동독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서독과 동독의 보육시설 격차 문제가 남아 있었다. 특히 서독은 동독에 비해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

육률이 매우 낮았다. 독일 정부는 아동 돌봄을 개선하기 위해서 1993년 유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2004년 「보육확장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 2008년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을 도입하였다.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였다(정재훈·박은정, 2012).

독일 연방정부는 2012년에 ‘아동돌봄 2013’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는 돌봄서비스 제고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 질 관리, 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강화,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이윤진, 정재훈, 2018). 2013년에는 1세 이상 만 3세 미만 아동에게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 이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아동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아동돌봄의 질 개선을 위한 개별법인 「보육시설 및 아동주간돌봄의 질 및 참여 개선을 위한 법(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Qualität und zur Verbesserung der Teilhabe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der Kindertagespflege)」이 제정되고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명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으로 축약하여 칭해졌다. 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해 교사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 및 시설 환경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었다. 둘째, 주정부별로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료를 낮추고 저소득이나 다자녀 가구에 보육료를 면제해주는 등 연방 전체에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었다. 셋째, 이 법에는 모든 아동

이 출신 배경이나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넷째, 주별 맞춤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 독일은 주정부가 교육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며, 돌봄·보육 정책도 주정부 소관이다. 이에 주별 상황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주마다 다양하게 개발되었다(BMFSFJ, 2021).

202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일명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보육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BMFSFJ, n.d.c).

2) 영유아 돌봄 정책의 주요 내용

가) 근거법 및 개념

독일의 아동돌봄 및 보육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Kinder- und Jugendhilfe) 관련법인 사회법 8권(SGB VIII)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22~26조에 보육시설 및 아동주간돌봄에서 아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22조에는 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en)과 아동주간돌봄서비스(Kindertagespflege)를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관련 규정은 주법에 의거하여 규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동조항에 따르면, 독일에서 보육기관은 아동이 전일 또는 하루 중 일부를 시설에 머물면서 집단으로 돌봄을 받는 시설이다. 아동주간돌봄(Kindertagespflege)은 적합한 아동 보육사가 자신의 가정, 법적 보호자의 가정 또는 기타 적합한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법에 따르면, 독일의 아동 보육의 기능은 1) 아동이 자기결정 능력, 책임감,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가족 내 양육과 교육을 지원 및 보완하며, 3) 부모가 소득활동, 자녀양육, 가족 돌봄을 더 잘 병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독일의 사회법은 아동 돌봄이 기관 보육뿐만 아니라 가정 보육,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BMJ, n.d.).

사회법 8권이 독일에서 기본적인 아동 돌봄에 대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는 법이라면, 돌봄서비스 확대와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8년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 2019년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 2023년 '어린이집 질 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 실행은 주정부 관할이므로 주정부 및 지자체의 보육 관련 법률이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보육료 지원 확대

기본적으로 독일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보육서비스와 이용료에 대한 기본적인 권고 지침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에는 가족지원강화법(Starke-Familien-Gesetz), 좋은 어린이집 법 등이 발효되면서, 독일 연방 전체에서 아동수당보조금, 공공부조 급여, 주거수당 등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면제되었다. 이외에도 주정부의 상당수는 무상 보육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베를린(Berlin)은 2018년 8월부터 보육특별활동비, 급식비, 언어수업 등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 보육료를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브레멘(Bremen)은 2019년 8월 1일부터 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를 없앴으며, 헤센(Hessen),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등도 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를 없앴다. 이외에도 2018년 이후에 일정 연령의 보육료를 무상으로 변경한 주들이 생겨났다(Deutscher Bildungsserver, n.d.).

다) 돌봄 인력 확보 및 질 제고

독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핵심 과제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질적 요소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돌봄 전문인력의 확보, 전문성 강화가 강조되어 왔다.

먼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독일 전역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지역별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이 서독보다 평균적인 보육률은 높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서독이 더 나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BMFSFJ, 2023c). 2022년, 3세 미만 아동을 기준으로 독일 전국 평균은 1대 4명이었으며, 주별로 1대 3에서 1대 5.8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는 독일 전국 평균이 교사(교육 담당) 1명당 7.8명이었으며, 이 역시 주별로 6.5명에서 11.9명까지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나 2019년 돌봄의 질 제고 이후 유아 대상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MFSFJ, 2024b, p.16).

다음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 확대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육 분야를 전공한 교사(전문인력)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보육교사의 수는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 보육교사가 66만 명 이상이나, 여전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고 숙련인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MFSFJ, 2023c).

독일은 직업교육(Ausbildung)이나 직업전문학교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가 될 수 있어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독일에서는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보

수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교육 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BMFSFJ, 2023c).

라) 아동보육사(Kindertagespflegeperson)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의 중간 형태와 유사하게 독일에서 탁아모(Tagesmutter) 또는 탁아부(Tagesvater)라고 칭하는 아동보육사 서비스가 있다. 아동보육사가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처 아동보육사의 자택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대개 아동보육사는 3~4명의 아동을 돌보며, 최대 5명까지만 돌볼 수 있다. 부모와 아동보육사가 합의하여 보육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관 이용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 내 보육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돌봄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정부에서 보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육이 가능하다(BMFSFJ, 2019b).

나. 초등 돌봄: 전일제 돌봄(Ganztagsbetreuung)

1) 전일제 돌봄의 발전 과정¹³⁾

독일 전일제 학교는 2001~2002년 선거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대두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2009년에 “미래 교육 및 돌봄(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그램에 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독일 연방 전체에 전일제 학교 도입 및 확대를 장려하였다. 이 시기에 8,262개 학교에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공동 사업으로 2004~2015년까지 “더 많은 아이디어! 종일 학습(Ideen für

13) 이윤진·정재훈(2018).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를 참조하여 정리함.

mehr! Ganztägig lernen)”을 추진하였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 주정부의 참여 및 지자체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독일 전역에 전일제 학교가 자리 잡게 되었다(ganztagsschulen.org. n.d.a).

독일의 돌봄 정책 확대는 초등 돌봄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2013년에 아동의 사회적 돌봄 강화가 강조되면서 전일제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연정협약서에 명시되었다. 2017년 협약에서는 초등 학령기 아동을 위한 종일 돌봄 청구권 도입을 합의하였다. 의무교육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전일제 돌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이 결정되었다(BMFSFJ, 2018; 김근진, 박은정, 김희수, 2019에서 재인용). 초등 자녀의 전일제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는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학년 아동에게 먼저 적용되며, 매해 한 학년씩 확대하여 2029년 8월부터 독일의 초등학교(Grundschule) 연령에 해당하는 전 학년(1~4학년)에 적용된다(BMFSFJ, n.d.e).

2) 전일제 돌봄의 주요 내용

가) 전일제 돌봄 유형 구분¹⁴⁾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은 아동복지와 교육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의무교육 연령 아동에게 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학교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수업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고, 전일제 학교 개념을 통해 방과 후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르트(Hort)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는 교육적 차원에서 각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4) Münder, J.(2017)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함.

2002년 이후 종일 돌봄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전일제 학교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6년에는 약 340,000명이 호르트, 315,000명이 전일제 학교를 이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일제 학교 이용 아동이 892,000명으로 호르트 이용 아동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호르트와 전일제 학교는 제공 시간과 운영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일제 학교는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의무형(Gebundene Ganztagschule), 특정 활동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 의무형(Teilgebundene Ganztagschule), 자율적으로 활동을 선택해 참여하는 개방형(Offene Ganztagschule)으로 나뉜다(StEG- Konsortium, 2016; 김근진 외, 2019에서 재인용).

호르트와 전일제 학교 중 어떤 유형을 중점적으로 확대할지는 주마다 다르다. 베를린, 함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주로 전일제 학교를 확대하는 반면, 서독 지역의 일부 주는 두 모델을 함께 확대하고 있으며, 동독 지역은 주로 호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전일제 돌봄 인력 및 운영

전일제 돌봄의 인력 구성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의무형 돌봄에서는 교사와 보육교사가 각각 절반씩 참여하며, 개방형 돌봄과 호르트는 100% 보육교사로 운영된다. 아동 돌봄 기관은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교사의 돌봄 역할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Alt, Guglhör-Rudan, Hüsken, Winklhofer, 2019).

호르트의 돌봄 시간은 주당 5일, 하루 평균 5시간이며, 운영 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동독은 대다수의 호르트가 방과 전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서독은 방과 전 돌봄 제공 비율이 낮다. 그러나 오후 돌봄 시간은 동서독 간 큰 차이가 없다. 종일제 학교는 주 3일 이상, 하루 7시간

이상의 수업을 포함해야 전일제 학교로 간주된다. 호르트는 아동복지 시설로서 교육 인력에 의한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일제 학교는 숙제 지도, 특별활동 그룹 등의 과외 활동을 통해 돌봄을 제공한다. 전일제 학교에서는 스포츠나 음악 관련 여가 활동도 제공하며, 다양한 외부 단체와 협력한다. 호르트 이용 비용은 주정부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다. 종일제 학교의 이용 비용 역시 지역 및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한 끼당 3~4유로의 식사 비용이 발생한다(Münder, 2017; BMFSFJ, 2018; 김근진 외, 201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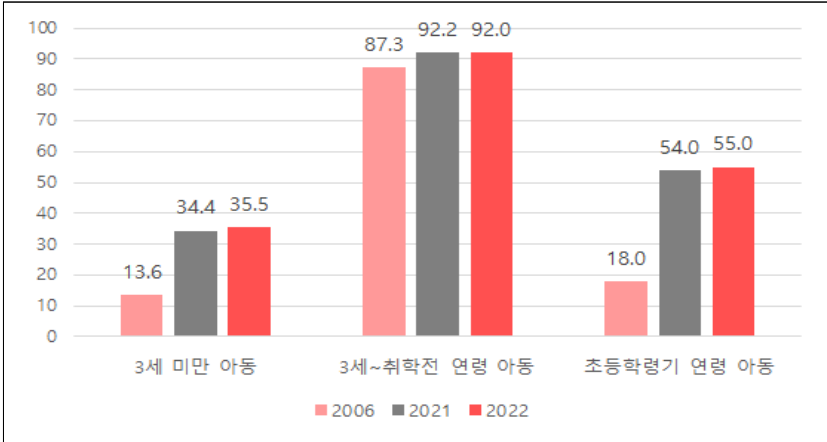
주정부별로 다양한 전일제 돌봄 프로그램 및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부르크(Hamburg)는 전일제 돌봄에 적합한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학교 건축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점심 식사 제공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ganztagsschulen.org., n.d.b)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는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하여 전일제학교에 로봇 공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ganztagsschulen.org., n.d.c).

다. 현황

아동 돌봄 관련 연령별 보육률 통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보육률은 각 연령대별로 전체 아동 중 아동보육기관이나 돌봄서비스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 비율로 산출되었으며, 초등 학령기 연령 아동은 호르트(Hort)와 전일제학교를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다.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을 보면, 2006년에 13.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2021년 34.4%, 2022년 35.5%로 증가하였다. 독일에서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은 낮으나, 2006년 기준 만 3세에서 취학 전까지 보육률은 87.3%로 높았다. 2021년에는 이보다 5%p 정도 상승하여 92.2%, 2022년 92.0%였다.

[그림 3-1-5] 아동주간돌봄 아동 수 및 보육률(2006년, 2021년, 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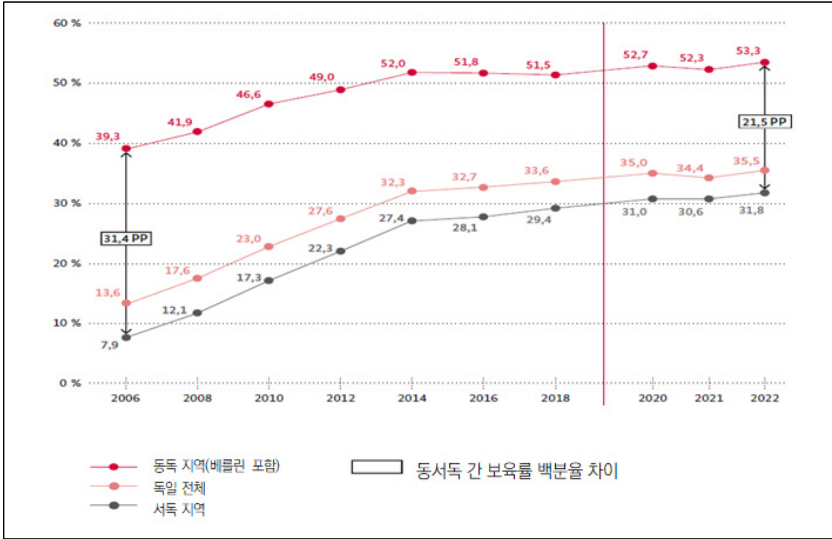


주: 1) 보육률은 해당 연령대 전체 아동 중 아동주간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en) 또는 아동주간돌봄(Kindertagespflege)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 비율
 2) 초등 학령기 연령 아동은 호르트(Hort)와 전일제 학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며, 데이터는 반올림하여 제시함.
 출처: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3.

구서독과 구동독 간 보육정책의 차이로 인해, 특히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은 동서독 간에 격차가 컸다. 2006년 서독의 만 3세 미만 보육률은 7.9%에 불과하였으며, 동독의 보육률은 39.3%로 40%에 가까웠다.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급격히 보육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독의 만 3세 미만 보육률이 19.5%p가 증가하여 2014년 27.4%에 달하였다. 독일 정부가 목표한 만 3세 미만 보육률 35%는 당초 목표보다 뒤늦은 2020년에서야 도달하였으며, 서독은 31.0%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보육률이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만 3세 미만 보육률은 서독 31.8%, 동독은 53.3%로 나타나, 동서독 간 격차가 2006년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다.

[그림 3-1-6] 아동주간돌봄에서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률 추이(2006~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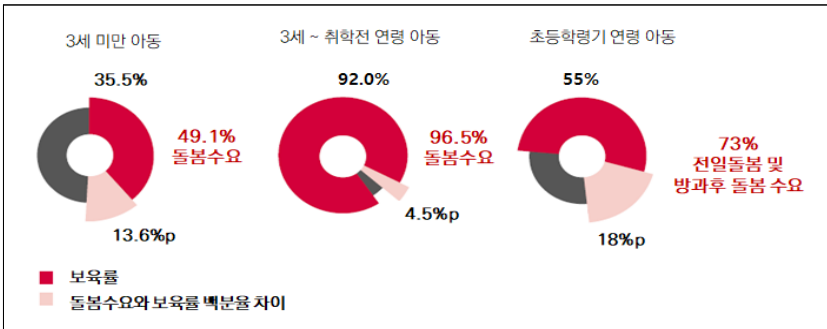
주: 1) 원자료: 도르트문트 아동·청소년복지통계청(Dortmunder Arbeitsstelle Kinder und Jugendhilfestatistik)이 연방통계청의 아동청소년복지통계를 활용하여 편찬한 자료
 2) 2008년까지는 3월 15일 기준, 2009년 이후는 3월 1일 기준 자료임.

출처: 1) (원자료)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ä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örderter Kindertagespflege 2006 bis 2022,” Statistisches Bundesamt, n.d.c.
 2) (재인용)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14에서 재인용

독일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기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질문한 돌봄 수요 조사와 보육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 만 3세, 미만 아동의 돌봄 수요는 49.1%로 보육률과 13.6%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에서 초등 학령기 전까지 아동의 돌봄 수요는 96.5%로 보육률과 4.5%p 차이를 보였다. 독일에서 돌봄 미충족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초등 학령기 연령이었다. 초등 학령기 연령 아동의 돌봄 수요는 보육률과 18%p 차이를 보인 73%로 돌봄 미충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일 정부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률과 초등학

교 전일제 돌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여전히 돌봄 미충족률이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독일 부모의 돌봄 수요(2022년)



주: 돌봄 수요는 “현재 자녀를 돌보기 원하는 요일과 시간은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출처: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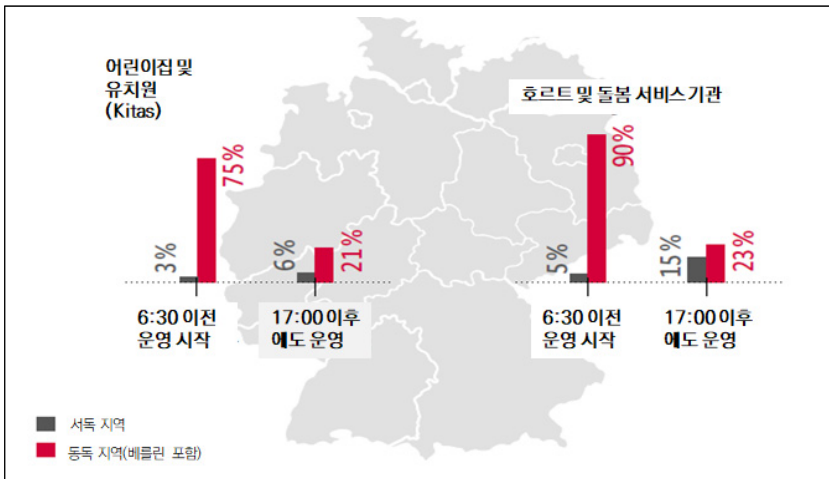
아동 돌봄 기관의 운영 시간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서독과 동독 지역 간 돌봄 기관의 운영 시간에는 격차가 있었다. 동독 지역 어린이집(Kita)은 서독 지역보다 이른 시간에 돌봄을 시작하고, 운영 시간도 길었다. 동독 지역 어린이집의 58%는 오전 6시 전에 운영을 시작하며, 75%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반면, 서독 지역 어린이집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곳이 3%에 불과하였다. 서독 지역 어린이집은 약 53%가 오전 7시까지 열고, 늦어도 오전 7시 30분까지는 전체 시설의 92%가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MFSFJ, 2023d, pp.40~41).

기관 운영 종료 시간에서도 동서독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독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의 58%가 오후 4시에 운영을 종료하였고,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곳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94%)이 오후 4시까지 운영했으며, 오후 4시 30분에도

75%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독 지역에서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6%에 불과했지만, 동독 지역에서는 약 5곳 중 1곳이 오후 5시까지 계속 운영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동독과 서독 지역 모두에서 운영 시작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종료 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 팬데믹만을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BMFSFJ, 2023d, pp.40-41).

독일에서 주로 초등 아동 대상 돌봄을 제공하는 호르트(Hort)도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동서독 지역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호르트는 서독은 5%에 불과하고 동독은 90%에 달했다. 호르트 기관에서 서비스 종료 시간은 어린이집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서독 지역은 오후 5시에도 운영을 하는 호르트가 15%였으며, 동독 지역은 23%였다(BMFSFJ, 2023d., pp.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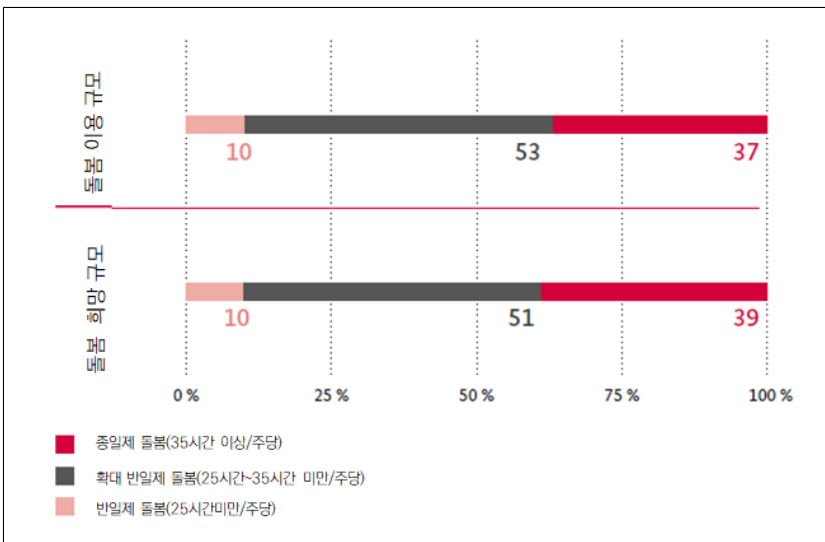
[그림 3-1-8] 독일의 돌봄기관 운영시간(2022년)



출처: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SFJ, 2023d, p.4.

돌봄 수요의 미충족률이 큰 초등 방과 후 학교를 돌봄 시간별로 주당 35시간 이상인 전일제, 주당 25~35시간인 확장형 반일제, 25시간 미만인 반일제로 구분하여 실제 이용 규모와 희망하는 규모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방과 후 돌봄 중 전일제를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37%이나 희망하는 규모는 39%, 확장형 반일제 이용 비율은 53%이나 희망하는 비율은 51%로 전일제를 희망하나 확장형 반일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일제의 경우는 실제 이용하는 비율(10%)과 희망하는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아동주간돌봄에서 초등 연령 아동의 이용 및 희망 돌봄 규모(2022년)



주: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데이터는 반올림하여 제시됨.

출처: 1) (원자료) "Ergebnisse der DJI-Kinderbetreuungsstudie," Deutsches Jugendinstitut, 2022.

2) (재인용)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MF SFJ, 2023d, p.61.

4. 소결

독일의 가족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 내 돌봄 지원 성격이 강하여 오랜 시간 보수주의 가족정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장시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은 독일 가족정책이 전제 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2000년대 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가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가족정책의 발전 과정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일관된 가족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독일은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 관점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기존 보수주의 성격의 정책 경로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시간정책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개별적인 정책 수단의 난립이 아니라 개별 제도들이 새로운 정책 방향에 합치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 개혁을 추진해나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현금, 시간, 서비스 정책 분야 간에 제도적 지형을 재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은, 가정양육수당은 일 가정 양립을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반한다는 판단하에 연방 차원에서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보육 서비스 확장에 힘을 쏟았다.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 지속가능성,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때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일의 일 가정 양립 정책에서는 가족 시간(Familienzeit)이 강조된다.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제도명도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변경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가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가족 시간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이 강조되었지만, 단순히 아동을 기관에서 돌보고 부모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구조가 아닌 기본적으로 가족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일 가족정책 개혁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부모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육아휴직제도인 부모시간, 부모수당 제도에서 아버지의 사용률 제고를 위한 파트너달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부모수당플러스 제도와 함께 도입된 파트너십보너스 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가 성 평등한 돌봄 역할 분담을 목표로 남성이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가족정책에서 ‘돌보는 아버지’, ‘적극적 아버지상’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확대가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다(BMFSFJ, 2018; 박은정, 이재희, 박은영, 김연진, 2023). 한국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폭이 여전히 크지 않고, 출산 및 자녀양육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는 M자 곡선이 여전히 뚜렷하다. 이제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Doepke, Hannusch, Kindermann & Tertilt, 2023). 독일에서도 성 평등한 파트너십과 돌보는 남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남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넷째, 아동의 기본 생계 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현금 지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금 급여 지원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독일은 특정 시기에 부모에 대한 현금 지원을 증액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현금 지원을 강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가족부담경감(Familienlastenausgleich)과 가족기여보상(Familienleistungsausgleich) 원리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 있다. 또한 최근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아동의 적절한 성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태어난 아동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금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한 것이다. 현금급여 제도의 긴 역사와 분명한 원칙을 가진 독일의 사례는 최근에서야 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한국이 참고해 보아야 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제도적 유연성 확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독일은 부모수당 제도 도입 이후에 유연하게 일과 돌봄을 병행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부모수당플러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자녀돌봄 가능 여부에 따라 한부모 부모수당을 적용하거나 부모 외에 양육자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휴직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금근로자여야 하며, 부 또는 모의 휴직과 고용이라는 이분화된 적용만 가능한 상황이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실제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정책

1.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역사

1) 1950~1989년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한 지역정책(Regionalpolitik)은 사회적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Deutscher Bundestag, 2014.7.4, p. 5).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호황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 수단도 마련하였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53년 1억 마르크 규모의 ‘지역 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959년에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 취약 지역 중심지 개발 프로그램(Entwicklungsprogramm für Zentrale Orte in ländlich schwach strukturierten Gebieten)’을 도입하여 농촌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투자와 정착을 촉진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8.7.13). 1969년에는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이하 GRW)의 법적 토대 GRW법(GRW-Gesetz)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 연방정부와 연방 주가 각각 지출의 절반을 부담하

는 GRW는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원 수단 중 하나로, 구조적 취약지역의 산업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고용과 소득 상황을 개선한다(BMWK, 2023.9.13). 1980년대 말 기준 연간 지원금은 약 10억 마르크(DM)로,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시 서독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였다. 지원 대상 지역에는 동독과의 접경지역, 체코슬로바키아와 바이에른 국경, 북부 독일 연안, 그리고 루르(Ruhr) 지역과 같은 오래된 산업 지역이 등이 포함되었다(Röhl, 2019).

독일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도시개발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9년 재정 헌법 대개정을 통해 기본법 제104조a항, 1971년에는 도시건축촉진법(Städtebauförderungsgesetz)을 도입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Städtebauförderung, n.d.a). 도시건축촉진법은 공적 지원을 받는 체계적이며 법적으로 규제된 도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건축촉진법 수립으로 시작된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도 도시개발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역할한다(BMI, 2020).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와 지역 간, 지역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한다(BMI, 2020). 실제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도시개발 관련 논의에서는 도시정비, 주민참여, 사회문화적 프로젝트, 참여과정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Städtebauförderung, n.d.a). 1987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 건축 박람회와 베를린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제시된 ‘12 원칙(Zwölf Grundsätze)’은 기존의 사회 및 건축 구조를 고려한 신중한 도시재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2 원칙’에는 광범위한 교통 안정계획, 지역 인구 구성 보장 조치, 환경 보호 지역 지정

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연방주에서도 문화유산 보호법을 도입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도시건축 촉진 프로그램은 나아가 도시 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도시 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개발정책이 도시 외곽 개발을 통한 도시 확장 정책에서 도시 내 기존 지역개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Städtebauförderung, n.d.a).

2) 통독 이후(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연방공화국의 공간적, 경제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경제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반 시설의 동서 격차가 공간 계획 정책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지역불평등 해소 노력의 초점은 동독에 맞춰졌다. 공간 계획 정책은 동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투자 및 보조금 정책으로 동서 간 불평등한 생활 조건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했다. 실제로 1990년부터 지역정책은 동독 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때로는 재정지원의 90%가 동독 지역으로 유입되기도 했다(Röhl, 2019). 1993년의 ‘공간계획 정책방향 프레임워크’(Raumordnungspolitischer Orientierungsrahmen, 이하 ORA)는 통일 독일의 공간개발에 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동등성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다. ORA는 1989년 공간계획법 개정안에서 제시하려 했던 강력한 공간계획 개념에서 벗어나 전략 지향적이고 조정이 가능한 공간계획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했다. 핵심 목표는 ‘동등한 생활 조건’이라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동독과 서독 간의 엄청난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했다(Volkman, 2018).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생활조건의 동서격차는 독일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지만, 독일 전체 지역을 동등성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또한 도시개발에서 사회 및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1999년 처음 시작된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 프로그램은 도시 재개발, 교육, 통합 및 고용 서비스에 재정 지원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문제에 대한 체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BMI, 2020). 이 프로그램은 건물을 개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통합 개발 개념, 재정 자원의 공동 활용, 마을 관리자 배치와 같은 지역의 물리적 생활 조건과 사회적 공존을 모두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Göddecke-Stellmann & Kocks, 2007).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구동독 도시정비’ 프로그램(Stadtumbau Ost)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2004년에는 ‘구서독 도시정비’ 프로그램(Stadtumbau West)로 이어졌다.

한편, 공간계획, 공간개발 정책에서 주정부, 지자체의 관점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책적 접근에서 방향 전환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연방정부는 연방주와 함께 독일의 공간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 전략을 개정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p. 15). 2006년에 독일 공간개발위원회가 채택한 ‘독일 공간 개발 기본 원칙과 실천 전략’은 세계화, 인구학적 변화 등 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변화된 기본 조건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1) 성장과 혁신, (2) 생활 필수서비스 확보¹⁵⁾, (3) 자원 보존과 문화 경관 형

15) ‘생활필수서비스 확보(Daseinvorsorge sichern)’라는 지침은 향후 독일의 모든 지역의 생활필수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에 있어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공간 계획의 전략, 표준 및 도구의 방향을 재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인구 집단을 위한 시설과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공 접근성이 포함된다(BMVB, 2006, p. 18)

성을 제시했다(Aring & Sinz 2006, p. 45, 48). 지역정책에 지역 경제발전과 혁신에 대한 주문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생활 필수서비스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이 특징적이다.

2007년에는 연방정부, 연방주, 지방 자치 단체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연방건설부의 주도하에 ‘국가 도시 개발 정책(Nationale Stadtentwicklungspolitik)’이 수립되었다. 이는 2007년 5월 비공식 EU 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유럽 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Leipzig Charter on Sustainable European Cities)’이 도시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국가도시개발정책의 도입과 함께 지역 개발정책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촉진하고 실험하는 시도도 시작되었다. 같은 해 국가 도시 개발 정책은 시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개발 과제에 참여할 새로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와 도시성을 위한 프로젝트 시리즈’를 시작했다.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는 우수 사례 추가 개발에 반영된다(BMWSB, n.d.a).

연방정부는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을 국가도시개발정책의 틀 아래 위치시켰다.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사회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인구 및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중심 출발점이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도시 개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 당국을 지원했다(Deutscher Bundestag, 2014.4.15, p. 15). 연방정부는 연방 기본법 제104b조에 따라 연방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주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보충한다.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의 목적은 (1) 도시와 마을 중심부의 도시 계획 기능 강화 및 역사적 기념물 보호 (2) 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방치된 부동산, 특히 산업, 전환 및 철도 부지와 같이 상당한 도시 기능 상

실을 겪은 지역에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 조성,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개발 대책 으로 제시되었다(Städtebauförderung, n.d.b).

이처럼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은 도시와 마을의 중심지를 확보하고 개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조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건축촉진 프로그램에서 사회통합은 중요한 주제이다. 1999년부터 도시건축촉진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 선도프로그램 ‘사회적도시’는 2020년부터 새로운 명칭 ‘사회적 결속’(Sozialer Zusammenhalt) 프로그램으로 재개되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도시와 지역을 안정화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대표적 범부처 사업으로, 단편적인 개별 조치에서 벗어나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¹⁶⁾ 주요 목표는 활기찬 이웃을 만들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도시개발 개념은 개발 사업에서 이웃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한데 모으고, 시민 참여를 도모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57개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의 659개 지원 대상 지역이 재정지원을 받았고, 같은 해 연방지원도 2억 유로로 인상되었다(BMWSB, n.d.b).

3) 지역정책의 최근 변화: GRW 개편

1969년부터 독일 사회의 지역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GRW의 목적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받는 불이익을 조정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BMWK, n.d.b). 오랜 역사를 가진 GRW 정책은 시기마다 변화를 거쳤

16) 2019년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보고서 ‘독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Unser Plan für Deutschland)’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좋은 삶의 전망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BMI, BMEL & BMFSFJ, 2019, p. 5).

고, 독일 정부 지역정책의 방향성은 GRW 운용에 반영되어 있다.

2022년 12월,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GRW 개혁을 채택했다(BMWK, 2023.10.17). 기존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경제적 인프라 확장에 주력했던 GRW 정책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정책 범위와 과제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개편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독일 지역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림 3-2-1] 2022년 GRW 재정비(GRW-Neuausrichtung 2022)

| 목표 | 일자리 창출 (복지와 성장 촉진) | | 입지적 단점 조정 | | 전환 과정 촉진 (기후보호/ 지속가능성) | |
|------|--|-------------|--------------------|-----------------------------|---------------------------|--|
| 지원분야 | 기업지원 (확장) | | 경제적 인프라 (확장) | 연결과 협력 | | 지역별 생활필수서비스 |
| 출발점 | 중점: 지역별 생산성과 가치 향상 | | 자립적 지역개발 지원 | '투자 전 계획' 원칙 강화 (인프라) | | 지역 매력도 향상 (고용보장/ 전문 전문인력 확보 포함) |
| 기타 | 새로운 개입 논리 (Interventions logik) | 좋은 근로 강화 | 자원 특정 요건 유연성 강화 | 투명성 평가, 근거기반 강화 | | 디지털화/ 지원절차 신속화 |

| | |
|--|--------------------|
| | 변화없음 |
| | 부분적 변화(2023년 중 시행) |
| | 2023년 새로 도입 |

출처: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Status quo und Ausblick," Alm, B., Bornemann, H., 2023.9.13., 1. Jahrestagung 'Regionale Transformation Gestalten,' Rostock.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jahrestagung-regionale-transformation-2023/workshop-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pdf?__blob=publicationFile&v=5, p. 11

이번 GRW 개편을 통해 연방정부는 기후보호 및 지속가능성 제고, 생활필수서비스,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좋은 근로 강화' 등 경제 외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에 개편된 GRW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고려하여 기후보호,

지속가능성, 지역적 불균형 보안을 명시적인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상업부분에 대한 GRW 자금을 수출 강화만이 아닌 지역개발 기반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잠재력을 활용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방의 '혁신기술' 규정에 따라 상업경제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회가 확대되었고, 환경 및 기후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하였다. 경제적 연관성이 명확하고 지역 경제 구조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생활필수서비스에 대한 지원 또한 GRW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 개념이 포함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개발 개념을 새롭게 구상하는 작업에도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다 일관성 있게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과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 조건이다.

한편, 좋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 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승분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GRW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좋은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개발 주제에 대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표 3-2-1〉 제20대 입법 기간의 GRW 재편

| 구분 | 내용 |
|-----------------------------|---|
| 새로운 목표 시스템 | 이전의 GRW가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둔 것에서 나아가 전환과정 촉진, 기후 보호 및 지속가능성, 지역적 불균형 완화로 목표를 확대함. |
| 조정된 개입 논리 | GRW 지원을 수출 지향적 부문 강화만이 아니라 지역 개발 기반 개선, 지역의 생산성 및 부가치창출 잠재력 제고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둠. |
| 자금지원 기회 확대 | 환경 및 기후 보호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 강화(예: 이미 사용 중인 산업 및 상업용 부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 |
|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한 지역 개발의 새로운 추진력 | 연구 중심 기업과 환경 및 기후 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조건 완화(일자리/투자 관련) |
| 생활필수서비스 재정지원 도입 | 생활필수서비스에 대한 조치도 처음으로 GRW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해당 조치가 명확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며, 지역의 매력과 지역 경제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함) |
| 지역 개발 개념의 중요성 증대 | 지역 개발 개념을 포함한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개발 개념을 새롭게 구상하는 작업에도 재정 지원 가능. 주민과 지역 주요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
| '좋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 강화 | 일반적인 적격 지원 대상 사업장 외에도 단체 임금 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단체 협약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년 동안 인건비를 연 최소 3.5% 인상하는 경우 GRW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 증거 기반 강화 | 향후에는 사업자금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프로젝트도 포함하는 등 가능한 포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 지역 개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 교류 | '지역 변화 형성에 관한 연례 컨퍼런스'를 시작하는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주제에 관한 대화와 교류에 중점을 둠. |

출처: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Deutscher Bundestag, 2024.7.5., Drucksache 20/12270.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22/2012270.pdf>, pp. 158-159

나.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원칙: 동등한 생활 조건 보장

독일에서 지역정책은 '생활 조건의 동등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동등한 생활 조건의 확립은 모든 연방 차원의 과제이며 연방정부의 최우선 목표이다(Alm & Bornemann, 2023).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일 내 동등한 생활 조건을 추진한다는 목표는 기본법 제20조 1항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에 암묵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기본법의 여러 조항에서 동등성 또는 생활 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제72조 2항 GG, 제106조 3항 4호 2문 GG 및 제91a항 1항 GG)(Alm & Bornemann, 2023). 연방 영토 내 동등한 생활 조건의 확립에 연방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입법 권한을 갖는다(기본법 제72조 제2항). 뿐만 아니라 동등한 생활 조건의 목표는 공간 계획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공간 계획의 과제 및 지도 원칙 제1절)(Deutscher Bundestag, 2024.7.5.).

연방정부의 공간계획, 재정 및 사회 정책의 기본 목표로서의 ‘생활 조건의 동등성’ 개념은 독일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 가운데 제안되고 합의된 ‘동등성’ 원칙은 이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책 방향으로 설정되었다(Strubelt 2004, p. 251). 1972년 제5차 공간계획 보고서에서 “연방 영토의 모든 지역에서 생활 조건의 동등성”(Deutscher Bundestag, 1972, p. 12)이라는 목표가 공식화되었고, 1975년의 연방 공간 계획 프로그램에는 “연방 영토의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한 주택, 고용 기회 및 공공 인프라 시설을 합리적인 거리와 적절한 환경 내에서 누릴 수 있다면 [...] 동등한 생활 조건이 주어진다”(Deutscher Bundestag, 1975, p. 6)고 명시되어 있다. 1970년대 연방 차원의 공간 계획 정책 문서에서는 모든 지역의 동등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정책적 목표의 전제가 된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처럼 ‘생활 조건의 동등성’이라는 주제는 수십 년 동안 공간 계획 및 지역 개발의 학문 및 정책 영역의 근본적인 관심사였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 공간적 동등성 문제는 현 세대에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Troeger-Weiß, 2022). ‘동등성’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해

는 “지역적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독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 좋은 기본 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BMWK, n.d.a). 실제로 생활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목표는 과거 공간계획 정책 차원에서 주로 고려되었지만,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이제는 생활서비스는 물론 지역내 사회적, 경제적 격차,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Troeger-Weiß, 2022). 이제 동등성 개념은 이전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혁신 ‘기회’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 편의성 제고 등 경제 외적 부분의 향상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2. 동등한 생활 조건 확보를 위한 노력

가.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활동

1) 활동 개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는 2018년 7월 18일, 내각의 결의에 따라 독일의 다양한 지역 개발과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동등한 생활 조건에 대한 행동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Demografie Portal, 2019.7.10). 위원회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다. 2018년 9월에 연방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공동 의장은 연방 농업부 장관과 연방 가족부 장관이 맡았다. 또한 연방정부 문화 및 미디어 위원, 연방정부 구동독 위원, 연방정부 이민, 난민 및 통합 위원, 16개 연방주, 3개 지방정부 산하 기관(Deutscher Landkreistag, Deutscher Städtetag, Deutscher Städte- und Gemeindebund) 등 기타 연방 부처가 대표로 참여했다. 2018년 7월

18일 연방 내각의 위원회 설립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6개의 전문가 실무 분과(FAG)에서 다음 주제를 다루었다(BMI, BMEL & BMFSFJ, 2019).

- 실무분과 1: 지자체 노후 부채
- 실무분과 2: 경제 및 혁신
- 실무분과 3: 공간 계획 및 통계
- 실무분과 4: 기술 인프라
- 실무분과 5: 생활필수서비스와 노동
- 실무분과 6: 참여와 사회 통합

전문가 실무분과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학계, 기업 및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집중적인 협의 끝에 2019년 5월 분석 및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무 부처는 위원회의 작업과 전문가 실무 분과의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독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 (Unser Plan für Deutschland) - 모든 곳에서 동등한 생활 조건’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 즉 불평등한 생활 조건과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추가 개발하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독일을 위한 우리의 계획’ 보고서의 서문에는 “농촌과 도시 지역을 지속 가능한 매력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살기 좋으며 인구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제안”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되었다(BMI, BMEL & BMFSFJ, 2019, p. 5). 독일 모든 지역(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의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독일의 번영과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개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저렴한 주택, 현대적인 이동 수단,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쇼핑 시설, 어린이집, 학교, 돌봄 및 의료 시설 같은 사회 기반 시설, 활기찬 스포츠, 문화 및 레저 시설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정책의 우선 과제로서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작업을 구성하며,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도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주, 지방 당국, 기업 및 시민 사회 모두 독일의 미래를 위한 현대화 작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BMI, BMEL & BMFSFJ, 2021).

나아가 연방 내각은 2019년 7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연방정부가 채택한 12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 3-2-2〉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12개 우선순위 분야

| 구분 | | 내용 |
|----|---------------------------------|--|
| 1 | 독일 전역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 연대 협정 II의 만료에 따라 연방정부는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전국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 |
| 2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일자리 창출 |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또는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로 중소 도시에 공공기관 및 연구 기관의 신규 정착과 분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
| 3 | 광대역 및 모바일 통신의 전국적 확대 |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광케이블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음. |
| 4 | 농촌 지역의 이동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 환경친화적이고 포괄적이며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할 계획. 또한 정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 |
| 5 | 마을과 농어촌 지역 강화 | 농촌 지역의 접근 가능한 기본 서비스와 매력적이고 활기찬 마을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빈 건물도 퇴치할 계획. |
| 6 | 도시 개발 및 사회주택 건설 촉진 | 사회주택 건설에 기여하고 2021년 이후에도 사회주택에 대한 연방 기금을 계속 제공 |
| 7 | 지방 자치 단체의 오래된 부채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 찾기 | 원칙적으로 연방 주정부는 지방 당국이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영향을 받는 지자체에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기로 전국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방정부도 기여할 수 있음.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의 회, 연방주, 피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국가적 해결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색할 것임. |

| 구분 | 내용 |
|----|---|
| 8 | 참여와 자원봉사 강화 연방정부는 '독일 시민 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의 조직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
| 9 | 아동 보육의 질과 참여 보장 유아 부문, 초등학교, 청소년 복지, 청소년 및 학교 사회사업의 서비스를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연방정부는 2022년 이후에도 아동 보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임. |
| 10 | 배리어프리(Barrierefreiheit) 실현 독일 전역,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연방주 및 지방 당국을 위한 지원 시스템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에 포함됨. |
| 11 | 주민간 교류 촉진 우호적인 기본 조건을 조성하여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개발하는 지방 당국을 지원 |
| 12 | 동등한 생활 조건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 모든 입법 제안이 독일 내 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장 및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동등성 점검'). |

출처: "Ergebnisse der 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und Deutschlandatlas vorgestellt," Demografie Portal, 2019.7.10.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19/190710-Ergebnisse-Kommission-Gleichwertige-Lebensverh%C3%A4ltnisse-Deutschlandatlas.html>

한편, 연방정부는 2020년 4월, 이른바 '동등성 점검'을 통해 제안된 법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동등한 생활 조건의 보전 및 증진에 대한 입법의 영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체가 영향 평가의 일부로 적절하게 검토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한다(Deutscher Bundestag, 2024.5.10). 2021년 이루어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정 협정(2021-2025)에서도 평가와 점검,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모든 연방 기금 프로그램은 통일된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여 공간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한다. 그 결과는 정기적인 동등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며, 동등한 생활 조건을 향한 진전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모니터링은 모든 기금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위한 구속력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SPD,

Bündnis 90/Die Grünen, FDP, 2021, p. 128)라고 언급되었다.

나.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의 활동 결과

1) 권고 이행 사항: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 (GFS) 도입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1월 1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esamtdeutsche Fördersystem für strukturschwache Regionen, 이하 GFS)이 도입되었다. 2019년 4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의 ‘경제 및 혁신’ 실무분과는 범독일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지역지원 시스템을 재편하고 이를 공통의 우산 아래 위치시킨 것이다(BMWK, n.d.a). 이는 2019년 7월, 연방정부가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12가지 우선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GFS는 2019년 말에 연대 협정 II(Solidarpakt)가 만료된 후에도, 지역정책 책임을 계속 이행하고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로(BMWK, n.d.a),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한데 묶어 독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 것이다.

GFS는 현재 7개 연방 부처의 2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 또한 진행중이다(Alm & Bornemann, 2023). 목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입지 조건을 개선하여 동등한 생활 여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개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부서별 책임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4.7.5). 제20대 입법 기간(2021~)에 계획

된 GFS 추가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지원 시스템을 더욱 포괄적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GFS의 목표는, 지원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금의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를 평가하며 둘째, 관련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정하고 상호 연계하며, 셋째, 예방적 지역 구조 정책의 측면을 기금 시스템의 틀 내에서 더 많이 고려하도록 검토하는 것이다.

2022년 GFS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의는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의 정의를 따른다(Deutscher Bundestag, 2024.7.5).¹⁷⁾ GFS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만 지원하거나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또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이러한 지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022년 GFS 기금 규모는 42억 유로(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 제외)였다(Deutscher Bundestag, 2024.7.5).

17) GRW 자금 지원 영역은 고용 1인당 국내총생산, 평균 불완전 고용률,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노동 연령 인구 증가율, 인프라 지표 등 네 가지 하위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BMWK, 2024c).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GRW를 통해 매년 6억 유로를 지원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기업 투자 및 비즈니스 관련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BMWK, 2020.1.22).

[그림 3-2-2]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범독일 지원 시스템(GFS)

| 경제 | 사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W(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대출(ERP-Förderkredit KMU) -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 INNO-KOM - 프로그램 시리즈 '혁신과 구조적 변화' -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 혁신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EXIST-Potentiale) -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국제화 프로그램(IS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미래 공작소 (Zukunftswerkstatt Kommunen) -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Mehrgenerationenhaus). 공동체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 |
| 인프라/생활필수서비스 | 기후/환경/지속가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W(인프라, 생활필수서비스) - GAK-통합 농촌 개발 - 도시건축촉진 - 기업 연합 직업 훈련 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지역(Zukunft Region) -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목표 이행을 위한 지자체 모델 프로젝트(KoMoNa) |

주: ① 초록-GRW 지역만 지원, ② 주황-GRW 지역 우선 지원, ③ 빨강-GRW 지역 더 높은 비율 지원
출처: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Deutscher Bundestag, 2024.7.5.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22/2012270.pdf>. p. 155

GFS에는 GRW와 농업 구조 개선 및 연안 보호 공동 과제(GAK)의 일환으로 통합 농촌 개발과 도시개발 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생활필수서비스, 숙련 근로자 양성,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2) 권고 이행 사항: 동등성 점검 도입

2019년 7월,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 '동등성 점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등성 점검의 목적은 연방 법률 초안을 작성할 때 동등성 문제를 고려하고 사람들이 생활 조건의 동등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BMI, BMEL & BMFSFJ, 2021). 2020년 4월, 국무조정실의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는 동등성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은 연방 법률안이 생활 조건의 동등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술적 단계로서의 동등성 점검은 제안된 연방 법률이 불평등한 생활 조건을 감소시키는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또는 강화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검토 대상 분야에는 (i) 지자체의 재정 상황, (ii) 경제 및 혁신, (iii) 이동성 및 디지털 인프라, (iv) 생활필수서비스, (v) 혁신, 결속력 및 참여가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4.7.5).

3) 권고 이행 사항: 독일 지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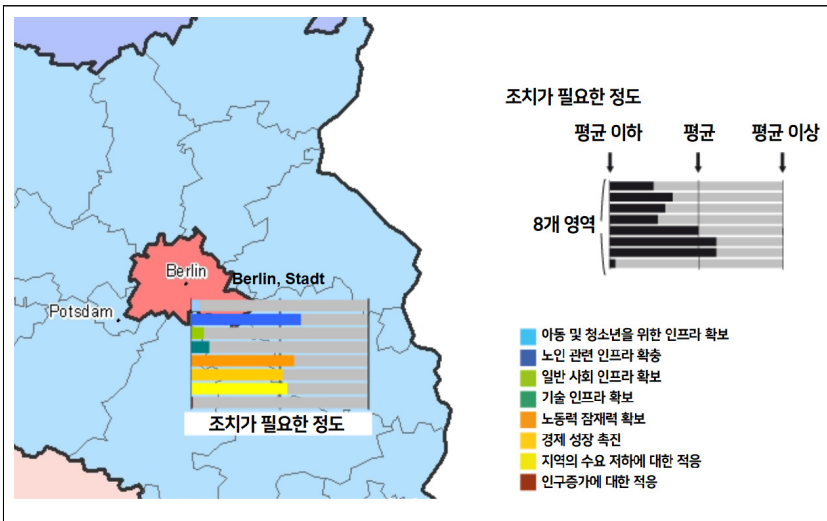
근거기반 지식 산출의 일환으로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는 2020년 농촌 지역,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특정 과제를 강조하는 50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된 ‘독일 지도집’을 발간하여 온라인 버전(www.deutschlandatlas.bund.de)으로 제공하고 있다. 독일 지도집은 총 75개의 대화형 지도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축부, 연방 식품농업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가 공동으로 편찬했다(Maretzke, Hoymann, Schlömer, 2024). 독일과 그 지역의 모든 중요한 삶의 영역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는 이 지도는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생활필수서비스 보호 및 경제력 강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 프로필에서는 외국인 인구의 수와 구조, 이주 및 지역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정책수립에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BMI, BMEL & BMFSFJ, 2021).

독일지도집은 조치가 필요한 8개 영역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보’, ‘노인 관련 인프라 확충’, ‘일반 사회 인프라 확보’, ‘기술 인프라 확보’, ‘노동력 잠재력 확보’, ‘경제 성장 촉진’, ‘지역의 수요 저하에

대한 적응’, ‘인구증가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포털은 각 영역에 대해 지역별로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화형 지도의 일부를 예시(베를린 지역)로 제시하면[그림 3-2-3]와 같다.

지도에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베를린 지역은 노인 관련 인프라 확충, 노동잠재력 확보 수준에서 평균 이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성장 촉진, 지역의 수요 저하에 대한 적응에 대한 조치 필요성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확보, 일반 사회 인프라 확보는 조치 필요성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베를린 지역 정보 예시



출처: “Informationen zum demografischen Wandel in Ihrem Kreis oder Ihrer kreisfreien Stadt”, BBSR, n.d. Brandenburg-Berlin. https://imagemap.bbr-server.de/demographie/Brandenburg_Berlin.html

4) 동등성 보고서 발간

2024년 7월 3일, 연방 내각에서 채택된 동등성 보고서(Gleichwertigkeitsbericht)는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생활 조건을 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하여”라는 부제로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독일의 400개 농촌 지역과 독립 도시 모두의 생활 여건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경제력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지역별 GDP, 실업률, 중위소득 등), 사회 지표(교육수준, 의료서비스 접근성, 주거 조건 등), 환경 지표(대기질, 녹지 공간 비율,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 등)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정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BMWK, 2024).

경제, 사회, 생활필수서비스 인프라,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3〉 생활의 동등성 분석을 위한 지표 세트

| 경제 (16개 지표) | 사회 (12개 지표) | 기반시설 & 생활필수서비스 (8개 지표) | 기후 및 환경 (6개 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 • 지방세 수입 • 실업률 • 장기 실업률 • 중위소득 •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 인력 중 숙련노동자(요구수준 2) 비율(Fachkraft) • 사회보험료 납부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변화 • 출산율 • 노년부양비 • 1인 가구 비중 • 기대 수명 • 조기사망률 • 형사 범죄 • 남성 부모수당 지급 비율 • 학사학위 이상 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관의 접근성 • 슈퍼마켓의 접근성 • 소아과 의사 밀도 • 의료 시설 접근성 • 만 3세 미만 보육률(Betreuungsquote) • 3~6세 아동 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오염 • 이산화질소 오염 • 토지 피복 수준 • 전체 면적에서 산림 면적 비율 • 주거용 건물의 밀도 • 오존 오염 |

| 경제 (16개 지표) | 사회 (12개 지표) | 기반시설 & 생활필수서비스 (8개 지표) | 기후 및 환경 (6개 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 인력 중 고숙련 노동자(요구수준3) 비율(Spezialist) ·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 인력 중 전문가(요구수준4) 비율(Experte)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비율 · 성별 임금 격차 · 자영업자 비율 · 성장 산업 분야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 인력 비율 · 서비스 부분 부가가치 · 250인 이상 기업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 인력 비율 · 토지 가격 · 사업자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 외국인 직원 · 외국인 출신자의 실업률 · 2021년 연방 선거 투표율 · 최소 생계보장 수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보육 · 아동당 보육시설 수용 인원(Kitaplätze) · 수영장 접근성 | |

출처: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BMWK, 2024, Für starke und lebenswerte Region en in Deutschland. https://www.bmwk.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aft/gleichwertigkeitsbericht-der-bundesregierung-2024.pdf?__blob=publicationFile&v=84, p. 11

동등성 보고서는 위의 지표를 근거로 개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지역 격차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격차는 대부분 영역에서 감소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요 경제지표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감소했고, 각종 사회지표(출산율, 기대수명)와 환경 지표(미세먼지 오염 등)에서도 지역격차가 개선되었다. 반면 토지 가격, 노년부양비 등 일부 개별 지표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MWK, 2024c).

덧붙여, 보고서는 연방정부 지역정책의 효과에 관심을 두고 GFS 프로

그램의 공간적 효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GFS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경제력, 고용 수준, 임금, 연구 개발 활동, 광대역 인프라 등을 강화하며, 지역의 순 이동도 개선하였지만, 투명성, 집중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FS의 추가 개발, 지역정책 조치의 더 나은 연계, 데이터 기반의 추가 개선, 지역적으로 효과적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강화 및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동등성 점점을 새로운 법률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국가 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BMWK, 2024c).

다. 향토정책(Heimatpolitik)

향토정책(Heimatpolitik)은 여러 연방주 간 발전 속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과 연방주 간 격차의 부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주요 정책적 접근이다. 2014년 8월 바이에른주 정부가 향토전략(Heimatstrategie)을 채택하면서 독일 정치에서 향토정책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바이에른에서는 생활 및 근로 조건의 동등성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바이에른 헌법 제3조 제2항)(Demografie Portal, n.d.m). 낙후된 지역에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바이에른의 광범위한 의제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핵심 목표는 주민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동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한 바이에른의 향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향토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특히 바이에른 북부 농촌 지역에 균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광대역 확장, 지역 대중교통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마을

재생 프로젝트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바이에른 향토정책을 모델로 하여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도 2017년에 향토부를 설치하였다. 지역 역사 홍보를 위해서 많은 지역 프로젝트와 협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건물의 보수 공사로 지원하고 있다(Hackenbruch, 2022).

2018년부터 향토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연방정부(대연정) 출범 이후 연방내무부가 연방 내무·건설 및 향토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로 개편되면서 내무부 하에 H부서(Abteilung H)가 신설된 것이다(Böcking & Wassermann, 2018). 지역계획, 지역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단위로 추진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과거 연방농업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8년에 연방내무부에 향토정책을 담당하는 H부서가 신설된 이후에는 관련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H부서 신설의 성과로, 탄광 지역의 구조적 변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폐철도 노선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7개 연방주에 12개의 새로운 관공서 설립 등을 꼽았다.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활성화와 국민인식 제고에도 기여했다(Bayerische Staatszeitung, 2021.5.28).

3. 소결

최근 독일 인구정책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독일은 특히 고령화 수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지역 편의시설의 가용성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대도시에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반면, 많은 농촌 지역에는 빈집, 빈 건물이 장기

간 방치되고 있다.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한다는 접근은, 독일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개념으로,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개념을 강조하고,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다. 연방 프로젝트가 생활 조건의 동등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기에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동등성 점검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통독 이후 독일의 균형발전 정책은 동독 재건과 동서독 생활 격차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서 격차 완화 노력은 연대협약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GFS라는 새로운 틀, 즉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전국적 프로젝트에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격차완화 매커니즘을 통해 독일은 각 지역의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등한 생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12가지 조치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국적 재정 지원 시스템, 광대역 및 이동 통신의 전국적 확대, 농촌 지역의 이동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같은 투자 조치가 포함된다. 동시에 참여와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지자체 내 시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비투자적 조치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12가지 구조적 및 지역 정책 조치 외에도 동등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연방주 간의 재정 평등화, 사회보장 시스템,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 정책, 환경 및 기후 정책, 가족 및 문화 정책 등이 포함된다(BMI, BMEL & BMFSFJ, 2021, pp. 73-100). 한편, 연방정부의 연정 협정은 모든 연방 기금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간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기적인 동등성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며 생활 조건의 동등성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공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기금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위한 구속력 있는 근거로

간주된다(Bundesregierung, 2021, p. 102).

독일 지역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 경제적 인프라 확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GRW 프로그램의 범위와 과제가 2023년에 크게 확장되었다. 이제는 GRW를 통해 기후보호 및 지속가능성 고려, 지역별 생활필수서비스, 지역 매력도 향상, ‘좋은 근로 강화’ 등 경제 외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가시적 성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경제정책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되, 삶의 질적 측면에서 ‘좋은 근로’ 기회를 마련하고, 필요한 생활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둘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동등한 생활 조건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로 ‘자원봉사 활동 강화’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독일 시민 참여 및 자원봉사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의 조직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안에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작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를 위한 기회와 계기 마련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외에도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지역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역별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은 독일 사회가 의사결정에서 중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지방정부는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의 광대역 확장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기회 또한 확대하고 있다(BMWK, 2024b).

셋째, 주정부 단위에서 처음 시도된 향토정책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토정책의 범위는 광대역 확장, 지역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마을 재생 프로젝트, 전통문화 보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고, 이를 홍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기회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토정책의 전국적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3절 이민자 국가로의 전환과 인구정책

1. 이민자의 증가 및 이민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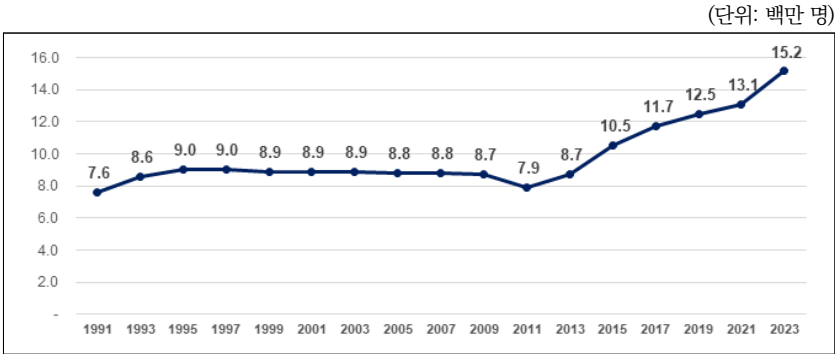
가. 이민자의 증가 현황

1) 외국인 및 이주 배경 인구 유입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독일 내 외국인 수는 13,895,86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2.13.). 지난 50년 동안 독일에서 외국인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Haist et al., 2023).¹⁸⁾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 확대 이후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증가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으로부터의 난민 이주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1974년에는 독일에 거주하는 인구의 6.5%만이 외국인이었으나,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Statistisches Bundesamt, 2022, Haist et al., 2023, p. 25에서 재인용).

[그림 3-3-1] 독일 내 외국인 인구 비중(199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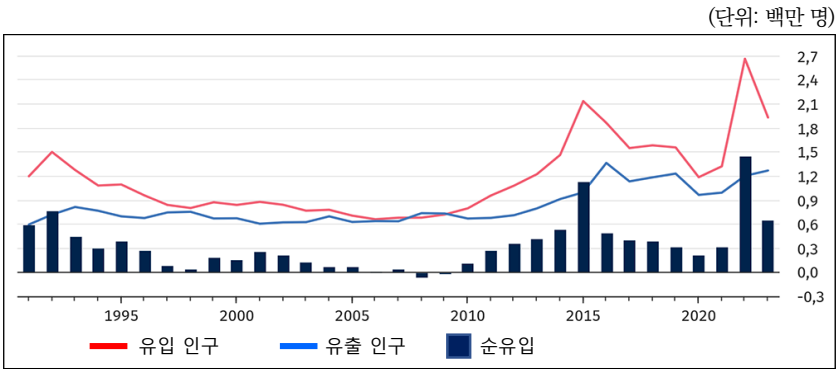
출처: "Anteil der ausländischen Bevölkerung an der Gesamtbevölkerung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23," Statista, 2024.6.10.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4271/umfrage/deutschland-anteil-auslaender-an-bevoelkerung>

2022년 마이크로센서스 결과 기준, 독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는 약 2,3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BMI & BAMF, 2024, p. 155). 이주 배경을 가진(mit Migrationshintergrund) 인구는 독일 가구의 총인구 중 현재 독일 시민(국적자)이 아닌 사람, 출생 시 독일 시민(국적자)이 아니었던 사람, 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출생 시 독일 시민(국적자)이 아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주 배경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독일 국적 소지자이며, 3분의 2는 본인이 직접 이민을 경험(mit eigener Migrationserfahrung)한 경우이다. 즉, 이민자, 이민자의 자손, 국제결혼 가구의 자손이 모두 이주 배경 인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 이민을 경험한 인구의 평균 독일 거주 기간은 약 21년이지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39.7%가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였다(BMI & BAMF, 2024).

다음으로, 연간 인구 유출입의 추이는 [그림 3-3-2]와 같다. 2023년 독일의 유입 인구는 약 1,933,000명, 유출 인구는 약 1,270,000명이었다. 2023년 유입 인구는 전년도(약 2,666,000명)보다 약 28% 감소하였

고, 유출은 전년도(약 1,204,000명) 대비 5% 증가하였다. 순 유입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연도 내에서 2023년은 순 유입 인구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2022년, 2015년, 1992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2] 독일의 인구 유입 및 유출(199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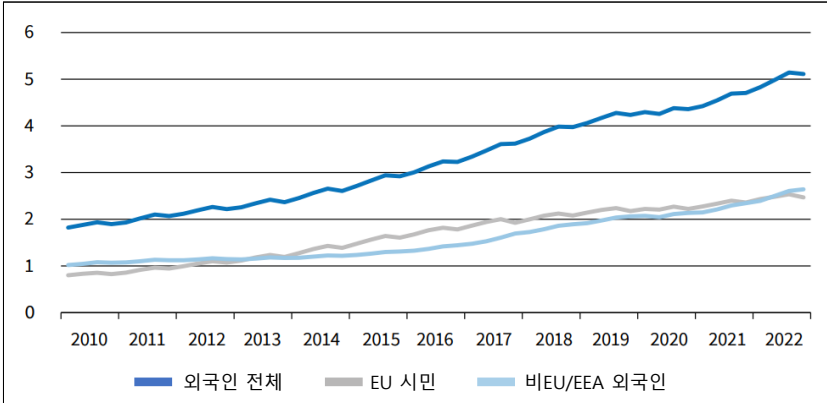


출처: “Nettozuwanderung 2023 mit 663.000 Personen deutlich gesunken.” Demografie Portal, 2024.6.27,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4/240627-bund-nettozuwanderung-2023-mit-663000-personen-deutlich-gesunken.html>

2022년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74% 이상이 노동가능연령대로 확인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2, Haist et al., 2023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이미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 12월에는 독일 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약 22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에는 약 5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3-3] 독일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2010~2023년)

(단위: 백만 명)



출처: “Demografischer Wandel-bekannte Herausforderungen, neue Gestaltungsmöglichkeiten,” Haist et al., 2023, ifo Schnelldienst, 76(11), 03-32, p. 25, 그림 1.

2) 체류 자격 등의 구분별 이민자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외국인 중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중은 63.2%이며, 주요 출신국은 터키,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순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2.13.). EU 시민 중에서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3-3-1〉과 같이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체류 허가가 불필요한 외국인은 5,369,39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8.6%를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EU 시민으로, 독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체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8,526,46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61.4%였다. 이들 중 기간 제한이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2,644,595명(전체의 19%)이었으며, 이들은 영주권을 보유하여 독일에서 기간 연장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다. 반면, 기간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4,042,570명(전체의 29.1%)이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에서 이민 목적별로 외국인 수를 살펴본 결과, 국제법적·인도적·정치적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2,223,555명(전체의 16%)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들은 난민 인정자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 사유가 965,525명(전체의 6.9%), 노동 목적이 419,285명(3%), 교육(유학) 목적이 254,020명(전체의 1.8%) 등의 순이었다.

한편, 그 외 체류 허가 신청 중인 외국인은 700,875명으로, 전체의 5%였으며, 체류 허가가 없는(임시 체류 허가, 신청 대기, 기타) 외국인은 1,138,425명(8.2%)이었다.

요약하면, 독일의 외국인 인구 중 EU 시민이 38.6%로 비중이 컸으며, 난민 인정자가 16%로 가족, 노동, 교육 목적의 체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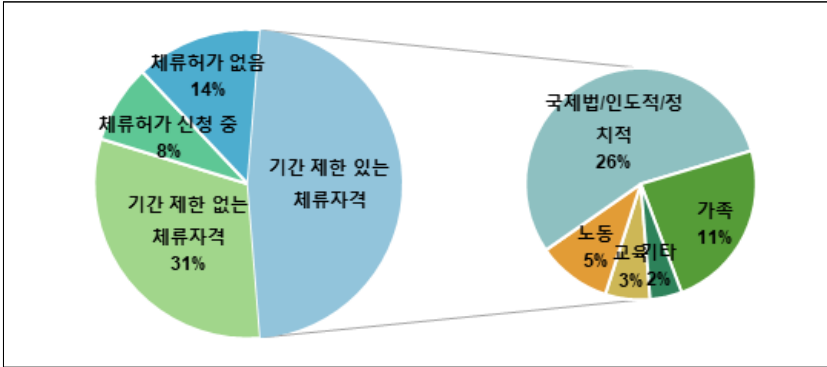
〈표 3-3-1〉 체류 자격 구분별 외국인 수(2023년)

(단위: 명, %)

| 구분 | 외국인 수 | 전체 대비 비중 |
|-------------------------------|------------|----------|
| 전체 | 13,895,865 | 100.0 |
| 체류 허가 불필요 | 5,369,395 | 38.6 |
| 체류 허가 필요 | 8,526,465 | 61.4 |
| 기간 제한 없는 체류 자격 | 2,644,595 | 19.0 |
| 기간 제한 있는 체류 자격 | 4,042,570 | 29.1 |
| 교육 목적 | 254,020 | 1.8 |
| 노동 목적 | 419,285 | 3.0 |
| 국제법/인도적/정치적 사유 | 2,223,555 | 16.0 |
| 가족 사유 | 965,525 | 6.9 |
| 특별 체류 자격 등 | 180,190 | 1.3 |
| 체류 허가 신청 중 | 700,875 | 5.0 |
| 체류 허가 없음(임시 체류 허가, 신청 대기, 기타) | 1,138,425 | 8.2 |

출처: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rechtlichem Status am 31.12.2023,"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auslaendische-bevoelkerung-aufenthaltsrechtlicherstatus.html>

[그림 3-3-4] 체류 자격 구분별 외국인 비중(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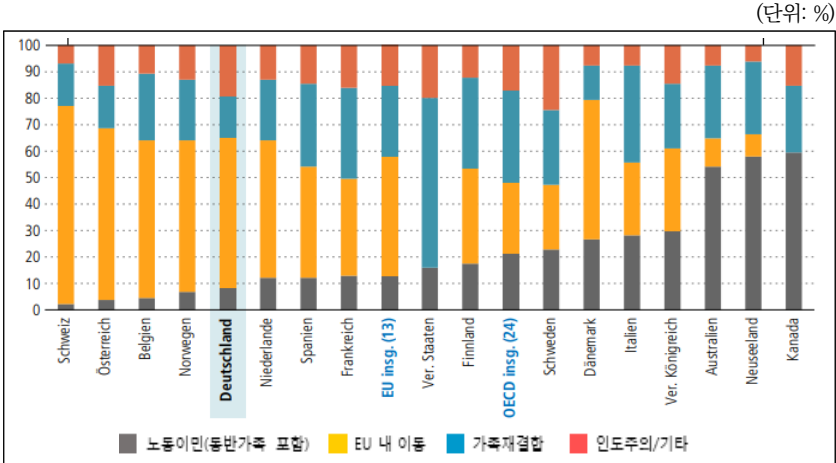


출처: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rechtlichem Status am 31.12.2023,”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auslaendische-bevoelkerung-aufenthaltsrechtlicherstatus.html>

위와 같이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이민 범주는 EU 내 자유로운 이동이다. 2022년 독일에서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 약 64만 명 중 EU 시민은 절반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은 중앙 및 동유럽에서 온 노동 이민자였다(OECD, 2024, p. 7). [그림 3-3-5]와 같이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전체 이민자(2011~2020년) 중 EU 내 이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에 해당한다. 독일에서 이민자의 약 40% 이상이 EU 시민으로서 독일로 온 경우이다. 또한 인도적 사유로 이주한 이민자의 비율도 유럽 내에서 스웨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EU 국가로부터 이민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비EU 국가로부터의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1~2020년 전체 기간 동안 비EU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가족 포함)는 전체의 8%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4%로, 비중이 증가하였다(OECD, 2024, p. 8).

[그림 3-3-5] 유럽 국가별 장기(영구) 이주자들의 체류 목적(2011~2020년)



주: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IMD)의 2011~2022년 자료를 분석함.
출처: “Stand der Intergration von Eingewanderten,” OECD, 2024, p. 7, 그림 2.

독일 내 EU 시민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862,996명에서 2023년에는 5,360,270명으로 약 6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기간 제한 없는 체류 자격은 2010년 1,524,190명에서 2023년 2,644,59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약 1.7배 증가한 수치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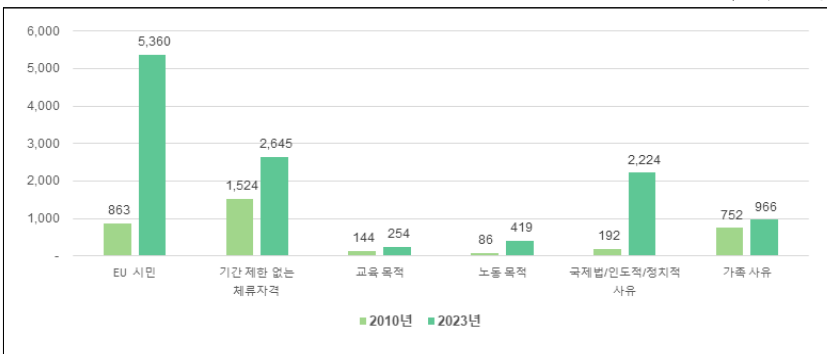
기간 제한이 있는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교육 목적 체류는 2010년 143,636명에서 2023년 254,020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노동 목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에는 85,92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19,285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국제법/인도적/정치적 사유의 외국인 은 2010년 192,352명에서 2023년 2,223,555명으로 매우 크게 늘어났으며, 약 11배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대 중동 지역 난민 증가, 2020년대 우크라이나 난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사유 이민자는 2010년 751,977명에서 2023년 965,525명으로 증가하여, 상대적

으로 증가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요약하면, 특히 EU 시민, 노동 목적 체류자, 국제법/인도적/정치적 사유 체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3-6] 체류 자격별 외국인 수 변화(2010년과 2023년 비교)

(단위: 천 명)



출처: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rechtlichem Status am 31.12.2023,"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2); Statistisches Bundesamt, (2011),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Ausländische Bevölkerung Ergebnisse des Ausländerzentralregisters.

3) 외국인 및 이주 배경 인구의 특성

2023년 마이크로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이주 배경 유무에 따른 가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주 배경이 없는 인구, 즉 이주 경험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중 가족 가구(유자녀 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은 43.2%였고,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는 63.7%로 더 높았다. 반면, 무자녀 커플의 비중은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에서 32.2%로 더 높았으며,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는 17.8%였다. 1인 가구 비율은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에서 24.6%,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 18.6%로,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 내에서 독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비교해보면, 독일 국적의 경우 가족 가구 비율은 외국 국적 인구보다 높았고, 무자녀 커플의 비중은 두 집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인 가구는 외국 국적자가 독일 국적자보다 높았다.

즉,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과 비교할 때 이주 배경이 있는 경우 가족을 구성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주 배경 인구 내에서는 독일 국적자가 가족을 구성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표 3-3-2〉 이주 배경 유무별 가구 유형(2023년)

(단위: 천 명, %)

| 구분 | 전체 | 이주 배경 없는 인구 | 이주 배경 있는 인구 | | |
|--------|----------|-------------|-------------|----------|----------|
| | | | 독일 국적 | 외국 국적 | |
| (계) | (83,822) | (58,944) | (24,878) | (12,392) | (12,486)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가족 | 49.2 | 43.2 | 63.7 | 67.7 | 59.6 |
| 무자녀 커플 | 27.9 | 32.2 | 17.8 | 18.0 | 17.5 |
| 1인 가구 | 22.8 | 24.6 | 18.6 | 14.3 | 22.8 |

주: 개인 단위 수치이며, 가족에는 유자녀 가구, 부부가구, 한부모 가구 모두 포함됨.

출처: "Bevölkerung in Hauptwohnsitzhaushalten der Lebensform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Art der Lebensform,"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a).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familienstruktur.html>

이주 배경 유무에 따른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의 연령대는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비중은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 27.1%로,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국적자(15.7%)의 1.7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 중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수준으로,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들의 고령화 수준을 이주 배경 인구가 소폭 낮춘다고 볼 수 있다.

〈표 3-3-3〉 이주 배경 유무별 연령대(2023년)

(단위: 천 명, %)

| 구분 | 전체 | 이주 배경 없는 인구 | 이주 배경 있는 인구 | | |
|--------|----------|-------------|-------------|----------|----------|
| | | | 독일 국적 | 외국 국적 | |
| (계) | (83,875) | (58,968) | (24,907) | (12,399) | (12,509)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0세 미만 | 19.1 | 15.7 | 27.1 | 34.2 | 20.2 |
| 20~34세 | 18.0 | 16.1 | 22.4 | 17.7 | 27.1 |
| 35~65세 | 41.3 | 42.0 | 39.8 | 35.6 | 43.9 |
| 65세 이상 | 21.6 | 26.2 | 10.7 | 12.5 | 8.8 |

출처: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Altersgruppe n.”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e).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alter.html>

다음으로, 이주 배경 유무에 따른 학력 수준을 비교하면,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중 중등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전체(미취학 및 초등과정 아동 제외)의 98.2%였으며,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는 84.1%로 더 낮았다. 반면,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의 경우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진 비율은 28.4%였고,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는 32.4%로 조금 더 높았다. 중등 과정 학력이 없는 비율은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중에서는 1.8%로 매우 낮았으나,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는 15.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의 학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대학 입학 자격자의 비중은 이주 배경 인구가 소폭 높아 이주 배경 인구 내에서도 학력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 내에서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를 비교하면, 중등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이민자가 82.2%, 이민자 자녀는 95.2%로 이민자 자녀가 더 높았다.

〈표 3-3-4〉 이주 배경 유무별 학력 수준(2023년)

(단위: 천 명, %)

| 구분 | 전체 | 이주 배경 없는 인구 | 부모 중 1인이 이민자 | 이주 배경 있는 인구 | | |
|-----------------------|----------|----------------|--------------------|-------------|----------|---------|
| | | | | 이민자 | 이민자 자녀 | |
| (계) | (69,268) | (50,036) | (2,184) | (17,048) | (14,537) | (2,512) |
| 전체 (미취학, 초등 과정 제외)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중등 과정 이상의 학력 | 94.7 | 98.2 | 96.8 | 84.1 | 82.2 | 95.2 |
| 대학 입학 자격 | 29.8 | 28.4 | 40.0 | 32.4 | 32.5 | 31.8 |
| 전문대학 입학 자격 | 9.2 | 9.3 | 11.7 | 8.7 | 7.8 | 13.8 |
| 동독 폴리테크닉 고등학교 | 6.7 | 9.1 | 1.6 | 0.2 | 0.2 | - |
| 나머지 중등교육 | 49.0 | 51.4 | 43.5 | 42.8 | 41.7 | 49.5 |
| 중등과정 학력 없음 | 5.3 | 1.8 | 3.2 | 15.9 | 17.8 | 4.8 |

주: 나머지 중등교육에는 Haupt-(Volks-)schule, Realschule 등을 포함함.

출처: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Einwanderungsgeschichte und höchstem allgemeinem Schulabschluss,” (2024.4.2b).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einwanderungsgeschichte-schulabschluss.html>

이주 배경 있는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1%로 이주 배경 없는 독일 선주민(53.9%)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소폭 낮았다. 이주 배경 있는 인구 내에서는 독일 국적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48%로 외국 국적자보다 경제활동 참여율(54%)이 낮았다. 다음으로, 전체 인구 대비 실업자 비중은 이주 배경이 있는 인구에서 2.7%로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1.2%)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은 3.5%로, 같은 이주 배경 인구 내에서도 독일 국적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표 3-3-5〉 참고).

한편, 취업자의 직업 현황¹⁹⁾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 중 일반 노동자²⁰⁾의 비율은 15.5%로, 이는 이주 배경이 없

19)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공무원, 사무직, 일반 노동자, 실습생으로 구분함.

는 선주민 취업자(8.8%)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주 배경이 없는 선주민 취업자 중 공무원의 비율은 6.3%인 반면,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 중 공무원 비중은 1.8%에 불과했으며, 당연하게도 외국 국적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취업자 중 사무직 비율은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 선주민, 이주 배경이 있는 독일 국적자, 외국 국적자 순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c.).

〈표 3-3-5〉 이주 배경 유무별 경제활동인구(2023년)

(단위: 천 명, %)

| 구분 | 전체 | 이주 배경 없는 인구 | 이주 배경 있는 인구 | | |
|---------|----------|-------------|-------------|----------|----------|
| | | | 독일 국적 | 외국 국적 | |
| (계) | (83,875) | (58,968) | (24,907) | (12,399) | (12,509)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비경제활동인구 | 47.0 | 46.1 | 49.0 | 52.0 | 46.0 |
| 경제활동인구 | 53.0 | 53.9 | 51.0 | 48.0 | 54.0 |
| 실업자 | 1.6 | 1.2 | 2.7 | 1.8 | 3.5 |
| 취업자 | 51.4 | 52.7 | 48.4 | 46.2 | 50.5 |

출처: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Beteiligung am Erwerbsleben."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c).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beteiligung-erwerbsleben.html>

다음으로, 이주 배경 인구의 산업 분포를 파악하였다. 2023년 마이크로센서스 결과에서 이주 배경이 없는 취업자(독일 선주민)의 산업 분포는 제조업 26.2%, 서비스업(도소매/숙박/운송) 22.6%, 공공서비스업 8.9% 등의 순이었다(기타 제외). 반면, 이주 배경이 있는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업(도소매/숙박/운송)이 31.5%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다음으로 제조업 28%, 공공서비스업 3.5% 등의 순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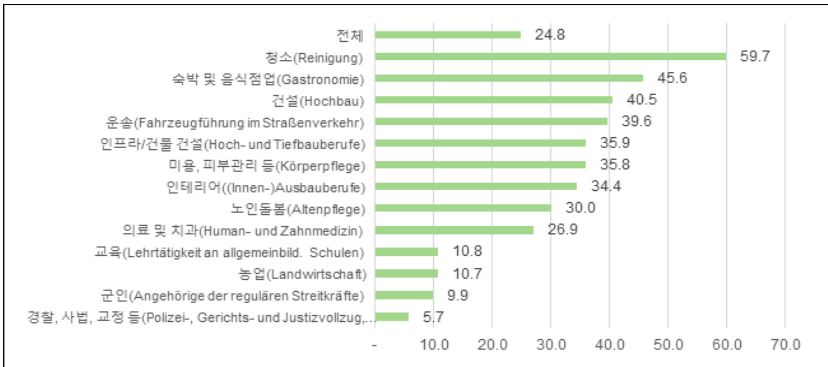
20) 취업자 중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공무원, 사무직, 실습생을 제외한 노동자(Arbeiter) 입.

2024.4.2d).

한편, 외국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이민 이력이 있는(mit Einwanderungsgeschichte) 취업자의 산업 분포는 아래 [그림 3-3-7]과 같다. 전체 취업자 중 이민 이력이 있는 이들의 비중은 특히 청소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15~64세 청소업 종사자의 60%가 이민 이력이 있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그 비율이 45.6%에 달했다. 또한, 건설업이나 운송 관련 업종에서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이민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30%가 이민 이력이 있는 취업자였다. 요약하면, 이민 배경을 가진 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청소업 등의 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7] 직업 구분별 이민 이력이 있는 근로자(고용인)의 비중(2022년)

(단위: %)



주: 2022년 마이크로센서스 데이터에서 15~64세를 기준으로 분석함.

출처: "Pressemitteilung Nr. 081 vom 1. März 2024,"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1.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3/PD24_081_125.html

한편, 독일로 이동한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숙련 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노동 목적 이주자) 수는

2010년 약 30,000명에서 2019년 약 6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숙련 인력 또한 약 19,000명에서 약 39,000명으로 늘어났다(BMI & BAMF, 2024, p. 47). 2022년에는 비EU 출신 노동자 전체(73,065명) 중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Personen mit qualifizierter Tätigkeit)는 61%였고, 숙련 노동자(독일 AufenthaltG 18조에 따른 정의)는 전체의 53.1% 수준이었다. 반면, 명확하게 정의된 자격 수준이 없는 직업을 가진 비율은 39%였다(BMI & BAMF, 2024, p. 48).

나. 이민정책의 변천²¹⁾

1) 초청이민자(Gastarbeiter) 유입(1955~1973년)²²⁾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3년까지 전후 경제 재건과 경제 호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시켰다. 이 시기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선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켰으나, 이들이 장기체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이민까지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독일 고용청 위원회(Kommission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에 의해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었다. 1955년

21) 해당 부분은 아래 참고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Bade, K. J. (1992). Ausländer- und Asyl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rundprobleme und Entwicklungslinien.
- Hanewinkel, V. & Oltmer, J. (2017). Country Profile: Germany 2017.
- Geißler, R. (2014.12.16.). "Migration und Integration".
- OECD. (2024). Stand der Intergration von Eingewanderten, p. 7.
- Martin, P. L. (1981). Germany's guestworkers
- Von Koppenfels, A. K., & Hohne, J. (2017). Gastarbeiter migration revisited: Consolidating Germany's position as an immigration country.

22) 해당 시기 이전의 독일의 외국인력 유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경 재정립으로 옛 독일 점령지에서 추방된 독일실향민(Heimatvertriebene)과 이후 같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귀환 이주민(Aussiedler)이었음.

최초로 독일-이탈리아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스페인과 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와 모로코(1965년), 유고슬라비아(1968년)와 협정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고 독일로 입국시키는 방식은 초청이민자(Gastarbeiter) 제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 스트레스, 건강 부담이 있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최소한의 훈련 기준을 갖춘 비숙련 노동자의 지위를 받아들였다. 초기에는 주로 남성들이 초청이민자로 독일로 들어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일하였다.

초기의 초청노동자 제도는 순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들어 단기 계약 방식이 오히려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196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또한, 터키 같은 특정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에게는 가족 재결합이 금지되는 특별 규정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재결합도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체류와 노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져서 1965년에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이 제정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노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 노동력 모집이 중단될 때까지 약 1,4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독일로 이주했고, 그중 1,100만 명은 일시적으로 독일에 머물렀다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다. 초기의 제도 설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 체류할 것으로 의도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이들 중 많은 수가 출신 국가로 돌아가는 대신 장기로 체류하고 가족과 합류하게 되

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사회에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1973~1980년대 중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일의 외국인 정책(Ausländerpolitik)²³⁾은 주로 추가적인 이민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독일 내에서 외국인의 적응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가족 재결합과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신규 근로자의 이민 없이도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채용 중단 이후에도 독일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 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와 같은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독일은 처음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9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전 총리 하인츠 쿨은 ‘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통합 현황과 향후 방향’(Stand und Weiterentwicklung der Integration der ausländischen Arbeitnehmer und ihrer 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다. 이 ‘쿨 각서(Kühn Memorandum)’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그저 초청노동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로 가정하고 “일시적인” 통합에서 벗어나 원하는 이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23) 1976년 초 정부 문서와 연설에서 “외국인”(Auslän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Von Koppenfels & Hohne, 2017).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독일 정부는 이보다는 보수적인, 통합 관점이 보완된 노동 시장 정책을 고수하였다. 1983년 헬무트 콜 총리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Deutschland ist kein Einwanderungsland”(독일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Sontheimer, 2017.6.22). 즉,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독일을 이민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자 하였고 이민정책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1983년 귀국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Rückkehrbereitschaft)을 제정하여 초청노동자들의 자발적 귀국에 대한 인센티브(귀국 지원금, 독일 연금 수급권 등)를 지원하였다. 이는 초청노동자들의 귀국을 유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980년대 초에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망명 신청자의 증가, 이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이민 상황이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이민정책에 명확한 전망이 없다는 불만이 더해져서 사회 전반의 두려움과 분노가 확산되어 대중들의 방어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노동자 모집 중단에도 가족 이주 등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관점에서의 정착이 현실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는 이민자와의 통합 문제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방어적 이민정책 기조 유지(198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독일의 이민정책은 이주를 억제하고 국경을 강화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²⁴⁾ 하지만 이 시기에 독일 내 난민과 후기 귀환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확대에 의한 문제는 계속되었고, 이 시기는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혁 사이에 정당 간 치열한

24) 1982~1988년은 보수-자유주의 연정의 헬무트 콜 정권이 집권했다.

논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냉전의 종식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독일계 인구가 독일로 이주하였고, 이들이 바로 후기 귀환이민자((Spät-)Aussiedler)이다. 또한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유입되어 독일로 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외국인 유입은 대부분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이민 관련 법·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외국인 노동자 모집 중지(1973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함으로써 독일 경제에 필요한 특정 분야에 한하여 숙련 노동자나 전문가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월 발효된 새로운 외국인법(Das neue Ausländergesetz)에는 영주권, 가족 재결합, 자녀 세대의 법적 권리 및 귀화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동법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국인 국적자를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공식적인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난민 관련 법령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993년에는 새로운 난민법(Gesetz zur Änderung des Asylverfahrensgesetzes)이 등장하고 난민신청자지원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난민법은 1990년대 초 독일로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되어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난민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이민의 점진적 확대 및 관련 법제도 발전(1998년 이후)

이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로 동유럽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독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규모가 증가한 시기이다. 또한 2015년 이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

난민들의 유입 또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들이 다수 독일로 유입되어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이 시기는 독일의 전통적인 이민정책에 변화가 나타난 시기라고 볼 수 있다.²⁵⁾ 1999년,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자동으로 독일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일 국적(시민권)을 조상을 통한 혈통주의(jus sanguinis)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지주의(jus soli)로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부분적으로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다.

2000년 7월 연방정부는 이주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이민위원회(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를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이민 장려, 통합 강화'(Zuwanderung gestalten, Integration fördern)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일은 사실상 이민 국가이다"(Deutschland ist de facto ein Einwanderungsland)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민자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로 독일 망명 절차 간소화 및 불법 이민에 대응하는 일관되고 유연한 이주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민정책에 대한 정당 간의 논쟁과 협상 끝에 이민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독일의 이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외국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U 내 이주 관련 사항, 실향민, 난민 및 인도적 체류 관련 사항, 영주권 등의 체류 허가 관련 사항, 외국인 노동자

25) 1998년부터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집권하였다.

관련 사항, 사회통합정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령이며, 특히 이민자들의 통합 촉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2000년대부터는 비EU 국가에 대해서는 숙련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어서 시행되었다. 먼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IT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독일에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4년 중반까지 약 15,000명의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후 2009년 노동이주규제법(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독일 체류를 더 쉽게 허용하고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최소 소득)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2년부터 EU에서 높은 숙련 수준의 제3국 출신 노동자들이 EU 회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블루 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에서도 이 제도를 수용하여 학력과 경력을 갖춘 숙련된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독일의 인정법(Anerkennungsgesetz)이 제정되어 독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출신국에서 획득한 자격을 독일 기준에 맞게 평가받아 독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600개 이상의 자격 기준이 정해진 직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외 자격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 독일은 이주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단순히 이주자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통합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Es reicht nicht aus, ein Land zu sein mit einer hohen Migrationsquote, sondern wir müssen auch zu einem Integrationsland

werden)고 강조하였다(Die Zeit, 2013,04.14). 이어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의 이민정책이 단순히 이민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이주민의 통합과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가. 정책의 변화 내용과 배경

1) 숙련인력 부족 등의 정책환경 변화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독일 사회는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매년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인력 부족 현황을 분석한 자료(Fachkräfteengpassanalyse)를 발표해 왔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3).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숙련인력 수요는 여전히 높았고, 2023년 4분기에는 170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183개의 직군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확인되었는데, 일자리 부족 현상은 주로 간호, 의료, 건설 및 IT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간호사, 의료보조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했고, 고급 기술을 요하는 건설, 배관, 전기 기술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IT 전문가 등의 직군에서 높은 수요에 비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인력 부족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 가운데, 에너지 기술 분야,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화 기술 분야는 대부분의 연방주에서 인력 부족이 확인되었다.

숙련된 노동자의 이민과 이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일은 노동 공급

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숙련된 노동력과 노동력의 이민 증가, 노동력 참여율 증가와 근로 수명 연장 등 국내 고용 잠재력의 활성화는 노동력 잠재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2) 2020년 이후 숙련 인력 관련 이민정책의 변화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의 특징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숙련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FEG)이 시행되어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 숙련 인력들이 독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후 2023년, 동법 개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EU)블루 카드의 새로운 설계,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대학 학위를 가진 숙련 인력에 대한 규정 변화, 독일에서 취업 가능한 숙련 직업의 확대, 기회 카드 도입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Die Bundesregierung, 2024.6.3) 독일은 이전까지 비EU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²⁶⁾의 방식이나 특정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를 통해 입국을 허용하였으나,²⁷⁾ 위와 같은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비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에 대한 문호가 더 개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정부는 숙련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민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며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 또한 가속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도입하였다(BMF, 2024). 연방정부는 숙련 노동 전략을 제시했고, 입법부는 2024년 6월 1일까지 3단계로 시행될 숙련 노동 이민의 추가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조례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현대적이면서도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틀을 구성했다(BMF, 2024). 자세한 내용을 시기별로

26) 독일 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며, 규정된 직업군으로 제한하여 고용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후 고용할 수 있음.

27) 이외에는 비EU 유학생이 국가 인정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최대 18개월간 구직 목적의 체류 허가 연장이 가능함.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20년 3월 1일부터 독일로의 노동 이민에 대한 중요한 법적 변화인 숙련인력이민법(FEG)을 시행한 것은 비EU 국가 출신 숙련 노동자들에게 독일로의 이민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BMI & BAMF, 2024). 이 법은 숙련인력의 개념 정의, 비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의 노동시장 접근 개선, 공인 자격을 갖춘 숙련 인력에 대한 우선순위심사(Vorrangprüfung)²⁸ 일부 면제 및 직군 제한 폐지, 숙련 인력의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며, 또한 숙련 인력을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 신속화 등은 전문적인 경험이나 잠재력을 가진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Die Bundesregierung, 2024.6.3).

2020년, 숙련인력이민법을 도입한 데 이어 연방정부는 2022년 10월에는 숙련인력전략(Fachkräftestrategie)을 채택했다(BMWK, 2023.4.27.). 숙련인력전략은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우선 조치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1. 현대적인 교육훈련체계 구축, 2. 맞춤형 재교육, 3. 노동시장 내 잠재력 활용, 4. 근로환경 개선 및 직장 문화 개선, 5. 이민정책을 통한 인재 유치였다(Die Bundesregierung, 2022). 이민정책 관련해서는 위 다섯 번째 영역과 같이 해외 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의 독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3년 3월 내각은 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및 하위 법률 조치를 승인했다(BMWK, 2023.4.27). 2023년 6월 연방 내각은 숙련인력이민법을 보완하는 숙련인력이민의 추가 개발에 관

28) 고용주가 비EU 국가 출신 노동자를 채용할 때 독일 또는 EU 국적자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절차를 의미함.

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ng)을 채택하였다(Die Bundesregierung, 2024.6.3.). 이는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의 고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현지 거주 외국인이 본국에서 사전에 비자 절차 등을 밟을 필요 없이 입국 후에 인정 절차를 시작하는 ‘인정파트너십 제도’, 자격증, 어학능력, 경력 등에 기반한 포인트제를 활용하는 ‘기회 카드(Chancenkarte)’ 제도 등이 포함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24.3.21., pp. 11-12).

〈표 3-3-6〉 숙련인력 관련 이민정책 변화(2020년 이후)

| 연도 | 구분 | 주요 내용 |
|------|---|---|
| 2020 | 숙련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인력 개념 정의 - 비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의 노동시장 접근 개선 - 공인 자격을 갖춘 숙련 인력에 대한 우선순위 심사 일부 면제 및 직군 제한 폐지 - 숙련 인력의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
| 2022 | 연방정부의 숙련인력 전략(Fachkräftestrategie) 발표 | 5개 영역에 이민정책을 통한 인재 유치가 포함됨(해외 숙련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독일 정착을 지원) |
| 2023 | 숙련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개정안 채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블루 카드의 새로운 기준 반영: 블루 카드 발급 및 체류 조건 완화 - 인정 파트너십 도입: 외국인 고용 시 기업이 사전 준비작업 없이 입국 후 인정 절차를 통해 고용 가능 - 포인트제도 기반 기회 카드(Chancenkarte) 도입: 포인트 기준에는 자격, 어학능력, 경력, 독일과의 관계, 연령, 동반자의 잠재력 포함 - 단기 비정규직 경로 도입: 수요가 높은 영역 대상으로 자격과 관계없이 8개월 근로 가능한 단기 경로 도입 |

출처: “Fachkräft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Die Bundesregierung, 2022; “Neue Wege zur Fachkräftegewinnung”, Die Bundesregierung, 2024.6.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2182168?utm_source=chatgpt.com; “Kabinett beschließt neues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BMI, 2023.3.29.,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3/03/fachkraefte-kabinett.html>

3)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새로운 숙련 노동 이민법에서 연방정부는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개념을 제시하였고, 앞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숙련인력 이민은 이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요약하면, 이민 3주(柱) 중에 ‘숙련 노동주(柱)’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자격을 갖춘 비규제 직종에 대해 인정된 숙련 노동자에게 개방된다. ‘경력주(柱)’는 전문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비규제 직종에 대한 이민을 가능하게 한다 (Bundesministerium des Finanzen, 2024, p. 28). 또한 인정 파트너십의 틀 내에서 인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서 근로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력주(柱)’는 포인트 시스템에 기반한 구직 기회 카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3-7〉 숙련 노동 이민의 3주(柱) 체계 개요

| 구분 | 내용 |
|--------|--|
| 숙련 노동주 |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모든 숙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 |
| 경력주 |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이 있고 출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로 이민 가능함. 독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음. |
| 잠재력주 | 포인트 시스템에 기반한 구직 기회 카드를 지급함. 선발 기준에는 해당 자격, 독일어 및 영어 능력, 업무 경험, 독일과의 연계성, 나이, 동반 배우자 또는 파트너 등이 포함됨. |

출처: “Neue Wege zur Fachkräftegewinnung,” Die Bundesregierung, 2024.6.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2182168?utm_source=chatgpt.com

① 숙련 노동주(柱)

독일 이민정책의 주된 관심사인 숙련 노동자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했거나 출신 국가가 인정하는 외국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이것이 독일의 전문 자격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입증받은 제3국 출신을 의미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는 모든 자격을 갖춘 (비규제 직종)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다(의료, 간호 및 교육 전문직 같은 실무 면허가 필요한 규제 대상 전문직에는 적용되지 않음)(BMI & BAMF, 2024).

2023년 11월부터 EU 블루 카드에 대한 중요한 간소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²⁹⁾ EU 고급인력 지침에 맞춰서 EU 블루 카드에 대한 조항이 개정된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 학위 소지자로 한정했는데, 그 범위를 확장하여 기능장, 기술자, 경영 관리자 등 동등한 자격과 ICT 분야 전문 경력자(최근 3년간 전문 경력 7년)를 포함하도록 했다.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자격에 부합하는 고용 계약이 요구되는 것은 여전하지만, 급여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숙련된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이민 조건 또한 개선되었다. 이미 회사와 교육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이나 학업을 위해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독일에 입국할 수 있다(Thomas, 2024.4.8).

② 경력주(柱)

2024년 3월부터 숙련 근로자는 본국에서 전문 자격에 대한 공식적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독일 내 비규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출신 국가에서 2년 이상의 국가 공인 전문 자격이나 대학 학위(최소 교육 기간 2년) 또는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최근 5년 내)이 있어야 한다. 비규제 직종의 경우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이 면제되며, 전문 경력이 있는 ICT 전문가의 학위가 아닌 전문 경력 증명만 제출

29) 독일에서 자격을 갖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자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특별 거주 허가이다.

하면 된다. 또한 ‘인정 파트너십’도 경력주에 포함되었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입국 후 즉시 인정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한 적응 교육을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독일에서 인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그동안 직원은 독일의 자격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직원과 고용주는 인정 파트너십을 위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Thomas, 2024.4.8). 인정 파트너십의 기본 요건은 고용 계약 외에도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또는 대학 학위(둘 다 해당 출신 국가에서 인정해야 함)를 취득한 전문 자격과 A2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다(BMI & BAMF, 2024).

③ 잠재력주(柱)

구직을 위한 기회 카드는 독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회 카드는 구직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 근무 또는 파트타임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BDO Legal, 2022.12.6).³⁰⁾ 전문직 또는 대학 자격을 완전히 인정받거나 신청자가 구인 제안/계약을 받았지만 아직 고용을 위한 거주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일회성으로 연장할 수 있다(Thomas, 2024.4.8).

30) 기회 카드는 독일에 머무는 동안 시험 근무(2주)와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제3국 국적자도 독일에 입국하여 연수 장소를 찾을 수 있다.

〈표 3-3-8〉 구직 기회 카드

| |
|---|
| <p>기회 카드 받는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법상 이미 숙련 근로자(독일 또는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 대학 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인 경우 기회 카드 취득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숙련 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회 카드를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전문 자격 또는 외국 대학 학위(취득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 독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일 필요는 없음) - 기본(A1 레벨) 독일어 또는 우수한(B2 레벨) 영어 실력 보유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음 |
| <p>기회 카드(Chancen-Karte) 포인트 모으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인증 센터에서 받은 (부분) 인증 통지서 - 독일어 및/또는 영어 언어 능력 - 해당 전문 자격 또는 대학 학위 분야의 전문 경력 - 병목 직종에 대한 전문 자격/대학 학위 보유 - 기회 카드 신청 시 특정 연령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적이 있음 - 파트너도 기회 카드 요건을 충족하고 기회 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음 |

출처: “Modernes Einwanderungsrecht für ausländische Arbeitskräfte,” BMI, n.d.a, <https://www.bmi.bund.de/SharedDocs/schwerpunkte/DE/einwanderungsland/fachkraefteeinwanderung-artikel.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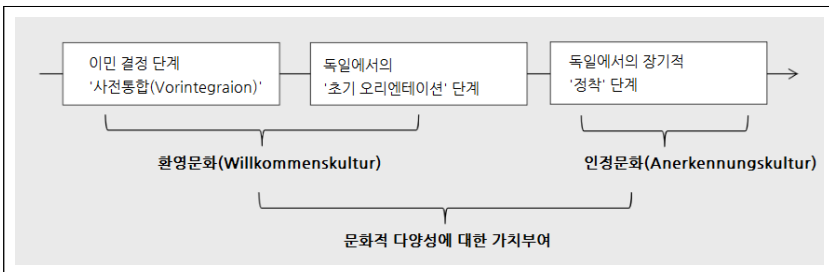
이외에도 추가 조치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단체 협약과 의무 사회 보험을 통해 임금 덤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BDO Legal, 2022.12.6). 이에 따라 서발칸 반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발칸 규정의 일환으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6개국 출신도 자격 증명 없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다(비규제 직종에 한정)(Thomas, 2024.4.8). 원래 2023년 말까지로 제한을 두었던 규정은 삭제되고, 2024년 6월부터는 쿼터 또한 연간 25,000명에서 5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서발칸 규정 외에도 제3국 국적자의 단기 고용도 가능해졌다. 연방고용청(BA)이 경제의 특정 부문이나 직업군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쿼터의 틀 내에서 자격에 관계없이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 근

무를 조건으로 12개월 이내 최대 8개월 동안 임시로 고용할 수 있다(BMI & BAMF, 2024).

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이민자 사회통합은 독일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구조적, 비물질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연방 이민 및 난민청은 2012년 초 전문가 포럼 ‘원탁 수용사회’를 설립했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포럼은 ‘환영 문화’(구조적 차원)와 ‘정치 교육을 통한 문화 간 개방’(비물질적 차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한 두 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었다. “환영 구조가 환영 문화를 만든다”라는 모토 아래 이민 당국, 주 정부 부처 및 지방 당국의 전문가들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국가 지원 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권고안을 개발했다(von Loeffelholz, 2013, p. 22).

[그림 3-3-8] 환영문화와 인정문화 단계모델



출처: “Willkommens- und Anerkennungskultur: Konkretisierung eines Begriffs,” Schamann et al., 2012, p.32.

독일에서 비EU 출신 외국인과 난민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Integrationskurs)를 통해서 총 700시간의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과정

은 총 600시간의 어학 수업과 독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100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역의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제공된다(김유휘 외, 2022). 또한 성인 이민자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주상담센터(Migrationsberatungsstellen)에서 개인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OECD, 2024).

이외에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이 독일에 입국하기 전 사전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일부 제3국에서도 사전 통합 조치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2023년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숙련 노동 이민법 45b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치는 독일에서 숙련 노동자로 일하거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정기적인 이주 경로에 대한 조언, 언어 지원, 독일 생활에 대한 지식 제공, 출신 국가에서 독일 내 지방 당국 수준의 상담 센터로 숙련된 근로자를 동행하는 구조 등이 포함된다(OECD, 2024).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 독일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이민자 사회통합에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이나 보육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김유휘 외, 2022).

다. 난민 보호 강화와 난민 잠재력 활용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난민 신청자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독일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의미한다(BMI, 2023). 2022년 독일에는 약 310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4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에 독일로 온 난민 신청자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며, 이 중 25만 명이 난민 수용 대상자이다.³¹⁾ 2022년에 처음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217,774명으로 2021년(148,233명, 46.9% 증가)보다 많았다. 2022년에 제출된 망명 신청 중 24,791건(11.4%)은 독일에서 태어난 1세 미만 아동의 망명 신청이었다(BMI, 2023).

현재 난민 인정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고용 허가 또는 교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도 독일 전역에서 수천 명에 불과하다. 이에 연방정부는 숙련 노동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민의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하게 거주법과 국적법 추가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사회법 전 2권(SGB II)에 따른 모든 고용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BMF, 2024). 또한 2022년 12월에는 기회거주권법(Chancen-Aufenthaltsrecht)이 발효되어 이미 독일에 장기간 체류하였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18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2023.1.2).

기존에 독일에 거주 중인 난민에게 특정 조건하에서 18개월 동안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난민들에게 영구 거주권 취득을 위해 아직 충족되지 않은 통합 요건을 충족하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BMI & BAMF, 2024).

31)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온 난민은 1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들에게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2022년 3월 4일 처음으로 EU의 “임시 보호 지침”(2001/55/EC)을 시행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비자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망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거주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인도적 보호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2022년에는 총 828,885명이 이 보호 지위를 받아 입국했다(BMI, 2023).

나아가 연방정부는 ‘난민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일자리 터보’를 통해 난민들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BMF, 2024). ‘일자리 터보’는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세 단계의 조치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도착 및 초기 독일어 습득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업센터 통합 과정 수료자가 독일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센터 수료자 지원을 강화하여 난민들이 자신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무 프로필이 자격 조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일자리에 배치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들은 난민들이 언어 능력과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난민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숙련된 노동자로 육성하고 고용을 안정화한다(Deutscher Bundestag, 2024.3.21, pp. 10-11). 이러한 새로운 거주권에 따라 장기 체류 허용자(5년 이상)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독일에서는 최대 10만 명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undesgesetzblatt, 2022).

3. 소결

2023년 기준 독일 내 외국인인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한다 독일의 이민 역사에서 초청이민자, 동유럽 출신 이민자, 여러 시점의 난민 유입 등이 이민자가 증가한 주요 배경이었다. 독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며,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인과 비교해 젊은 연령층이 많아 독일 사회의 고령화를 일부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독일 내 외국인 인구 중 EU 시민이 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난민 인정자 역시 16%에 달해 노동, 교육, 가족 체류 목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2010년과 2023년 사이에는 국제법이나 인도적·정치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 EU 시민, 노동 목적 체류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EU 통합이나 난민 유입 같은 외부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이민이 다수 이긴 하나, 이를 제외하면, 독일 이민정책은 주로 경제적 필요에 맞춰져 있었다. 1950년대의 초청이민자 제도나 2010년대 이후 외국인 숙련 노동자 관련 정책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정책은 부족한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난민 등의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저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는 측면이 있어 최근 독일의 노동 이민 정책은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으며, 2010년대가 지나서야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민 국가로서의 인정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민이 증가하는 현실과,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고령화 문제가 모두 고려된 결과이다.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독일의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숙련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위와 같이 독일 이민정책은 자격을 갖춘 이민에 대한 선택적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난민 수용 증가로 인해 선택적 이민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 지원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독일의 통합정책은 이주 배경 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력과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 이주 배경이 없는 독일인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훈련과 취업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노동인력과 그 가구가 장기적으로 독일에 정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이주 증가, 노동력 부족, 고령화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한 것은 한국의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국제 이주의 확대와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자 했다. 또한, 이민자와 이주 배경 인구의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독일 정부는 초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응 문제를 경험한 후, 최근에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노동력 부족과 같은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민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이 변화해왔으며, 이는 한국도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국민인식조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결과

제4장 국민인식조사

제1절 조사 설계

국민인식조사는 “독일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를 주제로 하여 독일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7월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이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정책에 대한 인식 관련 내용을 질문지에 구성하여 응답받았다.

〈표 4-1-1〉 국민인식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표 모집단 | 2024년도 7월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
| 조사 모집단 | 2024년도 7월 기준 20~49세 이하 독일 거주자 |
| 표본 크기 | 2,500명 |
| 추출 틀 | 2024년 7월 기준 (주)엠브레인컨설팅과 제휴한 해외 패널(독일)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 |
| 표본 배분 | 지역/성/연령별 비례배분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6일~8월 9일 |
| 조사 내용 |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정책에 대한 인식 등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민인식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추출 틀의 경우 위탁 전문조사업체와 보유한 해외패널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본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설계하였고, 표본 설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4-1-2>와 같으며, 표본 설계에 따라 조사 진행 및 완료하였다.³²⁾

<표 4-1-2> 국민인식조사 표본 설계

(단위: 명)

| 지역 | 남성 | | | 여성 | | | 합계 |
|--------------------------|-----|-----|-----|-----|-----|-----|------|
| | 20대 | 30대 | 40대 | 20대 | 30대 | 40대 | |
| ① Baden-Württemberg | 58 | 64 | 56 | 52 | 59 | 56 | 345 |
| ② Bayern | 68 | 76 | 67 | 60 | 71 | 68 | 410 |
| ③ Berlin | 20 | 27 | 20 | 20 | 26 | 20 | 133 |
| ④ Brandenburg | 9 | 12 | 14 | 7 | 12 | 13 | 67 |
| ⑤ Bremen | 4 | 4 | 3 | 4 | 4 | 3 | 22 |
| ⑥ Hamburg | 11 | 12 | 10 | 11 | 12 | 10 | 66 |
| ⑦ Hessen | 32 | 35 | 32 | 29 | 33 | 33 | 194 |
| ⑧ Mecklenburg-Vorpommern | 6 | 8 | 8 | 5 | 8 | 8 | 43 |
| ⑨ Niedersachsen | 39 | 42 | 38 | 35 | 40 | 39 | 233 |
| ⑩ Nordrhein-Westfalen | 90 | 97 | 86 | 83 | 94 | 88 | 538 |
| ⑪ Rheinland-Pfalz | 19 | 22 | 20 | 17 | 21 | 20 | 119 |
| ⑫ Saarland | 4 | 5 | 4 | 4 | 5 | 5 | 27 |
| ⑬ Sachsen | 16 | 21 | 21 | 14 | 19 | 19 | 110 |
| ⑭ Sachsen-Anhalt | 8 | 10 | 11 | 7 | 10 | 10 | 56 |
| ⑮ Schleswig-Holstein | 13 | 15 | 14 | 12 | 14 | 14 | 82 |
| ⑯ Thüringen | 8 | 10 | 11 | 7 | 9 | 10 | 55 |
| 총합계 | 405 | 460 | 415 | 367 | 437 | 416 | 2500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민인식조사 내용은 <표 4-1-3>과 같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 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표본 추출을 진행하였다.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동일한 설문지로 진행한 한국인 대상(20~49세 남성 2,500명)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4-1-3〉 국민인식조사 세부 내용

| 조사 영역 | 세부 조사 항목 |
|---------------------|--|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및 유형, 최종학력, 파트너/배우자 여부, 혼인상태, 자녀 여부 및 자녀 수, 자녀 연령 및 동거 여부, 가구원 수,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및 유형, 배우자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및 유형, 가구 월소득, 생활 여유 정도, 실업 가능성 정도 |
|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녀 출산 시 삶에 미치는 영향력, 가사 및 돌봄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
|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의 개인 성공을 위한 요인, 현재 대비 부모와 자녀 세대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
|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직장에서의 인구정책 활용 가능성,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제2절 조사 결과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영역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독일인 2,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독일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교육, 혼인상태, 자녀 여부, 취업 여부, 가구소득, 가구 유형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1.2%, 여자 48.8%이며, 연령대는 35~39세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44세(18.6%), 30~34세(16.2%) 순으로 응답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유형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33.0%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24.8%, 소도시가 23.4%, 농촌지역이 18.8%로 응답자 중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가 2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가 25.0%,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가 23.6%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혼인상태는 동거/사실혼이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법률혼은 28.9%, 미혼은 27.4%였다. 조사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48.2%, 자녀가 없는 경우는 51.8%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 여부는 취업한 상태인 응답자가 81.3%로 현재 대부분 일자리가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월 소득은 2,000유로 미만인 가구 25.2%, 2,000~3,000유로인 가구 24.5%, 3,000~4,000유로인 가구 21.4%, 4,000유로 이상 가구 28.9%였으며, 4,000유로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조사 대상자의 월 소득별 가구의 비율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4-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 분 | | 사례 수 | 비율 |
|-------|------------------------|-------|-------|
| 합계 | | 2,500 | 100.0 |
| 성별 | 남자 | 1,280 | 51.2 |
| | 여자 | 1,220 | 48.8 |
| 연령 | 20~24세 | 385 | 15.4 |
| | 25~29세 | 387 | 15.5 |
| | 30~34세 | 406 | 16.2 |
| | 35~39세 | 491 | 19.6 |
| | 40~44세 | 464 | 18.6 |
| | 45~49세 | 367 | 14.7 |
| 지역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824 | 33.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621 | 24.8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584 | 23.4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471 | 18.8 |
| 교육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609 | 24.4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591 | 23.6 |
| | 직업교육 수료 | 675 | 27.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625 | 25.0 |
| 혼인상태 | 미혼 | 684 | 27.4 |
| | 동거/사실혼 | 969 | 38.8 |
| | 법률혼 | 723 | 28.9 |
| | 이혼/별거/사별 | 124 | 5.0 |
| 자녀 여부 | 자녀 있음 | 1,205 | 48.2 |
| | 자녀 없음 | 1,295 | 51.8 |
| 취업 여부 | 취업 | 2,033 | 81.3 |
| | 비취업 | 467 | 18.7 |
| 가구소득 | 2,000유로 미만 | 630 | 25.2 |
| | 2,000~3,000유로 미만 | 612 | 24.5 |
| | 3,000~4,000유로 미만 | 535 | 21.4 |
| | 4,000유로 이상 | 723 | 28.9 |

| 구 분 | | 사례 수 | 비율 |
|-------|----------------------|------|------|
| 가구 유형 | 무자녀 미혼 | 593 | 23.7 |
| | 유자녀 미혼 | 91 | 3.6 |
| | 무자녀 기혼 ¹⁾ | 702 | 28.1 |
| | 유자녀 기혼(1자녀) | 560 | 22.4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554 | 22.2 |

주: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취업 여부는 SQ9. Welche der folgenden Kategorien beschreibt Ihre Haupttätigkeit in der vergangenen Woche am besten?(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항을 재가공하였음. 취업은 “① Arbeit(일하였음)”, “② Vorübergehende Abwesenheit/Urlaub (Beschäftigungsunterbrechung)(일시휴직-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에 해당하는 응답값, 비취업은 “③ Aus- bzw. Weiterbildung(Teilnahme an Aus-/Weiterbildungsmaßnahmen ohne bestehen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교육·훈련)” “④ Ohne Beschäftigung, stellensuchend(일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했음)”, “⑤ Ohne Beschäftigung, nicht stellensuchend(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음)”, “⑥ Gesundheitsbedingte Arbeitsunfähigkeit(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⑦ Bundesfreiwilligendienst oder Soziales Jahr(사회복무 또는 군복무)”, “⑧ Hausarbeit und Kinderbetreuung(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에 해당하는 응답값임.

2.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

향후 결혼에 대한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46.5%), “결혼할 생각이 없다”(25.8%), “생각해 본 적이 없다”(15.5%), “아직 결정해보지 못했다”(12.2%)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25.8%)의 경우 한국(24.2%)에 비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독일 15.5%, 한국 5.4%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7.9%)이 여성(44.9%)보다 “결혼할 생각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과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연관성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01$). 연령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혼인상태가 동거/사실혼일 경우에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경우(47.7%),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경우(59.2%)에도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여부($p < 0.05$), 가구소득($p < 0.001$)과 결혼 의향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제적인 안정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인의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결과로 “낳지 않을 생각이다(39.7%)”, “낳을 생각이 있다(38.6%)”,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12.8%)”, “생각해 본 적이 없다(8.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낳을 생각이다”의 경우 독일(38.6%)이 한국(31.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낳지 않을 생각이다”의 경우 독일(39.7%)이 한국(47.3%)보다 낮게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2.3%)이 여성(31.2%)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낳을 생각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p < 0.001$), 연령($p < 0.001$)과 자녀 출산 의향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경우(39.8%), 비취업자(33.6%)보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을 생각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향후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취업 여부($p < 0.01$), 가구소득($p < 0.001$)과 향후 자녀 출산 의향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경제적 안정성과 자녀 출산 의향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 구 분 | | 결혼할 생각이 있다 | 결혼할 생각이 없다 | 생각해본 적 없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합계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 46.5 | 25.8 | 15.5 | 12.2 | (1,777) | 100.0 |
| 한국 | | 52.9 | 24.2 | 5.4 | 17.6 | (1,383) | 100.0 |
| | | χ^2 22.300*** | | | | | |
| 성별 | 남자 | 47.9 | 24.2 | 18.2 | 9.7 | (944) | 100.0 |
| | 여자 | 44.9 | 27.6 | 12.5 | 15.0 | (833) | 100.0 |
| | | χ^2 234.851*** | | | | | |
| 연령 | 20~24세 | 65.0 | 11.3 | 14.7 | 9.0 | (354) | 100.0 |
| | 25~29세 | 61.6 | 13.8 | 13.2 | 11.4 | (333) | 100.0 |
| | 30~34세 | 52.4 | 22.9 | 15.3 | 9.5 | (275) | 100.0 |
| | 35~39세 | 36.7 | 28.2 | 20.4 | 14.7 | (319) | 100.0 |
| | 40~44세 | 29.9 | 40.2 | 16.8 | 13.1 | (291) | 100.0 |
| | 45~49세 | 21.0 | 49.8 | 11.7 | 17.6 | (205) | 100.0 |
| | | χ^2 7.190 | | | | | |
| 지역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46.1 | 28.2 | 15.3 | 10.4 | (588)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46.0 | 22.9 | 17.1 | 14.0 | (450)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47.8 | 25.5 | 14.7 | 12.1 | (423)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46.2 | 25.6 | 14.9 | 13.3 | (316) | 100.0 |
| | | χ^2 44.573*** | | | | | |
| 교육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41.6 | 28.0 | 18.0 | 12.3 | (478)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57.2 | 18.1 | 13.9 | 10.8 | (453)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38.7 | 32.2 | 16.8 | 12.3 | (447)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48.9 | 24.6 | 13.0 | 13.5 | (399) | 100.0 |
| | | χ^2 89.309*** |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39.3 | 25.1 | 19.6 | 15.9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54.6 | 23.7 | 12.9 | 8.8 | (969) | 100.0 |
| | 이혼/별거/사별 | 22.6 | 45.2 | 13.7 | 18.5 | (124) | 100.0 |
| | | χ^2 7.184 | | | | | |
| 자녀 여부 | 자녀 있음 | 46.3 | 29.0 | 13.7 | 11.0 | (628) | 100.0 |
| | 자녀 없음 | 46.6 | 24.0 | 16.5 | 12.9 | (1,149) | 100.0 |
| | | χ^2 9.335* | | | | | |
| 취업 여부 | 취업 | 47.7 | 25.7 | 15.5 | 11.1 | (1,416) | 100.0 |
| | 비취업 | 41.8 | 26.0 | 15.5 | 16.6 | (361) | 100.0 |
| | | χ^2 51.532*** | | | | | |
| 가구 소득 | 2,000유로 미만 | 39.5 | 27.7 | 17.4 | 15.4 | (564)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40.9 | 28.6 | 16.7 | 13.7 | (496)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51.8 | 25.9 | 14.5 | 7.8 | (332) | 100.0 |
| | 4,000유로 이상 | 59.2 | 19.2 | 12.2 | 9.4 | (385) | 100.0 |

| 구 분 | | 결혼할 생각이 있다 | 결혼할 생각이 없다 | 생각해본 적 없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합계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χ^2 | | 65.225*** | | | | | |
| 가구 유형 | 무자녀 미혼 | 40.8 | 24.8 | 19.1 | 15.3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29.7 | 27.5 | 23.1 | 19.8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52.7 | 23.2 | 13.8 | 10.3 | (556)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55.1 | 25.0 | 13.1 | 6.8 | (336)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39.3 | 36.3 | 10.4 | 13.9 | (201)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4) 법률훈을 제외한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함

〈표 4-2-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 구 분 | | 날을 생각이다 | 날지 않을 생각이다 | 생각해본 적 없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합계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 38.6 | 39.7 | 8.9 | 12.8 | (2,500) | 100.0 |
| 한국 | | 31.2 | 47.3 | 5.9 | 15.6 | (2,500) | 100.0 |
| χ^2 | | 43.128*** | | | | | |
| 성별 | 남자 | 42.3 | 36.1 | 11.2 | 10.5 | (1,280) | 100.0 |
| | 여자 | 34.8 | 43.4 | 6.6 | 15.2 | (1,220) | 100.0 |
| χ^2 | | 596.184*** | | | | | |
| 연령 | 20~24세 | 65.2 | 12.2 | 10.9 | 11.7 | (385) | 100.0 |
| | 25~29세 | 58.9 | 16.3 | 10.3 | 14.5 | (387) | 100.0 |
| | 30~34세 | 50.7 | 24.9 | 9.4 | 15.0 | (406) | 100.0 |
| | 35~39세 | 33.0 | 44.6 | 9.0 | 13.4 | (491) | 100.0 |
| | 40~44세 | 16.6 | 62.7 | 7.8 | 12.9 | (464) | 100.0 |
| | 45~49세 | 11.4 | 73.8 | 6.3 | 8.4 | (367) | 100.0 |
| χ^2 | | 18.747* | | | | | |
| 지역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40.5 | 38.2 | 9.2 | 12.0 | (824)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40.4 | 36.7 | 8.9 | 14.0 | (621)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37.7 | 38.7 | 10.4 | 13.2 | (584)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34.2 | 47.3 | 6.6 | 11.9 | (471) | 100.0 |
| χ^2 | | 69.245*** | | | | | |
| 교육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36.1 | 37.4 | 12.5 | 14.0 | (60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48.7 | 32.3 | 7.8 | 11.2 | (591)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29.8 | 49.0 | 8.4 | 12.7 | (675)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41.1 | 38.7 | 7.0 | 13.1 | (625) | 100.0 |

| 구 분 | | 남을 생각이다 | 남지 않을 생각이다 | 생각해본 적 없다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합계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χ^2 | | 106.431*** |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38.9 | 34.2 | 11.1 | 15.8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45.8 | 32.3 | 9.5 | 12.4 | (969) | 100.0 |
| | 법률혼 | 31.7 | 50.8 | 6.6 | 10.9 | (723) | 100.0 |
| | 이혼/별거/사별 | 21.8 | 62.9 | 5.6 | 9.7 | (124) | 100.0 |
| χ^2 | | 55.511*** | | | | | |
| 자녀 여부 | 자녀 있음 | 35.9 | 46.8 | 6.8 | 10.5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41.2 | 33.1 | 10.9 | 14.9 | (1,295) | 100.0 |
| χ^2 | | 10.202* | | | | | |
| 취업 여부 | 취업 | 39.8 | 39.4 | 8.9 | 11.9 | (2,033) | 100.0 |
| | 비취업 | 33.6 | 40.7 | 9.2 | 16.5 | (467) | 100.0 |
| χ^2 | | 27.608** | | | | | |
| 가구 소득 | 2,000유로 미만 | 34.8 | 38.6 | 11.7 | 14.9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36.3 | 39.7 | 10.5 | 13.6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39.4 | 41.5 | 7.5 | 11.6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43.4 | 39.3 | 6.2 | 11.1 | (723) | 100.0 |
| χ^2 | | 152.051*** | | | | | |
| 가구 유형 | 무자녀 미혼 | 39.3 | 32.7 | 11.8 | 16.2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36.3 | 44.0 | 6.6 | 13.2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42.7 | 33.3 | 10.1 | 13.8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48.9 | 34.8 | 6.8 | 9.5 | (560)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2.7 | 59.4 | 6.9 | 11.0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2)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

독일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2.35명, 적정 자녀 수는 1.99명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계획 자녀 수 1.74명, 적정 자녀 수 1.58명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계획과 적정 자녀 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남성 2.35명, 여성 2.36명, 적정 자녀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1.99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

로는 25~29세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2.48명, 적정 자녀 수 2.10명으로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별 계획 자녀 수($p<0.05$)와 적정 자녀 수($p<0.001$)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계획 자녀 수는 2.45명, 적정 자녀 수는 2.12명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계획 자녀 수는 2.27명, 적정 자녀 수는 1.88명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계획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획 자녀 수($p<0.01$)와 적정 자녀 수($p<0.001$)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2자녀 이상의 기혼 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3.06명으로 가장 높았고, 1자녀 기혼 가구의 경우 계획 자녀 수가 2.19명으로 가장 낮았다. 적정 자녀 수의 경우 무자녀 미혼(1.93명), 기혼(1.84명)의 경우가 유자녀 미혼(2.07명)이나 1자녀(1.94명), 2자녀(2.30명) 기혼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별 계획 자녀 수($p<0.001$)와 적정 자녀 수($p<0.001$)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4-2-4〉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와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 구 분 | |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 | | | 적정 자녀 수 | | | |
|-----|--------|--------------|------|-------|-------|----------|------|---------|-------|
| |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 2.35 | 0.91 | (966) | 100.0 | 1.99 | 0.89 | (2,500) | 100.0 |
| 한국 | | 1.74 | 0.61 | (780) | 100.0 | 1.58 | 0.83 | (2,500) | 100.0 |
| 성별 | t | -0.212 | | | | 0.031 | | | |
| | 남자 | 2.35 | 0.90 | (541) | 100.0 | 1.99 | 0.92 | (1,280) | 100.0 |
| | 여자 | 2.36 | 0.93 | (425) | 100.0 | 1.99 | 0.85 | (1,220) | 100.0 |
| 연령 | F | 2.749* | | | | 4.554*** | | | |
| | 20~24세 | 2.43 | 0.87 | (251) | 100.0 | 2.10 | 0.96 | (385) | 100.0 |
| | 25~29세 | 2.48 | 0.91 | (228) | 100.0 | 2.10 | 1.00 | (387) | 100.0 |
| | 30~34세 | 2.26 | 0.91 | (206) | 100.0 | 2.05 | 0.91 | (406) | 100.0 |
| | 35~39세 | 2.20 | 0.85 | (162) | 100.0 | 1.94 | 0.82 | (491) | 100.0 |
| | 40~44세 | 2.34 | 0.95 | (77) | 100.0 | 1.89 | 0.84 | (464) | 100.0 |
| | 45~49세 | 2.26 | 1.17 | (42) | 100.0 | 1.92 | 0.76 | (367) | 100.0 |

| 구 분 | |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 | | | 적정 자녀 수 | | | |
|-------|------------------------|--------------|------|-------|-------|-----------|------|---------|-------|
| |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지역 | F | 0.133 | | | | 0.641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2.37 | 0.94 | (334) | 100.0 | 1.98 | 0.93 | (824)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2.33 | 0.89 | (251) | 100.0 | 2.01 | 0.85 | (621)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2.36 | 0.92 | (220) | 100.0 | 2.03 | 0.84 | (584)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2.34 | 0.88 | (161) | 100.0 | 1.96 | 0.91 | (471) | 100.0 |
| 교육 | F | 2.295 | | | | 1.007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2.45 | 1.00 | (220) | 100.0 | 2.02 | 1.04 | (60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2.39 | 0.88 | (288) | 100.0 | 2.00 | 0.90 | (591)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2.22 | 0.85 | (201) | 100.0 | 1.95 | 0.78 | (675)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2.33 | 0.90 | (257) | 100.0 | 2.02 | 0.82 | (625) | 100.0 |
| 혼인상태 | F | 3.707* | | | | 1.702 | | | |
| | 미혼 | 2.34 | 0.81 | (266) | 100.0 | 1.95 | 0.81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2.28 | 0.95 | (444) | 100.0 | 1.98 | 0.98 | (969) | 100.0 |
| | 법률혼 | 2.46 | 0.91 | (229) | 100.0 | 2.05 | 0.85 | (723) | 100.0 |
| | 이혼/별거/사별 | 2.74 | 1.10 | (27) | 100.0 | 1.98 | 0.78 | (124) | 100.0 |
| 자녀 여부 | t | 3.097** | | | | 6.658*** | | | |
| | 자녀 있음 | 2.45 | 0.99 | (433) | 100.0 | 2.12 | 0.86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2.27 | 0.84 | (533) | 100.0 | 1.88 | 0.90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t | -2.414* | | | | -0.857 | | | |
| | 취업 | 2.32 | 0.89 | (809) | 100.0 | 1.99 | 0.88 | (2,033) | 100.0 |
| | 비취업 | 2.53 | 1.02 | (157) | 100.0 | 2.03 | 0.91 | (467) | 100.0 |
| 가구소득 | F | 1.753 | | | | 3.427* | | | |
| | 2,000유로 미만 | 2.42 | 0.97 | (219) | 100.0 | 1.92 | 0.96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2.29 | 0.95 | (222) | 100.0 | 1.96 | 0.86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2.43 | 0.82 | (211) | 100.0 | 2.07 | 0.84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2.29 | 0.90 | (314) | 100.0 | 2.02 | 0.87 | (723) | 100.0 |
| 가구 유형 | F | 25.395*** | | | | 24.699*** | | | |
| | 무자녀 미혼 | 2.34 | 0.81 | (233) | 100.0 | 1.93 | 0.83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2.30 | 0.85 | (33) | 100.0 | 2.07 | 0.68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2.21 | 0.85 | (300) | 100.0 | 1.84 | 0.95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2.19 | 0.85 | (274) | 100.0 | 1.94 | 0.88 | (560)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3.06 | 1.03 | (126) | 100.0 | 2.30 | 0.83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을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본인의 취업상태”, “배우자의 취업상태”, “주거 여건”,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의 가능성”,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정부의 충분한 지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으로 총 11가지를 제시하였고, 중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하여 응답을 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자녀 출산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본인의 건강(4.34점)과 배우자의 건강(4.34점)이었고, 그다음으로 주거 여건(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0점)이었다. 고려 요인 중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3.74점)과 경력 단절의 가능성(3.64점)은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여건(4.56점)과 배우자의 건강(4.54점)이 중요한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본인의 건강(4.54점), 주거 여건(4.37점)으로 나타나 독일인의 중요 고려 요인과 유사하였다. 반면 일-생활 균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요인의 경우 한국은 4.35점으로 주거 여건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었으나 독일의 경우 일-생활 균형 3.90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은 3.74점으로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요인이었다.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취업상태 요인의 경우 남성은 3.76점, 여성은 4.16점, 경력 단절의 가능성 요인의 경우 남성 3.48점, 여성 3.80점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중요 고려 요인이었으며, 평균 차이도 유의미하였다($p < 0.001$).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취업상태, 배우자의 취업상태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p < 0.001$), 가구소득별($p < 0.05$) 평균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교육 수료자의 경우 다른 교육수준의 해당자와 비교하였을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본인의 취업상태, 배우자의 취업상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정부의 충분한 지원 요인을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여부에 따라 중요 요인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5〉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

| 구분 | 가정의 경제적 여건 | | 본인의 건강 | | 배우자의 건강 | | 본인의 취업상태 | | 배우자의 취업상태 | | 주거 여건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4.10 | 1.01 | 4.34 | 0.91 | 4.34 | 0.91 | 4.34 | 0.88 | 3.96 | 0.93 | 4.15 | 0.89 | (2,500) | 100.0 |
| 한국 | 4.56 | 0.63 | 4.54 | 0.60 | 4.56 | 0.59 | 4.37 | 0.75 | 4.24 | 0.87 | 4.37 | 0.67 | (2,500) | 100.0 |
| t | -4.911 ^{***} | | -5.586 ^{***} | | -3.634 ^{***} | | -2.643 ^{**} | | -11.162 ^{***} | | -4.560 ^{***} | | | |
| 성별 | | | | | | | | | | | | | | |
| 남자 | 4.00 | 1.08 | 4.24 | 0.96 | 4.27 | 0.96 | 3.96 | 0.91 | 3.76 | 0.95 | 4.07 | 0.92 | (1,280) | 100.0 |
| 여자 | 4.20 | 0.91 | 4.45 | 0.85 | 4.41 | 0.86 | 4.06 | 0.86 | 4.16 | 0.85 | 4.23 | 0.86 | (1,220) | 100.0 |
| F | 8.221 ^{***} | | 3.595 ^{**} | | 2.533 [*] | | 4.876 ^{***} | | 4.591 ^{***} | | 1.711 | | | |
| 연령 | | | | | | | | | | | | | | |
| 20~24세 | 3.87 | 1.13 | 4.24 | 1.01 | 4.25 | 1.03 | 3.90 | 0.95 | 3.82 | 1.01 | 4.06 | 0.96 | (385) | 100.0 |
| 25~29세 | 4.02 | 1.11 | 4.28 | 1.00 | 4.33 | 0.97 | 3.96 | 0.92 | 3.90 | 0.93 | 4.17 | 0.92 | (387) | 100.0 |
| 30~34세 | 4.02 | 1.08 | 4.27 | 1.01 | 4.27 | 1.01 | 3.95 | 0.91 | 3.89 | 0.97 | 4.11 | 0.94 | (406) | 100.0 |
| 35~39세 | 4.19 | 0.93 | 4.37 | 0.86 | 4.36 | 0.85 | 4.03 | 0.83 | 3.98 | 0.86 | 4.14 | 0.87 | (491) | 100.0 |
| 40~44세 | 4.25 | 0.83 | 4.46 | 0.71 | 4.45 | 0.73 | 4.17 | 0.79 | 4.07 | 0.86 | 4.21 | 0.78 | (464) | 100.0 |
| 45~49세 | 4.18 | 0.92 | 4.39 | 0.87 | 4.34 | 0.89 | 4.02 | 0.91 | 4.05 | 0.94 | 4.20 | 0.90 | (367) | 100.0 |

(단위: 점, 명, %)

| 구 분 | 가정의 경제적 여건 | | 본인의 건강 | | 배우자의 건강 | | 본인의 취업상태 | | 배우자의 취업상태 | | 주거 여건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시례 수 | 비율 |
| F | 1.455 | | 0.947 | | 0.088 | | 0.303 | | 2.508 | | 0.449 | | | |
| 지역 | 4.14 | 1.01 | 4.37 | 0.92 | 4.34 | 0.93 | 4.00 | 0.89 | 3.90 | 0.95 | 4.15 | 0.93 | (824) | 100.0 |
| 대도시 (인구 100,000 이상) | | | | | | | | | | | | | | |
| 중도시 (인구 20,000~100,000) | 4.12 | 0.96 | 4.35 | 0.89 | 4.33 | 0.89 | 4.04 | 0.85 | 3.95 | 0.92 | 4.18 | 0.84 | (621) | 100.0 |
| 소도시 (인구 5,000~20,000) | 4.06 | 1.04 | 4.29 | 0.95 | 4.33 | 0.95 | 4.01 | 0.93 | 3.98 | 0.93 | 4.13 | 0.93 | (584) | 100.0 |
| 농촌 (인구 5,000 미만) | 4.04 | 1.03 | 4.34 | 0.87 | 4.35 | 0.89 | 4.00 | 0.86 | 4.04 | 0.89 | 4.14 | 0.86 | (471) | 100.0 |
| F | 8.956 ^{***} | | 7.155 ^{***} | | 4.923 ^{***} | | 5.070 ^{**} | | 4.777 ^{**} | | 3.450 [*] | | | |
| 교육 | 3.92 | 1.16 | 4.23 | 1.05 | 4.23 | 1.07 | 3.93 | 0.97 | 3.93 | 0.98 | 4.09 | 0.99 | (609) | 100.0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 | | | | | | | | | | |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4.10 | 0.98 | 4.32 | 0.92 | 4.36 | 0.90 | 3.96 | 0.88 | 3.88 | 0.94 | 4.14 | 0.89 | (591) | 100.0 |
| 직업교육 수료 | 4.20 | 0.92 | 4.47 | 0.77 | 4.42 | 0.81 | 4.11 | 0.85 | 4.07 | 0.90 | 4.24 | 0.83 | (675) | 100.0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4.15 | 0.94 | 4.33 | 0.89 | 4.33 | 0.86 | 4.03 | 0.83 | 3.93 | 0.88 | 4.12 | 0.86 | (625) | 100.0 |
| F | 13.070 ^{***} | | 11.352 ^{***} | | 9.209 ^{***} | | 4.540 ^{**} | | 2.329 | | 3.724 [*] | | | |
| 혼인 상태 | 4.20 | 0.90 | 4.41 | 0.84 | 4.38 | 0.84 | 4.09 | 0.84 | 3.97 | 0.91 | 4.18 | 0.88 | (684) | 100.0 |
| 미혼 | | | | | | | | | | | | | | |
| 동거/사실혼 | 3.94 | 1.14 | 4.21 | 1.02 | 4.22 | 1.02 | 3.93 | 0.95 | 3.90 | 0.97 | 4.08 | 0.93 | (969) | 100.0 |
| 법률혼 | 4.18 | 0.90 | 4.44 | 0.81 | 4.45 | 0.82 | 4.04 | 0.84 | 4.01 | 0.90 | 4.20 | 0.85 | (723) | 100.0 |
| 이혼/별거/사별 | 4.27 | 0.81 | 4.40 | 0.84 | 4.35 | 0.81 | 4.01 | 0.81 | 4.01 | 0.90 | 4.27 | 0.89 | (124) | 100.0 |

| 구분 | | 가정의 경제적 여건 | | 본인의 건강 | | 배우자의 건강 | | 본인의 취업상태 | | 배우자의 취업상태 | | 주거 여건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시례 수 | 비율 |
| 자녀 여부 | t | -0.426 | | 0.981 | | 0.688 | | -1.021 | | 0.496 | | 1.334 | | | |
| | 자녀 있음 | 4.09 | 0.99 | 4.36 | 0.92 | 4.35 | 0.91 | 3.99 | 0.88 | 3.97 | 0.92 | 4.18 | 0.88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4.10 | 1.02 | 4.32 | 0.91 | 4.33 | 0.92 | 4.03 | 0.89 | 3.95 | 0.94 | 4.13 | 0.90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t | 1.504 | | 0.761 | | 1.002 | | 3.529*** | | 0.401 | | 0.609 | | | |
| | 취업 | 4.11 | 0.99 | 4.35 | 0.90 | 4.35 | 0.91 | 4.04 | 0.87 | 3.96 | 0.92 | 4.16 | 0.89 | (2,033) | 100.0 |
| | 비취업 | 4.03 | 1.06 | 4.31 | 0.96 | 4.30 | 0.95 | 3.87 | 0.94 | 3.94 | 0.95 | 4.13 | 0.93 | (467) | 100.0 |
| 가구 소득 | F | 2.692* | | 4.343** | | 3.312* | | 4.221** | | 2.479 | | 2.421 | | | |
| | 2,000유로 미만 | 4.00 | 1.12 | 4.23 | 1.02 | 4.24 | 0.99 | 3.91 | 0.97 | 3.90 | 1.00 | 4.08 | 0.97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4.12 | 0.98 | 4.39 | 0.88 | 4.35 | 0.93 | 4.08 | 0.85 | 4.04 | 0.88 | 4.21 | 0.87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4.12 | 0.94 | 4.35 | 0.87 | 4.38 | 0.83 | 4.02 | 0.83 | 3.94 | 0.90 | 4.13 | 0.86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4.14 | 0.97 | 4.39 | 0.86 | 4.38 | 0.89 | 4.03 | 0.86 | 3.94 | 0.92 | 4.18 | 0.87 | (723) | 100.0 |
| 가구 유형 | F | 4.338** | | 4.348** | | 1.801 | | 2.034 | | 0.424 | | 1.698 | | | |
| | 무자녀 미혼 | 4.18 | 0.93 | 4.39 | 0.87 | 4.37 | 0.86 | 4.09 | 0.84 | 3.95 | 0.92 | 4.16 | 0.89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4.33 | 0.72 | 4.55 | 0.67 | 4.45 | 0.72 | 4.08 | 0.82 | 4.08 | 0.81 | 4.34 | 0.75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4.04 | 1.09 | 4.27 | 0.94 | 4.28 | 0.97 | 3.97 | 0.93 | 3.94 | 0.95 | 4.10 | 0.91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4.00 | 1.09 | 4.28 | 1.01 | 4.30 | 1.00 | 3.97 | 0.91 | 3.96 | 0.94 | 4.14 | 0.94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4.14 | 0.91 | 4.41 | 0.84 | 4.39 | 0.84 | 4.00 | 0.85 | 3.95 | 0.92 | 4.18 | 0.85 | (554) | 100.0 |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별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4-2-5〉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중요 고려 요인-계속

| 구 분 | 일-생활 균형 | | 경력 단절의 가능성 | |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 | 정부의 충분한 지원 | |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평균 |
| 독일 | 3.90 | 0.99 | 3.64 | 1.02 | 4.06 | 1.00 | 3.85 | 1.06 | 3.74 | 1.05 | (2,500) | 100.0 |
| 한국 | 4.35 | 0.69 | 3.98 | 0.87 | 4.19 | 0.77 | 4.29 | 0.78 | 4.35 | 0.74 | (2,500) | 100.0 |
| t | -4.098*** | | -7.928*** | | -6.265*** | | -6.047*** | | -4.269*** | | | |
| 성별 | | | | | | | | | | | | |
| 남자 | 3.83 | 1.01 | 3.48 | 1.02 | 3.94 | 1.02 | 3.73 | 1.10 | 3.65 | 1.07 | (1,280) | 100.0 |
| 여자 | 3.99 | 0.95 | 3.80 | 1.00 | 4.19 | 0.97 | 3.98 | 1.00 | 3.83 | 1.01 | (1,220) | 100.0 |
| F | 1.785 | | 2.264* | | 3.614** | | 3.505** | | 3.127** | | | |
| 연령 | | | | | | | | | | | | |
| 20~24세 | 3.82 | 1.09 | 3.54 | 1.10 | 3.89 | 1.04 | 3.69 | 1.13 | 3.57 | 1.12 | (385) | 100.0 |
| 25~29세 | 3.92 | 1.00 | 3.70 | 1.00 | 4.04 | 1.03 | 3.89 | 1.08 | 3.71 | 1.10 | (387) | 100.0 |
| 30~34세 | 3.96 | 0.98 | 3.64 | 0.99 | 4.03 | 1.02 | 3.80 | 1.10 | 3.72 | 1.07 | (406) | 100.0 |
| 35~39세 | 3.93 | 0.96 | 3.70 | 1.03 | 4.13 | 0.96 | 3.93 | 0.99 | 3.84 | 1.00 | (491) | 100.0 |
| 40~44세 | 3.95 | 0.91 | 3.69 | 1.00 | 4.15 | 0.93 | 3.94 | 1.02 | 3.78 | 0.98 | (464) | 100.0 |
| 45~49세 | 3.81 | 0.99 | 3.54 | 1.01 | 4.10 | 1.05 | 3.82 | 1.02 | 3.76 | 1.00 | (367) | 100.0 |

(단위: 점, 명, %)

| 구 분 | 일-생활 균형 | | 경력 단절의 가능성 | |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 | 정부의 충분한 지원 | |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평균 |
| F | 1.532 | | 0.862 | | 0.918 | | 1.707 | | 0.750 | | | |
| 지역 | 3.93 | 1.03 | 3.68 | 1.05 | 4.07 | 1.04 | 3.85 | 1.12 | 3.74 | 1.09 | (824) | 100.0 |
| | 3.90 | 0.98 | 3.61 | 0.99 | 4.06 | 0.97 | 3.89 | 0.98 | 3.72 | 1.01 | (621) | 100.0 |
| | 3.94 | 0.96 | 3.65 | 1.02 | 4.10 | 0.97 | 3.88 | 1.06 | 3.78 | 1.04 | (584) | 100.0 |
| | 3.82 | 0.96 | 3.59 | 1.03 | 4.00 | 1.02 | 3.76 | 1.06 | 3.69 | 1.02 | (471) | 100.0 |
| | 7.169*** | | 1.623 | | 8.016*** | | 3.404* | | 3.341* | | | |
| 교육 | 3.75 | 1.05 | 3.57 | 1.03 | 3.93 | 1.05 | 3.87 | 1.06 | 3.76 | 1.07 | (609) | 100.0 |
| | 3.98 | 0.99 | 3.64 | 1.07 | 4.00 | 1.03 | 3.79 | 1.08 | 3.64 | 1.08 | (591) | 100.0 |
| | 3.92 | 0.93 | 3.64 | 1.03 | 4.17 | 0.99 | 3.95 | 1.02 | 3.82 | 1.01 | (675) | 100.0 |
| | 3.97 | 0.97 | 3.70 | 0.97 | 4.13 | 0.93 | 3.78 | 1.07 | 3.71 | 1.02 | (625) | 100.0 |
| | 0.637 | | 0.704 | | 5.962*** | | 2.793* | | 0.843 | | | |
| 혼인 상태 | 3.94 | 0.98 | 3.68 | 1.01 | 4.08 | 0.99 | 3.84 | 1.05 | 3.76 | 1.05 | (684) | 100.0 |
| | 3.88 | 1.03 | 3.63 | 1.02 | 3.97 | 1.04 | 3.79 | 1.08 | 3.70 | 1.06 | (969) | 100.0 |
| | 3.92 | 0.92 | 3.62 | 1.03 | 4.14 | 0.96 | 3.93 | 1.03 | 3.75 | 1.03 | (723) | 100.0 |
| | 3.85 | 1.03 | 3.56 | 1.13 | 4.25 | 0.94 | 3.91 | 1.04 | 3.82 | 1.02 | (124) | 100.0 |

| 구 분 | | 일-생활 균형 | | 경력 단절의 가능성 | |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 | 정부의 충분한 지원 | |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평균 |
| t | | -0.519 | | -0.400 | | 2.829** | | 3.309** | | 0.081 | | | |
| 자녀 여부 | | 3.89 | 0.96 | 3.63 | 1.02 | 4.12 | 0.99 | 3.92 | 1.04 | 3.74 | 1.03 | (1,205) | 100.0 |
| | | 3.91 | 1.01 | 3.65 | 1.03 | 4.01 | 1.02 | 3.78 | 1.07 | 3.73 | 1.06 | (1,295) | 100.0 |
| t | | 3.491*** | | 2.223* | | 3.036** | | -0.914 | | -0.112 | | | |
| 취업 여부 | | 3.94 | 0.97 | 3.66 | 1.01 | 4.09 | 0.98 | 3.84 | 1.06 | 3.73 | 1.05 | (2,033) | 100.0 |
| | | 3.76 | 1.03 | 3.54 | 1.09 | 3.93 | 1.09 | 3.89 | 1.05 | 3.74 | 1.03 | (467) | 100.0 |
| F | | 4.702** | | 0.956 | | 2.607 | | 0.547 | | 2.741* | | | |
| 2,000유로 미만 | | 3.78 | 1.07 | 3.64 | 1.10 | 3.97 | 1.07 | 3.87 | 1.12 | 3.72 | 1.09 | (630) | 100.0 |
| 2,000~3,000유로 미만 | | 3.97 | 0.96 | 3.65 | 0.97 | 4.07 | 1.02 | 3.88 | 0.99 | 3.84 | 1.02 | (612) | 100.0 |
| 3,000~4,000유로 미만 | | 3.92 | 0.92 | 3.58 | 0.99 | 4.08 | 0.94 | 3.84 | 1.03 | 3.72 | 1.01 | (535) | 100.0 |
| 4,000유로 이상 | | 3.95 | 0.97 | 3.67 | 1.02 | 4.12 | 0.97 | 3.81 | 1.08 | 3.68 | 1.05 | (723) | 100.0 |
| F | | 2.629** | | 2.743* | | 4.673** | | 4.966** | | 1.004 | | | |
| 무자녀 미혼 | | 3.90 | 1.00 | 3.64 | 1.01 | 4.04 | 1.00 | 3.78 | 1.06 | 3.74 | 1.06 | (593) | 100.0 |
| 유자녀 미혼 | | 4.19 | 0.79 | 3.93 | 0.98 | 4.38 | 0.83 | 4.21 | 0.91 | 3.87 | 0.98 | (91) | 100.0 |
| 무자녀 기혼 ¹⁾ | | 3.93 | 1.01 | 3.65 | 1.05 | 3.98 | 1.03 | 3.79 | 1.07 | 3.73 | 1.07 | (702) | 100.0 |
| 유자녀 기혼(1자녀) | | 3.84 | 1.02 | 3.65 | 1.04 | 4.05 | 1.07 | 3.86 | 1.10 | 3.68 | 1.07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 3.90 | 0.93 | 3.56 | 0.99 | 4.15 | 0.91 | 3.94 | 1.00 | 3.78 | 0.99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 7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살펴 보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항에 대해 독일의 경우 2.09점, 한국의 경우 1.81점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이 한국보다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문항에 대해 독일의 경우 3.75점, 한국은 3.98점으로 한국보다 독일에서 동의 정도가 낮았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항에 대해 독일 2.36점, 한국 2.31점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파트너 포함)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독일 2.66점, 한국 2.60점,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독일 3.46점, 한국 3.07점, “배우자(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독일 3.57점, 한국 3.51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독일 1.90점, 한국 1.49점으로 각 문항에 대해 한국보다 독일에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자녀 출산 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문항별 동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사학위 취득 이상일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무자녀 미혼인 경우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자녀 여부별, 가구 유형별로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 < 0.001$).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문항은 법률혼일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유자녀 미혼일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 자녀 여부, 가구소득, 가구 유형별 자녀 출산 시 삶에 미치는 영향력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01$).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항은 여성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동의 정도가 낮았으며, 성별($p < 0.001$)과 자녀 여부($p < 0.01$)에 따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파트너 포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에 대해 남성인 경우, 대도시일 경우,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일 경우, 미혼일 경우, 자녀가 없을 경우, 취업한 경우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p < 0.001$), 지역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취업 여부($p < 0.001$)는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와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동의 정도가 높아졌다. 또한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1$)로 각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항은 남성일 경우, 연령대가 낮을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일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우, 1자녀 기혼일 경우에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p < 0.01$), 연령대별($p < 0.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4-2-6〉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 구분 | |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짐 | |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 | 배우자(파트너 포함)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 |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짐 | |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짐 | |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수 | 비율 |
| 독일 | | 2.09 | 1.05 | 3.75 | 1.01 | 2.36 | 1.04 | 2.66 | 1.15 | 3.46 | 0.99 | 3.57 | 1.03 | 1.90 | 0.93 | (2,500) | 100.0 |
| 한국 | | 1.81 | 0.77 | 3.98 | 0.84 | 2.31 | 1.01 | 2.60 | 1.06 | 3.07 | 1.05 | 3.51 | 0.93 | 1.49 | 0.67 | (2,500) | 100.0 |
| t | | 3.676*** | | -0.421 | | 10.469*** | | -17.468*** | | 5.315*** | | 6.151*** | | 3.478** | | | |
| 성별 | 남자 | 2.16 | 1.05 | 3.74 | 1.02 | 2.57 | 1.04 | 2.29 | 0.98 | 3.56 | 0.96 | 3.70 | 1.03 | 1.96 | 0.95 | (1,280) | 100.0 |
| | 여자 | 2.01 | 1.03 | 3.76 | 1.00 | 2.14 | 1.00 | 3.05 | 1.17 | 3.35 | 1.00 | 3.45 | 1.03 | 1.84 | 0.90 | (1,220) | 100.0 |
| F | | 9.651*** | | 1.665 | | 2.405* | | 2.393* | | 8.938*** | | 8.403*** | | 11.681*** | | | |
| 연령 | 20~24세 | 2.37 | 1.10 | 3.69 | 1.09 | 2.49 | 1.03 | 2.66 | 1.07 | 3.57 | 0.99 | 3.77 | 1.11 | 2.18 | 1.01 | (385) | 100.0 |
| | 25~29세 | 2.21 | 1.07 | 3.74 | 0.99 | 2.33 | 0.99 | 2.62 | 1.10 | 3.65 | 0.97 | 3.72 | 1.04 | 1.97 | 0.96 | (387) | 100.0 |
| | 30~34세 | 2.04 | 1.02 | 3.78 | 0.98 | 2.36 | 1.01 | 2.67 | 1.14 | 3.48 | 0.94 | 3.60 | 0.99 | 1.95 | 0.91 | (406) | 100.0 |
| | 35~39세 | 1.99 | 1.02 | 3.84 | 0.97 | 2.36 | 1.07 | 2.66 | 1.20 | 3.38 | 1.01 | 3.51 | 1.01 | 1.83 | 0.86 | (491) | 100.0 |
| | 40~44세 | 1.97 | 1.01 | 3.77 | 1.02 | 2.24 | 1.03 | 2.56 | 1.14 | 3.46 | 0.96 | 3.51 | 1.00 | 1.77 | 0.88 | (464) | 100.0 |
| | 45~49세 | 2.01 | 1.01 | 3.67 | 0.99 | 2.39 | 1.12 | 2.83 | 1.19 | 3.22 | 1.00 | 3.36 | 1.03 | 1.77 | 0.89 | (367) | 100.0 |
| F | | 1.778 | | 0.665 | | 1.114 | | 4.742** | | 3.730* | | 5.707** | | 0.236 | | | |
| 지역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2.02 | 1.03 | 3.76 | 1.03 | 2.39 | 1.07 | 2.58 | 1.13 | 3.51 | 1.00 | 3.66 | 1.04 | 1.91 | 0.94 | (824)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2.14 | 1.01 | 3.75 | 1.01 | 2.38 | 1.03 | 2.67 | 1.11 | 3.50 | 0.97 | 3.59 | 1.02 | 1.92 | 0.91 | (621)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2.10 | 1.05 | 3.78 | 0.94 | 2.34 | 1.04 | 2.64 | 1.14 | 3.43 | 1.00 | 3.57 | 1.04 | 1.88 | 0.90 | (584) | 100.0 |
| F | | 2.13 | 1.10 | 3.70 | 1.04 | 2.29 | 1.03 | 2.82 | 1.20 | 3.34 | 0.97 | 3.42 | 1.02 | 1.90 | 0.97 | (471) | 100.0 |

(단위: 점, 명, %)

| 구분 |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 | |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짐 | |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 | 배우자(파트너) 포함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 |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인정감이 커짐 | | 배우자(파트너) 포함과의 친밀감이 높아짐 | |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 교육 | F | 14.704*** | 0.140 | 1.591 | 6.095*** | 2.941* | 3.559* | 9.613*** | | | | | |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2.32 | 1.13 | 3.73 | 1.04 | 2.40 | 1.05 | 2.70 | 1.15 | 3.44 | 1.02 | 3.61 | 1.08 | 2.05 | 1.01 | (60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2.09 | 1.01 | 3.77 | 1.01 | 2.40 | 1.03 | 2.61 | 1.11 | 3.55 | 0.98 | 3.66 | 1.06 | 1.94 | 0.93 | (591)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1.99 | 1.02 | 3.76 | 1.01 | 2.35 | 1.07 | 2.79 | 1.21 | 3.39 | 0.95 | 3.48 | 1.01 | 1.81 | 0.90 | (675) | 100.0 |
| | 합사 학위 취득 이상 | 1.97 | 0.99 | 3.75 | 0.97 | 2.29 | 1.03 | 2.54 | 1.09 | 3.45 | 0.98 | 3.56 | 0.99 | 1.82 | 0.85 | (625) | 100.0 |
| 혼인상태 | F | 10.835*** | 7.448*** | 1.908 | 8.813*** | 1.972 | 2.216 | 10.896*** | | | | | | | | | |
| | 미혼 | 1.98 | 1.00 | 3.67 | 1.08 | 2.29 | 1.01 | 2.53 | 1.07 | 3.39 | 1.01 | 3.55 | 1.04 | 1.81 | 0.85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2.24 | 1.10 | 3.70 | 0.99 | 2.40 | 1.04 | 2.63 | 1.11 | 3.51 | 0.99 | 3.63 | 1.05 | 2.03 | 0.98 | (969) | 100.0 |
| | 법률혼 | 2.00 | 1.00 | 3.90 | 0.95 | 2.38 | 1.07 | 2.79 | 1.24 | 3.45 | 0.96 | 3.55 | 1.01 | 1.82 | 0.90 | (723) | 100.0 |
| | 이혼/별거/사별 | 2.06 | 1.01 | 3.77 | 0.96 | 2.26 | 1.01 | 2.94 | 1.14 | 3.41 | 0.98 | 3.42 | 1.00 | 1.85 | 0.94 | (124) | 100.0 |
| 자녀 여부 | t | 2.974** | 9.009*** | 2.632** | 4.081*** | 1.936 | 1.621 | 1.731 | | | | | | | | | |
| | 자녀 있음 | 2.15 | 1.05 | 3.94 | 0.91 | 2.41 | 1.07 | 2.76 | 1.19 | 3.50 | 0.95 | 3.61 | 1.02 | 1.94 | 0.94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2.03 | 1.04 | 3.58 | 1.06 | 2.31 | 1.02 | 2.57 | 1.09 | 3.42 | 1.02 | 3.54 | 1.04 | 1.87 | 0.91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t | -1.728 | 0.854 | 1.486 | -7.939*** | 3.197** | 3.744*** | -2.480* | | | | | | | | | |
| | 취업 | 2.07 | 1.03 | 3.76 | 0.99 | 2.37 | 1.04 | 2.58 | 1.12 | 3.49 | 0.98 | 3.61 | 1.02 | 1.88 | 0.91 | (2,033) | 100.0 |
| | 비취업 | 2.17 | 1.11 | 3.72 | 1.07 | 2.29 | 1.03 | 3.04 | 1.16 | 3.33 | 1.00 | 3.41 | 1.08 | 2.00 | 1.01 | (467) | 100.0 |

| 구 분 |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 |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짐 |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 배우자(파트너) 포함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짐 |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친밀감이 높아짐 |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 | 합계 | |
|----------------------|-----------------------------|-------------------|--------------------|------------------------------|---------------------------|-----------------------|-------------|-------|-------|
| | | | | | | | | 평균 | SD |
| F | 3.293* | 8.110*** | 2.066 | 2.941* | 4.810** | 2.373 | 1.256 | 사례 수 | 비율 |
| 2,000유로 미만 | 2.19 | 3.62 | 2.34 | 2.77 | 3.33 | 3.48 | 1.96 | (630) | 100.0 |
| 2,000~3,000유로 미만 | 2.03 | 3.72 | 2.28 | 2.61 | 3.46 | 3.59 | 1.87 | (612) | 100.0 |
| 3,000~4,000유로 미만 | 2.12 | 3.77 | 2.40 | 2.68 | 3.51 | 3.60 | 1.90 | (535) | 100.0 |
| 4,000유로 이상 | 2.03 | 3.88 | 2.41 | 2.60 | 3.52 | 3.63 | 1.87 | (723) | 100.0 |
| F | 5.253*** | 20.960*** | 3.143* | 5.739*** | 1.791 | 1.263 | 6.807*** | | |
| 무자녀 미혼 | 1.96 | 3.61 | 2.31 | 2.50 | 3.39 | 3.55 | 1.81 | (593) | 100.0 |
| 유자녀 미혼 | 2.12 | 4.10 | 2.19 | 2.73 | 3.42 | 3.52 | 1.84 | (91) | 100.0 |
| 무자녀 기혼 ¹⁾ | 2.09 | 3.56 | 2.30 | 2.63 | 3.44 | 3.54 | 1.92 | (702) | 100.0 |
| 유자녀 기혼(1자녀) | 2.24 | 3.91 | 2.46 | 2.72 | 3.54 | 3.66 | 2.06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07 | 3.94 | 2.40 | 2.80 | 3.46 | 3.58 | 1.82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5) 가사 및 돌봄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가족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 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남성 혹은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1점 확실히 남성, 2점 대체로 남성, 3점 남성과 여성 모두, 4점 대체로 여성, 5점 확실히 여성으로 응답하게 하고 독일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의 경우 독일 2.73점, 한국 2.67점으로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남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의 경우는 독일 3.37점, 한국 3.25점으로 나타났으며,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의 경우는 독일 3.42점, 한국 3.23점으로 일상적 가사 일과 자녀 돌봄에 대해 독일이 한국보다 여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독일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의 경우 농촌 지역인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경우,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다른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나, 보다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5$), 혼인상태별($p < 0.001$)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 버는 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 일”에 대해서 연령대가 20대일 경우, 지역이 중도시일 경우, 교육수준이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하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p < 0.05$), 지역별($p < 0.05$), 교육수준별($p < 0.05$), 자녀 여부($p < 0.05$)에 따라 일상적 가사 일에 대한 성별 역할 수행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성별 역할 수행 인식에 대해 법률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2자녀 이상 기혼 가구일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여성의 역할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p < 0.01$), 자녀 여부($p < 0.001$), 가구소득($p < 0.05$), 가구 유형($p < 0.01$)별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2-7〉 남성과 여성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

| 구 분 | |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 |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 |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 2.73 | 0.92 | 3.37 | 0.75 | 3.42 | 0.74 | (2,500) | 100.0 |
| 한국 | | 2.67 | 0.66 | 3.25 | 0.53 | 3.23 | 0.53 | (2,500) | 100.0 |
| 성별 | t | 1.264 | | -1.579 | | 0.076 | | | |
| | 남자 | 2.76 | 0.97 | 3.35 | 0.78 | 3.42 | 0.77 | (1,280) | 100.0 |
| | 여자 | 2.71 | 0.87 | 3.40 | 0.72 | 3.42 | 0.70 | (1,220) | 100.0 |
| 연령 | F | 1.757 | | 2.416* | | 0.519 | | | |
| | 20~24세 | 2.66 | 1.05 | 3.42 | 0.85 | 3.41 | 0.78 | (385) | 100.0 |
| | 25~29세 | 2.78 | 1.03 | 3.46 | 0.82 | 3.41 | 0.77 | (387) | 100.0 |
| | 30~34세 | 2.80 | 0.91 | 3.29 | 0.74 | 3.43 | 0.75 | (406) | 100.0 |
| | 35~39세 | 2.73 | 0.86 | 3.37 | 0.74 | 3.40 | 0.72 | (491) | 100.0 |
| | 40~44세 | 2.77 | 0.87 | 3.36 | 0.67 | 3.46 | 0.70 | (464) | 100.0 |
| | 45~49세 | 2.66 | 0.77 | 3.35 | 0.69 | 3.41 | 0.71 | (367) | 100.0 |
| 지역 | F | 3.926** | | 3.277* | | 0.256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2.80 | 0.94 | 3.35 | 0.73 | 3.42 | 0.75 | (824)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2.73 | 0.95 | 3.46 | 0.77 | 3.44 | 0.75 | (621)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2.75 | 0.88 | 3.34 | 0.74 | 3.40 | 0.72 | (584)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2.62 | 0.88 | 3.35 | 0.77 | 3.41 | 0.73 | (471) | 100.0 |
| 교육 | F | 3.235* | | 3.427* | | 0.900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2.68 | 1.02 | 3.41 | 0.84 | 3.43 | 0.80 | (60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2.74 | 0.97 | 3.41 | 0.80 | 3.45 | 0.75 | (591)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2.69 | 0.84 | 3.38 | 0.68 | 3.38 | 0.67 | (675)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2.83 | 0.84 | 3.29 | 0.69 | 3.43 | 0.73 | (625) | 100.0 |

| 구 분 | |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 |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 |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혼인 상태 | F | 9.635*** | | 2.505 | | 3.883** | | | |
| | 미혼 | 2.68 | 0.79 | 3.33 | 0.65 | 3.36 | 0.64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2.86 | 0.99 | 3.35 | 0.83 | 3.41 | 0.82 | (969) | 100.0 |
| | 법률혼 | 2.65 | 0.91 | 3.43 | 0.73 | 3.49 | 0.71 | (723) | 100.0 |
| | 이혼/별거/사별 | 2.58 | 0.96 | 3.40 | 0.76 | 3.44 | 0.70 | (124) | 100.0 |
| 자녀 여부 | t | -0.475 | | 2.408* | | 3.850*** | | | |
| | 자녀 있음 | 2.73 | 0.97 | 3.41 | 0.77 | 3.48 | 0.76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2.74 | 0.87 | 3.34 | 0.74 | 3.37 | 0.71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t | 1.170 | | 0.999 | | 0.427 | | | |
| | 취업 | 2.74 | 0.93 | 3.38 | 0.75 | 3.42 | 0.74 | (2,033) | 100.0 |
| | 비취업 | 2.69 | 0.88 | 3.34 | 0.79 | 3.41 | 0.71 | (467) | 100.0 |
| 가구 소득 | F | 1.241 | | 2.549 | | 2.715* | | | |
| | 2,000유로 미만 | 2.75 | 0.89 | 3.31 | 0.76 | 3.35 | 0.75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2.72 | 0.95 | 3.39 | 0.74 | 3.42 | 0.71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2.68 | 0.92 | 3.43 | 0.77 | 3.45 | 0.74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2.78 | 0.91 | 3.37 | 0.74 | 3.46 | 0.75 | (723) | 100.0 |
| 가구 유형 | F | 2.856* | | 1.976 | | 4.409** | | | |
| | 무자녀 미혼 | 2.66 | 0.79 | 3.33 | 0.66 | 3.35 | 0.64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2.76 | 0.81 | 3.33 | 0.63 | 3.42 | 0.65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2.81 | 0.92 | 3.34 | 0.80 | 3.38 | 0.77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2.77 | 1.07 | 3.44 | 0.82 | 3.46 | 0.80 | (560)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68 | 0.90 | 3.40 | 0.73 | 3.51 | 0.73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4) 확실히 남성(1점), 대체로 남성(2점), 남성과 여성 모두(3점), 대체로 여성(4점), 확실히 여성(5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을 확실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3.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가.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배우자가 있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실제 가사 분담과 적절한 가사 분담에 대하여 본인-파트너·배우자별 분담 비율을 0점(0%)~10점(100%)로 알아보았다. 분담 비율에 대한 결과는 본인 분담을 기준으로 각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³³⁾하였으며, 독일과 한국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실제 본인의 가사 분담 비율은 58.62%, 적절 가사 분담 비율은 54.62%이며, 한국의 경우 실제 본인 분담 비율이 54.95%, 적절 가사 분담 비율이 51.64%로 독일이 실제와 적절 가사 분담 비율에서 본인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인 대상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01$). 남성(49.93%)보다 여성(67.72%)이 실제 가사 분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사 분담 또한 남성(50.95%)보다 여성(58.47%)에서 본인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가사 분담 비율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01$), 취업자(56.99%)보다 비취업자(67.70%)에서 실제 본인이 분담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적절 가사 분담 비율에서도 취업자(53.53%)보다 비취업자(60.70%)에서

33) 가사 분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본인 분담 0점(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분담 100%, 본인 분담 1점(1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90%, 본인분담 10점(10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분담 0%이며, 본인 분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점수에 해당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본인 분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본인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이 낮아졌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의 실제 가사 분담 비율($p<0.05$)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p<0.001$)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2-8〉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 가사 분담 비율

(단위: 점, 명, %)

| 구 분 | | 실제 가사 분담 비율 | | 적절 가사 분담 비율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 58.62 | 20.52 | 54.62 | 15.97 | (1,692) | 100.0 |
| 한국 | | 54.95 | 22.24 | 51.64 | 16.27 | (1,430) | 100.0 |
| 성별 | t | -19.799*** | | -9.971*** | | | |
| | 남자 | 49.93 | 18.84 | 50.95 | 15.49 | (866) | 100.0 |
| | 여자 | 67.72 | 18.13 | 58.47 | 15.56 | (826) | 100.0 |
| 연령 | F | 0.951 | | 0.612 | | | |
| | 20~24세 | 59.11 | 18.43 | 55.00 | 16.64 | (202) | 100.0 |
| | 25~29세 | 60.71 | 20.44 | 56.00 | 15.33 | (255) | 100.0 |
| | 30~34세 | 57.17 | 19.15 | 53.92 | 15.58 | (311) | 100.0 |
| | 35~39세 | 58.93 | 21.30 | 54.35 | 16.51 | (356) | 100.0 |
| | 40~44세 | 58.05 | 21.42 | 54.73 | 16.01 | (313) | 100.0 |
| | 45~49세 | 58.16 | 21.54 | 54.04 | 15.74 | (255) | 100.0 |
| 지역 | F | 3.870** | | 1.711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57.15 | 19.93 | 53.83 | 16.01 | (541)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58.73 | 22.05 | 55.20 | 16.62 | (408)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57.81 | 19.74 | 53.96 | 15.61 | (407)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61.82 | 20.19 | 56.01 | 15.46 | (336) | 100.0 |
| 교육 | F | 2.248 | | 2.150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59.62 | 21.93 | 55.99 | 17.48 | (41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57.41 | 19.33 | 54.59 | 16.31 | (375)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60.09 | 20.97 | 54.75 | 15.38 | (451)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57.20 | 19.56 | 53.24 | 14.66 | (447) | 100.0 |
| 혼인 상태 | t | -0.686 | | 0.005 | | | |
| | 동거/사실혼 | 58.32 | 19.82 | 54.62 | 16.28 | (969) | 100.0 |
| | 법률혼 | 59.02 | 21.43 | 54.62 | 15.54 | (723) | 100.0 |

| 구 분 | | 실제 가사 분담 비율 | | 적절 가사 분담 비율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자녀 여부 | t | 0.352 | | 0.410 | | | |
| | 자녀 있음 | 58.75 | 21.67 | 54.75 | 16.40 | (1041) | 100.0 |
| | 자녀 없음 | 58.40 | 18.54 | 54.42 | 15.25 | (651) | 100.0 |
| 취업 여부 | t | -7.562*** | | -6.051*** | | | |
| | 취업 | 56.99 | 19.99 | 53.53 | 15.36 | (1435) | 100.0 |
| | 비취업 | 67.70 | 21.08 | 60.70 | 17.84 | (257) | 100.0 |
| 가구 소득 | F | 3.148* | | 8.065*** | | | |
| | 2,000유로 미만 | 61.85 | 20.77 | 58.86 | 17.57 | (271)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59.01 | 21.37 | 54.60 | 17.40 | (365)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57.28 | 21.08 | 53.52 | 14.45 | (41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57.89 | 19.42 | 53.56 | 15.05 | (641) | 100.0 |
| 가구 유형 | F | 0.909 | | 0.171 | | | |
| | 무자녀 기혼 ¹⁾ | 58.40 | 18.54 | 54.42 | 15.25 | (651)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57.93 | 20.86 | 54.95 | 16.87 | (527)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59.59 | 22.47 | 54.53 | 15.92 | (51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3) 본인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파트너 보다 본인이 분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 0점(본인 분담 0%, 배우자·파트너 분담 비율 100%) ~ 100점(본인 분담 100%, 배우자·파트너의 분담 비율 0%)

나.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배우자가 있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실제 육아 분담과 적절한 육아 분담에 대하여 본인-파트너·배우자별 분담 비율을 0점(0%)~10점(100%)으로 알아보았다. 분담 비율에 대한 결과는 본인 분담을 기준으로 각 점수를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³⁴⁾하였으며, 독일과 한국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실제 본인 육아

34) 육아 분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본인 분담 0점(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분담 100%, 본인 분담 1점(1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90%, 본인 분담 10점(100%)일 경우 배우자·파트너 분담 0%이며, 본인 분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점수에 해당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분담 비율 57.38%, 적절 육아 분담 비율 55.25%이며, 한국의 경우 실제 본인 분담 비율 52.87%, 적절 분담 비율 49.93%로 가사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독일이 한국보다 본인이 실제 분담하는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육아 분담 비율에서 남성(46.77%)의 경우 여성(69.01%)보다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으며,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에서도 남성(50.29%)보다 여성(60.69%)의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다. 다만 남성의 경우 실제 육아 분담 비율보다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서 본인이 분담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파트너·배우자 분담보다 본인의 육아 분담 비율을 실제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본인의 실제 육아 분담 비율($p < 0.001$)과 적절 육아 분담 비율($p < 0.001$)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취업자(55.00%)의 경우 실제 육아 분담 비율이 비취업자(69.93%)보다 낮게 나타났다.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도 취업자(54.06%)보다 비취업자(61.56%)가 본인 분담 비율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업 여부에 따른 실제 및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 < 0.001$).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실제 본인 육아 분담 비율이 낮았고,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서도 본인 분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 실제 및 적절 본인 육아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01$).

〈표 4-2-9〉 실제 육아 부담 비율과 적절한 육아 부담 비율

(단위: 점, 명, %)

| 구 분 | | 실제 육아 부담 비율 | | 적절한 육아 부담 비율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수 | 비율 |
| 독일 | | 57.38 | 21.61 | 55.25 | 17.01 | (847) | 100.0 |
| 한국 | | 52.87 | 25.03 | 49.93 | 16.40 | (676) | 100.0 |
| 성별 | t | -17.434*** | | -9.329*** | | | |
| | 남자 | 46.77 | 19.07 | 50.29 | 17.27 | (443) | 100.0 |
| | 여자 | 69.01 | 17.95 | 60.69 | 14.94 | (404) | 100.0 |
| 연령 | F | 1.979 | | 1.366 | | | |
| | 20~24세 | 54.13 | 18.20 | 57.30 | 15.88 | (63) | 100.0 |
| | 25~29세 | 58.98 | 21.11 | 57.87 | 19.54 | (127) | 100.0 |
| | 30~34세 | 59.73 | 21.31 | 55.08 | 16.44 | (187) | 100.0 |
| | 35~39세 | 57.35 | 22.59 | 55.30 | 15.85 | (215) | 100.0 |
| | 40~44세 | 57.65 | 22.45 | 53.92 | 17.78 | (166) | 100.0 |
| | 45~49세 | 52.02 | 20.46 | 52.81 | 16.10 | (89) | 100.0 |
| 지역 | F | 0.800 | | 0.564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56.22 | 21.74 | 54.42 | 18.18 | (249)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56.53 | 22.00 | 54.84 | 15.62 | (213)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58.24 | 21.77 | 56.34 | 16.31 | (216)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59.05 | 20.71 | 55.62 | 17.82 | (169) | 100.0 |
| 교육 | F | 2.408 | | 0.682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59.79 | 22.32 | 56.30 | 18.99 | (192)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54.83 | 21.72 | 55.23 | 17.98 | (176)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59.02 | 22.03 | 55.72 | 16.89 | (215)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55.98 | 20.45 | 54.13 | 14.80 | (264) | 100.0 |
| 혼인 상태 | t | 0.619 | | 2.490* | | | |
| | 동거/사실혼 | 57.89 | 21.02 | 56.87 | 17.93 | (383) | 100.0 |
| | 법률혼 | 56.96 | 22.09 | 53.92 | 16.10 | (464) | 100.0 |
| 자녀 여부 | t | - | | - | | | |
| | 자녀 있음 | 57.38 | 21.61 | 55.25 | 17.01 | (847) | 100.0 |
| 취업 여부 | t | -7.602*** | | -4.755*** | | | |
| | 취업 | 55.00 | 21.17 | 54.06 | 17.14 | (712) | 100.0 |
| | 비취업 | 69.93 | 19.53 | 61.56 | 14.81 | (135) | 100.0 |

| 구 분 | | 실제 육아 부담 비율 | | 적절한 육아 부담 비율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가구 소득 | F | 8.023*** | | 8.421*** | | | |
| | 2,000유로 미만 | 64.41 | 21.35 | 61.19 | 18.27 | (118)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60.53 | 22.34 | 56.63 | 17.86 | (169)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54.33 | 21.81 | 51.88 | 14.73 | (224) | 100.0 |
| | 4,000유로 이상 | 55.36 | 20.50 | 54.73 | 16.98 | (336) | 100.0 |
| 가구 유형 | F | 0.047 | | 5.120* | | | |
| | 유자녀 기혼(1자녀) | 57.54 | 21.71 | 56.59 | 18.09 | (419)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57.22 | 21.53 | 53.95 | 15.79 | (428)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3) 본인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파트너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 0점(본인 부담 0%, 배우자·파트너 부담 비율 100%) ~ 100점(본인 부담 100%, 배우자·파트너의 부담 비율 0%)

다.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에 대해 5점 만점(1점(전혀 어렵지 않다)~5점(매우 어렵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 정도가 2.64점, 한국은 3.54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다”와 “어렵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46.9%로 한국 14.8%보다 약 3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에 대한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18.0%)에 비해 여성(24.6%)의 경우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어려움 정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혼인상태로 보면, 동거/사실혼(18.6%)의 경우 법률혼(24.7%)에 비해 “어

려운 편이다”와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구소득에 따른 어려움 정도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01$), 가구소득이 2,000유로 미만인 경우(39.8%)가 4,000유로 이상인 경우(52.2%)보다 “전혀 어렵지 않다”와 “어렵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나 가구소득 4,000유로 이상이 2,000유로 미만인 경우보다 일과 가사 병행에 어려움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2-10〉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명)

| 구 분 | | 전혀 어렵지 않다 | 어렵지 않은 편이다 | 보통 이다 | 어려운 편이다 | 매우 어렵다 | 평균 | SD | 합계 | | |
|-----|------------------------|-----------------|------------------|----------|------------|-----------|------|------|---------|-------|--|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 독일 | | 13.7 | 33.2 | 32.0 | 17.9 | 3.3 | 2.64 | 1.03 | (1,692) | 100.0 | |
| 한국 | | 2.5 | 12.3 | 27.6 | 43.5 | 14.1 | 3.54 | 0.96 | (1,430) | 100.0 | |
| 성별 | χ^2 | 16.240** | | | | | | | | | |
| | 남자 | 15.0 | 35.7 | 31.3 | 15.7 | 2.3 | 2.55 | 1.00 | (866) | 100.0 | |
| | 여자 | 12.2 | 30.5 | 32.7 | 20.2 | 4.4 | 2.74 | 1.05 | (826) | 100.0 | |
| 연령 | χ^2 | 22.447 | | | | | | | | | |
| | 20~24세 | 13.9 | 34.2 | 35.1 | 15.3 | 1.5 | 2.56 | 0.96 | (202) | 100.0 | |
| | 25~29세 | 15.3 | 32.2 | 35.3 | 13.7 | 3.5 | 2.58 | 1.02 | (255) | 100.0 | |
| | 30~34세 | 10.6 | 36.7 | 28.9 | 19.6 | 4.2 | 2.70 | 1.03 | (311) | 100.0 | |
| | 35~39세 | 11.8 | 31.2 | 31.7 | 21.9 | 3.4 | 2.74 | 1.04 | (356) | 100.0 | |
| | 40~44세 | 13.7 | 32.3 | 31.9 | 18.8 | 3.2 | 2.65 | 1.04 | (313) | 100.0 | |
| | 45~49세 | 18.0 | 32.9 | 30.2 | 15.3 | 3.5 | 2.53 | 1.06 | (255) | 100.0 | |
| 지역 | χ^2 | 14.168 | | | | | |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15.7 | 34.0 | 31.2 | 16.1 | 3.0 | 2.57 | 1.03 | (541) | 100.0 |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13.0 | 30.9 | 32.1 | 19.6 | 4.4 | 2.72 | 1.06 | (408) | 100.0 |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11.5 | 36.1 | 34.2 | 15.7 | 2.5 | 2.61 | 0.97 | (407) | 100.0 |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13.7 | 31.0 | 30.4 | 21.4 | 3.6 | 2.70 | 1.06 | (336) | 100.0 | |
| 교육 | χ^2 | 26.870** | | | | | |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17.2 | 26.7 | 37.7 | 15.0 | 3.3 | 2.61 | 1.04 | (419) | 100.0 |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13.3 | 34.7 | 33.1 | 16.0 | 2.9 | 2.61 | 1.00 | (375) | 100.0 | |
| | 직업교육 수료 | 11.8 | 34.6 | 30.6 | 20.2 | 2.9 | 2.68 | 1.02 | (451) | 100.0 |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12.5 | 36.5 | 27.1 | 19.9 | 4.0 | 2.66 | 1.06 | (447) | 100.0 | |

| 구 분 | | 전혀 어렵지 않다 | 어렵지 않은 편이다 | 보통 이다 | 어려운 편이다 | 매우 어렵다 | 평균 | SD | 합계 | |
|----------|----------------------|-----------------|------------------|----------|------------|-----------|------|------|--------|-------|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혼인 상태 | χ^2 | 16.857** | | | | | | | | |
| | 동거/사실혼 | 14.4 | 31.9 | 35.1 | 15.9 | 2.7 | 2.60 | 1.00 | (969) | 100.0 |
| | 법률혼 | 12.6 | 34.9 | 27.8 | 20.6 | 4.1 | 2.69 | 1.06 | (723) | 100.0 |
| 자녀 여부 | χ^2 | 39.927*** | | | | | | | | |
| | 자녀 있음 | 15.6 | 34.3 | 26.6 | 20.1 | 3.5 | 2.62 | 1.08 | (1041) | 100.0 |
| | 자녀 없음 | 10.6 | 31.3 | 40.6 | 14.4 | 3.1 | 2.68 | 0.95 | (651) | 100.0 |
| 취업 여부 | χ^2 | 25.943*** | | | | | | | | |
| | 취업 | 13.8 | 34.8 | 30.7 | 18.0 | 2.6 | 2.61 | 1.02 | (1435) | 100.0 |
| | 비취업 | 12.8 | 23.7 | 39.3 | 17.1 | 7.0 | 2.82 | 1.08 | (257) | 100.0 |
| 가구 소득 | χ^2 | 45.493*** | | | | | | | | |
| | 2,000유로 미만 | 17.3 | 22.5 | 39.5 | 17.3 | 3.3 | 2.67 | 1.06 | (271)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13.2 | 31.2 | 39.2 | 14.0 | 2.5 | 2.61 | 0.96 | (365)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10.6 | 34.7 | 30.8 | 19.8 | 4.1 | 2.72 | 1.03 | (41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14.4 | 37.8 | 25.4 | 19.2 | 3.3 | 2.59 | 1.05 | (641) | 100.0 |
| 가구 유형 | χ^2 | 41.526*** | | | | | | | | |
| | 무자녀 기혼 ¹⁾ | 10.6 | 31.3 | 40.6 | 14.4 | 3.1 | 2.68 | 0.95 | (651)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15.9 | 34.5 | 27.1 | 19.5 | 2.8 | 2.59 | 1.06 | (527)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15.2 | 34.0 | 26.1 | 20.6 | 4.1 | 2.64 | 1.09 | (51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4)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라.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과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 가족이 해야 할 일(5점),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4점),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3점),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2점),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1점)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의 역할로 인식한다고 해석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미취학 아동 돌봄과 방과 후 취학 아동 돌봄에 대한 사

회 역할 정도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독일 2.69점, 한국 2.68점으로 나타나 사회 역할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독일 2.41점, 한국 2.97점으로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응답한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경우 연령이 20~24세(2.82점)보다 45~49세(2.60점)인 경우 사회보다 가족에서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유자녀 미혼인 경우(2.41점)보다 무자녀 기혼(2.70점)인 경우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은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회 돌봄 인식 정도는 연령대별 ($p < 0.05$), 가구 유형별($p < 0.05$)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의 경우 미혼인 경우(2.31점)가 동거/사실혼인 경우(2.52점)보다 가족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혼인상태별 인식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한 무자녀 미혼인 경우(2.32점)보다 무자녀 기혼인 경우(2.45점)에 방과 후 취학 아동 돌봄에 대해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구 유형별 인식 차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11〉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

| 구 분 |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 2.69 | 0.92 | 2.41 | 0.92 | (2,500) | 100.0 |
| 한국 | | 2.68 | 0.76 | 2.97 | 0.78 | (2,500) | 100.0 |
| 성별 | t | 1.226 | | 1.009 | | | |
| | 남자 | 2.71 | 0.92 | 2.43 | 0.91 | (1,280) | 100.0 |
| | 여자 | 2.67 | 0.92 | 2.39 | 0.92 | (1,220) | 100.0 |
| 연령 | F | 2.788* | | 0.169 | | | |
| | 20~24세 | 2.82 | 0.95 | 2.44 | 0.96 | (385) | 100.0 |
| | 25~29세 | 2.67 | 0.99 | 2.42 | 0.94 | (387) | 100.0 |
| | 30~34세 | 2.67 | 0.86 | 2.39 | 0.87 | (406) | 100.0 |
| | 35~39세 | 2.74 | 0.93 | 2.40 | 0.92 | (491) | 100.0 |
| | 40~44세 | 2.65 | 0.86 | 2.42 | 0.89 | (464) | 100.0 |
| | 45~49세 | 2.60 | 0.92 | 2.41 | 0.94 | (367) | 100.0 |
| 지역 | F | 0.876 | | 0.221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2.66 | 0.92 | 2.42 | 0.91 | (824)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2.68 | 0.95 | 2.43 | 0.94 | (621)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2.73 | 0.91 | 2.39 | 0.91 | (584)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2.72 | 0.91 | 2.40 | 0.91 | (471) | 100.0 |
| 교육 | F | 0.898 | | 1.290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2.75 | 0.93 | 2.45 | 0.93 | (60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2.68 | 0.97 | 2.38 | 0.91 | (591)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2.67 | 0.87 | 2.38 | 0.92 | (675) | 100.0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2.68 | 0.92 | 2.45 | 0.90 | (625) | 100.0 | |
| 혼인 상태 | F | 2.410 | | 8.522*** | | | |
| | 미혼 | 2.65 | 0.90 | 2.31 | 0.90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2.75 | 0.94 | 2.52 | 0.93 | (969) | 100.0 |
| | 법률혼 | 2.65 | 0.91 | 2.36 | 0.89 | (723) | 100.0 |
| 이혼/별거/사별 | 2.77 | 0.93 | 2.43 | 1.03 | (124) | 100.0 | |
| 자녀 여부 | t | -0.166 | | 1.224 | | | |
| | 자녀 있음 | 2.69 | 0.93 | 2.44 | 0.92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2.70 | 0.91 | 2.39 | 0.91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t | -0.081 | | 1.208 | | | |
| | 취업 | 2.69 | 0.92 | 2.42 | 0.92 | (2,033) | 100.0 |
| 비취업 | 2.70 | 0.92 | 2.37 | 0.92 | (467) | 100.0 | |

| 구 분 |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가구 소득 | F | 2.272 | | 1.845 | | | |
| | 2,000유로 미만 | 2.69 | 0.95 | 2.45 | 0.95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2.72 | 0.92 | 2.34 | 0.90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2.61 | 0.86 | 2.41 | 0.91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2.73 | 0.94 | 2.45 | 0.91 | (723) | 100.0 |
| 가구 유형 | F | 2.470* | | 3.579** | | | |
| | 무자녀 미혼 | 2.69 | 0.90 | 2.32 | 0.89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2.41 | 0.89 | 2.21 | 0.91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2.70 | 0.92 | 2.45 | 0.93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2.73 | 0.97 | 2.48 | 0.94 | (560)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69 | 0.89 | 2.43 | 0.90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3)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1점)~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5점)로 리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에 대해 사회가 해야 할 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4.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가.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에 대한 의견을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으로 동의 정도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 변화 의견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동의 정도를 비교하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독일은 2.78점, 한국은

1.86점으로 독일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독일은 2.98점, 한국은 3.07점으로 나타났고,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 정도는 독일 3.64점, 한국 4.01점으로 나타났다.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가 나의 삶과 미래 세대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독일 2.66점, 한국 1.94점으로 독일에서 한국보다 출산율 대응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는 문항에 대해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 정도는 여성(2.83점)보다 남성(3.13점)이 더 높았으며, 다른 교육수준보다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가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3.08점)가 없는 경우(2.90점)보다, 취업자(3.02점)가 비취업자(2.81점)보다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성별($p < 0.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5$), 취업 여부($p < 0.001$), 가구소득별($p < 0.05$) 동의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남성(3.71점)이 여성(3.57점)보다 높았고, 성별 동의 정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p < 0.001$). 또한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가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다른 혼인상태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

($p < 0.001$) 동의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3.72점)가 없는 경우(3.56점)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자녀 여부($p < 0.001$)와 가구소득별($p < 0.001$) 동의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산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 동의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교육수준별로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2.80점)는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2.75점), 직업교육 수료자(2.49점),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2.61)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혼인 상태별로도 동거/사실혼(2.89점)이 미혼(2.65점), 법률혼(2.39점), 이혼/별거/사별(2.50점)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 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별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p < 0.01$).

〈표 4-2-12〉 인구 변화에 대한 동의 여부

| 구 분 |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 |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 독일 | 2.78 | 1.01 | 2.98 | 1.11 | 3.64 | 1.03 | 2.66 | 1.11 | (2,500) | 100.0 | |
| 한국 | 1.86 | 0.98 | 3.07 | 1.15 | 4.01 | 1.02 | 1.94 | 1.01 | (2,500) | 100.0 | |
| t | -1.608 | | 6.678*** | | 3.370** | | 1.962 | | | | |
| 성별 | 남자 | 2.75 | 1.06 | 3.13 | 1.09 | 3.71 | 1.00 | 2.70 | 1.16 | (1,280) | 100.0 |
| | 여자 | 2.82 | 0.96 | 2.83 | 1.12 | 3.57 | 1.06 | 2.61 | 1.06 | (1,220) | 100.0 |
| F | | 6.654*** | | 1.390 | | 2.090 | | 14.140*** | | | |
| 연령 | 20~24세 | 2.90 | 1.00 | 2.88 | 1.11 | 3.55 | 1.04 | 2.93 | 1.07 | (385) | 100.0 |
| | 25~29세 | 2.98 | 0.99 | 3.07 | 1.08 | 3.56 | 1.04 | 2.93 | 1.12 | (387) | 100.0 |
| | 30~34세 | 2.79 | 1.00 | 3.03 | 1.09 | 3.67 | 0.97 | 2.61 | 1.08 | (406) | 100.0 |
| | 35~39세 | 2.75 | 1.04 | 3.00 | 1.12 | 3.61 | 1.05 | 2.51 | 1.09 | (491) | 100.0 |
| | 40~44세 | 2.71 | 1.03 | 2.98 | 1.13 | 3.73 | 1.04 | 2.55 | 1.09 | (464) | 100.0 |
| | 45~49세 | 2.61 | 0.97 | 2.95 | 1.12 | 3.70 | 1.04 | 2.49 | 1.13 | (367) | 100.0 |
| F | | 2.561 | | 1.428 | | 0.545 | | 2.705* | | | |
| 지역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2.75 | 1.04 | 2.99 | 1.17 | 3.67 | 1.03 | 2.68 | 1.13 | (824) |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2.88 | 0.99 | 2.96 | 1.09 | 3.65 | 1.00 | 2.72 | 1.11 | (621) |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2.74 | 1.02 | 3.05 | 1.08 | 3.61 | 1.07 | 2.68 | 1.12 | (584) |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2.78 | 0.98 | 2.91 | 1.07 | 3.61 | 1.02 | 2.53 | 1.06 | (471) | 100.0 |

(단위: 점, 명, %)

| 구 분 | 최근 출신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 | 출신을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출신을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정부는 출신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F | 1.959 | | 8.144 ^{****} | | 7.079 ^{****} | | 10.229 ^{****} | | | |
| 교육 | 2.85 | 1.03 | 2.95 | 1.11 | 3.48 | 1.08 | 2.80 | 1.11 | (609) | 100.0 |
| | 2.82 | 1.02 | 2.97 | 1.11 | 3.69 | 1.03 | 2.75 | 1.13 | (591) | 100.0 |
| | 2.74 | 0.96 | 2.86 | 1.12 | 3.64 | 0.98 | 2.49 | 1.06 | (675) | 100.0 |
| | 2.74 | 1.05 | 3.16 | 1.08 | 3.74 | 1.02 | 2.61 | 1.12 | (625) | 100.0 |
| F | 12.401 ^{****} | | 5.831 ^{****} | | 8.094 ^{****} | | 29.025 ^{****} | | | |
| 혼인 상태 | 2.70 | 0.98 | 2.83 | 1.13 | 3.62 | 1.06 | 2.65 | 1.05 | (684) | 100.0 |
| | 2.94 | 1.04 | 3.05 | 1.11 | 3.54 | 1.04 | 2.89 | 1.12 | (969) | 100.0 |
| | 2.69 | 0.99 | 3.03 | 1.10 | 3.74 | 0.99 | 2.39 | 1.10 | (723) | 100.0 |
| | 2.61 | 0.94 | 3.04 | 1.11 | 3.90 | 0.86 | 2.50 | 1.06 | (124) | 100.0 |
| t | 0.921 | | 4.108 ^{****} | | 3.774 ^{****} | | -2.535 [*] | | | |
| 자녀 여부 | 2.80 | 1.04 | 3.08 | 1.09 | 3.72 | 0.99 | 2.60 | 1.15 | (1,205) | 100.0 |
| | 2.77 | 0.98 | 2.90 | 1.13 | 3.56 | 1.06 | 2.71 | 1.07 | (1,295) | 100.0 |
| t | -2.036 [*] | | 3.639 ^{****} | | 3.115 ^{***} | | 0.136 | | | |
| 취업 여부 | 2.77 | 1.03 | 3.02 | 1.10 | 3.67 | 1.02 | 2.66 | 1.12 | (2,033) | 100.0 |
| | 2.87 | 0.92 | 2.81 | 1.14 | 3.51 | 1.07 | 2.65 | 1.07 | (467) | 100.0 |

| 구 분 |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 |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 가구 소득 | F | 1.344 | 4.702 ^{**} | 7.244 ^{***} | 4.206 ^{**} | | | | | | |
| | 2,000유로 미만 | 2.85 | 1.01 | 2.86 | 1.12 | 3.49 | 1.09 | 2.76 | 1.09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2.76 | 0.99 | 2.97 | 1.12 | 3.67 | 0.99 | 2.70 | 1.08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2.75 | 0.98 | 3.04 | 1.07 | 3.64 | 1.00 | 2.63 | 1.10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2.77 | 1.05 | 3.07 | 1.12 | 3.75 | 1.02 | 2.56 | 1.15 | (723) | 100.0 |
| 가구 유형 | F | 3.605 ^{**} | 6.424 ^{***} | 4.471 ^{**} | 6.976 ^{***} | | | | | | |
| | 무자녀 미혼 | 2.70 | 0.97 | 2.83 | 1.11 | 3.61 | 1.08 | 2.64 | 1.03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2.74 | 1.08 | 2.86 | 1.20 | 3.69 | 0.96 | 2.71 | 1.17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2.82 | 1.00 | 2.95 | 1.14 | 3.52 | 1.05 | 2.78 | 1.10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2.90 | 1.08 | 3.13 | 1.11 | 3.69 | 1.02 | 2.72 | 1.17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72 | 0.98 | 3.06 | 1.04 | 3.75 | 0.96 | 2.46 | 1.10 | (554) | 100.0 |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범불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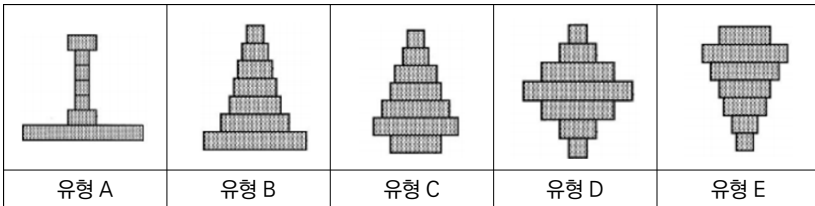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나.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5가지 유형으로 사회 구조를 제시하였다. “유형 A”는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하단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사회, “유형 B”는 상단에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 더 많은 사람들, 맨 아래에 대다수가 있는 사회, “유형 C”는 유형 B와 유사하지만 가장 아래 층에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점이 다른 사회, “유형 D”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회, “유형 E”는 상단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래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회이다.

[그림 4-2-1] 사회 구조 유형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독일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 구조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독일의 경우 유형 B(33.6%), 유형 C(19.0%), 유형 A(18.9%), 유형 D(15.1%), 유형 E(6.5%) 순인 반면, 한국의 경우 유형 B(22.1%), 유형 E(21.7%), 유형 C(20.8%), 유형 A(18.4%), 유형 D(12.1%)로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 모두 피라미드형의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많은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사회 구조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p < 0.001$), 남성의 경우 유형

B(33.0%), 유형 C(21.4%), 유형 A(17.0%), 유형 D(16.3%), 유형 E(7.5%) 순으로, 여성의 경우 유형 B(34.0%), 유형 A(20.9%), 유형 C(16.4%), 유형 D(13.8%), 유형 E(5.5%) 순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독일 사회 구조에 하위계층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p < 0.001$),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는 유형 B(36.9%), 유형 A(20.5%), 유형 D(14.1%), 유형 C(13.5%), 유형 E(4.1%) 순인 반면,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의 경우 유형 B(30.6%), 유형 C(24.8%), 유형 D(15.8%), 유형 A(14.7%), 유형 E(9.9%)로 나타나,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보다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가 독일 사회 구조에 하위계층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별 사회 구조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01$). 구체적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 유형 B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자는 유형 C(19.4%), 유형 A(18.3%) 순이었으나, 비취업자는 유형 A(21.4%), 유형 C(16.9%)로 나타나,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독일 사회 구조에 하위계층이 많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도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2,000유로 이하인 가구는 유형B(35.9%), 유형 A(19.7%), 유형 D(13.3%) 순이었으나,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가구는 유형 B(32.1%), 유형 C(22.3%), 유형 A(17.6%) 순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사회 구조에 하위 계층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3〉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유형 D | 유형 E | 모르 겠음 | 합계 | | |
|----------|------------------------|-----------|------|------|------|------|----------|---------|-------|--|
| 독일 | | 18.9 | 33.6 | 19.0 | 15.1 | 6.5 | 6.9 | (2,500) | 100.0 | |
| 한국 | | 18.4 | 22.1 | 20.8 | 12.1 | 21.7 | 4.8 | (2,500) | 100.0 | |
| 성별 | χ^2 | 41.739*** | | | | | | | | |
| | 남자 | 17.0 | 33.3 | 21.4 | 16.3 | 7.5 | 4.5 | (1,280) | 100.0 | |
| | 여자 | 20.9 | 34.0 | 16.4 | 13.8 | 5.5 | 9.4 | (1,220) | 100.0 | |
| 연령 | χ^2 | 34.170 | | | | | | | | |
| | 20~24세 | 15.3 | 31.7 | 21.8 | 16.6 | 7.0 | 7.5 | (385) | 100.0 | |
| | 25~29세 | 17.1 | 34.9 | 20.4 | 14.5 | 4.9 | 8.3 | (387) | 100.0 | |
| | 30~34세 | 16.0 | 33.0 | 22.4 | 14.0 | 6.9 | 7.6 | (406) | 100.0 | |
| | 35~39세 | 22.2 | 33.8 | 17.3 | 13.2 | 6.7 | 6.7 | (491) | 100.0 | |
| | 40~44세 | 19.0 | 35.6 | 17.2 | 17.7 | 5.8 | 4.7 | (464) | 100.0 | |
| | 45~49세 | 23.2 | 32.4 | 15.0 | 14.4 | 7.9 | 7.1 | (367) | 100.0 | |
| 지역 | χ^2 | 15.133 | | | | |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19.1 | 32.9 | 19.9 | 16.3 | 5.7 | 6.2 | (824) | 100.0 |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16.9 | 34.9 | 19.3 | 14.0 | 8.4 | 6.4 | (621) | 100.0 |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18.8 | 33.4 | 19.2 | 14.2 | 7.0 | 7.4 | (584) | 100.0 |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21.2 | 33.5 | 16.6 | 15.5 | 4.9 | 8.3 | (471) | 100.0 | |
| 교육 | χ^2 | 87.492*** | | | | |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20.5 | 36.9 | 13.5 | 14.1 | 4.1 | 10.8 | (609) | 100.0 |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17.1 | 32.0 | 21.5 | 17.3 | 6.8 | 5.4 | (591) | 100.0 | |
| | 직업교육 수료 | 22.8 | 35.0 | 16.3 | 13.3 | 5.3 | 7.3 | (675) | 100.0 |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14.7 | 30.6 | 24.8 | 15.8 | 9.9 | 4.2 | (625) | 100.0 | |
| 혼인 상태 | χ^2 | 17.444 | | | | | | | | |
| | 미혼 | 17.4 | 31.0 | 20.2 | 16.7 | 6.6 | 8.2 | (684) | 100.0 | |
| | 동거/사실혼 | 19.9 | 35.1 | 18.3 | 13.5 | 6.1 | 7.1 | (969) | 100.0 | |
| | 법률혼 | 18.3 | 34.2 | 19.8 | 15.5 | 7.2 | 5.1 | (723) | 100.0 | |
| | 이혼/별거/사별 | 22.6 | 33.9 | 12.9 | 16.1 | 5.6 | 8.9 | (124) | 100.0 | |
| 자녀 여부 | χ^2 | 16.006** | | | | | | | | |
| | 자녀 있음 | 21.1 | 34.3 | 18.7 | 14.4 | 6.3 | 5.3 | (1,205) | 100.0 | |
| | 자녀 없음 | 16.8 | 33.1 | 19.2 | 15.8 | 6.7 | 8.4 | (1,295) | 100.0 | |
| 취업 여부 | χ^2 | 46.235*** | | | | | | | | |
| | 취업 | 18.3 | 34.1 | 19.4 | 15.8 | 6.9 | 5.4 | (2,033) | 100.0 | |
| | 비취업 | 21.4 | 31.5 | 16.9 | 11.8 | 4.9 | 13.5 | (467) | 100.0 | |
| 가구 소득 | χ^2 | 65.835*** | | | | | | | | |
| | 2,000유로 미만 | 19.7 | 35.9 | 13.2 | 13.3 | 5.6 | 12.4 | (630) | 100.0 | |
| | 2,000~3,000유로 미만 | 20.9 | 33.8 | 19.8 | 14.5 | 5.6 | 5.4 | (612) | 100.0 | |
| | 3,000~4,000유로 미만 | 17.4 | 32.9 | 20.4 | 15.7 | 7.3 | 6.4 | (535) | 100.0 | |
| | 4,000유로 이상 | 17.6 | 32.1 | 22.3 | 16.6 | 7.6 | 3.9 | (723) | 100.0 | |

| 구 분 |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유형 D | 유형 E | 모르 겠음 | 합계 |
|----------|----------------------|---------|------|------|------|------|----------|-------------|
| | χ^2 | 32.880* | | | | | | |
| 가구 유형 | 무자녀 미혼 | 17.0 | 29.3 | 20.9 | 17.7 | 6.7 | 8.3 | (593) 100.0 |
| | 유자녀 미혼 | 19.8 | 41.8 | 15.4 | 9.9 | 5.5 | 7.7 | (91)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16.7 | 36.2 | 17.8 | 14.1 | 6.7 | 8.5 | (702)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19.8 | 35.9 | 19.1 | 14.1 | 6.4 | 4.6 | (560)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2.6 | 31.4 | 18.8 | 15.3 | 6.3 | 5.6 | (554)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매우 동의한다)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독일과 한국 대상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에 독일은 2.81점, 한국은 2.3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독일 3.73점, 한국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에 독일 3.93점, 한국 4.19점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문항에 독일 3.67점, 한국 4.15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한국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응답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에 대해 남성(2.93점)이 여성(2.68점)보다,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2.93점)와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2.98점)가中等교육 이수 이

하인 자(2.72점)와 직업교육 수료자(2.63점)보다, 취업자(2.85점)가 비취업자(2.64점)보다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도시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성별($p<0.001$), 연령대별($p<0.001$), 지역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취업 여부($p<0.001$), 가구소득별($p<0.01$)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와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문항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직업교육 수료자와 법률혼일 경우 다른 교육수준, 혼인상태인 경우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소득 격차와 상위 1%의 자산 소유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는 연령대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외에 소득 격차가 크다는 문항의 경우 자녀 여부($p<0.05$)와 가구 유형별($p<0.001$), 상위 1% 자산 소유에 대한 문항의 경우 가구소득별($p<0.01$)로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에 대해 남성(3.56점)보다 여성(3.78점)의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성별 동의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3.81점)와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3.80점)가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자(3.55점), 직업교육 수료자(3.54점)보다 기후변화가 국가에 심각한 위협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인 경우와 비취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혼인상태나 취업자인 경우보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성별($p<0.001$), 지역별($p<0.0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5$), 취업 여부($p<0.05$), 가구 유형별($p<0.05$)로 유의미하였다.

(표 4-2-14) 사회 문제에 대한 동의 여부

| 구 분 |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 |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 |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 |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2.81 | 1.08 | 3.73 | 1.05 | 3.93 | 1.06 | 3.67 | 1.18 | (2,500) | 100.0 |
| 한국 | 2.35 | 0.90 | 4.04 | 0.78 | 4.19 | 0.89 | 4.15 | 0.86 | (2,500) | 100.0 |
| t | 6.036*** | | -0.584 | | 0.160 | | -4.600*** | |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2.93 | 1.11 | 3.72 | 1.05 | 3.93 | 1.08 | 3.56 | 1.22 | (1,280) | 100.0 |
| 여자 | 2.68 | 1.02 | 3.74 | 1.05 | 3.92 | 1.03 | 3.78 | 1.12 | (1,220) | 100.0 |
| F | 5.663*** | | 20.502*** | | 6.460*** | | 0.392 | | | |
| 연령 | | | | | | | | | | |
| 20~24세 | 2.95 | 1.07 | 3.34 | 1.05 | 3.70 | 1.07 | 3.68 | 1.13 | (385) | 100.0 |
| 25~29세 | 2.95 | 1.07 | 3.56 | 1.08 | 3.85 | 1.05 | 3.68 | 1.13 | (387) | 100.0 |
| 30~34세 | 2.87 | 1.06 | 3.72 | 1.04 | 3.90 | 1.04 | 3.66 | 1.12 | (406) | 100.0 |
| 35~39세 | 2.75 | 1.08 | 3.87 | 1.02 | 4.07 | 1.03 | 3.61 | 1.24 | (491) | 100.0 |
| 40~44세 | 2.66 | 1.07 | 3.88 | 1.03 | 3.97 | 1.04 | 3.72 | 1.20 | (464) | 100.0 |
| 45~49세 | 2.70 | 1.07 | 3.96 | 0.98 | 4.01 | 1.08 | 3.68 | 1.23 | (367) | 100.0 |
| F | 6.881*** | | 0.466 | | 0.759 | | 2.823* | | | |
| 지역 | | | | | |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2.88 | 1.14 | 3.76 | 1.07 | 3.91 | 1.09 | 3.76 | 1.20 | (824) | 100.0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2.89 | 1.05 | 3.69 | 1.02 | 3.91 | 1.02 | 3.60 | 1.18 | (621) | 100.0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2.76 | 1.05 | 3.74 | 1.07 | 3.91 | 1.04 | 3.67 | 1.11 | (584) | 100.0 |
| 농촌(인구 5,000 미만) | 2.64 | 1.01 | 3.72 | 1.03 | 3.99 | 1.06 | 3.61 | 1.21 | (471) | 100.0 |

(단위: 점, 명, %)

| 구분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이다 | |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 |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 |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교육 | F | 15.445*** | 10.951*** | 7.215*** | 10.400*** | 3.55 | 1.15 | (609) | 100.0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2.72 | 1.12 | 3.56 | 1.14 | 3.79 | 1.09 | 3.81 | 1.15 |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2.93 | 1.07 | 3.69 | 1.01 | 3.90 | 1.02 | 3.54 | 1.20 | |
| | 직업교육 수료 | 2.63 | 1.03 | 3.88 | 1.03 | 4.06 | 1.03 | 3.80 | 1.17 |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2.98 | 1.05 | 3.76 | 1.00 | 3.93 | 1.07 | 3.301* | (625) | |
| 혼인 상태 | F | 7.262*** | 6.871*** | 6.194*** | 3.301* | 3.78 | 1.18 | (684) | 100.0 | |
| | 미혼 | 2.77 | 1.06 | 3.72 | 1.07 | 3.95 | 1.08 | 3.65 | 1.12 | |
| | 동거/사실혼 | 2.92 | 1.09 | 3.63 | 1.06 | 3.82 | 1.07 | 3.62 | 1.25 | |
| | 법률혼 | 2.74 | 1.05 | 3.85 | 1.03 | 4.04 | 1.01 | 3.49 | 1.14 | |
| | 이혼/별거/사별 | 2.54 | 1.10 | 3.84 | 0.99 | 3.94 | 1.02 | -1.95 | (124) | |
| 자녀 여부 | t | -0.637 | 2.142* | 1.316 | -1.95 | 3.62 | 1.18 | (1,205) | 100.0 | |
| | 자녀 있음 | 2.79 | 1.09 | 3.78 | 1.06 | 3.95 | 1.03 | 3.71 | 1.18 | |
| | 자녀 없음 | 2.82 | 1.06 | 3.69 | 1.05 | 3.90 | 1.08 | (1,295) | 100.0 | |
| 취업 여부 | t | 3.849*** | 0.533 | 0.255 | -1.983* | 3.65 | 1.18 | (2,033) | 100.0 | |
| | 취업 | 2.85 | 1.08 | 3.73 | 1.04 | 3.93 | 1.06 | 3.77 | 1.16 | |
| | 비취업 | 2.64 | 1.06 | 3.70 | 1.13 | 3.91 | 1.03 | (467) | 100.0 | |
| 가구 소득 | F | 4.866** | 1.657 | 4.122** | 1.930 | 3.74 | 1.14 | (630) | 100.0 | |
| | 2,000유로 미만 | 2.69 | 1.08 | 3.69 | 1.12 | 3.88 | 1.04 | 3.65 | 1.18 | |
| | 2,000~3,000유로 미만 | 2.78 | 1.05 | 3.78 | 1.06 | 4.05 | 0.99 | 3.58 | 1.14 | |
| | 3,000~4,000유로 미만 | 2.84 | 1.06 | 3.67 | 1.04 | 3.91 | 1.05 | 3.69 | 1.22 | |
| | 4,000유로 이상 | 2.91 | 1.09 | 3.77 | 1.00 | 3.87 | 1.12 | (723) | 100.0 | |

| 구 분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이다 | |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 |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 | 기후변화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F | 1.957 | | 5.259*** | | 2.132 | | 3.303* | | | |
| 무자녀 미혼 | 2.77 | 1.06 | 3.71 | 1.06 | 3.95 | 1.10 | 3.82 | 1.17 | (593) | 100.0 |
| 유자녀 미혼 | 2.77 | 1.08 | 3.78 | 1.13 | 3.97 | 0.95 | 3.52 | 1.16 | (91) | 100.0 |
| 무자녀 기혼 ¹⁾ | 2.87 | 1.06 | 3.66 | 1.04 | 3.85 | 1.06 | 3.63 | 1.17 | (702) | 100.0 |
| 유자녀 기혼(1자녀) | 2.87 | 1.14 | 3.65 | 1.10 | 3.89 | 1.07 | 3.65 | 1.13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2.73 | 1.04 | 3.90 | 0.99 | 4.02 | 1.00 | 3.61 | 1.23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라. 사회에서의 개인 성공을 위한 요인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개인의 노력”, “정치적 인맥”,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총 6가지로 구성하여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필수적이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독일과 한국을 대상으로 개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 독일 3.77점, 한국 3.91점,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경우 독일 3.70점, 한국 3.83점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개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노력”의 경우 독일 4.08점, 한국 4.04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성공을 위해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인맥”의 경우 독일 3.21점, 한국 3.29점으로 한국에서 독일보다 개인의 성공에서 정치적 인맥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은 독일 각각 3.00점, 3.07점, 한국은 2.70점, 2.81점으로 한국에 비해 독일이 성별과 인종, 민족적 배경이 개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개인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에 대해 독일인의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유한 가정”에 대해 법률혼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다른 혼인상태나 자녀가 없는 경우, 비취업자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p < 0.01$), 자녀 여부($p < 0.05$), 취업 여부($p < 0.05$), 가구 유형별($p < 0.05$) 중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 성공을 위해 중

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도시(3.79점)일 경우 농촌(3.61점)이나 중도시(3.60점)일 경우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 수료자와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자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다른 교육수준과 혼인상태일 경우보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요인의 중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취업자일 경우도 자녀가 없는 경우나 비취업자일 경우보다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가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p < 0.001$), 지역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취업 여부($p < 0.001$), 가구소득별($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개인의 성공을 위해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개인의 노력”은 여성(4.16점)이 남성(4.01점)보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노력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 수료자일 경우 다른 교육수준보다 개인의 노력이 개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거/사실혼의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노력”의 중요 정도는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5$), 교육수준별($p < 0.01$), 혼인상태별($p < 0.001$), 취업 여부($p < 0.05$), 가구소득별($p < 0.01$)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인맥”의 중요 정도에 대해 남성일 경우, 대도시일 경우,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자인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

우 다른 성별, 지역, 교육수준, 혼인상태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p < 0.001$), 지역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5$), 혼인상태별($p < 0.001$)로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정치적 인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요인 중 “성별”의 경우 대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중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업교육 수료자가 다른 교육수준보다 중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동거/사실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유자녀 기혼인 경우 다른 혼인상태나 가구 유형,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성별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p < 0.05$), 교육수준별($p < 0.05$), 혼인상태별($p < 0.01$), 자녀 여부($p < 0.01$), 가구 유형별($p < 0.01$)로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성별의 중요 정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요인의 중요 정도가 대도시일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의 중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요인은 지역별($p < 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5$), 가구 유형별($p < 0.01$)로 중요 정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부유한 가정 | |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 | 개인의 노력 | | 정치적 인맥 | | 성별 | |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F | 1.063 | | 6.086*** | | 4.850** | | 3.632* | | 2.734* | | 1.731 | | | |
| 교육 | 3.73 | 0.93 | 3.58 | 0.94 | 3.99 | 0.90 | 3.19 | 1.05 | 3.00 | 1.19 | 3.03 | 1.21 | (609) | 100.0 |
| | 3.76 | 0.83 | 3.68 | 0.89 | 4.09 | 0.89 | 3.27 | 1.04 | 3.04 | 1.15 | 3.08 | 1.21 | (591) | 100.0 |
| | 3.80 | 0.79 | 3.77 | 0.85 | 4.17 | 0.84 | 3.12 | 1.08 | 2.91 | 1.10 | 3.01 | 1.13 | (675) | 100.0 |
| | 3.80 | 0.81 | 3.76 | 0.87 | 4.07 | 0.91 | 3.28 | 1.02 | 3.08 | 1.12 | 3.15 | 1.16 | (625) | 100.0 |
| F | 5.416** | | 9.233*** | | 7.454*** | | 6.124*** | | 5.042** | | 7.429*** | | | |
| 혼인 상태 | 3.78 | 0.82 | 3.63 | 0.92 | 4.12 | 0.88 | 3.14 | 1.07 | 2.89 | 1.15 | 2.93 | 1.21 | (684) | 100.0 |
| | 3.69 | 0.90 | 3.64 | 0.92 | 3.98 | 0.93 | 3.32 | 1.03 | 3.11 | 1.12 | 3.19 | 1.16 | (969) | 100.0 |
| | 3.86 | 0.75 | 3.85 | 0.81 | 4.17 | 0.83 | 3.15 | 1.05 | 2.98 | 1.15 | 3.02 | 1.15 | (723) | 100.0 |
| | 3.81 | 0.86 | 3.70 | 0.83 | 4.13 | 0.80 | 3.10 | 0.96 | 2.95 | 1.07 | 3.10 | 1.15 | (124) | 100.0 |
| t | 2.590* | | 4.290*** | | 1.025 | | 1.394 | | 3.259** | | 2.416* | | | |
| 자녀 여부 | 3.82 | 0.82 | 3.78 | 0.87 | 4.10 | 0.88 | 3.24 | 1.04 | 3.08 | 1.13 | 3.12 | 1.17 | (1,205) | 100.0 |
| | 3.73 | 0.85 | 3.63 | 0.91 | 4.06 | 0.88 | 3.18 | 1.06 | 2.93 | 1.15 | 3.01 | 1.18 | (1,295) | 100.0 |
| t | 2.335* | | 3.912*** | | 2.075* | | 1.957 | | 1.848 | | 1.948 | | | |
| 취업 여부 | 3.79 | 0.83 | 3.73 | 0.88 | 4.10 | 0.87 | 3.23 | 1.04 | 3.02 | 1.14 | 3.09 | 1.17 | (2,033) | 100.0 |
| | 3.69 | 0.87 | 3.55 | 0.93 | 4.00 | 0.94 | 3.13 | 1.07 | 2.92 | 1.13 | 2.97 | 1.20 | (467) | 100.0 |
| F | 2.017 | | 7.996*** | | 4.619** | | 2.537 | | 1.221 | | 0.877 | | | |
| 가구 소득 | 3.72 | 0.90 | 3.59 | 0.92 | 4.00 | 0.93 | 3.13 | 1.05 | 2.93 | 1.17 | 3.03 | 1.22 | (630) | 100.0 |
| | 3.78 | 0.79 | 3.74 | 0.88 | 4.08 | 0.87 | 3.29 | 1.06 | 3.02 | 1.17 | 3.07 | 1.19 | (612) | 100.0 |
| | 3.74 | 0.81 | 3.65 | 0.87 | 4.05 | 0.83 | 3.20 | 0.99 | 3.03 | 1.08 | 3.03 | 1.10 | (535) | 100.0 |
| | 3.83 | 0.84 | 3.81 | 0.87 | 4.17 | 0.88 | 3.22 | 1.07 | 3.04 | 1.13 | 3.12 | 1.18 | (723) | 100.0 |

| 구 분 | 부유한 가정 | |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 | 개인의 노력 | | 정치적 인맥 | | 성별 | |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F | 2.801* | | 6.421*** | 2.077 | 1.788 | 3.890** | 4.325** | | | | | | | |
| 무자녀 미혼 | 3.78 | 0.83 | 3.63 | 0.92 | 4.11 | 0.89 | 3.12 | 1.07 | 2.87 | 1.15 | 2.91 | 1.22 | (593) | 100.0 |
| 유자녀 미혼 | 3.79 | 0.80 | 3.69 | 0.94 | 4.19 | 0.84 | 3.26 | 1.06 | 3.03 | 1.16 | 3.03 | 1.18 | (91) | 100.0 |
| 무자녀 기혼 ¹⁾ | 3.69 | 0.87 | 3.63 | 0.90 | 4.02 | 0.88 | 3.24 | 1.04 | 2.99 | 1.14 | 3.09 | 1.14 | (702) | 100.0 |
| 유자녀 기혼(1자녀) | 3.80 | 0.89 | 3.72 | 0.93 | 4.05 | 0.93 | 3.27 | 1.05 | 3.12 | 1.15 | 3.20 | 1.20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3.83 | 0.76 | 3.85 | 0.78 | 4.14 | 0.84 | 3.21 | 1.03 | 3.05 | 1.11 | 3.07 | 1.14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범불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필수적이다(5점)로 평균 점수가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이 중요 정도가 높고 필수적인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마. 현재 대비 부모 세대,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약간 좋아졌다”와 “훨씬 좋아졌다”의 비율이 독일 49.5%, 한국 61.1%로 독일보다 한국이 현재 생활 수준이 더 좋게 변화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차이도 독일 3.36점, 한국 3.61점으로 독일보다 한국이 부모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부모 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43점)인 경우 여성(3.29점)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 세대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일 경우와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상인 자의 경우 다른 지역이나 교육수준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유형 중 동거/사실혼의 경우와 가구 유형 중 기혼인 경우 부모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가 나아졌다고 인식하였으며, 취업자(3.45점)의 경우 비취업자(3.00점)보다 생활 수준의 변화가 더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 대비 현재 생활 수준 변화는 성별($p < 0.05$), 연령대별($p < 0.01$), 지역별($p < 0.05$),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취업 여부($p < 0.001$), 가구소득별($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6〉 부모님 세대 대비 현재의 생활 수준 변화

(단위: %, 점, 명)

| 구 분 | | 훨씬 나빠졌다 | 약간 나빠졌다 | 차이가 거의 없다 | 약간 좋아졌다 | 훨씬 좋아졌다 | 평균 | SD | 합계 | | |
|-------|------------------------|------------|---------|-----------|---------|---------|------|------|---------|-------|--|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 독일 | | 7.5 | 16.0 | 27.0 | 31.9 | 17.6 | 3.36 | 1.16 | (2,500) | 100.0 | |
| 한국 | | 8.3 | 10.4 | 20.2 | 34.6 | 26.5 | 3.61 | 1.21 | (2,500) | 100.0 | |
| 성별 | χ^2 | 11.455* | | | | | | | | | |
| | 남자 | 6.3 | 14.7 | 27.0 | 33.8 | 18.3 | 3.43 | 1.13 | (1,280) | 100.0 | |
| | 여자 | 8.8 | 17.3 | 27.0 | 29.9 | 17.0 | 3.29 | 1.19 | (1,220) | 100.0 | |
| 연령 | χ^2 | 58.786*** | | | | | | | | | |
| | 20~24세 | 3.4 | 14.3 | 24.7 | 37.7 | 20.0 | 3.57 | 1.07 | (385) | 100.0 | |
| | 25~29세 | 4.4 | 11.1 | 27.6 | 33.6 | 23.3 | 3.60 | 1.09 | (387) | 100.0 | |
| | 30~34세 | 7.9 | 14.3 | 26.8 | 35.0 | 16.0 | 3.37 | 1.15 | (406) | 100.0 | |
| | 35~39세 | 9.4 | 17.1 | 28.1 | 29.5 | 15.9 | 3.25 | 1.19 | (491) | 100.0 | |
| | 40~44세 | 9.1 | 20.3 | 26.5 | 26.9 | 17.2 | 3.23 | 1.21 | (464) | 100.0 | |
| | 45~49세 | 10.1 | 17.7 | 28.3 | 30.0 | 13.9 | 3.20 | 1.18 | (367) | 100.0 | |
| 지역 | χ^2 | 23.461* | | | | | |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8.5 | 15.7 | 26.1 | 29.2 | 20.5 | 3.38 | 1.21 | (824) | 100.0 |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8.2 | 19.2 | 26.9 | 30.4 | 15.3 | 3.25 | 1.17 | (621) | 100.0 |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6.5 | 13.4 | 29.3 | 34.8 | 16.1 | 3.41 | 1.11 | (584) | 100.0 |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5.9 | 15.5 | 26.1 | 34.8 | 17.6 | 3.43 | 1.13 | (471) | 100.0 | |
| 교육 | χ^2 | 42.455*** | | | | | |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9.7 | 16.1 | 27.9 | 28.6 | 17.7 | 3.29 | 1.21 | (609) | 100.0 |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5.1 | 13.7 | 26.2 | 35.5 | 19.5 | 3.51 | 1.10 | (591) | 100.0 | |
| | 직업교육 수료 | 10.2 | 17.9 | 27.9 | 30.7 | 13.3 | 3.19 | 1.18 | (675) | 100.0 |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4.6 | 15.8 | 26.1 | 33.0 | 20.5 | 3.49 | 1.12 | (625) | 100.0 | |
| 혼인 상태 | χ^2 | 53.616*** | | | | | | | | | |
| | 미혼 | 10.2 | 19.6 | 26.2 | 27.3 | 16.7 | 3.21 | 1.23 | (684) | 100.0 | |
| | 동거/사실혼 | 6.0 | 12.2 | 28.1 | 34.8 | 19.0 | 3.49 | 1.11 | (969) | 100.0 | |
| | 법률혼 | 5.8 | 16.0 | 27.5 | 33.6 | 17.0 | 3.40 | 1.12 | (723) | 100.0 | |
| | 이혼/별거/사별 | 13.7 | 25.0 | 21.0 | 24.2 | 16.1 | 3.04 | 1.30 | (124) | 100.0 | |
| 자녀 여부 | χ^2 | 3.773 | | | | | | | | | |
| | 자녀 있음 | 6.9 | 15.2 | 26.6 | 33.1 | 18.3 | 3.41 | 1.15 | (1,205) | 100.0 | |
| | 자녀 없음 | 8.0 | 16.7 | 27.5 | 30.7 | 17.1 | 3.32 | 1.17 | (1,295) | 100.0 | |
| 취업 여부 | χ^2 | 64.597*** | | | | | | | | | |
| | 취업 | 6.0 | 14.6 | 27.4 | 33.1 | 19.0 | 3.45 | 1.13 | (2,033) | 100.0 | |
| | 비취업 | 14.1 | 22.1 | 25.5 | 26.8 | 11.6 | 3.00 | 1.23 | (467) | 100.0 | |
| 가구 소득 | χ^2 | 122.776*** | | | | | | | | | |
| | 2,000유로 미만 | 13.3 | 22.4 | 29.7 | 22.7 | 11.9 | 2.97 | 1.21 | (630) | 100.0 | |
| | 2,000~3,000유로 미만 | 6.9 | 15.0 | 24.8 | 35.0 | 18.3 | 3.43 | 1.15 | (612) | 100.0 | |
| | 3,000~4,000유로 미만 | 5.6 | 15.5 | 30.3 | 32.1 | 16.4 | 3.38 | 1.10 | (535) | 100.0 | |
| | 4,000유로 이상 | 4.3 | 11.5 | 24.2 | 37.1 | 23.0 | 3.63 | 1.09 | (723) | 100.0 | |

| 구 분 | | 훨씬 나빠졌다 | 약간 나빠졌다 | 차이가 거의 없다 | 약간 좋아졌다 | 훨씬 좋아졌다 | 평균 | SD | 합계 | |
|-------|----------------------|--------------------|---------|-----------|---------|---------|------|------|-------|-------|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 | χ^2 46.341*** | | | | | | | | |
| 가구 유형 | 무자녀 미혼 | 9.4 | 18.2 | 26.5 | 28.0 | 17.9 | 3.27 | 1.22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15.4 | 28.6 | 24.2 | 23.1 | 8.8 | 2.81 | 1.21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6.8 | 15.4 | 28.3 | 33.0 | 16.4 | 3.37 | 1.13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5.2 | 13.2 | 25.5 | 35.0 | 21.1 | 3.54 | 1.12 | (560)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7.2 | 15.0 | 28.0 | 32.9 | 17.0 | 3.37 | 1.14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4) 훨씬 나빠졌다(1점)~훨씬 좋아졌다(5점)로 리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세대 대비 현재의 생활 수준 변화가 좋아졌다고 인식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훨씬 나빠질 것이다”와 “약간 나빠질 것이다”의 비율이 독일은 26.2%, 한국은 28.9%으로 한국에서 조금 더 생활 수준 변화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3.19점, 한국 3.16점으로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 생활 수준의 변화에 대해 독일이 한국에 비해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의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3.29점)이 여성(3.09점)보다 자녀 세대에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생활 수준 변화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지역(3.04)보다 대도시 지역(3.27점)일 경우, 직업교육 수료자(3.01점)보다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상인 자인 경우(3.27점)에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 변화를 더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동거/사실혼(3.37점)과 법률혼(3.11점)인 경우에 이혼/별거/사별(2.98점)이나 미혼(3.05점)인 경우보다 생활 수준 변화에 더 긍정적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3.27점)가 없는 경우(3.11점)보다 자녀의 생활 수준 변

화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3.21점)인 경우 비취업자(3.11점)보다 자녀의 생활 수준이 더 좋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0유로 미만인 가구(3.06점)보다 4,000유로 이상인 가구(3.30점)에서 현재 대비 미래 세대의 생활 수준 변화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미혼인 가구보다 기혼인 가구에서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이 더 좋아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 수준 대비 자녀 생활 수준의 변화는 성별(p<0.001), 연령대별(p<0.001), 지역별(p<0.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5),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7〉 본인 대비 자녀들의 생활 수준 변화(예상)

(단위: %, 명)

| 구 분 | | 훨씬 나빠질 것이다 | 약간 나빠질 것이다 |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 약간 좋아질 것이다 | 훨씬 좋아질 것이다 | 평균 | SD | 합계 | | |
|----------|------------------------|------------|------------|---------------|------------|------------|------|------|---------|-------|--|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 독일 | | 7.5 | 18.7 | 34.2 | 26.6 | 13.0 | 3.19 | 1.11 | (2,500) | 100.0 | |
| 한국 | | 11.5 | 17.4 | 28.8 | 28.2 | 14.1 | 3.16 | 1.21 | (2,500) | 100.0 | |
| χ^2 | | 21.690*** | | | | | | | | | |
| 성별 | 남자 | 6.4 | 17.3 | 32.7 | 28.3 | 15.2 | 3.29 | 1.11 | (1,280) | 100.0 | |
| | 여자 | 8.6 | 20.2 | 35.8 | 24.8 | 10.6 | 3.09 | 1.10 | (1,220) | 100.0 | |
| χ^2 | | 91.777*** | | | | | | | | | |
| 연령 | 20~24세 | 3.6 | 12.7 | 33.2 | 30.1 | 20.3 | 3.51 | 1.06 | (385) | 100.0 | |
| | 25~29세 | 4.9 | 15.0 | 31.3 | 32.3 | 16.5 | 3.41 | 1.08 | (387) | 100.0 | |
| | 30~34세 | 6.2 | 20.4 | 30.8 | 29.1 | 13.5 | 3.23 | 1.11 | (406) | 100.0 | |
| | 35~39세 | 8.6 | 20.2 | 35.2 | 26.3 | 9.8 | 3.09 | 1.09 | (491) | 100.0 | |
| | 40~44세 | 11.2 | 20.7 | 36.2 | 21.8 | 10.1 | 2.99 | 1.13 | (464) | 100.0 | |
| | 45~49세 | 9.5 | 22.6 | 38.4 | 20.7 | 8.7 | 2.96 | 1.08 | (367) | 100.0 | |
| χ^2 | | 35.897*** | | | | | | | | | |
| 지역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6.8 | 19.4 | 30.6 | 26.2 | 17.0 | 3.27 | 1.16 | (824) | 100.0 |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8.1 | 14.8 | 36.2 | 28.5 | 12.4 | 3.22 | 1.10 | (621) | 100.0 |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7.4 | 18.5 | 37.0 | 25.7 | 11.5 | 3.15 | 1.08 | (584) | 100.0 |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8.1 | 22.9 | 34.6 | 25.9 | 8.5 | 3.04 | 1.07 | (471) | 100.0 | |

| 구 분 | | 훨씬 나빠질 것이다 | 약간 나빠질 것이다 |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 약간 좋아질 것이다 | 훨씬 좋아질 것이다 | 평균 | SD | 합계 | |
|----------|----------------------|--------------------|------------------|------------------------|------------------|------------------|------|------|---------|-------|
| | | | | | | | | | 사례 수 | 비율 |
| | | χ^2 48.206*** | | | | | | | | |
| 교육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9.7 | 16.6 | 31.9 | 25.6 | 16.3 | 3.22 | 1.19 | (609) |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6.8 | 18.3 | 30.6 | 29.4 | 14.9 | 3.27 | 1.13 | (591) |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9.0 | 22.1 | 36.0 | 24.4 | 8.4 | 3.01 | 1.08 | (675) |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4.3 | 17.6 | 38.1 | 27.2 | 12.8 | 3.27 | 1.03 | (625) | 100.0 |
| | | χ^2 59.535*** | | | | | | | | |
| 혼인 상태 | 미혼 | 9.6 | 21.5 | 35.7 | 20.3 | 12.9 | 3.05 | 1.15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5.7 | 15.1 | 31.8 | 32.0 | 15.5 | 3.37 | 1.09 | (969) | 100.0 |
| | 법률혼 | 6.9 | 20.7 | 36.4 | 25.9 | 10.1 | 3.11 | 1.07 | (723) | 100.0 |
| | 이혼/별거/사별 | 12.9 | 20.2 | 33.1 | 23.4 | 10.5 | 2.98 | 1.18 | (124) | 100.0 |
| | | χ^2 23.698*** | | | | | | | | |
| 자녀 여부 | 자녀 있음 | 6.1 | 17.3 | 32.9 | 30.6 | 13.1 | 3.27 | 1.08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8.7 | 20.1 | 35.5 | 22.9 | 12.8 | 3.11 | 1.13 | (1,295) | 100.0 |
| | | χ^2 11.139* | | | | | | | | |
| 취업 여부 | 취업 | 6.7 | 18.9 | 34.2 | 27.3 | 12.9 | 3.21 | 1.10 | (2,033) | 100.0 |
| | 비취업 | 10.9 | 17.8 | 34.3 | 23.8 | 13.3 | 3.11 | 1.17 | (467) | 100.0 |
| | | χ^2 37.035*** | | | | | | | | |
| 가구 소득 | 2,000유로 미만 | 11.9 | 19.4 | 31.3 | 25.6 | 11.9 | 3.06 | 1.18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6.4 | 20.9 | 31.9 | 27.8 | 13.1 | 3.20 | 1.11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7.3 | 18.1 | 37.0 | 25.8 | 11.8 | 3.17 | 1.08 | (535) | 100.0 |
| | 4,000유로 이상 | 4.7 | 16.7 | 36.8 | 27.1 | 14.7 | 3.30 | 1.06 | (723) | 100.0 |
| | | χ^2 44.095*** | | | | | | | | |
| 가구 유형 | 무자녀 미혼 | 9.3 | 22.1 | 35.8 | 19.6 | 13.3 | 3.06 | 1.15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12.1 | 17.6 | 35.2 | 25.3 | 9.9 | 3.03 | 1.15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8.3 | 18.4 | 35.3 | 25.6 | 12.4 | 3.16 | 1.12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4.8 | 17.5 | 30.5 | 31.8 | 15.4 | 3.35 | 1.08 | (560) |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6.5 | 17.0 | 34.8 | 30.3 | 11.4 | 3.23 | 1.07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4) 훨씬 나빠질 것이다(1점)~훨씬 좋아질 것이다(5점)로 리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 대비 자녀 생활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인식함을 의미함.

5.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가.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현재 인구정책 중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총 8가지 정책에 대해 1점(전혀 모른다)~5점(매우 잘 안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일과 한국의 인구정책 인지 정도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이 한국보다 각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의 경우 독일 3.48점, 한국 2.88점,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의 경우 3.01점, 2.95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독일 3.85점, 한국 3.12점, “어린이집 지원” 독일 3.37점, 2.89점, “자녀에 대한 수당” 독일 3.91점, 한국 3.00점, “세금을 통한 지원” 독일 3.34점, 한국 2.65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독일 3.07점, 한국 2.91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독일 2.67점, 한국 2.37점으로 나타났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독일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우선 “임신, 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3.55점)이 남성(3.40점)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다른 혼인상태보다 법률혼이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3.71점)가 없는 경우(3.26점)보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해 성별($p<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대도시일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경우, 동거/사실혼일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p<0.01$),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혼인상태별($p<0.001$)로 인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여성(3.92점)이 남성(3.85점)보다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p<0.01$), 연령대별($p<0.05$), 교육수준별($p<0.001$), 혼인상태별($p<0.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5$), 가구소득별($p<0.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 정책의 경우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이상인 경우, 동거/사실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3,000~4,000유로인 경우에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수당”은 여성인 경우, 대도시인 경우, 학사 학위 취득 이상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지원”은 교육수준별($p<0.05$), 혼인상태별($p<0.01$), 자녀 여부($p<0.001$), 취업 여부($p<0.01$), 가구소득별($p<0.01$), 가구 유형별($p<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수당”은 성별($p < 0.001$), 지역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가구소득별($p < 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금을 통한 지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도시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경우와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세금을 통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의 경우는 남성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경우, 동거/사실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3,000~4,000유로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정책에 인지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을 통한 지원”의 경우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01$), 지역별($p < 0.05$),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취업 여부($p < 0.001$), 가구소득별($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성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취업 여부($p < 0.05$), 가구소득별($p < 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인지 정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도시일수록 해당 정책의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인 경우, 중등교육 이수 이하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은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01$), 지역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취업 여부($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인지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2-18) 인구정책 인식도

| 구 분 | 임신, 출산 지원 | |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 | 어린이집 지원 | | 자녀에 대한 수당 | | 세금을 통한 지원 |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3.48 | 1.05 | 3.01 | 1.13 | 3.85 | 0.99 | 3.37 | 1.05 | 3.91 | 0.98 | 3.34 | 1.09 | 3.07 | 1.11 | 2.67 | 1.24 | (2,500) | 100.0 |
| 한국 | 2.88 | 0.89 | 2.95 | 0.93 | 3.12 | 0.89 | 2.89 | 0.94 | 3.00 | 0.98 | 2.65 | 0.94 | 2.91 | 0.97 | 2.37 | 0.98 | (2,500) | 100.0 |
| t | -3.485** | | 1.280 | | -3.345** | | 1.692 | | -3.768*** | | 3.703*** | | 3.309** | | 5.792*** | | | |
| 성별 | 3.40 | 1.02 | 3.03 | 1.09 | 3.78 | 0.99 | 3.41 | 1.01 | 3.84 | 0.99 | 3.42 | 1.07 | 3.14 | 1.08 | 2.81 | 1.25 | (1,280) | 100.0 |
| 남자 | 3.55 | 1.08 | 2.98 | 1.18 | 3.92 | 1.00 | 3.34 | 1.08 | 3.99 | 0.96 | 3.25 | 1.11 | 2.99 | 1.14 | 2.52 | 1.21 | (1,220) | 100.0 |
| 여자 | 1.389 | | 1.635 | | 2.608* | | 1.133 | | 2.101 | | 7.397*** | | 1.373 | | 10.070*** | | | |
| F | 3.35 | 1.08 | 3.04 | 1.10 | 3.74 | 1.05 | 3.29 | 1.03 | 3.82 | 1.01 | 3.09 | 1.11 | 3.16 | 1.11 | 2.84 | 1.22 | (385) | 100.0 |
| 20~24세 | 3.48 | 1.00 | 3.11 | 1.05 | 3.79 | 0.93 | 3.46 | 1.00 | 3.87 | 0.95 | 3.29 | 1.08 | 3.13 | 1.02 | 2.91 | 1.23 | (387) | 100.0 |
| 25~29세 | 3.50 | 1.02 | 3.05 | 1.12 | 3.82 | 1.00 | 3.36 | 1.03 | 3.85 | 0.99 | 3.28 | 1.10 | 3.03 | 1.13 | 2.79 | 1.22 | (406) | 100.0 |
| 30~34세 | 3.52 | 1.04 | 2.96 | 1.17 | 3.95 | 0.98 | 3.39 | 1.06 | 3.98 | 0.94 | 3.39 | 1.09 | 3.07 | 1.13 | 2.55 | 1.23 | (491) | 100.0 |
| 35~39세 | 3.50 | 1.07 | 2.98 | 1.20 | 3.90 | 1.00 | 3.35 | 1.08 | 3.97 | 0.98 | 3.43 | 1.11 | 3.00 | 1.15 | 2.51 | 1.25 | (464) | 100.0 |
| 40~44세 | 3.49 | 1.11 | 2.90 | 1.14 | 3.86 | 1.00 | 3.38 | 1.07 | 3.95 | 1.00 | 3.52 | 1.01 | 3.03 | 1.12 | 2.45 | 1.20 | (367) | 100.0 |
| 45~49세 | 1.984 | | 4.276** | | 0.148 | | 1.765 | | 4.152** | | 2.982* | | 2.182 | | 5.474** | | | |
| F | 3.54 | 1.06 | 3.07 | 1.14 | 3.86 | 0.99 | 3.44 | 1.04 | 4.00 | 0.96 | 3.43 | 1.12 | 3.14 | 1.14 | 2.73 | 1.26 | (824) | 100.0 |
| 지역 | 3.48 | 1.01 | 3.07 | 1.11 | 3.83 | 0.95 | 3.37 | 1.02 | 3.84 | 0.97 | 3.29 | 1.06 | 3.05 | 1.07 | 2.73 | 1.21 | (621) | 100.0 |
| 수도시(인구 100,000 이상) | 3.45 | 1.05 | 2.96 | 1.12 | 3.84 | 1.01 | 3.32 | 1.04 | 3.85 | 1.00 | 3.28 | 1.10 | 3.07 | 1.13 | 2.67 | 1.21 | (584) | 100.0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3.39 | 1.10 | 2.86 | 1.16 | 3.85 | 1.03 | 3.34 | 1.09 | 3.93 | 0.99 | 3.31 | 1.08 | 2.98 | 1.10 | 2.46 | 1.23 | (471) | 100.0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 | | | | | | | | | | | | | | |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 | | | | | | | | | | | | | | | | |

(단위: 점, 명, %)

| 구분 | 임신, 출산 지원 | |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 | 어린아침 지원 | | 자녀에 대한 수당 | | 세금을 통한 지원 |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교육 | 1.711 | | 6.862*** | | 7.173*** | | 3.081* | | 4.998** | | 6.662*** | | 6.529*** | | 9.092*** | | | |
| | 3.40 | 1.08 | 3.13 | 1.11 | 3.69 | 1.03 | 3.31 | 1.10 | 3.78 | 1.05 | 3.21 | 1.17 | 3.06 | 1.14 | 2.82 | 1.22 | (609) | 100.0 |
| | 3.51 | 1.05 | 3.06 | 1.16 | 3.89 | 0.99 | 3.43 | 1.02 | 3.93 | 0.97 | 3.33 | 1.03 | 3.14 | 1.08 | 2.71 | 1.24 | (591) | 100.0 |
| | 3.47 | 1.08 | 2.86 | 1.12 | 3.90 | 1.01 | 3.31 | 1.03 | 3.95 | 0.97 | 3.33 | 1.11 | 2.92 | 1.11 | 2.47 | 1.18 | (675) | 100.0 |
| | 3.52 | 1.00 | 2.98 | 1.14 | 3.91 | 0.94 | 3.44 | 1.03 | 3.97 | 0.91 | 3.48 | 1.04 | 3.17 | 1.12 | 2.68 | 1.28 | (625) | 100.0 |
| 혼인 상태 | 18.275*** | | 7.354*** | | 20.154*** | | 5.891** | | 9.234*** | | 8.576*** | | 11.916*** | | 31.765*** | | | |
| | 3.31 | 1.06 | 2.86 | 1.14 | 3.80 | 0.98 | 3.25 | 1.04 | 3.92 | 0.98 | 3.20 | 1.13 | 2.90 | 1.13 | 2.41 | 1.18 | (684) | 100.0 |
| | 3.42 | 1.05 | 3.12 | 1.08 | 3.72 | 1.01 | 3.45 | 1.01 | 3.80 | 0.99 | 3.31 | 1.07 | 3.22 | 1.07 | 2.96 | 1.23 | (969) | 100.0 |
| | 3.70 | 1.01 | 2.98 | 1.17 | 4.08 | 0.94 | 3.40 | 1.07 | 4.05 | 0.93 | 3.49 | 1.07 | 3.03 | 1.12 | 2.54 | 1.24 | (723) | 100.0 |
| | 3.49 | 1.02 | 3.06 | 1.16 | 3.77 | 1.03 | 3.27 | 1.13 | 3.93 | 1.00 | 3.42 | 1.12 | 3.04 | 1.16 | 2.51 | 1.19 | (124) | 100.0 |
| 자녀 여부 | 11.032*** | | 8.469*** | | 8.459*** | | 6.840*** | | 7.328*** | | 6.809*** | | 5.057*** | | 4.318*** | | | |
| | 3.71 | 1.00 | 3.20 | 1.14 | 4.02 | 0.94 | 3.52 | 1.04 | 4.06 | 0.91 | 3.49 | 1.07 | 3.18 | 1.11 | 2.78 | 1.26 | (1,205) | 100.0 |
| | 3.26 | 1.05 | 2.82 | 1.10 | 3.69 | 1.01 | 3.24 | 1.04 | 3.77 | 1.02 | 3.20 | 1.10 | 2.96 | 1.11 | 2.56 | 1.21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1.222 | | -0.162 | | 2.006* | | 3.188** | | 0.679 | | 4.558*** | | 2.478* | | 4.688*** | | | |
| | 3.49 | 1.05 | 3.00 | 1.13 | 3.87 | 0.99 | 3.40 | 1.04 | 3.92 | 0.97 | 3.39 | 1.07 | 3.09 | 1.11 | 2.72 | 1.25 | (2,033) | 100.0 |
| | 3.42 | 1.08 | 3.01 | 1.16 | 3.76 | 1.03 | 3.23 | 1.05 | 3.88 | 1.02 | 3.13 | 1.15 | 2.95 | 1.12 | 2.43 | 1.16 | (467) | 100.0 |
| 가구 소득 | 12.007*** | | 1.530 | | 11.481*** | | 4.370** | | 5.148** | | 13.899*** | | 4.612** | | 1.451 | | | |
| | 3.27 | 1.08 | 3.02 | 1.13 | 3.68 | 1.07 | 3.25 | 1.06 | 3.81 | 1.04 | 3.10 | 1.15 | 2.96 | 1.13 | 2.60 | 1.24 | (630) | 100.0 |
| | 3.49 | 1.07 | 3.00 | 1.16 | 3.83 | 0.96 | 3.41 | 1.04 | 3.88 | 0.99 | 3.37 | 1.08 | 3.04 | 1.15 | 2.68 | 1.27 | (612) | 100.0 |
| | 3.52 | 0.98 | 3.08 | 1.05 | 3.87 | 0.94 | 3.45 | 1.00 | 3.93 | 0.90 | 3.44 | 1.01 | 3.19 | 1.03 | 2.75 | 1.14 | (535) | 100.0 |
| | 3.61 | 1.05 | 2.94 | 1.17 | 3.99 | 0.97 | 3.39 | 1.07 | 4.01 | 0.97 | 3.44 | 1.08 | 3.09 | 1.12 | 2.66 | 1.27 | (723) | 100.0 |

| 구 분 | 임신, 출산 지원 | |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 | 어린이집 지원 | | 자녀에 대한 수당 | | 세금을 통한 지원 |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F | 32.475*** | | 21.453*** | | 20.422*** | | 13.755*** | | 19.014*** | | 12.436*** | | 8.968*** | | 14.962*** | | | |
| 무자녀 미혼 | 3.23 | 1.07 | 2.75 | 1.12 | 3.75 | 1.00 | 3.18 | 1.03 | 3.89 | 1.00 | 3.15 | 1.12 | 2.85 | 1.11 | 2.36 | 1.17 | (593) | 100.0 |
| 유자녀 미혼 | 3.82 | 0.88 | 3.53 | 1.10 | 4.11 | 0.82 | 3.69 | 1.03 | 4.12 | 0.84 | 3.52 | 1.18 | 3.19 | 1.23 | 2.73 | 1.20 | (91) | 100.0 |
| 무자녀 기혼 ¹⁾ | 3.28 | 1.04 | 2.88 | 1.09 | 3.64 | 1.03 | 3.28 | 1.04 | 3.68 | 1.03 | 3.23 | 1.07 | 3.05 | 1.10 | 2.73 | 1.23 | (702) | 100.0 |
| 유자녀 기혼(1자녀) | 3.63 | 1.06 | 3.21 | 1.12 | 3.95 | 0.97 | 3.55 | 1.02 | 3.97 | 0.93 | 3.45 | 1.05 | 3.21 | 1.07 | 2.91 | 1.26 | (560) | 100.0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3.78 | 0.95 | 3.14 | 1.15 | 4.08 | 0.93 | 3.46 | 1.05 | 4.13 | 0.89 | 3.53 | 1.07 | 3.16 | 1.12 | 2.66 | 1.25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미울)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전혀 모른다(1점)~매우 잘안다(5점)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나. 직장에서의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들 중 직장 생활과 관련 있는 정책에 대한 활용 가능성 분석 결과는 <표 4-2-19>와 같다. 가족, 인구, 일 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총 5개로 구성하였으며, 1점(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5점(전혀 활용하지 못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1점(전혀 활용하지 못함)~5점(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으로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독일이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독일 3.52점, 한국 2.83점, “남성의 육아휴직”은 독일 3.09점, 한국 2.1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독일 2.98점, 한국 2.33점, “출산휴가”는 독일 3.59점, 한국 3.06점, “가족돌봄휴가”는 독일 2.90점, 한국 2.27점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직장에서의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직장에서의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인 경우, 35~39세인 경우, 중도시인 경우, 직업교육 수료인 경우에 직장에서 해당 정책의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며, 동거/사실혼인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여성 육아휴직이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인 경우, 35~39세인 경우, 농촌인 경우 해당 정책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여성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동거/사실혼인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이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1$), 지역별($p < 0.001$),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여성 육아휴직의 직장 활용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1$), 혼인상태별($p < 0.001$)로 해당 정책의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로제”는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며, “출산휴가”는 여성인 경우, 연령이 40~44세인 경우, 농촌 지역인 경우, 직업교육 수료인 경우, 법률혼인 경우 해당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5$), 취업 여부($p < 0.05$), 가구 유형별($p < 0.05$)로 유연근로제의 직장 활용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성별($p < 0.001$), 연령대별($p < 0.001$), 지역별($p < 0.05$), 교육수준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출산휴가 정책의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여성인 경우와 미혼인 경우 해당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며, 성별($p < 0.001$), 혼인상태별($p < 0.05$)로 가족돌봄휴가를 직장에서의 활용할 가능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9) 직장생활 관련 정책의 활용 가능성

| 구분 | 여성의 육아휴직 | | 남성의 육아휴직 | | 유연근로제 | | 출산휴가 | | 가족돌봄휴가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성별 | | | | | | | | | | | | |
| 남자 | 3.52 | 1.30 | 3.09 | 1.22 | 2.98 | 1.14 | 3.59 | 1.33 | 2.90 | 1.24 | (2,500) | 100.0 |
| 여자 | 2.83 | 1.05 | 2.15 | 0.96 | 2.33 | 1.00 | 3.06 | 1.13 | 2.27 | 1.05 | (2,500) | 100.0 |
| 연령 | | | | | | | | | | | | |
| 20~24세 | -8.657*** | | -4.739*** | | -1.869 | | -9.038*** | | -4.705*** | | | |
| 25~29세 | 3.29 | 1.36 | 2.98 | 1.22 | 2.94 | 1.14 | 3.34 | 1.39 | 2.77 | 1.23 | (1,280) | 100.0 |
| 30~34세 | 3.76 | 1.17 | 3.22 | 1.21 | 3.03 | 1.14 | 3.84 | 1.22 | 3.03 | 1.24 | (1,220) | 100.0 |
| 35~39세 | 4.022*** | | 3.172** | | 1.335 | | 6.989*** | | 1.414 | | | |
| 40~44세 | 3.41 | 1.29 | 2.95 | 1.16 | 3.03 | 1.11 | 3.34 | 1.32 | 2.93 | 1.27 | (385) | 100.0 |
| 45~49세 | 3.34 | 1.35 | 3.08 | 1.26 | 3.02 | 1.13 | 3.41 | 1.34 | 2.94 | 1.25 | (387) | 100.0 |
| 50~54세 | 3.43 | 1.32 | 3.01 | 1.24 | 2.85 | 1.19 | 3.51 | 1.37 | 2.75 | 1.22 | (406) | 100.0 |
| 55~59세 | 3.65 | 1.26 | 3.23 | 1.21 | 3.01 | 1.17 | 3.74 | 1.30 | 2.95 | 1.23 | (491) | 100.0 |
| 60~64세 | 3.62 | 1.26 | 3.06 | 1.21 | 2.99 | 1.09 | 3.76 | 1.29 | 2.86 | 1.19 | (464) | 100.0 |
| 65~69세 | 3.62 | 1.25 | 3.21 | 1.24 | 2.98 | 1.11 | 3.71 | 1.32 | 2.95 | 1.27 | (367) | 100.0 |
| 지역 | | | | | | | | | | | | |
| 수도시(인구 100,000 이상) | 6.619*** | | 1.433 | | 1.486 | | 2.913* | | 0.992 | |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3.45 | 1.36 | 3.07 | 1.23 | 3.02 | 1.18 | 3.57 | 1.36 | 2.96 | 1.27 | (824) | 100.0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3.48 | 1.28 | 3.13 | 1.23 | 2.93 | 1.11 | 3.50 | 1.32 | 2.85 | 1.21 | (621) | 100.0 |
| 농촌(인구 5,000 미만) | 3.45 | 1.27 | 3.02 | 1.20 | 2.92 | 1.12 | 3.57 | 1.35 | 2.86 | 1.23 | (584) | 100.0 |
| 농촌(인구 5,000 미만) | 3.77 | 1.19 | 3.17 | 1.24 | 3.04 | 1.11 | 3.74 | 1.27 | 2.90 | 1.24 | (471) | 100.0 |
| 교육 | | | | | | | |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8.104*** | | 1.531 | | 2.235 | | 8.249*** | | 2.051 | |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3.40 | 1.30 | 3.05 | 1.24 | 2.94 | 1.18 | 3.42 | 1.35 | 2.98 | 1.27 | (609) | 100.0 |
| 직업교육 수료 | 3.41 | 1.34 | 3.02 | 1.25 | 2.96 | 1.17 | 3.51 | 1.34 | 2.79 | 1.22 | (591) | 100.0 |
| 회사 학위 취득 이상 | 3.73 | 1.25 | 3.14 | 1.21 | 2.93 | 1.12 | 3.79 | 1.29 | 2.93 | 1.24 | (675) | 100.0 |
| 회사 학위 취득 이상 | 3.51 | 1.27 | 3.15 | 1.19 | 3.08 | 1.08 | 3.61 | 1.32 | 2.87 | 1.22 | (625) | 100.0 |

(단위: 점, 명, %)

| 구분 | | 여성의 육아휴직 | | 남성의 육아휴직 | | 유연근로제 | | 출산휴가 | | 가족돌봄휴가 | | 합계 |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혼인 상태 | F | 20.245*** | | 6.071*** | | 4.378** | | 27.615*** | | 3.476* | | | |
| | 미혼 | 3.62 | 1.24 | 3.19 | 1.19 | 3.10 | 1.09 | 3.77 | 1.28 | 3.02 | 1.25 | (684) | 100.0 |
| | 동거/사실혼 | 3.26 | 1.36 | 2.96 | 1.23 | 2.88 | 1.17 | 3.27 | 1.37 | 2.80 | 1.25 | (969) | 100.0 |
| | 법률훈 이혼/별거/사별 | 3.73 | 1.23 | 3.18 | 1.23 | 3.00 | 1.14 | 3.81 | 1.26 | 2.92 | 1.21 | (723) | 100.0 |
| | | 3.72 | 1.13 | 3.13 | 1.26 | 2.95 | 1.07 | 3.73 | 1.26 | 2.92 | 1.22 | (124) | 100.0 |
| 자녀 여부 | t | 1.852 | | -0.087 | | -2.115* | | 0.797 | | -0.521 | | | |
| | 자녀 있음 | 3.57 | 1.30 | 3.09 | 1.26 | 2.93 | 1.18 | 3.61 | 1.34 | 2.88 | 1.28 | (1,205) | 100.0 |
| | 자녀 없음 | 3.47 | 1.29 | 3.09 | 1.19 | 3.03 | 1.09 | 3.56 | 1.32 | 2.91 | 1.20 | (1,295) | 100.0 |
| 취업 여부 | t | -0.148 | | 0.085 | | 2.153* | | -0.558 | | 0.112 | | | |
| | 취업 | 3.52 | 1.31 | 3.09 | 1.23 | 3.00 | 1.14 | 3.58 | 1.34 | 2.90 | 1.23 | (2,033) | 100.0 |
| | 비취업 | 3.53 | 1.25 | 3.09 | 1.20 | 2.87 | 1.12 | 3.62 | 1.30 | 2.89 | 1.27 | (467) | 100.0 |
| 가구 소득 | F | 1.688 | | 1.972 | | 2.011 | | 1.786 | | 0.364 | | | |
| | 2,000유로 미만 | 3.46 | 1.26 | 3.00 | 1.24 | 2.93 | 1.17 | 3.51 | 1.34 | 2.93 | 1.27 | (630) |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3.47 | 1.31 | 3.16 | 1.21 | 2.98 | 1.14 | 3.56 | 1.32 | 2.89 | 1.25 | (612) |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3.51 | 1.30 | 3.06 | 1.20 | 2.92 | 1.13 | 3.56 | 1.34 | 2.85 | 1.21 | (535) | 100.0 |
| | | 3.61 | 1.30 | 3.14 | 1.23 | 3.06 | 1.12 | 3.68 | 1.32 | 2.90 | 1.23 | (723) | 100.0 |
| 가구 유형 | F | 5.095*** | | 1.577 | | 2.951* | | 9.459*** | | 1.969 | | | |
| | 무자녀 미혼 | 3.61 | 1.25 | 3.17 | 1.17 | 3.10 | 1.09 | 3.74 | 1.30 | 3.00 | 1.26 | (593) | 100.0 |
| | 유자녀 미혼 | 3.70 | 1.16 | 3.28 | 1.29 | 3.09 | 1.05 | 3.93 | 1.13 | 3.14 | 1.20 | (91) |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3.35 | 1.30 | 3.03 | 1.19 | 2.97 | 1.09 | 3.41 | 1.32 | 2.84 | 1.15 | (702) |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3.47 | 1.37 | 3.05 | 1.25 | 2.87 | 1.20 | 3.43 | 1.40 | 2.85 | 1.30 | (560) | 100.0 |
| | | 3.64 | 1.25 | 3.11 | 1.27 | 2.96 | 1.17 | 3.74 | 1.29 | 2.87 | 1.27 | (554) |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훈/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3) 전혀 활용하지 못함(1점)~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5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책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을 의미함.

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4-2-20>과 같다. 독일(41.0%)과 한국(51.7%) 모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독일 31.8%, 한국 27.6%,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독일 21.8%, 한국 15.3%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독일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43.6%)의 경우 남성(38.4%)보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5$).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p < 0.001$). 중등교육 이수 이하(42.7%)와 직업교육 수료(45.6%)의 경우도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38.4%)과 학사 학위 취득 이상(36.6%)인 경우보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으며,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다른 혼인상태보다 정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48.6%), 없는 경우(33.8%)보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p < 0.05$), 혼인상태별($p < 0.001$), 자녀 여부($p < 0.001$), 가구 유형별($p < 0.001$)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0〉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방향

(단위: %, 명)

| 구 분 | |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 합계 |
|-------|------------------------|------------------|------------------|------------------------|------------------|------------------|---------------|
| 독일 | | 41.0 | 31.8 | 21.8 | 3.5 | 2.0 | (2,500) 100.0 |
| 한국 | | 51.7 | 27.6 | 15.3 | 3.2 | 2.2 | (2,500) 100.0 |
| 성별 | χ^2 | 11.042* | | | | | |
| | 남자 | 38.4 | 32.4 | 23.8 | 3.8 | 1.6 | (1,280) 100.0 |
| | 여자 | 43.6 | 31.2 | 19.7 | 3.2 | 2.3 | (1,220) 100.0 |
| 연령 | χ^2 | 59.646*** | | | | | |
| | 20~24세 | 32.5 | 36.4 | 23.6 | 6.0 | 1.6 | (385) 100.0 |
| | 25~29세 | 36.2 | 38.5 | 19.1 | 5.2 | 1.0 | (387) 100.0 |
| | 30~34세 | 45.3 | 32.5 | 17.7 | 2.7 | 1.7 | (406) 100.0 |
| | 35~39세 | 42.2 | 31.8 | 21.0 | 3.3 | 1.8 | (491) 100.0 |
| | 40~44세 | 44.0 | 27.2 | 23.5 | 2.2 | 3.2 | (464) 100.0 |
| | 45~49세 | 44.7 | 25.3 | 25.9 | 1.9 | 2.2 | (367) 100.0 |
| 지역 | χ^2 | 17.426 | | | | | |
| | 대도시(인구 100,000 이상) | 38.7 | 33.5 | 22.5 | 3.3 | 2.1 | (824) 100.0 |
| | 중도시(인구 20,000~100,000) | 41.7 | 28.8 | 24.5 | 3.1 | 1.9 | (621) 100.0 |
| | 소도시(인구 5,000~20,000) | 39.4 | 34.9 | 20.7 | 3.4 | 1.5 | (584) 100.0 |
| | 농촌(인구 5,000 미만) | 45.9 | 29.1 | 18.3 | 4.5 | 2.3 | (471) 100.0 |
| 교육 | χ^2 | 25.192* | | | | | |
| | 중등교육 이수 이하 | 42.7 | 29.6 | 21.0 | 4.8 | 2.0 | (609) 100.0 |
| | 고등교육 입학 자격 취득 | 38.4 | 32.7 | 24.4 | 2.7 | 1.9 | (591) 100.0 |
| | 직업교육 수료 | 45.6 | 28.6 | 21.5 | 2.5 | 1.8 | (675) 100.0 |
| | 학사 학위 취득 이상 | 36.6 | 36.8 | 20.3 | 4.0 | 2.2 | (625) 100.0 |
| 혼인 상태 | χ^2 | 62.372*** | | | | | |
| | 미혼 | 38.0 | 31.3 | 24.7 | 3.1 | 2.9 | (684) 100.0 |
| | 동거/사실혼 | 35.3 | 34.0 | 23.9 | 5.2 | 1.7 | (969) 100.0 |
| | 법률혼 | 49.7 | 30.3 | 17.0 | 1.7 | 1.4 | (723) 100.0 |
| | 이혼/별거/사별 | 50.8 | 27.4 | 16.1 | 3.2 | 2.4 | (124) 100.0 |
| 자녀 여부 | χ^2 | 79.495*** | | | | | |
| | 자녀 있음 | 48.6 | 31.0 | 16.9 | 2.6 | 0.8 | (1,205) 100.0 |
| | 자녀 없음 | 33.8 | 32.6 | 26.3 | 4.3 | 3.0 | (1,295) 100.0 |
| 취업 여부 | χ^2 | 5.275 | | | | | |
| | 취업 | 40.2 | 32.7 | 21.8 | 3.3 | 2.0 | (2,033) 100.0 |
| | 비취업 | 44.3 | 28.1 | 21.4 | 4.3 | 1.9 | (467) 100.0 |

| 구 분 | |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 합계 |
|----------|----------------------|------------------------------|------------------------------|---------------------------------------|------------------------------|------------------------------|-------------|
| 가구 소득 | χ^2 | 18.748 | | | | | |
| | 2,000유로 미만 | 41.6 | 30.5 | 21.9 | 3.7 | 2.4 | (630) 100.0 |
| | 2,000~3,000유로 미만 | 37.9 | 31.0 | 24.7 | 4.7 | 1.6 | (612) 100.0 |
| | 3,000~4,000유로 미만 | 41.1 | 31.8 | 23.4 | 2.4 | 1.3 | (535) 100.0 |
| | 4,000유로 이상 | 42.9 | 33.7 | 18.0 | 3.0 | 2.4 | (723) 100.0 |
| 가구 유형 | χ^2 | 97.953*** | | | | | |
| | 무자녀 미혼 | 36.3 | 31.2 | 26.5 | 3.0 | 3.0 | (593) 100.0 |
| | 유자녀 미혼 | 49.5 | 31.9 | 13.2 | 3.3 | 2.2 | (91) 100.0 |
| | 무자녀 기혼 ¹⁾ | 31.8 | 33.8 | 26.1 | 5.4 | 3.0 | (702) 100.0 |
| | 유자녀 기혼(1자녀) | 45.9 | 31.4 | 18.2 | 3.9 | 0.5 | (560) 100.0 |
| |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 51.3 | 30.5 | 16.2 | 1.1 | 0.9 | (554) 100.0 |

주: * p<0.05, ** p<0.01, *** p<0.001

-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6. 소결

독일 20~49세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한국 국민 2,500명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6.5%로 한국인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38.6%로 한국보다 높았다. 독일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가 2.35명(한국: 1.74), 적정 자녀 수는 1.99명(한국: 1.58)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계획에서 주요 고려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여건’은 보기 문항 중 네 번째로 고려되었다.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서는 성별에 따라 실제 가사 분담 비율과 적절한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사 분담과 육아 분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분담 비율이 낮았다. 남성은 실제 육아 분담 비율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신의 기여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한 어려움 정도가 2.64점, 한국은 3.54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인구 변화, 출산율 감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인은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동의 정도가 2.78점(5점 만점)으로 한국(1.86)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서는 3.64점(한국: 4.01점)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가 2.66점(5점 만점)으로 한국(1.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한국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에 독일은 2.81점, 한국은 2.3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먼저 출산지원, 육아지원, 세제지원 등 8개 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독일인은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3점 이상(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직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은 독일이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은 독일이 3.09점(5점 만점)으로 한국(2.15점)보다 높았다.

실제로 독일은 한국보다 결혼에 대한 의사는 적으나, 자녀 계획에는 더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아 분담에서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실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 양립의 어려움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구 변화와 대한 인식은 현재 출산율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인은 한국인보다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출산율 감소가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독일인과 한국인 모두 동의 수준이 높은 것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 인지도가 모두 한국보다 높다. 독일인은 한국인보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보고 있으나, 큰 소득 격차, 부의 쏠림 현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신 출산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는 독일인이 한국인보다 높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 조건 또한 한국보다 더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요약

1. 독일의 인구 현황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국가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현상이 본격화한 1970년대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출산율이 유럽 최저 수준에 머무르다가, 점진적인 회복단계를 거쳐 현재는 유럽 국가에서 중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은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의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졌던 1994년(합계출산율 1.24명)이며, 2010년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2016년 1.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간 다시 감소하였다.

출산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보다 서독 지역의 출산율이 높고, 특히 남부 지역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 교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1970년대생을 중심으로 특히 서독 지역에서 고학력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가족 정책의 성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편, 독일 내 외국 여성과 독일 여성의 출산 경향을 비교하면, 외국 국적 여성은 독일 여성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출산 연령도 훨씬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는 '15차 조정된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

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예상했으나, 최근 10년간 순 이민이 추정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2070년까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주로 순 이민 증가로 인해 완화될 것이다.

지역별 인구 격차는 지난 30년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난 반면, 서독 지역은 인구 증가가 나타난 지역이 대부분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5차 조정된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2070년까지 대부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전략

‘인구적 적응유연성(Demografieresilienz)’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 독일 인구전략은 2012년부터 5년여간 진행된 국가 프로젝트이다. 2011년에 독일 연방 내무부의 주도하에 인구통계학적 상황과 중장기적 결과에 따른 미래 발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인구전략이 발표되었다. 인구전략은 기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기업문화, 행정체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9개의 주제로 분류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상향식 대화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전략은 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물론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와 정책 이해관계 집단을 포함하는 대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청(소)년’, ‘지역’, ‘외국인 인력’을 주제로 하는 실무분과의 논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3. 인구정책

가. 가족정책

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확산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바탕을 둔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2000년대 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는 부모수당(Elterngeld), 이후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었다. 일련의 변화에는 부부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 변화,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는 실제 남성 부모수당 수급 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아동기본보장’의 정책화로 볼 수 있다. 인프라 확장에서 더 나아가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모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적절한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아동기본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일제 학교 정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은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초등교육 또한 가족정책 영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지역정책

독일에서는 여러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탈산업화와 동독 기업 해체에 따른 이주의 결과로, 동독 지자체의 일시적 전환 과정으로 여겨졌던 지역 격차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함부르크와 베를린 같은 대도시가 성장하는 반면, 주변 농촌 지역은 빠르게 축소되고 고령화되고 있다(Kersten, Neu, Vogel, 2019). 지역 격차와 관련하여 통독 직후에는 동서 격차 외에 언급조차 어려웠지만, 아직 동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책적으로 연방주 내 지역별 차이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모든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생활 조건과 근로 조건의 동등성을 지원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높은 삶의 질과 좋은 고용 및 환경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선언한 중요한 목표이다. 인구정책은 연방정부의 향토정책(Heimatpolitik)과 동등한 생활 조건 정책(Politik der Gleichwertigen Lebensverhältnisse)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므로, 2020년의 향토보고서(Heimatbericht)와 2021년 동등한 생활 조건 정책의 중간 검토(Zwischenbilanz zur Politik für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에서 인구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 과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주요하게 다루어졌다(BMI, n.d.b).

최근에는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부처의 사업을 새로 도입한 GFS 시스템 아래로 위치시켜 정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역 경제개발 정책으로 활용되었던 GRW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주민의 생활필수서비스, 주민참여, 주민의 삶의 질에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이민정책

독일 사회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이민정책의 대대적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2010년대 들어서야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독일은 본격적으로 숙련인력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주와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격 인정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2020년 도입된 숙련인력이민법은 숙련인력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관료주의를 완화한 조치로, 특히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노동 이주 권리를 확대하였다.

독일은 이민자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환영문화(Willkommenskultur)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와 독일인 사이에는 직업 및 산업 분포에 차이가 있고, 자녀 세대에서도 대학진학률, 취업률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난민의 인도적 수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독일은 난민 수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일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난민들이 어학 능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전문기술을 쌓아서 독일에 정착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4. 국민인식조사

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살펴보면, 독일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비율이 46.5%로 한국인(52.9%)보다 낮지만, 향후 출산 의향은 독일(38.6%)이 한국(31.2%)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과 관련하여, 독일인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비율이 15.5%인 데 반해 한국인은 5.4%였고, 대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한국인이 17.6%로 독일인(12.2%)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출산 의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독일인은 '생각해본 적 없다'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반면, 한국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독일인보다 높았다.

독일의 경우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2.35명, 적정 자녀 수는 1.99명이며, 한국은 계획 자녀 수 1.74명, 적정 자녀 수 1.58명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계획과 적정 자녀 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녀 출산 계획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본인의 건강(4.34점)과 배우자의 건강(4.34점)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주거 여건(4.15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10점)이었다. 한국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여건(4.56점)과 배우자의 건강(4.56점)이 중요한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본인의 건강(4.54점), 주거 여건(4.3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독일은 한국보다 실제와 적절 가사 분담에서 본인이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독일인의 실제 및 적절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49.93%)보다 여성(67.72%)이 실제 가

사 분담 비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 가사 분담 또한 남성(50.95%)보다 여성(58.47%)에서 본인의 가사 분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독일이 한국보다 본인의 실제와 적절 육아 분담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실제 육아 분담 비율에서 남성(46.77%)의 경우 여성(69.01%)보다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으며, 적절한 육아 분담 비율에서도 남성(50.29%)이 여성(60.69%)보다 본인 분담 비율이 낮았다. 다만 남성의 경우 실제 육아 분담 비율보다 적절 육아 분담 비율에서 본인 분담 비율이 높았다. 이로써 파트너·배우자 분담보다 본인의 육아 분담 비율이 실제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시 어려움 정도(5점 만점: 1점(전혀 어렵지 않다)~5점(매우 어렵다))는 독일은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한 어려움 정도가 2.64점, 한국은 3.54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어려움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의견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동의 수준을 비교하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에 대해 독일의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가 본인의 삶과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독일 2.66점, 한국 1.94점으로 독일에서 한국보다 출산율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5-1-1〉 독일-한국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 비교

(단위: 점, 명, %)

| 구 분 |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 |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2.78 | 1.01 | 2.98 | 1.11 | 3.64 | 1.03 | 2.66 | 1.11 | (2,500) | 100.0 |
| 한국 | 1.86 | 0.98 | 3.07 | 1.15 | 4.01 | 1.02 | 1.94 | 1.01 | (2,500) | 100.0 |

사회 구조 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독일과 한국 모두 피라미드형의 사회 구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많은 사회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 수준은 독일은 2.81점, 한국은 2.3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에 독일 3.73점, 한국 4.0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에 독일 3.93점, 한국 4.19점으로 한국이 독일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에 동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한국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임신, 출산 지원, 육아지원 등 총 8개 항목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독일이 한국보다 각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의 경우 독일 3.48점, 한국 2.88점,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의 경우 독일 3.01점, 한

국 2.95점,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독일 3.85점, 한국 3.12점, “어린이집 지원”은 독일 3.37점, 한국 2.89점, “자녀에 대한 수당”은 독일 3.91점, 한국 3.00점, “세금을 통한 지원”은 독일 3.34점, 한국 2.65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은 독일 3.07점, 한국 2.91점,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은 독일 2.67점, 한국 2.37점으로 나타났다.

〈표 5-1-2〉 독일-한국 인구정책 인지도 비교

(단위: 점, 명, %)

| 구 분 | 임신, 출산 지원 | | 출산 시 수당이나 물품 지급 |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 | 어린이집 지원 | | 자녀에 대한 수당 | | 세금을 통한 지원 |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3.48 | 1.05 | 3.01 | 1.13 | 3.85 | 0.99 | 3.37 | 1.05 | 3.91 | 0.98 | 3.34 | 1.09 | 3.07 | 1.11 | 2.67 | 1.24 | (2,500) | 100.0 |
| 한국 | 2.88 | 0.89 | 2.95 | 0.93 | 3.12 | 0.89 | 2.89 | 0.94 | 3.00 | 0.98 | 2.65 | 0.94 | 2.91 | 0.97 | 2.37 | 0.98 | (2,500) | 100.0 |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독일이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육아휴직”은 독일 3.52점, 한국 2.83점, “남성의 육아휴직”은 독일 3.09점, 한국 2.15점으로 독일이 한국에 비해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독일 2.98점, 한국 2.33점, “출산휴가”는 독일 3.59점, 한국 3.06점, “가족돌봄휴가”는 독일 2.90점, 한국 2.27점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직장에서의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독일-한국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직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비교

(단위: 점, 명, %)

| 구 분 | 여성의 육아휴직 | | 남성의 육아휴직 | | 유연근로제 | | 출산휴가 | | 가족돌봄 휴가 | | 합계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사례 수 | 비율 |
| 독일 | 3.52 | 1.30 | 3.09 | 1.22 | 2.98 | 1.14 | 3.59 | 1.33 | 2.90 | 1.24 | (2,500) | 100.0 |
| 한국 | 2.83 | 1.05 | 2.15 | 0.96 | 2.33 | 1.00 | 3.06 | 1.13 | 2.27 | 1.05 | (2,500) | 100.0 |

마지막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은 독일(41.0%)과 한국(51.7%) 모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는 독일 31.8%, 한국 27.6%,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독일 21.8%, 한국 15.3%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별 정책 영역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정치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를 제시한다. 독일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혼인 및 출산 연령이 증가하며,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또한 사회 전반의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독일은 한국보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앞서 경험하였고, 유럽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중위 수준까지 회복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인은 한국인보다 더 높은 출산 의사를 보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독일 인구전략과 인구정책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어 온 가족정책과 함께 독일 사회가 새롭게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주목하는 지역정책과 이민정책을 함께 다루었다.

독일 인구전략은 인구 변화를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사회가 가진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구학자 Herwig Birg은 인구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독일 사회에서 “터부 그 이상”(mehr als ein Tabu)이라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언급했다(Knauss, 2015.3.5). 통독 이후에 사회 시스템 재정비 차원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정책적 개입 지점임은 분명했으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임을 고려하여 독일은 10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치며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합의된 인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대신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함과 동시에 사회의 여러 주요 영역의 재구조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체 간 협력, 기업, 공공 부문 및 기관 간의 협력, 지식 관리 및 교육의 혁신을 장려하고, 촉구했다(König, 2016).

인구전략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정책을 전방위적 과제로 이해하고, 인구정책은 개별 정책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견수렴 방식 또한 의미가 있다. 인구전략은 주제별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사회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논의하였다. 개별 실무분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제의 방향성, 접근 방식 모두 참여자가 직접 결정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적절하고 수용도 높은 정책 개

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분과를 예로 들면, 가족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 나아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정책에서는 젊은 세대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는 전제 아래, 지역 정책, 향토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민정책에서는 우수한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와 상담, 환영 문화 등에 개입 지점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를 실행했으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인구전략의 5년간의 여정은 독일 인구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당시 시도되었던 방향식 의견수렴 방식은 입법과정의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인구정책의 여러 영역을 살펴본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되며, 대신 다양한 형태의 업무 분담 형태를 가진 가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선택의 자유 원칙’(BMFSFJ, 2013)이 기본 전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 가족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 대신 ‘지속 가능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부부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정책 과정에서 가족 형성, 재생산 활동,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가족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부모의 동등한 돌봄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한 것이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일제 보육 확대, 전일제 학교 의무화는 현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다.

지역정책은 독일의 지역 격차가 심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사회의 점진적인 고령화는 향후 전국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

이 받고 있다. 이민자, 난민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등한 생활 조건’ 개념은 오랫동안 독일 지역정책에서 핵심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이 개념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성과 핵심 원칙과 개념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정책이 체계성을 갖추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6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을 GFS 정책 아래 위치시키고, 1969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 GRW 정책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참여 등 경제적 투자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정책에서도 일자리 창출, 기반 시설 투자 등 지역 개발뿐만 아니라 생활필수서비스 인프라 확보 및 서비스 개선과 국가, 기업 및 시민 사회 간의 새로운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근로’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민정책은 인구정책 영역에서 비교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정책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분야이다(Mayer, 2012). 독일은 유럽 국가의 특성상 한국보다 이민자 비율이 높고 저숙련 노동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외국인 노동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엄격한 정착 기준을 적용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수동적 태도를 가져왔다.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지자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단일민족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 사회와 닮은 점이 있다.

독일의 이민정책은 노동력 부족 같은 단기적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 내에서도 이민정책을 노동 정책으로 전략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자와 가족의 사회통합에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국 사회 또한 노동정책 전략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아직 관련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특히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필요에 따른 외국인력 활용 방안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생활환경과 문화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장〉

김대환, 정남기. (2017) 독일 건강보험의 고령화적립금 연구와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35(2), 41-56.

김상호. (2021).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

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7(1), 1-29.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 (2019). **노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진숙, 김태원. (2014). 독일의 저출산문제와 최근 대응의 변화. **한국외국어대**

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8(1), 3-26.

정연택, 김근홍, 김상철, 김상호, 김원섭, 김진수, 남용현, 남현주, 박경순, 박명

준, 박수지, 박지순, 심성지, 오윤섭, 유근춘, 유조덕, 이신용, 이용갑, 이

진숙. (2018).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보혜. (2024). 독일의 인구전략과 가족정책.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방향(자료집).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경영학회.

주보혜, 임정미, 노법래, 신영규, 임새아, 정희선. (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형**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 (2024). *Deutsches Stabilitätspro*

ogramm 20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13)

[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13)

[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13](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13)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

]]. (2010. 11. 26). *Rede im Deutschen Bundestag von Bundesfami*

lienministerin Dr. Kristina Schröder zum Einzelplan 17 des Bund

eshaushalts 2011, am Donnerstag, 25. November 2010, in Berlin.
<https://www.bmfsfj.de/bmfsfj/rede-im-deutschen-bundestag-vo-n-bundesfamilienministerin-dr-kristina-schroeder-zum-einzelplan-17-des-bundeshaushalts-2011-am-donnerstag-25-november-2010-in-berlin-100130>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3). *Politischer Bericht zur Gesamtevaluation der ehe- und familienbezogenen Leistungen.* <https://www.bmfsfj.de/resource/blob/76374/2bb96146178ab57f64ae97790ba70c06/familienbezogene-leistungen-data.pdf>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4). *Familienreport.*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39468/de423b579e88c8cceb55eda13f6e0124/familienreport-2024-data.pdf> p. 65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a). *Bevölkerung nach Lebensformen in Deutschland (1996-2022).*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L01-Bevoelkerung-Lebensformen-ab-1996.html>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b). *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deutscher und ausländischer Frauen (1991-2022).* https://www.bib.bund.de/Permalink.html?cms_permaid=1217872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c). *Altersspezifische Geburtenziffern deutscher und ausländischer Frauen in Deutschland (1991 und 2021).*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F13-Altersspezifische-Geburtenziffer-deutsche-auslaendische-Frauen-1991u2021.html?nn=1279832>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d). *Bevölkerung nach A*

- ltersgruppen (1871-2070)*.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B23-Altersgruppen-1871-Vorausberechnung.html>
-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e). *Bevölkerung unter 20 Jahren, ab 65 Jahre und ab 80 Jahre (1871-2070*)*. https://www.bib.bund.de/Permalink.html?cms_permaid=1217820
-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n.d.f). *Entwicklung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Kreisebene, 2022 gegenüber 1990)*. <https://www.bib.bund.de/DE/Fakten/Fakt/B90-Bevoelkerung-Kreise-ab-1990.html>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2012). *Jedes Alter zählt.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ublikationen/2012/demografiestrategie-der-bundesregierung.pdf?__blob=publicationFile&v=4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2018). *Gemeinsam für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in ganz Deutschland(2018.7.18)*.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8/07/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html>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0). *Demografie-Radar*. <https://www.bmi.bund.de/DE/themen/heimat-integration/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demografie/demografie-radar/demografie-radar-node.html>
- BMWK. (2023.4.27). *Neu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der Statistischen Ämter*.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3/05/06-neue-bevoelkerungsvorausberechnung-der-statistischen-aemter.html>
- BMWK. (2024c). *Bundesregierung beschließt erstmals Gleichwertigkeit s - bericht: Regionale Unterschiede nehmen ab*.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4/>

- 09/03-gleichwertigkeitsbericht-regionale-unterschiede.html
- Demografie Portal. (n.d.a). *Natürliche Bevölkerungsentwicklung*.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naturliche-bevoelkerungsentwicklung.html?nn=676848>
- Demografie Portal. (n.d.b). *Geburtenrate*.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geburtenrate.html?nn=676848>
- Demografie Portal. (n.d.c). *Regionale Geburtenhäufigkeit*.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zusammengefasste-geburtensziffer-regional.html?nn=676848>
- Demografie Portal. (n.d.d). *Kinderzahl*. <https://www.demografie-portal.de/DE/Fakten/kinderzahl.html?nn=676848>
- Demografie Portal. (2024.5.2). *Zahl der Geburten im Jahr 2023 auf niedrigstem Stand seit 2013*.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4/240502-bund-zahl-der-geburten-im-jahr-2023-auf-niedrigstem-stand-seit-2013.html>
- Demografie Portal. (2024.7.17). *Geburtenziffer 2023 auf 1,35 Kinder je Frau gesunken*.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4/240717-bund-geburtensziffer-2023-auf-1-35-kinder-je-frau-gesunken.html>
- Deutscher Bundestag. (2024.4.22). *Drucksache 20/11235.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Sechster Bericht zur Tragfähigkeit der öffentlichen Finanzen*. <https://dsserver.bundestag.de/btd/20/112/2011235.pdf>
- Die Bundesregierung. (2022). *Rede von Bundeskanzler Scholz anlässlich der Veranstaltung "Deutschland. Einwanderungsland. Dialog für Teilhabe und Respekt" am 28. November 2022 in Berli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de-von-bundeskanzler-scholz-anlaesslich-der-veranstaltung-deutschland-einwa>

- nderungsland-dialog-fuer-teilhabe-und-respekt-am-28-november-2022-in-berlin-2146130
- Rürup, B., & Gruescu, S. (2003). *Nachhaltige Familienpolitik im Interesse einer aktiven Bevölkerungsentwicklung: Gutachten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No. 20906)*. Darmstadt Techn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Law, Institute for Business Studies (BWL).
- Maretzke, S., Hoymann, J., & Schlömer, C. (2024). *Raumordnungsprognose 2045: Bevölkerungsprognose. BBSR im BBR*. https://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analysen-kompakt/2024/ak-04-2024-dl.pdf?__blob=publicationFile&v=3
- Schultis, S., Seuffert, S., & Stramka, S. (2024). Der demografische Wandel im Wandel. *Wirtschaftsdienst (Hamburg, Germany: 1949)*, 104(4), 269–274. <https://doi.org/10.2478/wd-2024-0072>
- Schwickert, D., Ruhose, F. (2019). 'Neue Strukturpolitik statt Kommissions-Klimbim'. *Vier Vorschläge für eine bessere Heimatpolitik(2019.11.6)*. <https://www.progressives-zentrum.org/neue-strukturpolitik-statt-kommissions-klimbim/>
- Schröder, K. (2013). *Demografiepolitik als Gesellschaftspolitik der fairen Chancen*. In: Hüther, M., Naeyele, G. (eds) *Demografiepolitik*. Springer VS, Wiesbaden. https://doi.org/10.1007/978-3-658-00779-9_2
- Sozialpolitik-aktuell.de. (n.d.). *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in Deutschland 1980 – 2023*.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Bevoelkerung/Datensammlung/PDF-Dateien/abbVII1a.pdf
- Statistisches Bundesamt. (n.d.). *15. koordinierte Bevölkerungsvorausbe*

rechnung.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Bevoelkerungsvorausberechnung/begleitend.html>

〈2장〉

주보혜. (2024). 독일의 인구전략과 가족정책.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방향(자료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경영학회.

Bauman, Z. (1993). *Postmodern Ethics*. Blackwell.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3). *Politischer Bericht zur Gesamtevaluation der ehe- und familienbezogenen Leistungen*. <https://www.bmfsfj.de/resource/blob/76374/2bb96146178ab57f64ae97790ba70c06/familienbezogene-leistungen-data.pdf>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8). *Jugend-Demografie-Dialog. Jugendbeteiligung als Zukunftsstrategie zur Gestaltung des demografischen Wandels in ländlichen Regionen*.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22044/dbbfe04cad50744f7c68267fe55fdb/jugend-demografie-dialog-broschuere-data.pdf>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2). *Jedes Alter zählt.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Broschueren/2012/demografiestrategie.pdf?__blob=publicationFile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7). *Jedes Alter zählt.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Arbeitsgruppenergebnisse zum*

- Demografiegipfel am 16. März 2017.*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37854/d54ed3c30bef003b10abb00df394ae4b/demografie-strategie-der-bundesregierung-data.pdf>
- Die Bundesregierung. (n.d.). *Die weiterentwickelte Demografiestrategie Eine Zusammenfassung.*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eine-zusammenfassung-449622>
- Bryant, T. (2011). *Alterungsangst und Todesgefahr – der deutsche Demografie-Diskurs (1911–2011)*.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APuZ 10–11/2011. pp. 40–46. <https://www.bpb.de/system/files/pdf/3057GO.pdf>
- Burgdörfer, F. (1935). *[1932]: Volk ohne Jugend. Geburtenschwund und Überalterung des deutschen Volkskörpers.* Heidelberg/Berlin.
- dbb beamtenbund und tarifunion. (2015.11.20). *Demografiestrategie: Jugendliche besser über berufliche Perspektiven im öffentlichen Dienst informieren.* <https://www.dbb-frauen.de/artikel/demografiestrategie-jugendliche-besser-ueber-berufliche-perspektiven-im-oeffentlichen-dienst-informieren.html>
- Demografie Portal. (n.d.e). *Schritte zur Demografiestrategie.*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schritte-zur-demografiestrategie.html>
- Demografie Portal. (n.d.f). *Demografiegipfel und Strategiekongresse.*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ialogprozess/Gipfel-Kongresse/Demografiegipfel-Strategiekongresse.html>
- Demografie Portal. (n.d.g).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emografiestrategie.html>
- Demografie Portal. (n.d.h). *Die Arbeitsgruppen.*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ialogprozess/Arbeitsgruppen/>

arbeitsgruppen.html

Demografie Portal. (n.d.i). *Vom demografischen Wandel besonders bei
offenen Regionen: Abgrenzung und Handlungsbedarf*.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ialogprozess/Arbeitsgruppen/Regionen/vom-demografischen-wandel-besonders-bei-offenen-regionen.html>

Demografie Portal. (n.d.j). *Arbeitsgruppe 'Regionen im demografischen Wandel stärken - Lebensqualität in Stadt und Land fördern'*.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und/Dialogprozess/Arbeitsgruppen/Regionen/ergebnisbericht-2017.pdf?__blob=publicationFile&v=1

Demografie Portal. (n.d.k). *Der 'Demografie-Check' der Bundesregierung*. https://www.demografie-portal.de/DE/Service/Blog/140430_Interview_PStKriings_DemografieCheck.html

Demografie Portal. (n.d.l). *Fragenkatalog*. https://www.demografie-portal.de/DE/Service/Blog/Downloads/042014_Prueffragen_DemografieCheck.pdf?__blob=publicationFile&v=1

Deutscher Bundestag. (2010). *Drucksache 17/2365.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Tabea Rößner, Ekin Deligöz, Katja Dörner,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Drucksache 17/2099)(2010. 7.1.)*. <https://dserver.bundestag.de/btd/17/023/1702365.pdf>

Deutscher Bundestag. (2011.11.7.).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demografischen Lage und künftigen Entwicklung des Landes(Demografiebericht)*. <https://dserver.bundestag.de/btd/17/076/1707699.pdf>

Deutscher Bundestag. (2012). *Drucksache 17/9861.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Antwort der Bundesregierung 04. 06. 2*

- 012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Franz Müntefering, Sabine Bätzing-Lichtenthäler, Heinz-Joachim Barchmann,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der SPD(Drucksache 17/9609)(2012.6.4.). <https://dserver.bundestag.de/btd/17/098/1709861.pdf>
- Deutscher Bundestag. (2014.4.15). *Drucksache 18/1170. Umsetzung des Koalitionsvertrages durch die Bundesregierung im Bereich der Demografiepolitik.*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11/1801170.pdf>
- Deutscher Bundestag. (2017). *Drucksache 18/11057. Die Demografi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Doris Wagner, Dr. Franziska Brantner, Katja Dörner,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Drucksache 18/10905)(2017.2.1).*
- Deutscher Bundestag. (2024.5.10.). *Drucksache 20/11318.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6. Mai 2024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13/2011318.pdf>
- Deutscher Bundestag. (n.d.). *Demografischer Wandel - Herausforderungen unserer älter werdenden Gesellschaft an den Einzelnen und die Politik (1992-2002).*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4078954_enquete_10-199968
- Gerlach, I. (2008). "Familienpolitik: Geschichte und Leitbilder".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301): 36-53.
- Gründinger, W. (2014). *Was bringt ein Demografie-Check?(2014.4.29.)*. Zeit Online.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4-04/demografie-check-bundesregierung>
- Kösters, W. (n.d.). *Weniger - Bunter - Älter. Demographischer Wandel*

- und Selbsthilfe*. https://www.bag-selbsthilfe.de/fileadmin/user_upload/_Informationen_fuer_SELBSTHILFE-AKTIVE/Projekte/Stategiepapier_demografischer_Wandel.pdf
- Mayer, M. (2012). *Working Paper. Berliner Demografie Forum. 2012 Familie-Kinder-Gesellschaft*. https://www.berlinerdemografieforum.org/wp-content/uploads/2016/10/120102_demografiepolitik_mayer.pdf
- Sachverständigenrat. (2011). *Herausforderungen des demografischen Wandels. Expertise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https://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fileadmin/dateiablage/Expertisen/2011/expertise_2011-demografischer-wandel.pdf
- Sozialpolitik-aktuell.de. (n.d.). *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in Deutschland 1980 - 2023*.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Bevoelkerung/Datensammlung/PDF-Dateien/abbVII1a.pdf
- SPD; Bündnis 90/Die Grünen; FDP. (2011). Mehr Fortschritt wagen: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Koalitionsvertrag 2011 - 2017 zwischen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den Freien Demokraten (FDP). Berlin. https://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analysen-kompakt/2011/ak-11-2011-dl.pdf?__blob=publicationFile&v=2
- Schwarz, K. (1992). Geburtenentwicklung und Familienpolitik in der (früheren) DDR: Beispiel einer pronatalistischen Politik. *Zeitschrift für Familienforschung*, 4(3), pp. 248-262. <https://nbn-resolving.org/urn:nbn:de:0168-ssoar-292622>

〈3장〉

- 1절

- 김근진, 박은정, 김희수. (2019).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온종일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정. (2019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독일 가족정책의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207-221.
- 박은정, 이재희, 박은영, 김연진. (2023).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정, 조미라, 윤지연, 류연규, 윤자영. (2022a).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I): 고용형태별 돌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b).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 정재훈. (2018).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정재훈·박은정. (2012).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24(1), 1-31.
- Aden-Grossmann, W. (2002). *Kindergarten: eine Einführung in seine Entwicklung und Pädagogik*. Beltz.
- Alt, C., Guglhör-Rudan, A., Hüskens, K., & Winklhofer, U. (2019). *Ganztagsbetreuung für Grundschul Kinder, Kosten des Ausbaus bei Umsetzung des Rechtsanspruchs*. Deutsches Jugendinstitut.
- Becker, I. & Hauser, R. (2012). *Kindergrundsicherung, Kindergeld und Kinderzuschlag: Eine vergleichende Analyse aktueller Reformvorschläge*. WSI Working Papers 180, The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SI). Hans Böckler Foundation.

- Bertram, H., & Bujard, M. (2012). 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Zeit, Geld, Infrastruktur 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Special Issue Soziale Welt, 19*, 3-24.
- Bertram, H., & Deuffhard, C. (2013). Das einkommensabhängige Elterngeld als Element einer nachhaltigen Familienpolitik. *Zeitschrift für Familienforschung, 25*(2), 154-172.
- BMF Amtliches Lohnsteuer-Handbuch. (n.d.). § 31 Familienleistungsausgleich. <https://lsth.bundesfinanzministerium.de/lsth/2022/A-Einkommensteuergesetz/IV-Tarif/Paragraf-31/inhalt.html>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06). *Familie zwischen Flexibilität und Verlässlichkeit, Perspektive für eine lebenslaufbezogene Familienpolitik*.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2). *Zeit für Familien: 8. Familienbericht*.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8).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17*. BMFSFJ, Berlin.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9a). *Agenda 2030 – Nachhaltige Familienpolitik*.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9b). *Kindertagespflege: die familiennahe Alternative: Ein Leitfaden für Eltern*.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1). *Gute-KiTa-Bericht 2021*.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3a), *Elterngeld und Elternzeit & Das*

-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3b). *Väterreport 2023*.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3c). *Zweit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Evaluation des Gesetzes zur Weiterentwicklung der Qualität und zur Verbesserung der Teilhabe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der Kindertagespflege(KiQuTG)*.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3d).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Ausbaustand und Bedarf 2022*.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4a). *Familienreport 2024*.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4b). *Monitoringbericht zum KiQuTG 2023*. Berlin: BMFSFJ.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n.d.a).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unter drei Jahr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 (Kinderförderungsgesetz).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gesetz-zur-foerderung-von-kindern-unter-drei-jahren-in-tageseinrichtungen-und-in-kindertagespflege-kinderfoerderungsgesetz—86390>
-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n.d.b). Die neue Kindergrundsicherung - eine Leistung für alle Kinder.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eine-leistung-fuer-alle-kinder-228230>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n.d.c). Zweites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Qualität und zur Teilhabe in der Kindertagesbetreuung (KiTa-Qualitätsgesetz).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zweites-gesetz-zur-weiterentwicklung-der-qualitaet-und-zur-teilhabe-in-der-kindertagesbetreuung-kita-qualitaetsgesetz-201142>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n.d.d). Fragen und Antworten zur Kindergrundsicherung.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kindergrundsicherung/fragen-und-antworten-zur-kindergrundsicherung-230378>.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n.d.e). Betreuungslücken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schließ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kinder-im-grundschulalter-schliessen-133604>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n.d.f). Verbesserungen beim Kinderzuschlag und bei den Bildungs- und Teilhabeleistungen durch das Starke-Familien-Gesetz.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35892/109c32ca6e4fe740ecce853059093fea/aktuelle-hinweise-zum-kinderzuschlag-d-ata.pdf>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MJ]. (n.d). Sozialgesetzbuch (SGB) - Achst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

Bundesagentur für Arbeit. (n.d.). Familienkasse: Wir helfen Familien. <https://www.arbeitsagentur.de/ueber-uns/familienkasse-der-ba>

Bundesregierung. (n.d.a).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

- 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unterstuetzung-fuer-familien-2125014.
- Bundesregierung. (n.d.b).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entlastung-fuer-deutschland/buergergeld-2125010>.
- Böhmer, M., Matuschke, M., & Zweers, U. (2008). *Dossier: Kindergeld in Deutschland-Familien wirksam fördern*.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1). *Datenreport 2021: Ein Sozialbericht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pb.
- Deutscher Bildungsserver. (n.d.). Kita-Gebühren: Wo sind Kitas beitragsfrei?. <https://www.bildungsserver.de/Kita-Gebuehren-und-Beitragsfreiheit-5674-de.html>
- Deutsches Jugendinstitut. (2022). *Ergebnisse der DJI-Kinderbetreuungsstudie*.
-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3).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the Family, 1(1)*, 151-254. North-Holland.
- Eichhorst, W., & Thode, E. (2002).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Benchmarking Deutschland aktuell*. Verlag Bertelsmann-Stiftung.
- Erfolgsfaktor Familie. (n.d.). Das Programm 'Erfolgsfaktor Familie'. <https://www.erfolgsfaktor-familie.de/erfolgsfaktor-familie/ueber-das-programm/das-programm-erfolgsfaktor-familie—212958>.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 Familienkasse. (2024a). *Merkblatt Kindergeld*.
- Familienkasse. (2024b). *Merkblatt Kinderzuschlag*.
- ganztagschulen.org. (n.d.a). Das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

- ng und Betreuung' (IZBB). <https://www.ganztagsschulen.org/de/service/izbb-programm/das-investitionsprogramm-zukunft-bildung-und-betreuung-izbb.html>.
- ganztagsschulen.org. (n.d.b). Ganztag in Hamburg: 'Durch den Tag mit Bildung'. <https://www.ganztagsschulen.org/de/ganztagsschule-voor-ort/bildungspolitik-interviews/ganztag-in-hamburg-durch-tag-bildung.html?nn=605496>
- ganztagsschulen.org. (n.d.c). Baden-Württemberg: Robotik in der Grundschule. <https://www.ganztagsschulen.org/SharedDocs/Kurzmedlungen/de/a-c/bw-robotik-grundschule.html?nn=489124>
- GENESIS-Online. (n.d.a).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22911/table/22911-0002/search/s/S2luZGVyZ2VsZA==>
- GENESIS-Online. (n.d.b). Elterngeldempfänger: Bundesländer, Jahre, Geschlecht, Erwerbstätigkeit.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table&code=22922-0111&bypass=true&levelindex=0&levelid=1724581037007#abreadcrumb>
- Gerlach, I. (2008). Familienpolitik: Geschichte und Leitbilder.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301), 36-53.
- Gerlach, I. (2010). *Familienpolitik,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Germany*, Berlin: Springer.
- Kaufmann, F. X. (1995). *Zukunft der Familie im vereinten Deutschland*.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Bedingungen. München: Verlag C.H. Beck.
- Lemmer, J. (2015). *Kindergeld und Kinderfreibetrag_Funktionsweise, Entlastungswirkung und aktueller Handlungsbedarf (No. 16)*. DSi kompakt.
- Lepperhoff, J. (2014). Familienpolitik in Deutschland. *Zeszyty Pracy So*

- cjalnej*, 19(2), 55-63.
- Münder, J.(2017). *Bedarfsdeckende Förderung und Betreuung für Grundschulkindern durch Schaffung eines Rechtsanspruchs*. https://www.fruehe-chancen.de/fileadmin/PDF/Fruehe_Chancen/170821_Expertise_Muender_Langfassung_Final.pdf.
- Pfau-Effinger, B. (2005). Culture and welfare state policies: Reflections on a complex interrel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4(1), 3-20.
- Piekarz, P. (2024). So wird Kindergeld beim Bürgergeld angerechnet, Bürgergeld. <https://www.buergergeld.org/kindergeld/>
- Possinger, J. (2013). *Hürden fürsorglicher Vaterschaft-Väter im Spannungsfeld von Erwerbs-und Familienzeiten*. Familienpolitik neu denken-faire Bildungschancen für alle Kinder schaffen.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 Rainer, H., Bauernschuster, S., Danzer, N., Hener, T., Holzner, C., & Reinowski, J. (2013). *Kindergeld*. München, Germany: ifo Institut.
- Rürup, B., & Gruescu, S. (2003). *Nachhaltige Familienpolitik im Interesse einer aktiven Bevölkerungsentwicklung: Gutachten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No. 20906)*. Darmstadt Techn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Law, Institute for Business Studies (BWL).
- Salles, A. (2020). Familienpolitik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im Vergleich. ifb-Familienreport Bayern 2020. *Kinderreiche Familien in Bayern*, 126-154.
- Schultz, S. (2013). Familienpolitik und die „demografische Chance: Zur postkatastrophistischen Phase einer neuen deutschen Bevölkerungspolitik“. *PROKLA. Zeitschrift für kritische Sozialwissenschaft*, 43(173): 539-561.

- Sozialpolitik-aktuell.de. (n.d).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nanzierung-datensammlung.html>_Einkommensteuer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Eckwerte 2005–2024, pdf.
- Statista. (n.d). Durchschnittliche voraussichtliche Bezugsdauer von Elterngeld in Deutschland nach Geschlecht von 2016 bis 2023.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301222/umfrage/elterngeld-durchschnittliche-bezugsdauer-nach-geschlecht-der-eltern/>
- statistikportal. (n.d). Väter und Elterngeld. <https://www.statistikportal.de/en/node/179906>.
- Statistisches Bundesamt. (n.d.a). 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nach Kalenderjahren.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Geburten/Tabellen/geburtenziffer.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n.d.b). Elterngeld 2023: Elterngeld Plus immer stärker in Anspruch genommen.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3/PD24_124_22922.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n.d.c).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a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orderter Kindertagespflege 2006 bis 2022”.
- StEG-Konsortium. (2016). *Ganztagschule: Bildungsqualität und Wirkungen außerunterrichtlicher Angebote. Ergebnisse der Studie zur Entwicklung von Ganztagschulen 2012-2015*. Frankfurt a.M.
- Weimann-Sandig, N. (2019). Entwicklung und aktueller Stand der Kindertagesbetreuung in Deutschland. Das große Handbuch Organisation und Verwaltung in der Kita. Kita Management. *Köln*, 15-36.

- 2절

- Alm, B., Bornemann, H. (2023).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Status quo und Ausblick*. 1. Jahrestagung 'Regionale Transformation Gestalten', Rostock, 13.9.23.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jahrestagung-regionale-transformation-2023/workshop-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pdf?__blob=publicationFile&v=5
- Aring, J., & Sinz, M. (2006). Neue Leitbilder der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 Modernisierung der Raumordnungspolitik im Diskurs. *disP - The Planning Review*, 42(165), 43-60. <https://doi.org/10.1080/02513625.2006.10556954>
- Bayerische Staatszeitung. (2021.5.28). *Pro und Contra Heimatabteilung*. <https://www.bayerische-staatszeitung.de/staatszeitung/kommunales/detailansicht-kommunales/artikel/pro-und-contra-heimatabteilung.html#topPosition>
-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 (n.d.). *Informationen zum demografischen Wandel in Ihrem Kreis oder Ihrer kreisfreien Stadt*. Brandenburg-Berlin. https://imagemap.bbr-server.de/demographie/Brandenburg_Berlin.html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BMI]. (2020). *Ganzheitlich, nachhaltig und kooperativ 50 Jahre Städtebauförderung in Deutschland*. https://mid.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LV/MID/Infrastruktur/Bauen_und_Wohnen/Staedtebaufoerderung/Broschue_re_50JahreStBF_de.pdf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1). *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https://www.bmi.bund.de/SharedDocs/schwerpunkte/DE/kommission-gleichwertige-leb>

ensverhaeltnisse/kom-gl-artikel.html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I, BMEL & BMFSFJ]. (2019). *Unser Plan für Deutschland-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überall*.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37240/e94cf2ffab8768fd37a1e632db3ee51e/schlussfolgerungen-kommission-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langversion-data.pdf>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I, BMEL & BMFSFJ]. (2021). *Politik für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Zwischenbilanz der 19. Legislaturperiode*. https://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veroeffentlichungen/2021/04/zwischenbericht-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pdf?__blob=publicationFile&v=9

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BMWSB]. (n.d.a). *Strategien und Werkzeuge der Stadtentwicklungspolitik*. <https://www.bmwsb.bund.de/Webs/BMWSB/DE/themen/stadt-wohnen/stadtentwicklung/strategien-projekte/strategien-projekte-artikel.html>

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BMWSB]. (n.d.b) *Sozialer Zusammenhalt*. <https://www.bmwsb.bund.de/Webs/BMWSB/DE/themen/stadt-wohnen/staedtebau/sozialer-zusammenhalt/sozialer-zusammenhalt-node.html>

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BMWSB]. (2006). *Leitbilder und Handlungsstrategien für die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 Verabschiedet von der Ministerkonf

- erenz für Raumordnung am 30. Juni 2006. https://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ministerien/bmvbs/sonderveroeffentlichungen/2006/DL_Leitbilder.pdf;jsessionid=5FD249BAF1AF7327F0B693AB699C665B.live11313?__blob=publicationFile&v=1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0.1.2). *Im Fokus. Strukturförderung unter einem Dach*.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0/02/kapitel-1-1-im-fokus-strukturfoerderung-unter-einem-dach.html>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3.9.13). *GRW -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G/grw-gemeinschaftsaufgabe-verbesserung-der-regionalen-wirtschaftsstruktur.pdf?__blob=publicationFile&v=9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3.10.17). *GRW erweitert die Fördermöglichkeiten für nachhaltige und klimafreundliche Investitionen in strukturschwachen Regionen*. <https://www.bmwk-energiewende.de/EWD/Redaktion/Newsletter/2023/09/Meldung/news3.html>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4a).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Für starke und lebenswerte Regionen in Deutschland*. https://www.bmwk.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aft/gleichwertigkeitsbericht-der-bundesregierung-2024.pdf?__blob=publicationFile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4b). *Bürgerdialog zur Gleichwertigkeitspolitik der Bundesregierung(2024.8.20)*.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

- aft/Regionalpolitik/gleichwertigkeitspolitik-buergerdialog.html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4c). *Bundesregierung beschließt erstmals Gleichwertigkeitsbericht: Regionale Unterschiede nehmen ab*(2024.8.23).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4/09/03-gleichwertigkeitsbericht-regionale-unterschiede.html>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n.d.a). *Gesamtdeutsches Fördersystem für strukturschwache Regionen*.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gesamtdeutsches-foerdersystem.html>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n.d.b). *Benachteiligte Regionen – GRW. Einleitung. Welche Region gilt als „benachteiligt“?* <https://www.zim.de/ZIM/Redaktion/DE/Artikel/benachteiligte-regionen-grw.html>
- Böcking, D., Wassermann, A. (2018). *GroKo will 209 neue Stellen, die Hälfte für „heimatbezogene Innenpolitik“*(2018.3.16). 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grosse-koalition-will209-neue-planstellen-in-ministerien-a-1198468.html
- Bundesregierung. (2021). *Mehr Fortschritt wagen.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Koalitionsvertrag der SPD, FDP und Bündnis90/Die Grünen für die Legislaturperiode 2021-2025. https://www.spd.de/fileadmin/Dokumente/Koalitionsvertrag/Koalitionsvertrag_2021-2025.pdf
- Demografie Portal. (2019.7.10). *Ergebnisse der 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und Deutschlandatlas vorgestellt*.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19/190710-Ergebnisse-Kommission-Gleichwertige-Lebensverh%C3%A4ltnisse-Deutschlandatlas.html>

- Demografie Portal. (n.d.m). *Heimatpolitik und Heimatstrategie*.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Bayern/heimatpolitik-heimatstrategie.html>
- Deutscher Bundestag. (1972). *Raumordnungsbericht 1972 der Bundesregierung(1972.9.19)*. Drucksache VI/3793. <https://dserver.bundestag.de/btd/06/037/0603793.pdf>
- Deutscher Bundestag. (1975). *Raumordnungsprogramm für die großräumige Entwicklung des Bundesgebiets (Bundesraumordnungsprogramm)(1975.4.30.)*. Drucksache 7/3584. <https://dserver.bundestag.de/btd/07/035/0703584.pdf>
- Deutscher Bundestag. (2014.4.15). *Umsetzung des Koalitionsvertrages durch die Bundesregierung im Bereich der Demografiepolitik*, Drucksache 18/1170,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11/1801170.pdf>
- Deutscher Bundestag. (2014.7.4). *Koordinierungsrahme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ab 1. Juli 2014*,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Drucksache 18/2200,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22/1802200.pdf>
- Deutscher Bundestag. (2018.7.13). *Perspektive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Antwort der Bundesregierung*, Drucksache 19/3414, <http://dipbt.bundestag.de/doc/btd/19/034/1903414.pdf>
- Deutscher Bundestag. (2024.7.5). *Gleichwertigkeitsbericht 2024*. <http://dserver.bundestag.de/btd/20/122/2012270.pdf>. p. 155
- Göddecke-Stellmann, J. Kocks, M. (2007). *Die Soziale Stadt- acht Jahre Städtebauförderung für eine sozial orientierte Stadtpolitik*.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6. 2007. <https://www.bbsr.de>

- 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izr/2007/Downloads/6GoeddeckeKocks.pdf?__blob=publicationFile&v=1
- Hackenbruch, F. (2022). *Von Volksmusik bis Breitbandausbau: Was macht eigentlich das Heimatministerium?*.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was-macht-eigentlich-das-heimatministerium-5630233.html>
- Maretzke, S., Hoymann, J., & Schlömer, C. (2024). *Raumordnungsprognose 2045: Bevölkerungsprognose*. BBSR im BBR. https://www.bbsr.bund.de/BBSR/DE/veroeffentlichungen/analysen-kompakt/2024/ak-04-2024-dl.pdf?__blob=publicationFile&v=3
- Röhl, K.H.(2019). Regionalpolitik in Deutschland: Instrumente und Erfahrungen. In: Hüther, M., Südekum, J., & Voigtländer, M.(Ed.) *Die Zukunft der Regionen in Deutschland: zwischen Vielfalt und Gleichwertigkeit*. https://www.iwkoeln.de/fileadmin/user_upload/Studien/Externe_Studien/2019/IW-Regionalstudie_2019.pdf, 115-132
- SPD, Bündnis 90/Die Grünen, FDP. (2021). *Mehr Fortschritt wagen: 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Koalitionsvertrag 2021 – 2025 zwischen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den Freien Demokraten (FDP). Berlin. https://www.spd.de/fileadmin/Dokumente/Koalitionsvertrag/Koalitionsvertrag_2021-2025.pdf
- Städtebauförderung. (n.d.a). *Geschichte*. https://www.staedtebaufoerderung.info/DE/WeitereProgramme/SanierungEntwicklung/Programm/Geschichte/geschichte_node.html
- Städtebauförderung. (n.d.b.). *Was ist Städtebauförderung?* https://www.staedtebaufoerderung.info/DE/Startseite/startseite_node.html
- Strubelt, W. (2004). Gleichwertigkeit der Lebensverhältnisse als Eleme

- nt der sozialen Integration. In: Kecskes, R.; Wagner, M.; Wolf, C. (Ed.), *Angewandte Soziologie. Wiesbaden*, VS Verlag, pp. 247-285.
- Troeger-Weiß, G. (2022).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https://www.bpb.de/themen/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einheit/506199/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node-content-title-2>
- Volkman, A. (2018).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zwischen Daseinsvorsorge und räumlichen Verwirklichungschancen*. https://leibniz-irs.de/fileadmin/user_upload/pure_files/1320014/Volkman_Gleichwertige_Lebensverh_ltnisse_zwischen_Daseinsvorsorge_und_Verwirklichungschancen.pdf

- 3절

- 김유휘, 이정은, 신영규, 임덕영, 김경환, 이지은. (2022).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de, K. J. (1992). *Ausländer-und Asyl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rundprobleme und Entwicklungslinien. In Einwanderungsland Deutschland: Bisherige Ausländer-und Asylpolitik*. Vergleich mit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Friedrich-Ebert-Stiftung: Bonn.
- BDO Legal. (2022.12.6). Die 3 Säulen der neuen Fachkräfteeinwanderungspolitik. <https://www.bdolegal.de/de-de/erweiterte-suche/aktuelles/2022/die-3-saulen-der-neuen-fachkraefteeinwanderungspolitik>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3). *Fachkräfteengpassanalyse - 2023 - Deutschland und Länder*.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SiteGl>

obals/Forms/Suche/Einzelheftsuche_Formular.html?nn=20626&topic_f=fachkraefte-engpassanalyse

Bundesgesetzblatt. (2022). *Gesetz zur Einfuhrung eines Chancen-Aufenthaltsrechts vom 21. Dezember 2022.*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 (2024).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13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3). *Migration s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22.*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DE/Forschung/Migrationsberichte/migrationsbericht-2022.pdf?__blob=publicationFile&v=17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n.d.a). *Moderne s Einwanderungsrecht fur auslandische Arbeitskrafte.* <https://www.bmi.bund.de/SharedDocs/schwerpunkte/DE/einwanderungsl and/fachkraefteeinwanderung-artikel.html>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3.3.29.). *Kabinett beschließt neues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3/03/fachkraefte-kabinett.html>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2024). *Migrations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22.* Berlin, Nürnberg.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2023.4.27) *Neu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der Statistischen Ämter.* <https://www.bmwk.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3/05/06-neue-bevoelkerungsvorausberechnung-der-statistischen-aemter.html>

- Demografie Portal. (2024.6.27). *Nettozuwanderung 2023 mit 663.000 Personen deutlich gesunken*. <https://www.demografie-portal.de/DE/Politik/Meldungen/2024/240627-bund-nettozuwanderung-2023-mit-663000-personen-deutlich-gesunken.html>
- Deutscher Bundestag. (2024.3.21). *Die demografische Situation in Deutschland vor dem Hintergrund nicht bestandserhaltender Geburtenzahlen(Drucksache 20/10799).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https://dserver.bundestag.de/btd/20/107/2010799.pdf>
-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2023.1.2). *Informationen zum Chancen-Aufenthaltsrecht*. <https://www.integrationsbeauftragte.de/ib-de/ich-moechte-mehr-wissen-ueber/chancen-aufenthalt>
- Die Bundesregierung. (2024.6.3). *Neue Wege zur Fachkräftegewinnung*.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2182168?utm_source=chatgpt.com
- Die Bundesregierung. (2022). *Fachkräfte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 Die Zeit. (2013.4.14). Angela Merkel lobt Migranten für Integrationserfolg. *Die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3-04/merkel-migranten-integration>
- Geißler, R. (2014.12.16). *Migration und Integration*.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auslaendische-bevoelkerung-aufenthaltsrechtlicherstatus.html>
- Haist, K., Ladig, S., Winkler, G. E., Höppner, P., Bunde, N., Wöfl, A., ... & Bucher-Koenen, T. (2023). Demografischer Wandel-bekannte Herausforderungen, neue Gestaltungsmöglichkeiten. *ifo Schnelldienst*, 76(11), 03-32.

- Hanewinkel, V. & Oltmer, J. (2017). *Country Profile: Germany 2017*.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arbeit-und-soziales/fachkraefteeinwaerungsgesetz-2182168>
- Martin, P. L. (1981). Germany's guestworkers. *Challenge*, 24(3), 34-42.
- OECD. (2024). *Stand der Intergration von Eingewanderten*. https://migrant-integration.ec.europa.eu/system/files/2024-07/oecd_Immigrant%20Integration%20Germany_de.pdf
- Schammann, H., Kretschmar, N., & Gölz, R. (2012). Willkommens- und Anerkennungskultur: Konkretisierung eines Begriffs. In Bertelsmann Stiftung (Ed.), *Deutschland, öffne dich! – Willkommenskultur und Vielfalt in der Mitte der Gesellschaft verankern* (pp. 27-46). Bertelsmann Stiftung.
- Sontheimer, M. (2017.6.23). Helmut Kohl: Ein großer Kanzler war er nicht – ein Widerspruch? *Der Spiegel*. <https://www.spiegel.de/spiegel/helmut-kohl-ein-grosser-kanzler-war-er-nicht-ein-widerspruch-a-1153425.html>
- Statista. (2024.6.10). *Anteil der ausländischen Bevölkerung an der Gesamtbevölkerung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23*.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4271/umfrage/deutschland-anteil-auslaender-an-bevoelkerung>
- Statistisches Bundesamt. (2011).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Ausländische Bevölkerung Ergebnisse des Ausländerzentralregisters*. Fachserie 1 Reihe 2, 2010.
- Statistisches Bundesamt. (2022).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70, Ergebnisse der 15. koordinierten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Wiesbaden.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2.13). *Rohdatenausählung ausländisch*

- e Bevölkerung*.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rohdaten-auslaendische-bevoelkerung-zeitreihe.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a). *Bevölkerung in Hauptwohnsitzhaushalten der Lebensform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Art der Lebensform*.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familienstruktur.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b).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Einwanderungsgeschichte und höchstem allgemeinem Schulabschluss*.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einwanderungsgeschichte-schulabschluss.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c).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Beteiligung am Erwerbsleben*.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beteiligung-erwerbsleben.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d). *Erwerbstätige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Wirtschaftszweigen*.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wirtschaftszweige.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4.2e). *Bevölkerung in Privathaushalten nach Migrationshintergrund und Altersgruppen*.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migrationshintergrund-alter.htm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1). *Pressemitteilung Nr. 081 vom 1. M*

ärz 20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3/PD24_081_125.html

Statistisches Bundesamt. (2024.5.2).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Aufenthalts - rechtlichem Status*. <https://www.destatis.de/DE/The 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Migration-Integration/Tabellen/auslaendische-bevoelkerung-aufenthaltsrechtlicherstatus.html>

Thomas, G. (2024.4.8).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Drei Säulen, viele Wege. Niedersächsische Wirtschaft - IHK Hannover. <https://archiv.nw-ihk.de/2024/04/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novelle-aenderungen-ueberblick/>

Von Koppenfels, A. K., & Höhne, J. (2017). Gastarbeiter migration revisited: Consolidating Germany's position as an immigration country. *In South-North migration of EU citizens in times of crisis*, 149-174.

von Loeffelholz, H. D. (2013). Wirtschaftliche Chancen und Erfordernisse der Internationalisierung des Arbeitsmarkts durch Migration und Integration ausländischer Fach- und Führungskräfte. *In: Charta der Vielfalt e. V., Weltoffen = Zukunftsfähig?! Diversity Management & Internationalität*, 19-22.

〈5장〉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13). *Politischer Bericht zur Gesamtevaluation der Ehe- und familienbezogenen Leistungen*. <https://www.bmfsfj.de/resource/blob/76374/2bb96146178ab57f64ae97790ba70c06/familienbezogene-leistungen-data.pdf>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n.d.b). *Demografiepolitik in Deutschland*. <https://www.bmi.bund.de/DE/theme/n/heimat-integration/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demografie/demografiepolitik/demografiepolitik-artikel.html>
- Kersten, J., Neu, C., Vogel, B. (2019).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 für eine Politik des Zusammenhalts*. <https://www.bpb.de/shop/zeitschriften/apuz/300048/gleichwertige-lebensverhaeltnisse-fuer-eine-politik-des-zusammenhalts/>
- Knauss, F. (2015.3.5). Herwig Birg "Die Demografische Uhr tickt unbar mherzig". *Wirtschaftswoche*. <https://www.herwig-birg.de/downloads/dokumente/DemografischeUhr-Wirtschaftswoche.pdf>
- König, A. (2016). *Demografischer Wandel - Lokal Gesteuert: Ein Erfahrungsbericht*. Tredition.



[부록 1]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독일용)

ID des Befragten

Umfrage zur Wahrnehmung von Ehe, Geburt und Kinderbetreuung

Herzlich Willkommen bei der Umfrage zur Wahrnehmung von Ehe, Geburt und Kinderbetreuung!
Diese Vergleichsstudie zur Bevölkerungspolitik in wichtigen Ländern wird v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urchgeführt, einem staatlichen Forschungsinstitut, das dem Premierminister unterstellt ist.

Zweck dieser Studie ist es, die soziokulturellen Hintergründe der Bevölkerungspolitik wichtiger Länder zu verstehen. Die Umfrage richtet sich an **ca. 2.500 Männer und Frauen im Alter von 20~49 Jahren** und wird voraussichtlich **etwa 15 Minuten** beanspruchen. Ihre Antworten liefern wichtige Daten für die zukünftige Ausrichtung der Bevölkerungspolitik in Korea. Bitte beantworten Sie alle Fragen ehrlich, gewissenhaft und vollständig.

Sämtliche Antworten werden gemäß §33 (Schutz vertraulicher Informationen) des „Statistics Act“ als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behandelt und unter garantierter Vertraulichkeit ausschließlich für statistische Auswertungen verwendet.

Vielen Dank, dass Sie sich die Zeit nehmen, an dieser Umfrage teilzunehmen.

Juni 202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Act“: §33 (Schutz vertraulicher Informationen)

- ① Informationen, die bei der Erhebung statistischer Daten bekannt werden und für eine Einzelperson, ein Unternehmen oder eine Organisation vertraulich sind, müssen geschützt werden.
- ② Vertrauliche Informationen von Einzelpersonen, Unternehmen oder Organisationen, die zum Zwecke der Erhebung von statistischen Daten gesammelt wurden, dürfen nicht für andere Zwecke als die Erstellung von Statistiken verwendet werden.



Auswahlfragen

SQ1. Bitte geben Sie Ihr Geschlecht an.

- ① männlich ② weiblich ③ divers/ nicht-binär ④ _____ ⑤ keine Angabe

SQ2. Bitte geben Sie Ihr Alter an.

※ Ich bin _____ Jahre alt.

SQ3. In welchem Bundesland leben Sie?

- ① Baden-Württemberg
- ② Bayern
- ③ Berlin
- ④ Brandenburg
- ⑤ Bremen
- ⑥ Hamburg
- ⑦ Hessen
- ⑧ Mecklenburg-Vorpommern
- ⑨ Niedersachsen
- ⑩ Nordrhein-Westfalen
- ⑪ Rheinland-Pfalz
- ⑫ Saarland
- ⑬ Sachsen
- ⑭ Sachsen-Anhalt
- ⑮ Schleswig-Holstein
- ⑯ Thüringen

SQ4. Wie viele Einwohner hat Ihr Wohnort?

- ① bis 5.000 Einwohner(Landgemeinde)
- ② zwischen 5.000 und 20.000 Einwohner(Kleinstadt)
- ③ zwischen 20.000 und 100.000 Einwohner(Mittelstadt)
- ④ mehr als 100.000 Einwohner(Großstadt)

SQ5. Was ist Ihr höchster Bildungsabschluss?

- ① Kein Schulabschluss ② Grund-/Hauptschulabschluss ③ Realschulabschluss (Mittlere Reife)
- ④ Abitur ⑤ Abgeschlossene Ausbildung ⑥ Fachhochschulreife
- ⑦ Hochschulabschluss (Diplom, Magister, Master) ⑧ Fortgeschrittener Hochschulabschluss (Promotion)
- ⑨ Sonstige ()

SQ6. Leben Sie derzeit mit einem Ehepartner*/einer Ehepartnerin bzw. einem Lebensgefährten/einer Lebensgefährtin in einem gemeinsamen Haushalt?

- ① Ja → (weiter zu SQ6-1) ② Nein → (weiter zu SQ6-2)

* Zur Verbesserung der Lesbarkeit wird hier und im Folgenden in denjenigen Fällen, in denen keine geschlechtsneutrale Bezeichnung für Personengruppen anwendbar ist, ausschließlich die männliche Wortform verwendet. Selbstverständlich sind dabei aber immer beide Geschlechter gleichermaßen gemeint.

SQ6-1. Wie würden Sie die Beziehung zu Ihrem gegenwärtigen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n beschreiben?

- ① Wohn- bzw. Lebensgemeinschaft ② Eheähnliche Partnerschaft ③ (gesetzliche) Ehe

SQ6-2. Welche der folgenden Angaben beschreibt Ihren derzeitigen Beziehungsstatus am besten?

- ① Ledig ② Geschieden ③ Getrennt ④ Verwitwet

SQ7. Haben Sie Kinder?

- ① Ja → (weiter zu SQ7-1) ② Nein → (weiter zu SQ8)

SQ7-1. Wie viele Kinder haben Sie? Ich habe _____ Kind(er). (Anzahl der leiblichen Kinder: _____)

SQ7-2. Bitte machen Sie Angaben zu Ihren Kindern

| | Alter des Kindes | Im selben Haushalt lebend |
|---------------|------------------|---------------------------|
| 1. Kind | _____ Jahre | Ja/Nein |
| 2. Kind | _____ Jahre | Ja/Nein |
| 3. Kind | _____ Jahre | Ja/Nein |
| ... | ... | ... |
| Jüngstes Kind | _____ Jahre | Ja/Nein |

SQ8. Wie viele Personen leben insgesamt in Ihrem Haushalt? _____ Personen

※ Bitte geben Sie die aktuelle Zahl der Mitglieder Ihres Haushalts an, einschließlich Ihrer selbst, Ihres Partners und Kinder.

SQ9. Welche der folgenden Kategorien beschreibt Ihre Haupttätigkeit in der vergangenen Woche am besten?

* Falls Sie mehr als 18 Stunden (pro Woche) ohne Vergütung in einem Betrieb oder auf dem Bauernhof eines mit Ihnen zusammenlebenden Familienmitglieds oder Verwandten arbeiten, gilt dies als „Arbeit“.

- ① Arbeit → (weiter zu SQ9-1)
 ② Vorübergehende Abwesenheit/Urlaub (Beschäftigungsunterbrechung bei bestehendem Beschäftigungsverhältnis) → (weiter zu SQ9-1)

310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③ Aus- bzw. Weiterbildung (Teilnahme an Aus-/Weiterbildungsmaßnahmen ohne bestehen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 (weiter zu SQ10)
- ④ Ohne Beschäftigung, stellensuchend → (weiter zu SQ10)
- ⑤ Ohne Beschäftigung, nicht stellensuchend → (weiter zu SQ10)
- ⑥ Gesundheitsbedingte Arbeitsunfähigkeit → (weiter zu SQ10)
- ⑦ Bundesfreiwilligendienst oder Soziales Jahr (einschließlich geplanter Einberufung) → (weiter zu SQ10)
- ⑧ Hausarbeit und Kinderbetreuung → (weiter zu SQ10)

SQ9-1. (nur für Antworten ①, ② bei SQ9) Wie viele Stunden haben Sie in der vergangenen Woche (ohne Essens- und Pausenzeiten) insgesamt gearbeitet?

| Stunden |
|---|
| ※ Falls Sie in der vergangenen Woche beurlaubt waren, antworten Sie bitte basierend auf der letzten Woche, in der Sie gearbeitet haben. |

SQ9-2. (nur für Antworten ①, ② bei SQ9) Was ist Ihr aktueller Beschäftigungsstatus?

- ① Vollzeitbeschäftigung (einschließlich unbefristeter Vertragsarbeit)
- ② Vertragsarbeit
- ③ Selbständigkeit mit Angestellten
- ④ Selbständigkeit ohne Angestellte
- ⑤ Null-Stunden-Vertrag
- ⑥ Freiberufler oder unabhängiger Auftragnehmer
- ⑦ Praktikum/Volontariat/Referendariat
- ⑧ Sonstige ()

SQ10. (nur für Antwort ① bei SQ6) Welche der folgenden Kategorien beschreibt die Haupttätigkeit Ihres Ehepartners/Ihrer Ehepartnerin bzw. Lebensgefährten/Lebensgefährtin in der vergangenen Woche am besten?

| |
|--|
| * Falls Ihr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 mehr als 18 Stunden (pro Woche) ohne Vergütung in einem Betrieb oder auf dem Bauernhof eines mit Ihnen zusammenlebenden Familienmitglieds oder Verwandten arbeitet, gilt dies als „Arbeit“. |
|--|

- ① Arbeit → (weiter zu SQ10-1)
- ② Vorübergehende Abwesenheit/Urlaub (Beschäftigungsunterbrechung) → (weiter zu SQ10-1)
- ③ Aus- bzw. Weiterbildung (Teilnahme an Aus-/Weiterbildungsmaßnahmen ohne bestehend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 (weiter zu SQ11)
- ④ Ohne Beschäftigung, stellensuchend → (weiter zu SQ11)
- ⑤ Ohne Beschäftigung, nicht stellensuchend → (weiter zu SQ11)
- ⑥ Gesundheitsbedingte Arbeitsunfähigkeit → (weiter zu SQ11)
- ⑦ Bundesfreiwilligendienst oder Soziales Jahr(einschließlich geplanter Einberufung) → (weiter zu SQ11)
- ⑧ Hausarbeit und Kinderbetreuung → (weiter zu SQ11)

SQ10-1. (nur für Antworten ①, ② bei SQ10) Wie viele Stunden hat Ihr Ehepartner/Ihre Ehepartnerin bzw. Lebensgefährte/Lebensgefährtin in der vergangenen Woche (ohne Essens- und Pausenzeiten) insgesamt gearbeitet?

_____ Stunden

※ Falls Ihr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 in der vergangenen Woche beurlaubt war, antworten Sie bitte basierend auf der letzten Woche, in der Ihr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 gearbeitet hat.

SQ10-2. (nur für Antworten ①, ② bei SQ10) Was ist Ihr aktueller Beschäftigungsstatus Ihres Ehepartners bzw. Ihres Lebensgefährten?

- ① Vollzeitbeschäftigung (einschließlich unbefristeter Vertragsarbeit)
- ② Vertragsarbeit
- ③ Selbständigkeit mit Angestellten
- ④ Selbständigkeit ohne Angestellte
- ⑤ Null-Stunden-Vertrag
- ⑥ Freiberufler oder unabhängiger Auftragnehmer
- ⑦ Praktikum/Volontariat/Referendariat
- ⑧ Sonstige ()

SQ11. Wie hoch ist Ihr monatliches Netto-Haushaltseinkommen?

※ Bitte schätzen Sie, falls Sie es nicht wissen.

- ① Weniger als 1.000 EUR / Monat
- ② 1.000 ~ 1.499 EUR / Monat
- ③ 1.500 ~ 1.999 EUR / Monat
- ④ 2.000 ~ 2.499 EUR / Monat
- ⑤ 2.500 ~ 2.999 EUR / Monat
- ⑥ 3.000 ~ 3.499 EUR / Monat
- ⑦ 3.500 ~ 3.999 EUR / Monat
- ⑧ 4.000 ~ 4.499 EUR / Monat
- ⑨ 4.500 ~ 4.999 EUR / Monat
- ⑩ Mehr als 5.000 EUR / Monat

SQ12. Wie gut kommen Sie mit Ihrem aktuellen Haushaltseinkommen aus?

※ Ein „Haushalt“ ist eine Wohneinheit bestehend aus einer oder mehreren Personen, die ihr Leben mit gemeinsamen Aktivitäten, wie Schlafen oder Kochen, verbringt.

- ① Vom aktuellen Haushaltseinkommen lässt es sich bequem leben.
- ② Vom aktuellen Haushaltseinkommen lässt es sich ohne Schwierigkeiten leben.
- ③ Es ist schwierig, vom aktuellen Haushaltseinkommen zu leben.
- ④ Es ist sehr schwierig, vom aktuellen Haushaltseinkommen zu leben.
- ⑤ Ich weiß es nicht.

SQ13. Für wie wahrscheinlich halten Sie es, dass Sie in den kommenden 12 Monaten arbeitslos sind (unabhängig von Ihrem aktuell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 ① Ich halte es für ausgeschlossen.
- ② Die Wahrscheinlichkeit ist gering.
- ③ Die Möglichkeit besteht.
- ④ Die Wahrscheinlichkeit ist hoch.
- ⑤ Die Wahrscheinlichkeit ist sehr hoch.
- ⑥ Ich habe keine Absicht zu arbeiten bzw. suche nicht aktiv nach einer Beschäftigung.
- ⑦ Ich weiß es nicht.

A. Wahrnehmung von Ehe, Geburt und Geschlechterrollen

※ Die folgenden Fragen betreffen Ihre Meinung bzgl. Ehe und Geburt.

AQ1. (nur für Antwort ② bei SQ6 und Antworten ①, ② bei SQ6-1) Haben Sie vor in Zukunft zu heiraten?

- ① Ich habe vor zu heiraten.
- ② Ich habe nicht vor zu heiraten.
- ③ Ich habe noch nicht darüber nachgedacht.
- ④ Ich weiß es nicht.

AQ2. (alle Befragten) Haben Sie vor in Zukunft Kinder zu bekommen?

- ① Ich habe vor Kinder zu bekommen. → (weiter zu AQ2-1)
- ② Ich habe nicht vor Kinder zu bekommen. → (weiter zu AQ3)
- ③ Ich habe noch nicht darüber nachgedacht. → (weiter zu AQ3)
- ④ Ich habe mich noch nicht entschieden bzw. Ich weiß es nicht. → (weiter zu AQ3)

AQ2-1. (nur für Antwort ① bei AQ2) Wie viele Kinder hätten Sie gern insgesamt?

_____ Kinder

AQ3. Was denken Sie ist die ideale Anzahl an Kindern für eine Familie in Deutschland? (Eingabe ab 0 möglich)

_____ Kinder

AQ4. Wie wichtig sind die folgenden Aspekte bei der Familienplanung?

| | völlig unwichtig | unwichtig | neutral | wichtig | äußerst wichtig |
|--|------------------|-----------|---------|---------|-----------------|
| 1) Wirtschaftliche Situation der Familie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Persönliche Gesundheit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3) Gesundheit des Partners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Persönliche Beschäftigungssituation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Beschäftigungssituation des Partners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Wohnsituation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Work-Life-Balance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Möglichkeit einer Karriereunterbrechung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Verfügbarkeit von Kinderbetreuungsmöglichkeit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Ausreichende staatliche Unterstützung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Zukunftssorgen und -ängste | ① | ② | ③ | ④ | ⑤ |

AQ5. Was glauben Sie, wie sich die Geburt von Kindern auf die folgenden Aspekte Ihres Lebens auswirken würde? (Bitte antworten Sie auch, wenn Sie nicht vorhaben, Kinder zu bekommen.)

| | Stimme überhaupt nicht zu | Stimme nicht zu | Neutral | Stimme zu | Stimme voll und ganz zu |
|---|---------------------------------|--------------------|---------|-----------|-------------------------------|
| 1) Ich werde weniger Freiheit für mich selbst hab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Die Freude und Zufriedenheit im Leben werden zunehm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Meine Arbeitsmöglichkeiten werden eingeschränkt.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Die Arbeitsmöglichkeiten meines Partners werden eingeschränkt.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Der Grad der Fürsorge und Sicherheit, die ich im Alter erwarten kann, erhöht sich.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Die Vertrautheit mit meinem Partner wird zunehm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Die finanzielle Belastung wird zunehmen. | ① | ② | ③ | ④ | ⑤ |

AQ6. Für welche der folgenden Rollen sind Ihrer Meinung nach Männer oder Frauen besser geeignet?

| | definitiv Männer | eher Männer | sowohl als auch | eher Frauen | definitiv Frauen |
|--|---------------------|----------------|--------------------|----------------|---------------------|
| 1) Lebensunterhalt für die Familie verdien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Alltägliche Hausarbeiten wie Koch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Putzen und Waschen | | | | | |
| 3) Betreuung der kleinen Kinder | ① | ② | ③ | ④ | ⑤ |

B. Aufteilung von Hausarbeit und Kinderbetreuung

BQ1. (nur für Antwort ① bei SQ6) Wie sieht die tatsächliche Aufteilung der Hausarbeit zwischen Ihnen und Ihrem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n aus? Bitte wählen Sie jeweils die zutreffendste Antwort aus.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Ich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Mein Partner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BQ2. (nur für Antwort ① bei SQ6) Wie sähe Ihrer Meinung nach eine angemessene Aufteilung der Hausarbeit zwischen Ihnen und Ihrem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n aus? Bitte wählen Sie jeweils die zutreffendste Antwort aus.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Ich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Mein Partner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BQ3. (falls SQ6 mit ① beantwortet wurde und das jüngste Kind in SQ7-1 nicht älter als 12 Jahre ist) Wie sieht die tatsächliche Aufteilung der Kinderbetreuung zwischen Ihnen und Ihrem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n aus? Bitte wählen Sie jeweils die zutreffendste Antwort aus.

※ Unter „Kinderbetreuung“ ist hier die direkte Betreuung von Kindern im **Alter von 0 bis 12 Jahren** zu verstehen.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Ich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Mein Partner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BQ4. (falls SQ6 mit ① beantwortet wurde und das jüngste Kind in SQ7-1 nicht älter als 12 Jahre ist) Wie sähe Ihrer Meinung nach eine angemessene Aufteilung der Kinderbetreuung zwischen Ihnen und Ihrem Ehepartner bzw. Lebensgefährten aus? Bitte wählen Sie jeweils die zutreffendste Antwort aus.

※ Unter „Kinderbetreuung“ ist hier die direkte Betreuung von Kindern im **Alter von 0 bis 12 Jahren** zu verstehen.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 | | | | | | | | | | |
|--------------|------|-----|-----|-----|-----|-----|-----|-----|-----|-----|------|
| Ich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Mein Partner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BQ5. (nur für Antwort ① bei SQ6) Wie lassen sich Ihre beruflichen Tätigkeiten mit Hausarbeit und Kinderbetreuung vereinbaren?

- ① sehr einfach ② einigermaßen einfach ③ neutral
 ④ einigermaßen schwer ⑤ sehr schwer

BQ6. (alle Befragten) Die Meinungen zur Kinderbetreuung gehen in unserer Gesellschaft weit auseinander. Welche der folgenden Punkte sind Ihrer Meinung nach Aufgabe der Gesellschaft und welche Aufgabe der Familie?

| | hauptsächlich Aufgabe der Gesellschaft | eher Aufgabe der Gesellschaft | gleichermaßen Aufgabe der Gesellschaft und der Familie | eher Aufgabe der Familie | hauptsächlich Aufgabe der Familie |
|---|--|-------------------------------|--|--------------------------|-----------------------------------|
| 1) Betreuung von Vorschulkindern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Betreuung von Schulkindern außerhalb des Unterrichts | ① | ② | ③ | ④ | ⑤ |

C. Demografischer Wandel und gesellschaftliches Bewusstsein

CQ1. Bitte geben Sie an, inwieweit Sie den folgenden Aussagen zum demografischen Wandel zustimmen.

| | Stimme überhaupt nicht zu | Stimme nicht zu | Neutral | Stimme zu | Stimme voll und ganz zu |
|---|---------------------------|-----------------|---------|-----------|-------------------------|
| 1) Die aktuelle Geburtenrate in Deutschland liegt auf einem angemessenen Niveau.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Die sinkende Geburtenrate wirkt sich negativ auf mein Leben aus.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Die sinkende Geburtenrate wirkt sich negativ auf das Leben zukünftiger Generationen aus. | ① | ② | ③ | ④ | ⑤ |

316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 | | | | |
|--|---|---|---|---|---|
| 4) Die Maßnahmen der Regierung in Bezug auf die sinkende Geburtenrate sind angemessen/ausreichend. | ① | ② | ③ | ④ | ⑤ |
|--|---|---|---|---|---|

CQ2. Die folgenden fünf Abbildungen zeigen verschiedene Gesellschaftsstrukturen. Bitte lesen Sie sich die Beschreibung zu den Abbildungen durch und wählen Sie anschließend diejenige Struktur aus, die Deutschland am besten beschreibt.

| | | | | |
|--|---|--|--|--|
| | | | | |
| Typ A | Typ B | Typ C | Typ D | Typ E |
| Eine kleine Elite oben, nur sehr wenige Menschen in der Mitte und die große Masse der Bevölkerung unten. | Eine Gesellschaft, die einer Pyramide gleicht, mit einer kleinen Elite oben, mehr Menschen in der Mitte und den meisten Menschen unten. | Eine Gesellschaft, die einer Pyramide gleicht, aber mit nur wenigen Menschen ganz unten. | Eine Gesellschaft, in der sich die meisten Menschen in der Mitte befinden. | Viele Menschen im oberen Bereich und nur wenige Menschen im unteren Bereich. |

- ① Typ A ② Typ B ③ Typ C ④ Typ D ⑤ Typ E
 ⑥ Ich weiß es nicht.

CQ3. Bitte geben Sie an, inwieweit Sie den folgenden Aussagen zustimmen.

| | Stimme überhaupt nicht zu | Stimme nicht zu | Neutral | Stimme zu | Stimme voll und ganz zu |
|---|---------------------------|-----------------|---------|-----------|-------------------------|
| 1) Die deutsche Gesellschaft ist im Großen und Ganzen gerecht.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Die Einkommensschere in Deutschland ist zu groß.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Die reichsten 1% der Deutschen verfügen über zu viel Vermög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Der Klimawandel ist eine ernsthafte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Bedrohung für das Land. | | | | | |
|-------------------------|--|--|--|--|--|

CC4. Wie wichtig sind die folgenden Faktoren, um in Deutschland Erfolg zu haben?

| | irrelevant | nicht sehr wichtig | einigermaßen wichtig | sehr wichtig | unverzichtbar |
|--------------------------------------|------------|--------------------|----------------------|--------------|---------------|
| 1) Familiärer Wohlstand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Gut ausgebildete Eltern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Persönliche Bemühung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Politische Beziehung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Geschlecht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Rasse oder ethnischer Hintergrund | ① | ② | ③ | ④ | ⑤ |

CC5. Wie schätzen Sie Ihren aktuellen Lebensstandard ein, verglichen mit dem Ihrer Eltern, als diese in Ihrem jetzigen Alter waren?

- ① viel besser ② etwas besser ③ in etwa gleich
 ④ etwas schlechter ⑤ viel schlechter

CC6. Wie wird, Ihrer Meinung nach, der Lebensstandard Ihrer Kinder ausfallen, sobald diese Ihr aktuelles Alter erreicht haben?

(Wenn Sie keine Kinder haben, antworten Sie bitte so, als ob Sie welche hätten.)

- ① viel besser ② etwas besser ③ in etwa gleich
 ④ etwas schlechter ⑤ viel schlechter

D. Bevölkerungspolitik und Budgetinvestitionen

DQ1. Die folgenden Maßnahmen werden vom deutschen Staat gefördert. Bitte geben Sie an, inwieweit Ihnen die jeweiligen Maßnahmen bekannt sind.

| | unbekannt | kaum bekannt | einigermaßen bekannt | sehr bekannt | bestens bekannt |
|---|-----------|--------------|----------------------|--------------|-----------------|
| 1) Unterstützung während der Schwangerschaft und Geburt (Kostendeckung durch die Krankenkasse usw.)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Zahlung von Zuschüssen für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geburtsrelevante Artikel (Geburtsprämie, Unterstützung für Mutterschaftsprodukte wie Baby-Erstausrüstung usw.) | | | | | |
| 3) Rechtsanspruch auf Elternzeit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Finanzielle Unterstützung von Kindertagesstätten(Ausbau von Betreuungseinrichtungen, Gebührenzuschüsse usw.)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Finanzielle Unterstützung für Eltern (Kindergeld, Elterngeld, Familiengeld usw.)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Steuererleichterungen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Zusätzliche Unterstützung für Mehrkinderhaushalte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Maßnahmen für regionalen Bevölkerungsausgleich | ① | ② | ③ | ④ | ⑤ |

DQ2. Die folgenden Maßnahmen in Bezug auf Familie, Bevölkerung und de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haben direkten Einfluss auf Ihr Berufsleben. Bitte geben Sie an, inwiefern Sie von den einzelnen Maßnahmepunkten Gebrauch machen können, basierend auf Ihren persönlichen Erfahrungen bzw. (falls Sie keine persönlichen Erfahrungen mit diesen Maßnahmen besitzen) den Erfahrungen der Menschen in Ihrem Umfeld.

| | freie Nutzung | relativ freie Nutzung | eingeschränkte Nutzung | generell seltene Nutzung | keine Nutzung | Ich weiß es nicht |
|---------------------------------------|---------------|-----------------------|------------------------|--------------------------|---------------|-------------------|
| 1) Elternzeit für Frauen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Elternzeit für Männer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Flexible Arbeitsregelungen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Mutterschutz (Mutterschaftsurlaub)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Familienpflegezeit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DQ3. Was sollte die Regierung Ihrer Meinung nach etatmäßig für die Geburt und Betreuung von Kindern tun?

- ① Der Etat sollte deutlich erhöht werden.
- ② Der Etat sollte leicht erhöht werden.
- ③ Der Etat sollte auf dem gegenwärtigen Niveau bleiben.
- ④ Der Etat sollte leicht reduziert werden.
- ⑤ Der Etat sollte deutlich reduziert werden.

[부록 2]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한국용)

| | | | |
|--------|--|--|--|
| 응답자 ID | | | |
| | | | |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2024년 일반과제로 『주요국의 인구정책 비교 연구(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려 합니다.

본 조사는 **성인남녀 (만 20~49세)**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정보는 코드화되며, 통계 산출에만 사용되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조사 대상자 선별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세

※ 현재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4. 현재 귀하의 거주지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도시 (a big city)
 ② 대도시의 외곽/교외 (suburbs or outskirts of big city)
 ③ 중소도시 (town or small city)
 ④ 농어촌지역 (rural area)

SQ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재학 중(휴학 포함) ④ 전문대졸
 ⑤ 대학 재학 중(휴학 포함) ⑥ 대졸 ⑦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⑧ 대학원 졸

SQ6.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배우자가 있습니까?

- ① 예 → (SQ6-1로 이동) ② 아니오 → (SQ6-2로 이동)

SQ6-1. 귀하는 현재 함께 사는 파트너, 애인, 배우자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 ① 동거(cohabitation) ② 사실혼/등록파트너(registered partnership) ③ 법률혼(married)

SQ6-2.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미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SQ7.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 (SQ7-1로 이동) ② 아니오 → (SQ8로 이동)

SQ7-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자녀 현황 | 자녀 만 나이 | 동거 여부 |
|-------|---------|--------|
| 첫째 자녀 | _____세 | 동거/비동거 |

322 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 | |
|-------|--------|--------|
| 둘째 자녀 | _____세 | 동거/비동거 |
| 셋째 자녀 | _____세 | 동거/비동거 |
| ... | ... | ... |
| 막내 자녀 | _____세 | 동거/비동거 |

SQ8. 귀하 가구의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등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9.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주당) 이상 일한 경우, '일하였음'입니다.

- ① 일하였음 → (SQ9-1로 이동)
- ② 일시 휴직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 → (SQ9-1로 이동)
- ③ 교육·훈련 → (SQ10으로 이동)
- ④ 일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했음 → (SQ10으로 이동)
- 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음 → (SQ10으로 이동)
- ⑥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 (SQ10으로 이동)
- ⑦ 사회복무 또는 군복무(임대 예정 포함) → (SQ10으로 이동)
- ⑧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 → (SQ10으로 이동)

SQ9-1. (SQ9의 ①, ② 응답자만)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_____시간

※ 지난 1주일 동안 일시 휴직에 해당할 경우, 그 이전 근로했던 마지막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9-2. (SQ9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이 보장됨)
- ② 계약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음)
- ③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제로아워계약(zero-hours contract)
- ⑥ 프리랜서(freelance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⑦ 인턴십(internship) 또는 연수(traineeship)
- ⑧ 기타 (_____)

SQ10. (SQ6의 ① 응답자만) 파트너 또는 배우자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주당) 이상 일한 경우, '일하였음'입니다.

- ① 일하였음 → (SQ10-1로 이동)
- ② 일시 휴직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일을 잠시 중단) → (SQ10-1로 이동)
- ③ 교육·훈련 → (SQ11로 이동)
- ④ 일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을 했음 → (SQ11로 이동)
- 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음 → (SQ11로 이동)
- ⑥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음 → (SQ11로 이동)
- ⑦ 사회복무 또는 군복무(입대 예정 포함) → (SQ11로 이동)
- ⑧ 가사, 육아 또는 가족 돌봄 → (SQ11로 이동)

SQ10-1. (SQ10의 ①, ② 응답자만)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1주일 동안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입니까?

_____ 시간

※ 지난 1주일 동안 일시 휴직에 해당할 경우, 그 이전 근로했던 마지막 1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SQ10-2. (SQ10의 ①, ② 응답자만)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이 보장됨)
- ② 계약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음)
- ③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제로아워계약(zero-hours contract)
- ⑥ 프리랜서(freelance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 ⑦ 인턴십(internship) 또는 연수(traineeship)
- ⑧ 기타 (_____)

SQ11. 귀하 가구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최하 ← | 하 | 중하 | 중 | 중상 | 상 | → 최상 |

SQ12. 귀하는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에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 ① 현재 가구 소득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음
- ② 현재 가구 소득으로 부족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음
- ③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움
- ④ 현재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움
- ⑤ 모르겠음

SQ13. (현재의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귀하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업할 가능성 전혀 없음
- ② 실업할 가능성 적음
- ③ 실업할 가능성 있음
- ④ 실업할 가능성 큼
- ⑤ 실업할 가능성 매우 큼
- ⑥ 일할 계획 없음/구직 활동하지 않음
- ⑦ 모르겠음

A.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 다음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AQ1. (SQ6의 ②, SQ6-1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③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AQ2.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낳을 생각이다 → (AQ2-1로 이동)
- ② 낳지 않을 생각이다 → (AQ3으로 이동)
- ③ 생각해보지 않았다 → (AQ3으로 이동)
- ④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AQ3으로 이동)

AQ2-1. (AQ2의 ① 응답자만) 자녀를 낳을 생각이시면,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_____명

AQ3.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입력 가능)

_____명

AQ4. 귀하가 가족(자녀 출산)계획을 세울 때 다음의 상황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 구 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가정의 경제적 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본인의 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배우자의 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본인의 취업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배우자의 취업 상태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주거 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일-생활 균형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경력 단절의 가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정부의 충분한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AQ5.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더라도 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귀하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 전적으로 동의한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1)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 ① | ② | ③ | ④ |
| 2)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 ① | ② | ③ | ④ |
| 4)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 ① | ② | ③ | ④ |
| 5)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 ① | ② | ③ | ④ |
| 6)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 ① | ② | ③ | ④ |
| 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 ① | ② | ③ | ④ |

AQ6. 귀하는 다음의 역할을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 분 | 확실히 남성 | 대체로 남성 | 남성과 여성 모두 | 대체로 여성 | 확실히 여성 |
|----------------------------|--------|-----------|--------------|--------|--------|
| 1)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음식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B.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AQ7. (SQ6의 ①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실제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본인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배우자/애인/파트너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AQ8. (SQ6의 ①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적절한 가사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본인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배우자/애인/파트너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AQ9. (SQ6에 ①을 응답하고, SQ7-1의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실제 육아 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육아'란 만 0세 ~ 만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본인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배우자/애인/파트너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AQ10. (SQ6에 ①을 응답하고, SQ7-1의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적절한 육아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육아'란 만 0세 ~ 만 12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본인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배우자/애인/파트너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AQ11. 귀하는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렵다

AQ12.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아래에 언급된 각 항목에 대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구 분 |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
|------------------------------|------------------|------------------------|-------------------------|------------------------|------------------|
|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C.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AQ13. 인구 변화에 대한 아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1) [거주 국가]의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Q14. 아래 다섯 그림은 다양한 사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으신 후, [거주 국가]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유형A | 유형B | 유형C | 유형D | 유형E |
| 상단은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하단에 수많은 사람 | 피라미드처럼 상단에는 소수의 엘리트, 중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 맨 아래에는 대다수가 있는 사회 | 피라미드(유형B)와 유사하지만, 하단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점이 다름 |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회 | 상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단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음 |

- ① 유형 A ② 유형 B ③ 유형 C ④ 유형 D ⑤ 유형 E ⑥ 모르겠음

AQ15. 아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 구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1) [거주 국가는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거주 국가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거주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기후변화는 [거주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Q16. [거주 국가]에서 개인이 성공(출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매우 중요하지는 않다 | 상당히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필수적이다 |
|-----------------|---------------|----------------|-------------|------------|-------|
| 1) 부유한 가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개인의 노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정치적 인맥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성별 | ① | ② | ③ | ④ | ⑤ |

AQ17. 귀하의 현 생활 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훨씬 나빠졌다

AQ18.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D.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

AQ19.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계신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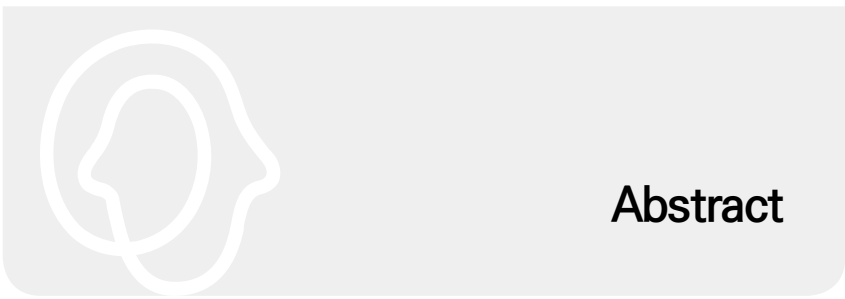
| 구분 | 전혀 모른다 | 거의 모른다 | 약간 안다 | 매우 잘 안다 |
|--|-----------|-----------|----------|------------|
| 1)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 ① | ② | ③ | ④ |
| 2) 출산을 하였을 경우 수당이나 물품 지급(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등) | ① | ② | ③ | ④ |
| 3)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 ① | ② | ③ | ④ |
| 4)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 ① | ② | ③ | ④ |
| 5)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 ① | ② | ③ | ④ |
| 6)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 ① | ② | ③ | ④ |
| 7)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 8)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 ① | ② | ③ | ④ |

AQ20. 다음은 다양한 (가족, 인구, 일·가정 양립)정책들 중 귀하의 직장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본인의 실제 경험 혹은 (본인의 활용 경험이 없다면) 배우자 또는 직장동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구분 |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편 |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편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
|-------------|-------------------|-------------------------|----------------------|-------------------|
| 1) 여성의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 2) 남성의 육아휴직 | ① | ② | ③ | ④ |
| 3) 유연근로제 | ① | ② | ③ | ④ |
| 4) 출산휴가 | ① | ② | ③ | ④ |
| 5) 가족돌봄휴가 | ① | ② | ③ | ④ |

AQ21. 귀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 ②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 ③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④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 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Abstract

Population Policy in Germany

Project Head: Joo, Bohye

Amid a growing sense of crisis in South Korea, driven by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there is mounting pressure to overhaul the nation's population policy. Germany's experience with a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which preceded South Korea's, along with its effor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response to a national crisis, offers valuable lessons. In the 1990s, Germany had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Europe, but through significant family policy reforms, including expanding childcare facilities and introducing parental leave, it has emerged as a model for addressing low fertility. The "Demographic Strategy," a national initiative launched in 2012, is particularly noteworthy for its forward-looking approach to population change.

This study examines Germany's population policy to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analysis focuses on three key areas: family policy, regional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Germany's family policy centers on the goal of "work-family balance." It prioritizes ensuring parents have sufficient time for family formation,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dditionally,

institutional incen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encourage more male participation in caregiving, aiming to achieve gender-equal sharing of caregiving roles.

Germany's regional policy, which emphasizes "equal living conditions,"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policy strategie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built on social consensus about the policy's direction. Efforts by various central ministrie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were coordinated under one roof, fostering collaboration and creating a platform for local residents to voice opinions and actively engage in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ir communities.

Regarding immigration policy,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Immigration Act for Skilled Workers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and is working to transform the country into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 for immigrants. Additionally, Germany is expanding policies focused on the long-term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bove all,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building a "welcoming culture" for immigrants, reviewing the national support structure for new arrivals, and developing recommendations for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Key words: Germany, Demographic Strategy, Population Policy, Family Policy, Regional Policy, Immigration policy